

ISSN : 1975-390X

獨島研究

제22호

2017.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이 학술지는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차례

일반논문

-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 ■ 송휘영 7
-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를 중심으로 ■ 이태우 41
-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 최철영 69
-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 정태만 97
- 일본의 해적어법·약탈어업과 평화선·독도에 대한 오해 ■ 박병섭 131
- 죽도문제연구회의 칙령41호 「石島=獨島」 날조에 대한 논증 ■ 최장근 .. 171
- 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 일본 측 주장의 국제법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 나홍주 207
- 독도연구의 기본방향 제의 ■ 김명기 239
-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독도 발견
- 곤차로프의 여행기와 팔라다호의 항해기록을 중심으로- ■ 김영수 271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동북아국제정치
- 2016년 일·러 '북방4도' 교섭의 관점에서- ■ 이명찬 307
-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국제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 정갑용 361

자료소개

『독도연해어선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 ■ 이태우 409

서평

“불편한 동해와 일본해” ■ 김영원 441

『독도연구』 제22호 편집위원회 447

논문투고규정 449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453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455

일반논문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

송 휘 영**

〈목 차〉

1. 머리말
2. 울릉도쟁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쟁점
3.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17세기말 안용복의 도일(납치)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와 관련하여 한일 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을 통해 몇 가지 쟁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의 납치 정황을 검토하고, 둘째, 안용복이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점과 셋째, 「죽도도해금지령」(1696)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정황과 마츠에번 및 돗토리번의 독도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연구에서 안용복 일행이 총검에 위협당해 납치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인의 술잔치에 꺾임을 당해 끌려갔다. 또한 안용복이 받았다는 서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있었던 안용복이 막부 장군이 사는 에도로 가지도 않았다. 당시의 일본 사료를 보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1695년까지 확인되며 「죽도도해금지령」 이전 마츠에번과 돗토리번의 울릉도·독도 인식은 그들의 판도 외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일 간에 상호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양측의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울릉도쟁계」의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울릉도쟁계, 안용복의 도일, 사료의 재해석, 납치, 울릉도·독도 인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A02929224).

**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얼마 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지난 3월 31일 고시하였다. 여기서는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여 가르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¹⁾ 현재 독도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시마네현의 초중고등학교 독도(죽도)교육은 거의 100%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쳐 왔으며, 전국적으로도 거의 70% 이상의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번의 사태는 필자가 누차 지적해왔듯이 이미 깔려진 로드맵 위에서 취해진 조치지만, 우리의 국정불안과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사태, 경북도지사의 독도방문 등을 빌미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뿐일지도 모른다.

2005년 ‘죽도의 날’ 제정을 시작으로 일본의 독도도발과 영토교육의 강화는 그동안 한·일 간의 외교적 간극을 틈타 아주 견고하게 진행되어왔다. 마치 근대기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의 시기와 같이 이웃나라의 정치적 불안 등을 빌미로 착착 군국주의의 대륙침략을 확장해갔던 100여 년 전의 동아시아의 정세를 자꾸만 되뇌게 되는 것은 선부른 염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감안하면서도 서슴지 않고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이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나서 『제1기 최종보고서』(2007.3), 『제2기 최종보고서』(2012.3), 『제3기 최종보고서』(2015.8)의 연구 성과를 내놓았고, 여기서 개발된 논리는 거의 여과됨 없이 그대로 일본 외무성의 공식 견해²⁾로 채용되고 있다. 이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

1) 이전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북방영토(=남쿠릴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였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죽도(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론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日本外務省広報パンフレット).

령』을 통해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죽도(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 틀은 ‘예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죽도(독도)를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고유영토론」의 논리이다.

이미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에서 독도 고유영토론의 논리가 허구라는 것은 거의 7부 능선까지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사실이 일본의 영토교육과 역사교육으로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날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독도연구는 한일 양국의 사료 및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쟁점이 되어왔던 역사적 사실이 상당부분 명확히 밝혀졌다.³⁾ 독도의 역사적 문제에 있어 일본 측 주장의 대부분이 부정되기도 했지만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도 하다. 특히 17세기말에 발생한 울릉도쟁계(안용복 사건)에 관한 쟁점들은 안용복을 범죄자이자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일본 측 연구와 안용복의 공술기록을 근거로 막부 장군으로부터 울릉도·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서계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며 안용복은 독도를 지킨 사람이라는 한국 측 연구가 여전히 부합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죽도기사』, 『죽도고』, 『인부연표』, 『어용인일기』, 『오야가고문서』, 『원록각서』 등 울릉도쟁계와 관련되는 많은 일본고문서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음에도 그 이전과 별반 연구 성과가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일본 정부의 「10포인트」 등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주장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3)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10포인트 비판’의 일환으로 기획된 논고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10포인트」를 학술적으로 명쾌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적인 반론은 아직 없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2010),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II』, 경인문화사, pp.3-104를 참조.

4) 「울릉도쟁계(=죽도일건)」의 경과와 결착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훈(1996), 송병기(2007), 박병섭(2009), 송휘영(2011), 장순순(2012) 등이 있다.

안용복 사건과 관련되는 것만으로도, ① 안용복은 에도로 갔는가? ② 에도에서 막부 장군의 서계를 받았는가? ③ 귀국 후 안용복의 진술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호언인가? ④ '2차도일'에서 '영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갔는가? ⑤ 「죽도도해금지령」(1696.1.28) 이후에도 일본인의 울릉도도해는 있었는가? 하는 점 등 해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안용복 사건과 관련하여 해명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은 도검에 위협을 당해 납치되었는가 하는 것과, 둘째, 2차도일 후 비변사 공초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 셋째,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지는 전후의 시기에 일본인의 도해는 어떠한가 하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점에 관해서는 당시 「죽도도해금지령」은 돗토리번의 에도번저에 전달되어 당시 에도에 체재하던 번주가 돗토리로 돌아오는 8월 1일 이후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용복의 2차도일에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고,⁵⁾ 울릉도에서 달아나는 일본인을 쫓아 송도(독도)를 거쳐 오키섬에 당도했을 가능성, 즉 1696년 봄에도 울릉도에 일본 어부가 도해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울릉도쟁계(=죽도일건)에 관한 한일 양국의 쟁점

1) 한일 간의 주요쟁점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좌장을 비롯한 연구회 멤버들은 우선 '역사적으로도 죽도(독도)가 일본 고

5) 죽도문제연구회의 『제1기 보고서』 등을 통해 「죽도도해금지령」이 실제로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전달되는 것은 안용복의 2차도일로 인해 돗토리번주가 급거 에도에서 돗토리번으로 돌아온 8월 1일 이후의 일로 밝혀졌다. 나이토 세이쥬(2007), 김화경(2010), 박병섭(2009)을 참조.

유의 영토'라는 근거를 찾는 작업에 집중하여 그 결과가 『제1기 최종보고서』(2007.3)⁶⁾로 정리되었고, 여기서 정리된 논리는 여과 없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견해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론」의 근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이후 <죽도문제연구회>에서 『제2기 최종보고서』(2012.3)와 『죽도문제 100문 100답』(2014.3), 『제3기 최종보고서』(2015.8)의 성과가 나왔다. 그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역사학적 연구가 진전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의 논리가 상당부분 부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유영토론」의 논리는 살아남아 '독도(죽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⁷⁾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17세기말에 울릉도 영유권을 두고 발생한 「울릉도쟁계」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주장은 특히 서로 상반되고 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사료가 상호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하 교수는 “안용복의 답판에 의하여 울릉도와 우산도의 ‘양도(兩島) 조선 지계로 정한 서계를 1693년 관백이 호키주 태수를 시켜 써주었으며, 1696년에 호키주 태수도 양도(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했다’고 인정하고 울릉도에 침범한 일본인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한다.⁸⁾ 또한 송병기 교수도 “안용복은 옥기도를 거쳐 호키주로 가 주수(州守)에게 울릉도와 자산도는 관백이 서계까지 발급하여 인정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전날 범경한 15명의 적발 처벌과 앞으로의

6) 정식 명칭은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報告最終報告』島根県総務部総務課, 平成19年(2007) 3月.

7)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2017년 2월 14일 오후 5시경에 전격 발표되어 3월 31일에 고시되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한 달 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2년 교과서에 현실화된다. 즉 그때쯤이면 일본 국내의 모든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보편적으로 ‘독도(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명기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게 된다.

8)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p.109.

울릉도·자산도로의 범월을 금지시키겠다는 등의 다짐을 받고 8월에 양양현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안용복이 에도의 관백에게 서계를 받아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다는 견해⁹⁾이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자들은 『속중실록』의 비변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¹⁰⁾에서도 “한국 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①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 ② 한국 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 ③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 ④ 또한 한국 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9) 송병기,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pp.85-94.

10)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

⑤ 안용복에 관한 한국 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숙종실록』(1696년 9월 25일조)에 기록된 안용복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안용복은 해금을 어기고 월경한 죄인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범죄자의 진술을 근거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 연구자들은 『숙종실록』의 이 기록이 거짓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와카미 겐쥬(川上健三)는 “비변사에서 조사에 대한 안용복의 진술은 대단한 허구와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에 갔을 때 ‘왜선도 많이 와서 정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거짓말이라고 한다.¹¹⁾ 뇌헌과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에 갔던 1696년 봄에는 이미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의 일로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어느 쪽도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다가와 고쥬(田川孝三)는 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진술이 “과대한 허구에 충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범죄자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¹²⁾ 그리고 안용복이 호키번주와 대좌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다.¹³⁾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 시모쥬 마사오(下條正男)에 이르러서는 안용복이 ‘조울양도감세장’을 잠칭한 것과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조우한 것도, 어민들이 처벌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있다. 강원도에 착안한 안용복은

11)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p.167.

12) 田川孝三(1989),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20, 東洋文庫, p.24.

13) 田川孝三(1989), 전계 논문, p.36.

비변사 공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 영토로 했다고 위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날조된 거짓 역사라고 주장한다.¹⁴⁾ 이와 같이 안용복의 일부 호언을 빌미로 삼아 안용복 진술을 거의 거짓으로 몰아가고 그의 기록을 담은 관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까지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안용복 사건에 관련된 사실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실록에 나타난 안용복 진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본의 논리를 반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사료를 함께 면밀히 대조하여 분석하면서 그 진위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¹⁵⁾

2) 관련 일본 사료의 현황

〈표 1〉 「울릉도쟁계」 관련 일본 고문서(주요관찬서)

문헌	편찬시기	성격	내용(독도관련)	저자	번역여부	공개여부
『通航一覽』 卷137 「朝鮮國部百十三」	1853년	막부의 명령에 따라 大學頭인 하야시 후쿠사이(林復齋)가 여러 외국과의 응접을 위한 자료로 편찬한 에도막부의 대외관계 사료집	쓰시마변에 의한 울릉도 탈취 의도가 나타나 있음	林復齋編	○ (영남대)	×
『通航一覽』 卷129, 「朝鮮國部百五」	1853년	상동	1620년 막부가 울릉도(竹島)를 조선국의 속도로 기록	상동	○ (영남대)	×

14) 下條正男(2007), 『最終報告書』, p.6.

15) 아울러, 일본 측 고문서·고문헌 사료의 분석을 통해 해명해야 할 한·일 양국의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숙종실록』 등 우리의 관찬기록에서 나타나는 안용복 공술의 진위 해명, ②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석도는 독도이며, 우산도=석도=독도라는 사실 규명, ③ 적어도 1900년 이전에 우리 정부 및 연안민이 독도를 실효 지배 해왔다는 구체적 증거 발굴, ④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강탈)이 근대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이라는 사실 규명, ⑤ 근대기 울릉도 도해 일본인들이 독도를 한국의 판도로 인식했다는 추가적 증거 확보 등이 시급히 해명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大日本史』 卷三百八 志三	1657~ 1906년	일본의 역사서로 본 기 73권, 열전 170권, 지(志)와 표(表) 154 권으로 전 397권 226 책으로 구성	「오키국」의 기록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고 있지 않음		○ (영남대)	×
『隱州視聽合 紀』	1667년	에도시대에 마츠에 번사(松江藩士) 사이 토 간스케(齋藤勘介) 에 의해 저술된 오키 =은주(隱州)의 지지	일본 최초로 독도(송 도)에 대한 기록으로, 일본 영역의 서북한 계를 오키섬까지로 한정	齋藤勘介著	○ (영남대)	○ (동북아 역사재단)
「元祿九丙子 年朝鮮舟着 岸一卷之覺 書」	1696년	1696년 안용복 스스 로 오키에 도항했을 때 대관의 대리들이 안용복을 취조한 기 록	안용복이 울릉도 및 자산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것 등이 기록	村上助九郎家文書	○ (영남대)	○
『竹島紀事』	1726년	대마번의 중가문서 등을 바탕으로 「울릉 도쟁계(죽도일건)」 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총5권 으로 구성	안용복 납치 사건으로 발생한 「울릉도쟁계」 의 과정과 조일간의 교섭 내용을 기록		○ (경북도)	○ (경북도)
『竹島考』	1828년	죽도(울릉도)의 연혁 과 「울릉도쟁계」 관 련 사건의 시말에 관 한 기록을 담고 있음	당시 『인부연표』 『초 후지』 돛토리의 사료 를 편찬한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울릉도 쟁계」의 전모를 기록 한 것임	岡嶋正義	○ (경북도)	○ (경북도)
「竹島渡海禁 止并渡海沿 革」, 『鳥取藩 史』第六卷, 事變志	1971년	鳥取藩史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 죽도도 해금지를 내리기까지 의 기록	1695~6년 에도막부와 돛토리번의 울릉도 및 독도의 판도에 대한 협의 과정을 기술	鳥取縣編	○ (영남대)	○ (영남대)
『鳥取縣史』 (第7卷近世 資料)	1978년	돛토리현의 현사	1693년 및 1696년 안 용복 도일사건을 기 록하고 있음	鳥取縣編	○ (영남대)	○ (영남대)

* 『竹島考』는 사찬서이나 사료의 중요성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음.

〈표 2〉 「울릉도쟁계」 관련 일본의 향토사로 및 지지

문헌	편찬시기	성격	내용(독도관련)	비고	번역여부	공개여부
『伯耆志』	1858년	에도 후기의 유학자 가게야마 슈큐(景山肅)가 편찬한 호키국(伯耆國)의 역사서이자 지지.	권4의 「會見郡 8, 米子下」오야(大谷)·무리카와(村川) 양가의 죽도도해 경위를 기록하고 있음	景山肅編	○ (영남대)	○ (영남대)
『伯耆民談記』 卷2	1742년	에도 중기의 학자이자 돗토리번사였던 마츠오카 노부마사(松岡布政)가 전술한 호키(伯耆)의 지지	죽도도해의 및 도해금지의 경위와 죽도(울릉도)의 물산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음	松岡布政著	○ (영남대)	○ (영남대)
『因幡志』	1795년	돗토리번의 시의(侍醫)였던 아베 교양(安部恭庵)이 저술한 이나바국(因幡國)의 역사서이자 지지.	죽도도해 경위와 특히 2차 안용복 도일 사건에서 안용복 일행의 신상과 배의 깃발 등을 자세히 담고 있음	安部恭庵著	×	×
『鳥府志』	1829년	돗토리번의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저술한 돗토리성하(鳥取城下)의 근세의 역사를 기록한 지지	겐로쿠시기 안용복의 돗토리 성에서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岡嶋正義著	×	×
『因府年表』	1842년	돗토리번의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저술한 돗토리번(鳥取藩)의 연표	2차례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 행적이 1693년 6월조와 1695년 6월조에 기록되어 있음	岡嶋正義著	○ (권오엽)	○ (권오엽)
『竹嶋之書附』	1724년	돗토리번이 죽도(울릉도)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여 막부에 제출한 자료	울릉도쟁계의 과정에서 1695년 12월 24일 막부가 돗토리번에 문의한 「7개조답변서」가 수록되어 있음	鳥取藩	○ (권오엽)	○ (권오엽)
『御用人日記』	1779년 이후	번주를 모시는 어용인들이 에도 번저에서 기록한 것(1670~1779)	안용복 납치 및 도일 사건에서 안용복의 행적을 담고 있음		○ (권정)	○ (권정)
『控帳』	1873년 이후	돗토리번의 가신이 일기식으로 적은 기록(1665~1873)	안용복 납치 및 도일 사건에서 안용복의 행적을 담고 있음		○ (권오엽)	○ (권오엽)

『大谷家古文書』	1984	17세기초 무라카와 가문과 함께 죽도도해를 했던 오야가문의 울릉도 도해의 내역과 「도해금지령」 이후 도해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본인들의 활동을 현창하기 위한 기록	관찬서 등 공식 기록에서 없는 오야가와 막부, 오야가와 돛토리번 사이의 죽도도해를 둘러싼 내용을 담고 있음	大谷文子	○ (권오엽)	○ (권오엽)
『因府歷年大雜集』	1854년 이후	1632~1854년의 진사와 이사가 기록되어 있음	안용복의 1차 및 2차 도일에서의 행적을 담고 있음	岡嶋正義著	○ (권오엽)	○ (권오엽)
『濱田町史』	1935년	이와미사담회(石見史談會)가 편찬한 하마다 지역의 향토사지	「제3편 하마다본기」에서 1836년 발생한 하치에몽 밀무역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石見史談會	○ (영남대)	○ (영남대)
『鳥取縣史』 9	1930년	메이지말부터 수십 년에 걸쳐 편찬한 시마네현의 역사서로 총 10권으로 편찬	「번정시대 하」에서 하마다번에서 발생한 「죽도사건」의 경위를 다루고 있음	鳥取縣編	○ (영남대)	○ (영남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독도 관련 일본 고문서들이 한일 양국에서 책자로 엮어지고 있으며 상당수 번역서도 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대의 권오엽 명예교수와 동북아역사재단, 영남대 독도연구소,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등에서 기존 공개된 일본 고문서의 탈초·번역·해제본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은 독도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들 중 「울릉도쟁계」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죽도기사(竹島紀事)』의 완역본이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 번역본과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번역본의 두 가지나 출판되었고 다른 사료들도 차츰차츰 번역서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항일람(通航一覽)』, 『원록각서(元祿覺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등 난해한 관찬사료들과 『죽도고(竹島考)』¹⁶⁾ 등도 단행본으

16) 『죽도고』는 돛토리번의 번사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돛토리번의 번정자료(藩政資料)를 편찬하면서 울릉도(죽도)에 관한 것만을 선별하여 편찬한 사찬자료이나 사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기에 함께 실었음.

로 엮어졌다. <표 1>에는 「울릉도쟁계」 관련 주요 관찬서, <표 2>에는 「울릉도쟁계」 관련 일본의 주요 향토사료 및 지지를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보면 주요 관찬사료 9건 중 6건(66.7%)이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향토사료 및 지지 12건 중 10건(83.3%)이 이미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이어지겠지만 일본 사료를 통해 독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독도 연구의 저변확대에도 일조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 사료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쟁점들 중에서 「울릉도쟁계」와 안용복 진술의 진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한일 간 쟁점들의 간극을 좁히고 보다 객관적 사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양국의 사료들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사료들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울릉도쟁계 관련 사료의 재해석

1) 안용복 납치사건(1693년 1차도일) 정황과 에도행의 가능성

「울릉도쟁계」의 계기가 된 제1차 안용복 사건에서 일행이 납치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죽도기사』에서 보면, 1692년 봄에 무라카와 가문의 배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보니 상당히 많은 수의 조선인이 와서 어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가 많음을 알고 고기도 잡지 못하고 요나고로 뒤돌아 왔다. 이듬해 도해의 순번은 오야 가문의 순번이었다. 조선인과 조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야 가문의 사람들은 돛토리번으로부터 총포 등을 빌려 울릉도로 도해하였다.

- ① 그러던 중 4월 17일에 일본 배 한척이 다가와서 뗏목에 7-8인이 타고 위에 말한 움막에 와서 바쿠 토라히를 붙잡아 뗏목에 태웠으며, 뿐만 아

나라 움막에 둔 보따리 하나까지 싣고 출발하려고 하여 안요구가 그곳에 가서 말렸으며 바쿠 토라히를 육지로 올려 보내려고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바로 배를 출항시켰으며 두 사람을 모두 본선에 태우고 즉시 출항하였습니다.¹⁷⁾

② 일본인이 말을 걸기를, 우선 술잔치를 한다며 다케시마마루(竹島丸)의 배안에서 뱃사공들이 모여, 가져온 술을 손에 들고 밥공기의 잔에 따르고, 너도나도 하며 주거나 받거나 하였다. 왜국(倭國)의 예의범절로 그들 조선인 2명에게 먹이고자 몸짓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꾸며냈다. 조선인은 크게 웃으며 끊임없이 더 달라고 수궁하였다. 일본인 배로 불러 들여 취해 탔을 때, 작년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에서 이익 이야기로 추궁을 당했으므로 그 증거로 데리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머리를 썼다. 그러자 이번에도 의사는 허무하게 빈 배로 돌아가는 것을 한 번은 봐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배 위인 것이다. 나머지 뱃사람은 좋은 생각이라며 이 2명에게 제 정신이 없을 만큼 마시게 했다. 그 자의 이름을 물어보니 아벤테후(あべんてふ), 도라헤이(虎へひ)라고 하였다. 우리 2명은 너무 많은 술을 마셨는데 이것보다 좋은 약은 없다. 나머지 조선인에게도 마시게 해 달라고 하였다. 다행하게도 알았다고 하여 배로 불렀고, 모두 허둥지둥 널판자를 다리로 삼아 배에 올랐다. 냇을 잃고 국자로 마신 2명의 조선인이 보다 마셨고, 그 다음 섬으로 올라오라고 얼굴로 설득하였다.¹⁸⁾

그러나 『죽도기사』의 기록(①)을 보면 조선인과의 마찰이나 무기에 의한 위협 등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인을 띄어 예인선(뗏목, 전마선)에 태웠으며, 안용복은 이를 말리기 위해 배에 올라탔고 배는 바로 출항을 한 것으로 오키에서 안용복은 증언하고 있다. ②는 『장생죽도기』의 기록이다. 『장생죽도기』에서도 앞의 『죽도기사』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못하고 돌아온 무라카와 가문의 뱃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오야 가문의 사람들은 총포를 준비하여 울릉도로 도해한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당시 울릉도도해

17) 『竹島紀事』 1693年 9月 4日條.

18) 『長生竹島記』 「竹島渡海七番目」條.

를 하였던 오야 가문의 경험을 직접 받아 적은 것인데, 술잔치를 벌여 안용복과 박어둔의 두 사람을 일본의 예인선으로 유인하고 있다. 가져온 술을 밥공기에 따르고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술잔을 주고받는다. 술을 무척 좋아했던 안용복¹⁹⁾은 일본 어부들의 계책에 의해 제정신이 없을 만큼 취해 있었다. 충분히 술에 취한 두 사람을 싣고 오야 가문의 배는 막부에 제소하기 위한 증질로 삼아 오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들 정황으로 보면 안용복과 박어둔은 총포 혹은 도검에 의해 협박을 받아 납치된 것이 아니라, 술(정중)로 유인하여 술에 만취하게 한 다음 일본으로 납치해 간 것이다.

다음으로 안용복이 에도로 가서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점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안용복은 에도로 갔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1차 안용복 사건(1693)이 발생했을 때, 안용복이 에도(江戶)로 가서 관백(關伯)으로부터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일 연구자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숙종실록』의 기록처럼 안용복이 에도로 가서 서계를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돛토리 번(鳥取藩)의 기록에서 보면 에도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에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오엽 교수 등의 연구에서는 안용복이 에도에 가서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²⁰⁾ 송병기 교수는 제2차 안용복의 도일에서 에도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일본 연구자 가운데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관백이 “울릉도를 조선령임을 인정했”으며, “안용복 진술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²²⁾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안용복이 돛토리 번으로부터 서계

19) 『어용인일기』 등 돛토리번에서의 기록에서도 안용복은 술을 좋아하여 하루에 몇병 한병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 권오엽(2009), 『독도와 안용복』 충남대학교출판부, pp.250-282.

21)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pp.75-95.

22) 田保橋潔(1931), 「鬱陵島 그 發見과 領有」, 『靑丘學叢』 3호, pp.19-20.

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에도 막부에 가서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한일 양국의 관찬기록을 비교하여 공통되는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안용복의 에도 행의 가능성이 낮다. 만약 그가 서계를 받았다면, 돛토리 성에서 번주(藩主)로부터 받았을 수는 있다. 『인푸년표(因府年表)』 등에서 돛토리 번에서의 안용복의 행적을 보면 그가 에도로 갈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요나고(米子)에서 에도까지는 약 710km(약 178里) 정도의 거리이고, 돛토리에서 에도까지는 약 650km정도 된다. 에도 중기 일반인의 1일 이동 거리는 약 32~40km라고 한다. 그 중간치를 잡아 36km의 속도로 돛토리에서 에도로 이동한다면 18일이 걸리고, 왕복으로 36일이나 소요된다. 빠른 걸음으로 왕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은 소요된다. 만일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면 돛토리 번에서의 그의 행적 기록에서 적어도 30일 정도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에도시대 파발꾼인 히카쿠(飛脚)가 교토(京都)에서 에도까지 3~4일, 돛토리 성에서 에도까지는 5~6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²³⁾

당시 돛토리 번에서 안용복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사료로써 『인푸년표(因府年表)』, 『인부역년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 『히카에초(控帳)』 등에서 날짜별로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우선 오야(大谷) 가의 선원들에게 납치된 안용복과 박어둔은 1693년 4월 20일 오키국(隱岐國) 도고(島後) 후쿠우라(福浦)에 도착했다. 그 이후 도젠(島前)을 거쳐 4월 27일 요나고(米子)에 도착, 오야가(大谷家)에 머물며 외출이 금지된다. 다시 5월 11일 마치카이쇼(町會所)²⁴⁾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5월 16일 에도막부로부터 육로로 나가사키(長崎)에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5월 29일 아침 요나고를 출발하여 6월 1일 저녁에 돛토리에 도착한 후 아라오 아마토(荒尾大和) 덕

23) 이것은 파발마를 타고 빠른 걸음으로 달렸을 경우를 말하는 것임.

24) 일종의 마을회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동사무소처럼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함.

에 머문다. 돛토리 성하(城下)에서 조회를 받은 다음, 6월 7일 오전에 돛토리를 출발하여 같은 달 30일 나가사키에 도착한다. 돛토리 번의 요나고와 돛토리에 머문 2개월 10일 동안 안용복의 행적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안용복이 1차 도일에서 에도에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에도 쇼군(將軍)의 서계가 아니라 돛토리 번주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승려 뇌헌 일행과 건너간 안용복의 2차 도일에서도 에도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제2차 도일에서는 그는 에도 관백은 물론 돛토리 번주조차도 만나지 않았다. 안용복이 에도에 가서 쇼군의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숙종실록에 있는 안용복 공술에서 서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1차 도일에서 돛토리 번주에게서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돛토리 번주가 서계를 발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돛토리 번주가 서계를 발급하였다면 돛토리 번의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나, 이러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에도행의 사실을 돛토리번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그만큼의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원록각서(元祿覺書)」속 안용복의 행적 재론—안용복의 2차도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안용복의 2차도일은 오키섬(隱岐島)을 거쳐 ‘조울양도감세장(朝鬱兩島監稅將)’을 잠칭하여 철립포를 걸치고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를 소지한 채 호키의 아카사키항(赤埼灘)으로 입항한다. 때는 1696년 6월 4일의 일이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독도(송도)를 거쳐 오키섬으로 건너가는데, 「원록각서」의 진술에서 보면 “5월 15일 다케시마를 출선하여 같은 날 마츠시마에 도착하였고, 동 16일 마츠시마를 나서서 18일 아침에 오키섬 내의 니시무라(西村)의 바닷가에 도착, 동 20일에 오쿠무라(大久村)에 입항하였다고 합니다. 니시무라의 바닷가는 거친 바닷

가이므로, 다음 19일에 나와서 같은 날 밤에 오쿠무라 안에 가요이 포구에 배를 뒀다가, 20일 오쿠무라에 와서 배를 정박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을 보면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를 떠나 자산도(독도)에서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 날, 일본으로 출발하여 오키섬(隱岐島)에 도착하는 데 2일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오키국(隱岐)의 다이칸(大官)에게 취조를 받게 된다. 당시 다이칸 고토 츠노에몽(後藤右衛門)의 부하들이 보고하는 바를 보면, “5월 20일 조선 배 한 척이 해안에 닿았으므로 그 자세한 내용을 물어본바, 이전에 그 나라의 배 32척이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하여 그 가운데 한 척이 오키국에 소송을 위해서 도해했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 배가 아닐까 한다.”는 진술²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용복의 도일이 어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건너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안용복이 말하기를 내가 타고 온 배에는 11인이 호키주(伯耆州)에 왔는데, ㉠ 돗토리 호키노카미님에게 양해를 얻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풍을 만나서 당지(當地)에 오게 되었습니다. 순차로 호키주에 도해(渡海)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 다케시마를 출선하여 같은 날 마쓰시마(松嶋)에 도착하였고, 동 16일 마쓰시마를 나서 ㉢ 18일 아침에 오키노시마(隱岐島) 내의 니시무라(西村)의 바닷가에 도착, 동 20일에 오쿠무라(大久村)에 입항하였다고 합니다. 니시무라의 바닷가는 거친 바닷가이므로, 같은 날 나카무라(中村)에 입항, 이 항구는 처음인 연고로, 다음 19일에 나와서, 같은 날 밤에 오쿠무라 안에 가요이 포구에 배를 대었다가, 20일 오쿠무라에 와서 배를 정박시키고 있습니다.

1. ㉢ 다케시마(竹嶋)와 조선 사이는 30리이고, 다케시마와 마쓰시마(松嶋) 사이는 50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안용복과 도라베 2인은 4년 이전 계유년(癸酉年) 여름에 다케시마에서 호키주(伯耆州)의 배에 붙잡혀 왔었는데, 그 도라해도 이번에 데리고

25) 岡嶋正義, 『竹島考』下, 元祿9年 6月 4日條.(정영미 역, 『죽도고 상·하』, 경상북도, pp.242-245.)

와서 다케시마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²⁶⁾

특히 호키국(伯耆國)의 태수에게 소송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 안용복의 답변은 「원록각서」와 『죽도고』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은 「조선팔도지도」 8장짜리 지도를 소지하여 갔는데, 당시 지도의 취급이 국가적 기밀자료에 해당하는 점을 생각하면, 호키주 태수 즉 돗토리 번주에게 아주 강력한 소송을 하기 위해 간 것임은 분명하다. 1693년 납치사건으로 동래부에서 공초를 당하고 죄수 취급을 받아 유배형을 받는다. 그 후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도까지 지참하여 건너간 것이다. 그 「조선팔도지도」에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8도가 그려져 있고, 독도가 자산도(子山島)라고 적혀 있었다.²⁷⁾ 또한 그의 진술에서 “다케시마(竹嶋)에서 조선까지는 30리(=약 120km)이고, 다케시마와 마츠시마(松嶋) 사이의 거리는 50리(=약 200km)”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선 본토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와 『죽도고』 등에서 1693년 납치되어 도일했던 후쿠우라항(福浦港)을 목표로 들어온 것은 그곳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니시무라(西村)로 당시의 항해술로는 매우 정확한 위치로 도일했던 것이다(앞의 자료 밑줄 부분 참조). 그렇다면 무슨 소송을 위해 건너왔는가 하

26) 「一 安龍福申候ハ私乗參候船ニハ 拾壹人伯州江參鳥取伯耆守樣江御断之儀在之候越申候 順風總布候而当地へ寄申候順 (風欠力) 次第泊州江渡海可仕候 五月十五日竹嶋出船同日松嶋江着同十六日松嶋ヲ出十八日之朝隱岐嶋之内、西村之儀へ着同二十日二大久村江入津仕候由申候 西村之儀ハ荒儀ニ而御座候ニ付同日中村江入津是之湊初て故翌十九日波所出候而同日晚二大久村之内かよひ浦と申所二舟懸リ仕廿日二大久村江參懸リ居申候

一 竹嶋と朝鮮之間三十里竹嶋と松嶋之間五十里在之由申候

一 安龍福ととらべ式人四年已前西夏竹嶋ニ而伯州之舟ニ被連まいり候 その其とらべも此度召連參り 竹嶋ニ殘置申候」

27) 기록에 지도 8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각 도별지도 8장으로 된 지도첩을 소지하고 갔을 것이다. 이 지도에는 우산도(于山島)가 아닌 자산도(子山島)라고 적힌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 「천하도」와 같은 부류의 지도였을 것이다.

는 점인데, 다음의 기록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1. 스님의 종파 5인이 같이 한 종파인가 다른 종파인가 무슨 종파인가 물으니, 뇌헌(雷憲)이 그 물음의 답서에 답을 썼으나, 그것이 불분명한 것같이 들리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21일에 종지(宗旨)와 이름, ㉔ 하쿠슈(伯洲)에 가고자 하는 이유, 짐 등에 대해 글로써 물으니, 병자(病人) 이비원(李裨元)이 써서 내놓은 글이 있어 올립니다.

1. 안용복이 말하기를 ㉔ 대나무 섬(竹嶋)을 다케시마라고 말하는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東萊府) 안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곧 8도의 지도에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 ㉔ 마쓰시마(松島)는 위의 도(右道) 안의 자산(子山)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마쓰시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8도의 지도에 적혀 있습니다.²⁸⁾

안용복은 본인이 지참한 「조선팔도지도」의 「강원도지도」를 펼쳐 보이면서(㉔㉔), 지난번 납치 사건 때 건너간 죽도(다케시마)는 조선국 강원도 안에 속하는 울릉도라는 섬이고 이는 팔도지도에도 확연히 적혀있다(㉔). 그리고 이 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자산도(子山島=음독으로 소우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마쓰시마)라고 하였다(㉔). 1696년 안용복의 2차도일 목적이 ① 1차도일 때 쓰시마변에서 홀대를 받은 대마도주를 막부에 고발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인지, ② 자신의 독점적 어장으로 판단했던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하러 갔는

28) 「一 沙門宗派五人共二一宗可又別宗可何宗たと尋候へハ雷憲其問ノ書付ニ答ヲ書記申候然共其分ケ不分明様ニ相聞へ申候依之翌廿一日ニ宗旨名伯州へ參候王け荷物等之儀書付相尋候へハ病人李裨元筆者ニテ書出ス書付有リ 則差上申候

一 安龍福申し 候ハ竹嶋ヲ竹ノ嶋と申候 朝鮮国 江原道 東萊府ノ内二鬱陵嶋と申嶋御座候 是ヲ竹ノ嶋と申由申候 則八道ノ図ニ記之所持仕候

一 松嶋ハ右同道之内 子山と申嶋御座候 是ヲ松嶋と申由是も八道之図ニ記申候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우리 조선의 지계임을 주장한 것은 맞는 판단이다. 이것은 그가 미리 준비해서 간 ‘조울양도 감세장’을 잠칭하여 강원도 동래부에서 두 섬을 관장하는 관리(안동지, 감세장)라고 하였고, 「원록각서」의 ‘지도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1차 도일의 납치사건에서 ‘우리의 영역 울릉도에 건너간 것임에도 오야 가문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된 것’과 ‘돗토리 번에서 받은 서계와 은화 등을 몰수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해 도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차 도일에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우대해 주었던 호키주의 번주에게는 에도 막부의 소송과 호키 번주에의 답례를 겸하여 호키의 아카사키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 점은 「원록각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1. 조선을 출선할 때 쌀 5말 3되들이 열 가마니를 실어왔으나, 13척의 배에 함께 나누어 주었으므로 지금은 밥쌀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㉔ 호키주(伯耆州)의 용무를 마친 다음 다케시마(竹嶋)로 돌아가, 12척의 배에 짐을 고쳐 싣고, 6·7월경에 귀국하여 상관(殿)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 ㉕ 다케시마(竹嶋)는 강원도 동래부(東萊府)의 안에 있고, 조선 국왕의 이름 구모시양인데, 세상에서의 명칭은 주상(主上)이며, 동래부 영주의 명칭은 한 도(道)의 방백(方伯)이고, ㉖ 동소(同所)의 지배인 명칭은 동래부사(東萊府使)라고 말합니다.

1. 4년 이전 ㉗ 계유(癸酉) 11월 일본에서 주었던 것을 적은 장부 한 권을 내놓았는데, 곧 사본입니다.²⁹⁾

29) 「一 朝鮮出船之節米五斗三升入口十表積參候得共十三艘之者共給申候二付只今者飯米 貧
ク成候由申候.

一 伯州用事仕思竹嶋江戻り十式艘之舟二荷物ヲ積世改仕六七月之比歸国仕り殿江も運上ヲ上ケ申筈之由申候

1. 11인 중 이름과 나이를 말하지 않았고, 더욱이 또 종파(宗派)의 일로 각자 바라는 바를 적고 ㉔ 호키주(伯耆州)에서 소송을 할 이유를 적어 내달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알아들을 것으로 말하더니, 22일 아침이 되어 그 일을 적어줄 수가 없고 호키주에 가서 상세히 말하겠다는 뜻과 더불어 그 물은 일은 쓸데없다는 뜻을 적어 보내왔기에, 여기에 보내드립니다.³⁰⁾

㉕에서 보면 호키주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 울릉도에 서의 수확물을 싣고 귀국하여 상관에게 드릴 것이다. 쌀을 열가마니 싣고 왔으나, 1개월간 울릉도에 체재하면서 함께 울릉도에 건너간 다른 13척의 배에 나누어 주었으므로 쌀이 부족하다고 했다. ㉖와 ㉗를 보면 마치 국왕의 명령으로 동래부사의 허가를 받아 건너온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소송에 대한 권위를 높이려고 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㉘의 기록이다. 3년 전에 받았던 문서의 사본을 지참해 갔다고 하는 것은 서계가 실재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은 에도에 가지 않았고 막부의 서계가 아니라 호키노카미로부터 일정의 문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대마도주에게 빼앗겨 버렸으므로 이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 대마도주의 난폭성을 소송하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본은 막부가 써준 것³¹⁾이 아니라 돗토리 번주가 건

一 竹嶋は江原道 カンウンタウ トナイフ 東萊府之内ニ而朝鮮国王之御名クモシヤン天下ノ名 主上 チウシヤン 東萊府 殿ノ名一道方伯 イルトハンバイ 同所支配人之名 フシ 東萊府使ト申由申候

一 四年以前癸酉十一月日本ニ而被下候物共書付之帳表册出シ申候則写之申候」

30) 「一 拾壹人之内名歳知レ不申外猶又宗門之儀銘々ニ願ハ書記伯州へ訴訟之王け書付出シ候様ニト申候得者始ハ心得候由申候處廿二日朝ニ至リ其事共書出スニ不及候 伯州へ參委細可申上由重而ハ其問事無用ニ可仕由書付出申候則指上ケ申候」

31) 비변사의 공초기록에서 안용복은 막부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에도의 관백이 아닌 호키노카미에게 어떤 종류의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문서의 사본은 기록에 남기고 있지 않다. 당시 오키노시마는 막부의 직할지였고, 안용복이 오키의 대관소에서 서계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정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돗토리번의 기록에

내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안용복의 1차도일(납치)에서 안용복은 에도로 가지 않았고 적어도 막부의 관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번사 공술에서 “막부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안용복의 진술은 과장된 것이었다. 당시 안용복을 납치하여 온 것을 에도 막부에 파발꾼(飛脚)을 통해 보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그의 행적과 파발꾼의 움직임을 통해 보면 에도로부터 서계를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오야 · 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와 판도 인식

다음으로 「울릉도쟁계」 벌어지던 시기에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언제까지 죽도도해를 했었는가와 이들이 죽도도해를 하면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판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 죽도로 어렵하러 가는 시기는 2~3월경으로 요나고를 출선하여 매년 도해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강치 어렵을 하는 배는 대소 2척이 갑니다.³²⁾

㉡ 4년 전 임신년(1692)에 조선인이 그 섬에 왔을 때, 뱃사공(船頭)들이 만났던 일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듬해 계유년(1693)에도 조선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뱃사공들이 만난 조선인 2명을 끌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일도 보고하여 나가사키로 보냈습니다. 갑술년(1694)에는 난풍을 만나 그 섬에 착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을해(1695)도 도해하였는데, 이국인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착안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송도(독도)에서 전복을 조금 잡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고합니다.³³⁾

서도 문서를 건네주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당시 호키노카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서계를 써줄 입장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황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32) 「竹嶋江漁採參候時節は、二月三月頃米子出船毎年罷越候。於彼鳴嶋、みちの魚獵仕候船数大小二艘參候事」, 「竹島之書附」元禄八年三號.

33) 「四年以前申年, 朝鮮人彼鳴江參居候節, 船頭共參相候儀, 其節御届申上候。翌酉年も朝

㉔ 겐로쿠(元祿) 연간에 죽도에 조선인이 건너가기 시작하여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단속을 해서 조선에 통보한 후에 종래대로 도해 하라고 명하였으므로 1693, 1694, 1695년까지 도해했지만 매년 조선인들이 많이 건너와 있었습니다.³⁴⁾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는 2~3월의 시기를 선택하여 그들의 출항지 요나고(米子)를 출발하여 죽도(울릉도)로 건너갔다. 이때 크고 작은 배 두 척으로 건너가는데 이즈모국(出雲國)의 구모즈(雲津)에서 2~3명을 인부 또는 수부로 고용하여 태우고, 오키국(隱岐國) 후쿠우라(福浦)에서는 8~9명의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여 약 20여 명의 규모로 갔었다. 「울릉도쟁계」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 양가의 도해 사실을 확인해보면, 1692년 무라카와 가문의 배가 건너갔으나 수많은 조선인이 먼저 도해하여 어려움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서 어려움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1693년에는 총검류를 싣고 건너가 안용복과 박어둔을 배로 유인하여 인질로써 납치해왔다. 그로 인하여 조일 간에 울릉도 영유권을 두고 「울릉도쟁계」가 촉발되어 서계의 교환을 통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양가의 배는 1694년에도 건너갔으나 난풍을 만나 울릉도에 착안을 하지 못하였고, 1695년에도 도해하였으나 조선인이 많이 건너와 있었기 때문에 착안하지 못하고 다만 송도(독도)에서 전복을 조금 잡아 돌아왔다고 한다.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가 내려지므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문서에서도 1696년의 도해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鮮人參居申內, 先頭共罷逢, 朝鮮人二人連候而米子江罷歸, 其段も御届申上, 長崎江相送申候。戊年は遭難風, 彼鳴着岸不仕段尾届申上候。当年も渡海仕候処, 居国数多見江申二付, 着岸不仕罷歸候節, 松嶋にて匏少々取申候。右之段御届申上候事, 「竹島之書附」元祿八年三號。

34) 「元祿年中, 右竹島へ唐人相渡り初申候故御注進申上候, 依之段々日本之御仕置を以朝鮮国江被仰遣, 其上唯今迄之通渡海可仕旨被為仰付候故, 元祿六七八年迄渡海仕候得共, 年々唐人大勢相渡り申候委細之儀者別札二奉書上候通二御座候, 「大谷九右衛門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九右衛門勝房條。

안용복의 2차도일(1696.5.15)에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을 쫓아 오기
 섬까지 갔다는 것은 일본 사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696년 1
 월 28일에 내려진 「죽도도해금지」가 돛토리번지를 거쳐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전달되는 것은 8월 1일의 일로 7개월 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5월
 중순에 도해했던 안용복이 울릉도와 자산도(독도)에서 만난 왜인을 쫓아
 났다는 것이 기록된 『숙종실록』의 내용은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매년
 2~3월에 이루어지는 요나고 어민의 죽도(울릉도)도해는 「죽도도해금지」
 의 사실을 모른 채 예년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25년 막부
 로부터 「죽도도해면허」가 내려져 그 이듬해인 1626년부터 1696년까지 도
 해를 했다고 한다면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도해는 71년간 이루어
 진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시 울릉도 도해를 했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독도 인
 식이 어떠한가는 「죽도도해금지」가 내려지기 직전, 에도 막부가 송도
 (독도)에 대해 돛토리번(鳥取藩)과 마츠에번(松江藩)에게 내린 질의에 대
 한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막부가 최종적으로 「죽도도해금지」를 내
 리기 전에 우선 돛토리번에 대해 “죽도 이외에도 인백(因伯) 양주에 부속
 한 섬은 있는가? 또한, 양국(두 지역)의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인가?”
 라고 묻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양국에 부속된 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속섬도 없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갑자기 송도(독도)에 대
 한 말이 나왔으므로, 1696년 1월 25일 막부는 돛토리번의 에도 루스이(留
 守居)를 불러 송도에 대해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막부가 구두로 물었기
 때문에 그 질의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송도까지의 거리와 소속, 송도(독
 도) 및 죽도(울릉도)도해의 정황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 ① 죽도, 송도 그 외 양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³⁵⁾
- ② 1. 송도(松島)까지 호키국(伯耆國)으로부터 바닷길(海路) 120리 정도

35) 「竹島, 松島其外兩國江附屬の島無御座候事」, 『鳥取藩史』第六卷, 事變志, 1971년 11월.

됩니다.

1. 송도(松島)에서 조선까지는 80~90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송도(松島)는 어느 쪽 나라(國)³⁶⁾에도 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 송도(松島)에 어럽을 하러 가는 건은 죽도(竹島)로 도해할 때 지나가는 곳이므로 잠시 들러 어럽을 합니다. 다른 영지(他領)로부터 어럽을 하러 오는 일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즈모국(出雲國), 오키국(隱岐國)의 사람들은 요나고(米子)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이상. (1696년) 1월 25일³⁷⁾

- ㉔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초닌(町人) 오오야 규에몽(大屋九衛門),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가 부리는 뱃사람(船子)들 이외에 영지(領國)의 사람이 죽도에 도해하는 일(儀)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영지(他領)의 사람이 도해하는 일 또한 없다고 합니다. 오오야 규에몽(大屋九衛門),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는 몇 년 전부터 죽도 도해의 건에 대한 면허를 받아 건너가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 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들 뱃사람은 죽도에 어럽을 하러 건너갈 때 이즈모국과 오키국의 어부(獵師)들을 고용하여 요나고 뱃사람과 같은 배로 건너갑니다. 인원수는 매년 다릅니다. 이즈모국으로부터 건너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대략 이즈모국(出雲國)에서 2~3명 오키국(隱岐國)에서 8~9명 정도 고용하여 건너간다고 합니다.

이상. (1696년) 1월 25일³⁸⁾

36) 일본의 영주국=지방의 단위로 여기서는 호키국(伯耆國)과 이나바국(因幡國)을 지칭함.

37) 「一. 松島江伯耆国より海路百式十里程御座候事.

一. 松島より朝鮮江は八九十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一. 松島は何れの国江附候島にても無御座由承候事.

一. 松島江獵參候儀、竹島江渡海の節道筋にて御座候故、立寄獵仕候。他領より獵參候儀は不承候事。尤出雲國、隱岐國の者は米子のものと同船にて參候事。

以上 正月廿五日, 『鳥取藩史』第六卷, 事變志.

以上 正月二十五日, 『鳥取藩史』第六卷, 事變志.

38) 「伯耆国米子の町人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船子共より外は領國のもの竹島江渡海仕候儀成不申候。尤他領の者渡海の儀猶以成不申候。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儀は先

여기서 송도(독도)까지의 거리는 호키국(伯耆國)에서 약 120리이지만, 송도에서 조선까지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가까운 80~90리 정도라는 것과 송도가 이나바(因幡)와 호키(伯耆)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일본의) 다른 지방에서 죽도나 송도로 도해하는 일은 없다는 것과 죽도도해는 어디까지나 오야·무라카와 양가 사람에게 의해 고용되어 건너간다고 대답하였다. 조선까지의 거리 인식을 보면 이들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어느 지방에서도 도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막부는 그 다음날인 1월 26일 송도의 존재에 대해, 당시 선원으로 2~3명의 이즈모국(出雲國) 사람과 8~9명의 오키국(隱岐國) 사람이 고용되어 도해하였기에 마츠에번(松江藩)에 대해 질의를 한다.

- ④ 1. 운슈(雲州), 인슈(隱州) 사람들은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 의죽도(磯竹)에 건너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은 모릅니다.
1. 하쿠슈(伯州) 요나고 초닌(町人)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 오야 규에몽(大屋九右衛門)이 운슈(雲州) 구모즈(雲津) 포구에서 바로 의죽도(磯竹)로 도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키국(隱岐國)까지 배로 가서 그곳에서 의죽도(磯竹)로 도해한다고 들었습니다.
 1. 죽도의 건은 운슈(雲州)에서는 의죽(磯竹)이라고 합니다.
 1. 운슈(雲州), 인슈(隱州)에서 의죽도로 바닷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위의 양국 사람은 요나고 사람과 동선하여 건너가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치베(市兵衛), 규에몽(九右衛門)의 뱃사공들이 매년 고용하여 건너간다고 합니다.
 1. 위와 같습니다만, 스스로 기죽도에 도해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年より竹島渡海の儀被遊御免罷越候付、外より參候儀は決て無御座候。右の船子とも竹島に獵罷越候節、出雲國隱岐國の獵師共雇候て米子の船子同船にて罷越候。人数は年々相違御座候。山雲國よりは不參儀も御座候。大かたは出雲國より二三人、隱岐國より八九人程も雇候て罷越由御座候。

以上

正月二十五日, 『鳥取藩史』第六卷, 事變志.

그러나 인슈(隱州)에 대해서는 최근 대관소(代官所)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1. 자세한 것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영지(國元)에 말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1696년) 1월 26일 마츠다이라 데와노카미(松平出羽守)³⁹⁾

이것은 막부에 대한 마츠에번 에도 루스이(留守居)의 답변이다. 죽도를 운슈(雲州) 즉 이즈모국(出雲國)에서는 ‘이소타케(磯竹)’=의죽이라 부르며, 운슈(雲州), 인슈(隱州)에서는 단독으로 건너가는 일은 없다. 의죽도(이소타케시마)로 가는 항로가 험하기 때문에 요나고의 양가 사람들과 함께 죽도로 가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양가의 뱃사람에 의해 고용되어 건너갈 뿐, 독자적으로 건너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즈모국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는 오키국(隱岐國)에 대해서는 막부직할지로 대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츠에번의 영지에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막부는 죽도와 송도 방면으로의 도해는 오직 돗토리번 요나고의 촌닌(町人)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 오야 구에몽(大屋九右衛門)가 주도적으로 도해하고 있다는 것과 두 섬이 이들 양가가 소속된 돗토리번의 부속이 아니라 어업을 위해 매년 건너갔을 뿐이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고 2일 후인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을 하달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이 답변을 통해 보면 오야·무라카와 양가와 돗토리번 그리고 마츠에번까지도 자신들의 판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답변을 통해 막부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

39) 「一 雲州, 隱州之者為自分働, 磯竹江致渡海候之儀, 不及承候, 乍然, 隱州近年之様子不存候, 一 伯州米子町人村川市兵衛, 大屋九右衛門雲州雲津浦より直ニ磯竹江者不致渡海, 隱岐國迄乗船, 彼地より磯竹江渡海仕候由承候, 一 竹鳴之儀雲州ニ而者、磯竹ト申候事, 一 雲州, 隱州より磯竹江海路難所ニ而候処, 右兩國之者, 米子之者ニ同船仕參候儀望不申候得共, 市兵衛九右衛門船子共年々雇申候付罷越候事, 一 右之通候故, 自分として磯竹江渡海之義決而無之候, 乍然, 隱州之儀者近年御代官所ニ成候故, 委細不存候事, 一 委細之儀御尋被遊候者, 國元江申遣吟味可仕候 已上 正月廿六日 松平出羽守」, 『磯竹島事略』元祿九年正月二十六日條.

도)를 포함한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최근 국내에서 많은 독도관련 사료들에 대한 번역작업이 제법 진척되고 있으며, 일본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을 가진 독도연구 논문도 비교적 양산되고 있는 점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연구의 양적 성장이 반드시 그 질적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 또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해명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제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가 서로 자국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잣대로 양국의 사료들을 함께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을 사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고증하고 이를 논증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쟁계」의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 가운데 몇 가지 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의 사료로써 『죽도기사』, 『죽도고』, 「원록각서」 등의 사료의 분석을 통해 안용복 사건의 진위의 일단을 해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검토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의 마무리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은 총검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오야 가문의 무력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안용복과 박어둔은 술에 의해 일본 배에 유인되어 술잔치를 벌인 결과 그대로 일본 배로 연행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안용복의 1차도일에서 에도로 가서 막부의 장군으로부터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한일 양국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안용복이 에도로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도막부의 장군으로

부터 서계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안용복의 에도행은 없었으나, 서계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서계는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능성으로서는 돛토리번주로부터 일종의 확인으로서 서신(서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서계는 쓰시마에서 빼앗겼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쓰시마에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할 것이다.

셋째,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그해에도 죽도(울릉도) 도해를 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검토한 일본 사료를 통해서는 양가의 죽도도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정황에 의해 돛토리번 측이 기록에서 삭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안용복의 진술에서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조우한 것은 사실이며, 이들을 쫓아 일본으로 건너간 것 또한 사실이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일본인들이 도해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무라카와 가문의 어부들이 1696년 봄 울릉도(죽도)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뒤를 쫓아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오키섬과 돛토리섬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넷째, 「울릉도쟁계」의 진행과정에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와 돛토리번 및 마츠에번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판도 인식을 보면, 명확히 자신들의 판도(=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즈모국이나 오키국에서는 독자적인 죽도도해를 하지 않았고, 양가가 속한 돛토리번에서조차 양가 이외에 죽도도해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울릉도·독도가 명백히 자신들의 지방에 부속되는 섬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 저쪽나라 즉 조선의 판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조회를 바탕으로 막부가 「죽도도해금지」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울릉도쟁계(=죽도일건)」와 관련된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 그 일 단면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한일 양국의 사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일본 측이 주장하는 ‘안용복은 호언장담하며,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하지만 충분히 과제를 해명하지 못하였다. 보다 안용복 공술의 객관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부분과 더불어, 일정부분 그의 진술에 당시 해군의 죄를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거짓과 호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거짓말쟁이’로 치부되어 안용복 사건의 전체를 부정하는 일본의 논리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화경, 「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민족문화논총』 4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pp.71-113.
-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죽도문제 보유 -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비판」, 『독도연구』 제3호, 2007, pp.37-80.
- 박병섭, 「안용복 사건과 돛토리번」, 『독도연구』 제6호, 2009, pp.281-341.
- 송휘영,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일본문화학보』 제49집, 2011, pp.263-286.
- _____,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 『일본근대연구』 제50집, 2015, pp.383-406.
- 이 훈, 「조선 후기 독도(獨島)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1996.
- 장순순,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역사논총』 37호, 2012, pp.189-232.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 송병기,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関係史』, 多賀出版, 2000.
- 内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2007.
-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 _____, 「近世日本の西北境界」『史林』90-1, 2007.

- _____, 「「竹島/独島=固有の領土論」の陥穽」『ラチオ』2, 講談社, 2006
- _____,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竹内猛, 『竹島=獨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報光社, 2010(송휘영·김수희 역 『독도=죽도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도서출판선인, 2013).
-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377, 2004.
- 竹島問題研究会編,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平成19年(2007) 3月
- 第2期竹島問題研究会編,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報告」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平成24年(2012) 3月
- 第3期竹島問題研究会編,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3月増刊號, ワック株式会社, 2014年 3月
- 第3期竹島問題研究会 編,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報告」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平成27年(2015) 8月
- 『肅宗實錄』
- 『隱州視聽合記』, 1667年
-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 1696年
- 松浦儀右衛門·越常右衛門, 『竹島紀事』, 1726年
- 岡嶋正義, 『竹島考』, 1837年
- 「近世資料」『鳥取県史』第7卷, 1976年
- 「竹島渡海禁止并渡海沿革」『鳥取藩史』第6卷, 1971年
-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검색일:2017.4.15.)
-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 (검색일:2017.4.15.)

<Abstract>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n ‘Ulleungdo Jaenggye’

Song, Hw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discussions on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Ulleungdo Jaenggye’=Takeshima-Ikken which raised by Ahn Yongbok's cross the sea to Japan(so forth kidnapping) in 17th century, and visualize some disputes about the historical materials. First, this paper describe the situation of kidnapping of Ahn Yongbok and Park Eodun in 1693, secondly discuss about the official letter which had been insisted by Ahn Yongbok received from Japan government. Thirdly, this paper review the recognition of Japanese who have lived in Matsue Bun and Dottori Bun on Dokdo around 1696 when Japan announced ‘Order of Prohibition Sail to Takeshima’ and the Japanese sailing to Ulleungdo.

Many researches from Korea described Ahn Yongbok and the group were kidnapped by force in threat with sword and gun but he was mentally cheated in drunken state by Japanese fishers in reality. Also there was no official letter to Ahn Yong-bok during his detention in Dottori Bun from Japan government and no trip to Edo Bafuku as well. Japanese historical materials confirm that Japanese sail to Ulleungdo sea area was limited until 1695 and the recognition of Japanese prior to ‘Order of Prohibition Sail to Takeshima’ revealed Ulleungdo and Dokdo area was out of Japan boundary and belonged to Choseon

boundary. The historical materials concerning ‘Ulleungdo Jaenggye’ still disputed between two countries in many points of view. I suggest more realistic and objective research activity about the ‘Ulleungdo Jaenggye’ on the basis of historical materials is necessary.

Key words: Ulleungdo Jaenggye, Ahn Yongbok's sail to Japan,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kidnap, recognition on Ulleungdo and Dokdo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결정됨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를 중심으로 —

이 태 우**

〈목 차〉

1. 머리말
2. 『죽도기사』(竹島紀事)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3. 『죽도고』(竹島考)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4. 『원록각서』(元祿覺書)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이 영유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A02929224). 이 논문은 2017년 2월 17일 영남대 독도연구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논평해주신 박지영·박경근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 제목과 내용 수정에 조언을 해주신 장순순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죽도고』에서도 역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울릉도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서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驕)」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세 울릉도·독도 관련 일본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의 특징을 보면, 조선에서 울릉도·독도까지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죽도고』를 편찬한 오카지마는 오히려 조선에서 울릉도·독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공간적 거리보다 인식적 거리가 훨씬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세 일본의 사료에 대한 검토, 특히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일본 측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근세 일본의 사료, 지리적 인식,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고』(竹島考), 『원록각서』(元祿覺書), 안용복

1. 머리말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는 『죽도기사』, 『죽도고』, 『원록각서』 등의 근세 일본의 사료를 소위 17세기 ‘고유영토 확립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안용복의 도일과 울릉도 쟁계(죽도일건)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이 세 사료들은 공통적으로 울릉도(당시의 죽도)와 독도(당시의 송도)의 영유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태도 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

히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물론 각각의 사료마다 울릉도·독도를 다루는 기본 입장이 같지는 않다. 죽도 기사, 『죽도고』가 일본 측 입장에서 안용복과 울릉도 쟁계, 울릉도·독도를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원록각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세 일본의 사료를 통해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17세기 한·일간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 쟁계의 타결과정을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 비판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10가지 포인트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인트 3〉에서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1618년 돗토리번의 오야와 무라가와 집안의 ‘죽도도해면허’ 취득을 들고 있다. 즉 죽도(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독도를 이용해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결국 2차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과 조·일 양국정부의 ‘울릉도 쟁계’ 타결과정에서 ‘죽도도해면허’가 취소되고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짐으로써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은 종결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죽도기사』, 『죽도고』, 『원록각서』 등 근세 일본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근세사료에 대한 검토, 특히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대한 검토는 일본 측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¹⁾

이하에서는 『죽도기사』, 『죽도고』, 『원록각서』에 나오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17세기 고유영토 확립설’의 문제점을 비판해보고자 한다.

2. 『죽도기사』(竹島紀事)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죽도기사』는 1726년 12월 쓰시마 번사(藩士)인 고시 쓰네에몬(越常右衛門)이 편찬한 책이다. ‘울릉도 쟁계(죽도일건)’ 사건 당시 쓰시마번 가로(家老)였던 오우라 리쿠에몬이 집필했다. 이 책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멀지 않은 1726년에 교섭 당사자인 쓰시마번에 의해 작성된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 정부 사이에서 외교교섭의 창구 역할을 했던 쓰시마번이 죽도(울릉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에도막부와 조선 조정 사이에서 왜곡된 정보로 의도적 기만을 기도함으로써 약 3년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죽도기사』는 이러한 전후 맥락 속에서 ‘울릉도 쟁계’의 전개과정을 읽고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죽도를 둘러싼 조·일 간의 외교교섭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죽도기사』에서는 죽도=다케시마(당시 울릉도)와 송

1) 울릉도·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17세기 ‘다케시마 고유영토설’ 비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 손승철,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통해 본 조일간의 해륙경계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8, 229-265쪽; 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일본 외무성의 죽도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3, 4 비판」, 『민족문화논총』 44, 2010.4, 35-70쪽; 송휘영,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결과와 스야마 쇼에몽」, 『일본문화학보』 49집, 2011.5, 264-286쪽; 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44, 35-70쪽; 송휘영,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 『일본근대학연구』 5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387-410쪽; 원연희, 「일본 사료해석을 통한 울릉도, 독도 연구 -기봉행소(崎奉行所), 대마번(對馬藩)에서의 안용복의 진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7호, 온지학회, 2013, 154-189쪽; 장순순, 「1696년 안용복의 도일과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12, 353-391쪽.

도=마츠시마(당시 우산도 또는 자산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한다.

『죽도기사』에는 ‘우산도’라는 명칭의 사용과 함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쓰시마번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두 번 보았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지승람』의 기록을 들어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개의 섬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우산도’ 관련 언급은 안용복이 쓰시마번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에 간 섬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간 섬에서 북동쪽에 큰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겨우 2번 정도 보였습니다. 그 섬을 아는 사람은 우산도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울릉도에서] 뱃길로 하룻길 정도 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²⁾

쓰시마도주가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橘眞重)에게 보낸 답신에서 안용복의 구술을 옮긴 것이다. 1693년 3월 27일 울릉도에 도착한 후 4월 18일 일본 어부에게 납치당하기까지 21일간 안용복은 ‘우산도’를 두 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거리로는 울릉도에서 ‘우산도’까지 약 하루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지리지(1451)’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만기요람(1808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돼 있다. 안용복의 진술은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죽도기사』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르친토와 부룬세미로도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인들은 명칭만 들었을 뿐 이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2) 『죽도기사』 1권, <원록 6년(1693년) 12월 5일자 답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역, 51쪽(이하 『죽도기사』로 표기함).

죽도를 조선에서는 부룬세미라고 부른다고 전해왔습니다.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기죽도라고 부릅니다. 울릉도와 부룬세미는 다른 섬입니까?)

부룬세미는 다른 섬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우루친토(울진도=울릉도)라고 부르는 섬이 있는데, 부룬세미는 우루친토보다 북동쪽으로 희미하게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우루친토의 크기는 한 바퀴 도는데 하루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원래 높은 산으로 전답과 큰 나무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⁴⁾

엔하와이(영해)와 죽도 사이는 50리 정도가 될 것이라고 기억합니다.⁵⁾

1693년 안용복 납치 당시 『죽도기사』 I 권에 나오는 죽도의 지리 관련 언급이다. 울릉도는 돛토리 이나바에서 160리(296km)⁶⁾ 떨어져 있으며, 울릉도=기죽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룬세미라고 불리는 섬과 동일 섬인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울릉도=우루친토라는 섬이고, 크기는 한 바퀴 도는데 하루 반 정도 걸리고, 높은 산과 전답, 큰 나무 등이 있는 걸로 들었다고 한다. 울릉도 북동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있는데 부룬세미(우산도)라고 하며, 또한 동해안의 영해와 죽도 사이의 거리는 약 50리(92km)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쟁계’(죽도일건) 당시 막부와 조선 조정과의 사이에서 교섭을 담당하던 쓰시마번은 울릉도가 오랫동안 폐도로 방치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울릉도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울릉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울릉도와 죽도가 1도2명설(一島二名說), 즉 한 개 섬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러서 생긴 문제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일본은 자신들에

3) 『죽도기사』, 19쪽.

4) 『죽도기사』, 20~21쪽.

5) 『죽도기사』, 35쪽.

6) 일본의 해상거리 단위 1리(漚)=1.852km로 적용.

게 유리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조선의 어민이 일본 죽도에 갔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늘 바닷가에 사는 자에게는 우리나라 안일지라도 먼 곳에는 가지 말도록 하라고 지엄하게 분부해 두었지만, 아랫사람들의 일인지라 법을 어기고 폐를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을 어긴 자들은 모두 처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답을 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울릉도를 언급하신다면 사자가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7)

“조선 변경지역의 사람이 국경을 넘어 일본 죽도로 건너갔다는 것을 자세히 듣고 놀랐습니다. 향후로는 지엄하게 가지 못하도록 규율 집행을 분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면 해결될 일입니다. 울릉도를 적어 넣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8)

나아가 쓰시마측은 설혹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폐도로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현재 이 섬을 이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울릉도를 일본에서 죽도로 부르게 된 것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지금까지 버려두어,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으로 울릉도라고 하더라도 조선국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토변동은 일본과 조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타국의 땅이었을지라도 오랫동안 이쪽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이쪽의 땅입니다.”9) 주인이 잠시 비워놓은 집에 타인이 들어가서 살면 그 집은 타인의 집이 된다는 논리다.

이어서 두 번째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여지승람』의 기록을 들어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개의 섬인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7) 『죽도기사』, 65쪽.

8) 『죽도기사』, 68쪽.

9) 『죽도기사』, 50~51쪽.

『여지승람』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도의 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설로는 본래 한 섬이라고 하므로 다른 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봉유설』 등에는 시대에 따라 이름이 바뀌므로 필경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인 것처럼 보입니다. 『朝鮮繪圖』에는 두 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본떠서 보내드립니다.¹⁰⁾

쓰시마도주는 “『여지승람』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도의 섬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고, 『朝鮮繪圖』에도 두 섬으로 그려져 있어서 바로 본떠서 보낸다고 하였다.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도의 섬이라고 보기도 하고 본래부터 하나의 섬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는 별개의 섬이기 때문에 ‘죽도도해금지령’은 죽도(울릉도)에만 해당될 뿐, 독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죽도문제연구회’나 일부 일본학자들이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도와 자도, 모도와 속도라는 관계에서 보면 일본 학자들의 왜곡된 주장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 한국의 고문헌과 고지도,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그리고 서양의 자료들에도 모두 울릉도와 독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나 있다. 동서양의 모든 학자, 일반인, 해군 장교들 모두 그렇게 인식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나 소속이 밝혀지면, 독도는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요약하면 울릉도가 한국 영토이므로 독도 또한 한국 영토라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논리인 것이다.¹¹⁾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내색하지는 않고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조선의 영유였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17세기에 일본인들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

10) 『죽도기사』, 51쪽.

11)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28쪽.

다. 이것은 1667년 마쓰에번(松江藩)의 번사인 사이토 도요노부가 지은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 오키도의 약도가 있는데 울릉도 및 독도가 부속도서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에서 자명하다. 1667년 당시는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의 울릉도 도해가 왕성한 시기였는데도 빠져 있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에 와서 조업을 한 행위는 자신들의 섬으로 알고 했던 착오에 의한 행위가 아니다. 조선이 왜구들의 침탈을 우려하여 섬에 사는 백성들을 육지로 쇠환한 틈을 타서 몰래 울릉도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갔던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당시 조·일 양국 어민들이 울릉도 해역에서 뒤얽혀 조업행위를 함으로써 일본 측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특히 안용복의 도일 활동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일본이 스스로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던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울릉도 근변 독도’, ‘울릉도 관내 독도’,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어떤 번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¹²⁾

3. 『죽도고』(竹島考)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죽도고』는 1828년 돗토리번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편찬한 책으로 울릉도(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생각을 당시의 문서와 기록, 구술 등을 토대로 정리한 책이다. 안용복의 도일 사건 이후 약 1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쓴 책이기에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기에 왜곡되고 편향된 견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언젠가 빼앗긴 다케시마를 되찾아 와야 한다는 오카지마의 생각은 이 책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12) 김병렬, 「고유영토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 2014. 45-46쪽.

다케시마는 풍요의 땅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폐도(廢島)였다. 에도 중기에 호키국에서 그 섬을 열고 배로 왕래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에게 속했던 땅을 다른 나라의 간악한 어부들이 멋대로 빼앗았으니 뜻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 일을 애석해하지 않으랴. 이로서 자신의 고루함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도 개의치 않고 망녕되어 그 일의 전부를 기록하여 훗날 보는 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중략) 다시 커질 때를 얻어 재차 다케시마로 배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책에서 한 구절이라도 취할 만 한 곳이 있어 국가를 위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나의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¹³⁾

이러한 저자의 기본 입장을 전제로『죽도고』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오카지마는 서문에 이어 「다케시마 총설」에서 다케시마가 오키국에서 약 백 여리(약 200km) 떨어진 조선국 동해안에 있는 고도라고 하면서 울릉도 도해허가와 취소과정을 이야기한다. “게이초와 겐나 때 오키의 요나고 성에는 나카무라 호키노카미님이 계셨다. 그 때 주민 중에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라는 선장이 있었다. 그전에 다케시마를 지나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서 산물이 매우 많은 것을 보고 매년 왕래하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 가까이 있는 절도 이므로 그의 멋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잠시 미루어 두고 시간을 보냈는데, 겐나(元和) 중에 이유가 있어 막부의 면허를 받아 연년 도해하여 어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의 영지처럼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미 80여 년이 되었다.”¹⁴⁾ 그러던 중 조선 어선들이 다케시마에 도해하여 어로를 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 안용복 납치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막부로부터 우리 번주에게 앞으로는 호키국에서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것을 금지시키라는 내용의 명령을 하였으므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일은 단절되어 있었다. (...) 혹시 다케시마에 다

13) 『죽도고』 상·하, 정영미 역,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0. 11~13쪽(이하 『죽도고』로 표기함).

14) 『죽도고』, 19~21쪽.

시 도해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구구하였으나 끝내 아무런 소식도 없이 끝났다고 한다.”¹⁵⁾

오카지마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동해안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케시마는 풍요한 땅으로 그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배가 왕래하는 바다에 있는 고도이므로 그 나라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살지 않았고, 또, 마음 편하게 도해할 수도 없었기에 폐도라고만 알려져 있었다.”¹⁶⁾

산물이 풍부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죽도도해면허를 허가 받아 80여 년간 어로활동을 하였지만 결국 안용복 사건으로 인한 조선과의 충돌로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오카지마의 술회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미 이 술회 속에서 ① 다케시마가 조선의 동해안에 있다는 점, ② 조선정부의 쇄환정책으로 섬을 비워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섬이라는 점, ③ 따라서 다케시마가 조선의 영유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죽도고』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도 조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편찬된 아베씨의 「이나바지」에 “울릉도 이를 다케시마라 하고 자산도 이를 마쓰시마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삼국통람〉의 「여지로정지도」에 조선국 강원도 해상에 섬 하나가 있고, 또 오키와 조선국간의 바다 한 가운데에 다케시마가 있는데 옆에 “조선국 것이다. 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또 조선국도 보인다”는 주(註)가 있고 그 섬의 동쪽에 작은 섬 하나가 그려져 있다. 아마 마쓰시마일 것이다.”¹⁷⁾라고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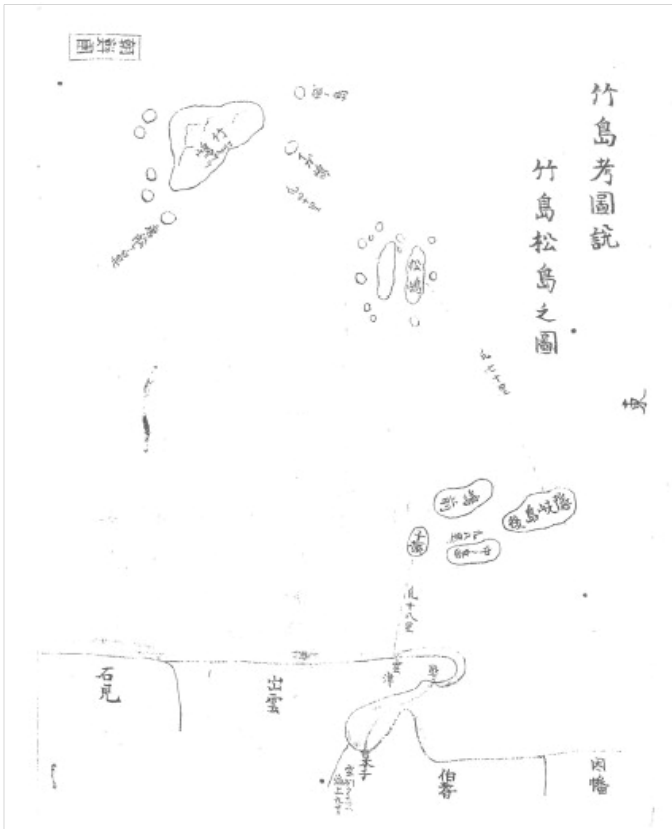
15) 『죽도고』, 23~25쪽.

16) 『죽도고』, 47쪽.

17) 『죽도고』, 81~83쪽.

오카지마는 『죽도고』에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자산도)가 조선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죽도고』 상권의 「다케시마 총설」에 나오는 「竹島考圖說 竹島松島之圖」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송도(독도)가 오키섬에서는 70리, 죽도(울릉도)에서는 40리 떨어진 것으로, 지리적으로도 조선에 더 가까운 것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림 1〉 「죽도고도설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지도」



18) 『죽도고』, 26쪽 참조.

오카지마는 『죽도고』에서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다케시마도 조선에 빼앗겼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 사람의 성품이 우유부단하여 위(威)로서 다스릴 때에는 심히 두려워하지만, 베푸는 덕과 은혜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적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도 대대로 배반을 하여 매번 정벌을 당하였다. 호타이코(豊太閤)의 조선의 역 이후에도 청나라로부터 정벌을 당하여 두 번이나 도성을 떠나 강화라는 섬에 도망가서 숨었고, 우리나라의 간분 때, 매년 조공을 바치기로 청나라 조정과 약속하여 지금까지도 신하로서 복종하고 있다. 그 이후 청나라를 등에 업고 거만해지고 동해가 평화로운 것을 빌미로, 이전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폐도(發島)였던 섬을 열고 다년간 도해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을 시기하여, 겐로쿠(元祿)때 이런저런 간계를 부려 우리 배를 막았고 결국에는 다케시마를 빼앗아 오랫동안 자기 속지로 만들었다.”¹⁹⁾

“그 나라의 거만이 하루아침에 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은혜를 잊고 덕을 배신함이 심하니 미워할만하지 아니한가?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국난이 일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되지만 시대의 운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나라에 혹시 내란이라도 일어나서 삼한시대와 같이 분열되던가, 혹 적국이 일어나 국세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예전과 같이 우리나라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²⁰⁾ “혹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 원래 다케시마는 호키국의 속도(屬島)였으므로 재빨리 이를 다시 찾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²¹⁾ 오카지마가 조선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선이 내란이나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케시마를 되찾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19) 『죽도고』, 97~99쪽.

20) 『죽도고』, 101쪽.

21) 『죽도고』, 103쪽.

『죽도고』에는 다케시마의 도해과정과 지리, 산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년 2, 3월 경 배를 준비하고 요나고에서 오키국으로 가서, 4월 상순 경 까지 순풍이 불고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돛을 펴고 먼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배를 대고 어로에 착수하고, 거기에서 다케시마로 가는데, 그간 할 일을 하고 가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한다. 또, 그 섬에서 주로 나는 것은 전복, 강치의 두 종이다. 강치는 미치라고도 하는데 해변가 암석으로 올라오는 것을 노려 총을 쏘아 잡고 껍질을 벗겨 기름을 낸다고 한다.²²⁾

다케시마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와 조선국 바다 가운데에 외떨어져 있는 섬이다. 주위가 약 10리이고 산이 높고 험하며 계곡이 깊고 나무로 뾰뾰이 뒤덮여 있으며 대나무가 울창한 곳으로서 세 갈래의 큰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곳의 흙은 비옥하고 산물이 많으며, 우리나라에선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는데 조선국에서는 매우 가깝다. 날씨가 좋으면 늘 그 조선국 땅이 보인다고 한다. 또, 『삼국통람』에는 다케시마에서 오키국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미답지 못한 말이다. 여기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 편에서 오키국까지는 40리 바닷길이 채 못 되는데 이따금 하늘이 개어 맑은 날이 아니면 그 섬을 보기 힘들다. 그러니 아득히 백여 리나 떨어진 먼 바다에 있는 작은 오키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믿기 힘든 말이다. 또 다케시마는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였으나 에도 중기부터 호키국에서 도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중략) 또, 마쓰시마는 오키국과 다케시마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다. 작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섬이 이어져 있는 섬이다. 이 해협 길이는 2정이며 폭은 50간 정도 된다고 한다. 어떤 지도에서 본 바로는 섬의 넓이는 길이가 80간, 폭이 20간 정도가 되는 듯 했다. 두 섬이 모두 크기가 같은 것 같다.²³⁾

22) 『죽도고』, 111쪽.

23) 『죽도고』, 125~129쪽.

산이 높고 험하며 대나무가 울창한 다케시마는 조선국에 가깝고, 마쓰시마는 오키국과 다케시마 사이에 있는데 작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섬이 이어져 있으며, 두 섬이 모두 크기가 같다고 묘사함으로써 송도=독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본 요나고에서 출발하여 다케시마까지 가는 항해과정과 거리관계도 묘사하고 있는데 “다케시마 까지의 거리는 호키국 요나고에서 이즈모국 구모쓰까지 해상 9리 (육로 7리 반 5정), 구모쓰에서 오키국 지부리까지 18리, 지부리에서 도고의 후쿠우라까지 8리인데, 여기에는 구모쓰 번의 파견소가 있어 늘 지나다니는 배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다시 후쿠우라에서 순풍이 불기를 기다리다가 돛을 펴고 북서쪽을 향해 70여리를 가면 마쓰시마(독도)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또 40리를 가면 다케시마(울릉도)에 착안한다. 호키국에서 다케시마까지는 약 150~160리의 바닷길에 불과하다.²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70리, 독도에서 울릉도까지 40리, 오키섬에서 울릉도까지는 110리로 오늘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거리상의 오차는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동해안에 더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카지마가 『죽도고』에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다케시마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며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다를 바 없다.

24) 『죽도고』, 133~135쪽.

4. 「원록각서(元祿覺書)」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

「원록각서(元祿覺書)」의 원 제목은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²⁵⁾이다. ‘원록 9년 조선배 도착에 따른 최초 보고’라는 뜻으로 1696년 안용복의 2차도일 때 일본 측에서 기록한 문서로 총 8매로 구성되어 있다. 1696년 5월 18일 안용복 일행이 오키노쿠니 도고에 도착한 후, 나카세 단우에몬과 야마모토 세이우에몬이 세키슈 어용소(御用所)의 다이칸(代官) 고토 가쿠우에몬의 지시를 받고 5월23일 조사·작성하여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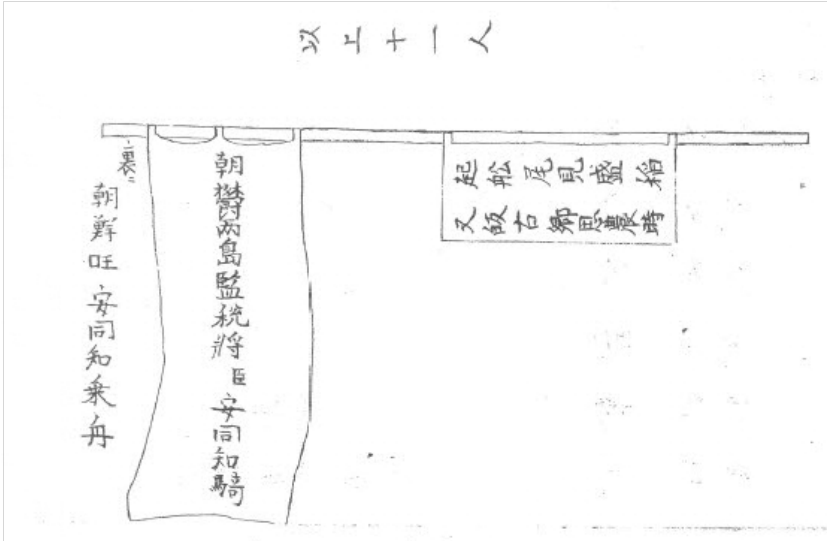
이 문서에는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과 영유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진술되어 있다. 물론 안용복과 그 일행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통해 나온 기록으로, 도해 후 최초 진술을 기록한 것이다. 때문에 저자의 주관적 견해를 포함하고 있는 『죽도기사』나 『죽도고』와 달리 비교적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의 첫 번째 기록에 보면 “무명으로 된 깃발 2개 뱃머리에 다는 것”²⁶⁾이라고 나온다.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깃발로서 그 중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驕)」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는 깃발 그림과 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이후에 나온 안용복 2차도일 관련 일본 사료에는 그림과 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⁷⁾

25)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독도연구』 창간호,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 역, 2005. 233~300쪽(이하 「원록각서」로 표기함).

26) 「원록각서」, 290쪽.

〈그림 2〉 안용복이 타고간 배의 깃발(『죽도고』 하 254쪽 참조)



또한 안용복 일행은 ‘조선8도’의 그림을 소지하고 있었다. “안용복, 뇌 현, 김가과 3인에게 감시인이 입회하였을 때 조선8도의 지도 여덟 장으로 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즉 8도를 각각 베껴 그리고, 조선말로 적었습니다.”²⁸⁾

당시 지도는 이를 이용한 외국의 침략을 우려하여 국가기밀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용복 일행과 같은 일개 어민이 소지할 수 있는 물건

27) 안용복 2차도일시 깃발 그림 수록 일본고문서 자료(연도순)

자료명	발간연도	저자명
진사록	1731년 이후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 1784~1858)
이나바지(因幡志)	1795	아베 교안(安部恭庵, 1734~1808)
죽도고	1828	오카지마 마사요시
증보진사록	1830년 이후	오카지마 마사요시
인부연표	1842	오카지마 마사요시
인부역년대잡집	1854~1858년 사이	오카지마 마사요시

28) 「월록각서」, 292쪽.

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팔도가 각각 1개도씩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를 안용복 일행이 내놓았다는 것은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선팔도’의 그림을 휴대하고 도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⁹⁾

특히 이 그림지도와 문서에 기록된 울릉도·독도의 지리에 대한 설명은 안용복과 그 일행의 영토의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안용복이 말하기를 대나무 섬(竹嶋)을 다케시마라고 말하는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곧 팔도지도(八道之圖)에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³⁰⁾

마쓰시마(松嶋)는 우도(右道)안에 자산(子山, 소우산)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마쓰시마라고 합니다. 이것도 팔도지도(八道之圖)에 적혀 있습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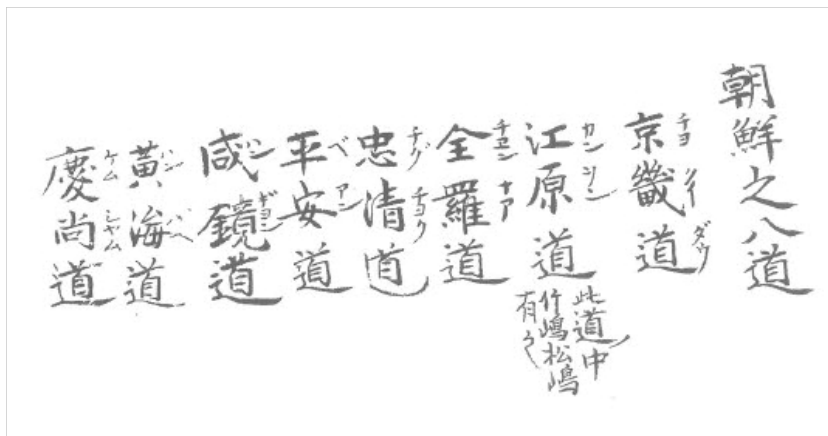
안용복의 진술에 따르면 죽도는 바로 조선의 섬인 울릉도이며 그것은 자신이 휴대한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죽도(울릉도)는 조선 영토라는 것이다. 또한 송도(독도) 역시 같은 강원도 안에 있는 자산(子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섬으로 ‘조선지팔도’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표기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안용복이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9) 김병렬·나이토 세이쥬,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006. 42쪽.

30) 「월록각서」, 292~293쪽.

31) 「월록각서」, 293쪽.

〈그림 3〉 〈원록각서〉 ‘조선지팔도’ 그림에 “강원도, 이 도 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22년 9월 25일 조에도 안용복이 2차 도일 후 심문을 받으면서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힐문했다는 기록을 볼 때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한 안용복의 인식은 확고한 것이었다. 또한 이 「원록각서」에서 안용복 일행이 “소송을 하려는 한 두루마리”의 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했고,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울릉도와 마쓰시마라는 자산도가 그려진 지도를 지참하였다는 것은 그가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도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³²⁾

또한 안용복은 자신이 독도를 거쳐 항해 했으며, 울릉도와 독도, 오키까지의 거리관계를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김화경, 「<겐로쿠(元祿) 9병자(丙子)년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 해설, 『독도 연구』 창간호, 2005. 305쪽.

5월 15일 다케시마를 출선하여 같은 날 마쓰시마에 도착하였고, 동 16일 마쓰시마를 나서 18일 아침에 오키도 내의 니시무라(西村)의 바닷가에 도착, 동 20일에 오히사무라(大久村)에 입항하였다.³³⁾

당시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항해하는데 이들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하루 정도가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용복은 정확하게 울릉도를 출발한지 하루 만에 독도에 도착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독도에서 일본의 오키도까지 사흘이 걸렸다고 진술함으로써 안용복이 인지하고 있었던 자산도 또는 송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안용복은 죽도와 조선과의 거리가 삼십리이며, 죽도와 송도간의 거리는 오십리라고 하였다. 이 진술을 통해서도 일본 <다케시마연구회>나 <외부성>이 주장하는 자산도(우산도)가 울릉도 옆의 죽도(죽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케시마와 조선 사이는 30리이고,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는 50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³⁴⁾

비록 안용복이 진술한 거리가 오늘날의 거리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용복이 독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 진술은 가와카미 겐조나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 즉 우산도는 울릉도이거나 울릉도 옆의 죽도라고 하는 주장을 일거에 반박해주고 있다.³⁵⁾

33) 「일록각서」, 293쪽.

34) 「일록각서」, 294쪽.

35) 김병렬·나이토 세이쥬,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006. 42-44쪽.

5. 맺음말

이상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기사』의 곳곳에서 이미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의 역사지리서에 기술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내색하지는 않고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이미 17세기 이전부터 조선의 영유였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도고』에서도 역시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이 80년간 다케시마에서 불법적인 어로활동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구의 노략질로 고통 받던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둔 것을 사람이 살지 않는 폐도라고 하며 잠시 동안 그곳에서 어로활동 한 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섬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중 〈포인트 3〉의 ‘17세기 고유영토확립설’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원록각서(元祿覺書)』에서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에 걸린 「조울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라고 쓰여진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일본 측에 선포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자산도) 양도의 감세장을 칭하며 죽도(울릉도)의 조선영유를 당당히 확인하기 위해 도일한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용복이 소지한 ‘조선지팔도’와 울릉도·독도의 지리에 대한 설명은 안용복과 그 일행의 영토의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죽도는

바로 조선의 섬인 울릉도이며 그것은 자신이 휴대한 ‘조선지팔도’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죽도(울릉도)는 조선 영토라는 것이다. 또한 송도(독도) 역시 같은 강원도 안에 있는 자산(子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섬으로 ‘조선지팔도’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표기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이것은 안용복이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근세 일본의 사료인 『죽도기사』, 『죽도고』, 『원록각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세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각 지역간 거리관계

서명(자료명)	연도	조선→울릉도	울릉도(죽도)→독도(송도)	오카→울릉도	오카→독도	비고
원록각서	1696	30리 (55.6km)	50리 (92.6km)			안용복 진술
죽도기사	1726	50리 (92.6km)	벧길 하루			안용복 진술
죽도고	1828	40리 (74km)	40리 (74km)	110리 (203.7km)	70리 (129.6km)	오카지마
현재거리	2017	130.3km (죽변기준)	87.4km	244.9km	157.5km	

※ 일본의 해상거리 단위 1리(湊)=1,852km로 적용하였음.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근세 울릉도·독도 관련 일본사료에 나타난 지리적 인식의 특징을 보면, 조선에서 울릉도·독도까지 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카지마가 편찬한 『죽도고』에는 오히려 조선에서 울릉도·독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공간적 거리보다 인식적 거리가 훨씬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이 일본어부들에게 납치되면서(1차도일) 발생한 ‘울릉도쟁계’는 국가 간의 외교분쟁으로 확대되어 상호간의 논쟁으로 이어졌지만, 1696년 1월 일본 막부에 의해 죽도가 한국의 울릉도임을 인정하고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즉 1618년 돗토리번의 오야와 무라카와 집안에게 내린 ‘죽도도해면허’는 취소되고 ‘죽도도해금지’가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일 외교창구 역할을 했던 쓰시마번의 고의적 지체로 ‘죽도도해금지령’이 조선에 전달되기 전에 안용복의 2차도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안용복은 다시 추방되고 ‘죽도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 먼 섬이므로 거듭해서 이쪽(일본)의 어민이 도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죽도도해금지령’을 재삼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안용복 도일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간에 벌어진 17세기말 영토경계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³⁶⁾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포인트 3>의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은 다시 ‘10의 포인트’ 중 <포인트 4>에서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도 역시 『원록각서』와 『죽도기사』, 『죽도고』 등 근세 일본의 사료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짓임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1876년 「태정관지령문」에서도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기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36) 손승철,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통해 본 조일간의 해륙경계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8. 258~260쪽.

【참고문헌】

- 『죽도고』, 정영미 역,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0.
- 『죽도기사 I·II』,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탈초 및 번역, 지성인, 2013.
- 『원록각서』, 권오엽·오니시 토시테루 역주, 제이앤씨, 2009.
-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독도연구』 창간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역, 2005. pp. 289-310.
- 김병렬·나이토 세이쥬,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006.
- 김병렬, 「고유영토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죽도 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 2014.
- 김화경, 「<겐로쿠(元祿) 9병자(丙子)년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 해설」, 『독도연구』 창간호, 2005.
- 백인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손승철,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통해 본 조일간의 해륙경계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8.
- 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일본 외무성의 죽도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3, 4 비판」, 『민족문화논총』 44, 2010.4.
- _____,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 『일본문화학보』 49집, 2011.5.
- _____,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44.
- _____,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 『일본근대학연구』 5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 원연희, 「일본 사료해석을 통한 울릉도, 독도 연구 -기봉행소(崎奉行所), 대마번(對馬藩)에서의 안용복의 진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7호, 온지학회, 2013.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 장순순, 「1696년 안용복의 도일과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12.

<Abstract>

Geographical recogni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modern Japanese historical materials

**- Focusing on 『Jukdogisa(竹嶋記事)』, 『Jukdogo(竹島考)』,
『Wonrokgakseo(元祿覺書)』**

Taewoo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ffirm that Takeshima(Ulleungdo) and Matsushima(Dokdo, Usando, Jasando), as which Japan refers to, belong to Korea, judging from their geographical recognition in modern Japanese historical materials. Japan had already recognized that Chosun had been possessing Ulleungdo and Dokdo before the 17th century, as Japan acknowledged the fact that Ulleungdo and Usando were already described in the historio-geographical materials of Chosun, in various parts of 『Jukdogisa(竹嶋記事)』 which is the basis of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since 17th century.

It is unreasonable to claim Dokdo, only based on one fact that Ojiya·Murakawa families had been illegally engaged in fishing in Takeshima for 80 years in 17th century. Japan is strongly claiming Dokdo back, misleading the fact that Chosun evacuated the inhabitants from Ulleungdo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Japanese pirates, left the island uninhabited. Japan argues that Dokdo was uninhabited and unowned, while Japanese engaged in fishing there. This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the point 3(“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since 17th century) in the “10 Points for Understanding the Takeshima Proble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Wonrokgakseo(元祿覺書)』, the phrase 「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 written on the flag of the ship, on board of which Yongbok An's party was has an important meaning. It contains Yong-bok An's strong will to declare to the Japanese authority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 to Chosun, because Yong-bok Ahn called himself an official who was responsible for collecting tax in Chosun's Ulleungdo and Usando. It can be said, thereafter, that Yong-bok An's visit to Japan is an manifest expression of the fact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 to Chosu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recogni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Japanese modern literature, It is obvious that the Japanese perceived the distance from Chosun to Ulleungdo and Dokdo as much closer than they actually were. This can be confirmed by Yong-bok An's statement in 『Jukdogisa(竹鳴記事)』, 『Wonrokgakseo(元祿覺書)』. Obviously, Okajima who compiled 『Jukdogo(竹島考)』 recognized that the distance from Chosun to Ulleungdo and Dokdo is closer than from Japan. The fact that the Japanese already knew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ed to Chosun, led them to think cognitively that the distance between Chosun and Ulleungdo · Dokdo was much closer than in reality.

A careful review of Japanese modern historical materials, especially ‘Japanese geographical awareness of Ulleungdo · Dokdo’,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provides clues to convincingly refute Japan's claim Dokdo on the ground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Takeshima since 17th century.

Key words: Ulleungdo, Dokdo, Geographical recognition, Japan, historical materials, 『Jukdogisa(竹鳴記事)』, 『Jukdogo(竹島考)』, 『Wonrokgakseo(元祿覺書)』, Yong-bok Ahn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결정됨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최 철 영**

〈목 차〉

1. 울릉도쟁계와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
2.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의 국제법 절차법상 증거로서의 의미
3.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권원
4. 국제법상 영토주권판단 법리에 주는 의미

〈국문초록〉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 이 논문은 2016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A02929224).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의 집성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원록각서, 죽도기사, 죽도고, 영토획득, 증거능력,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권원

1. 울릉도쟁계와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

1648년 웨스트파리아 평화조약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페리다임으로서 근대 국제법은 한 국가의 영역을 당해 국가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되는 지리적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¹⁾ 국제법은 한 국가의 배타적인 지배권이 행사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인정되는 국가영역에 대하여 당해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하고 타국의 침략을²⁾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이 인정되는 지리적 영역을 획득하는 현대 국제법에 의한 권원으로는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선점, 시효, 침부, 병합, 할양, 정복 등이 인정되고 있다.³⁾ 실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많은 영토분쟁

1) Lea Brilmayer, Natalie Klein, "Land and Sea: Two Sovereign Regimes in Search of a Common Denominator,"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Spring 2001, vol. 33, p. 703.

2) 침략행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일체성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UN 헌장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2016, 963쪽.

3) 이러한 분류는 D.P. O'Connell, *International Law*, 1965, pp. 465-511 참조. 이외에 영역분쟁에 대한 국제중재법정의 결정(adjudication)을 별도의 영역획득 권원으로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영유권을 확인하는 2차적 법률효과발생의 근거일 뿐이며 독립적이며 원초적인 별도의 권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ernational Law*, 1997, p.151. Malcolm N. Shaw는 침부, 할양, 정복을 각각 별개의 권원으로 보고, 선점과 시효에 의한 권원의 획득은 실효적 지배의 행사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고 한다.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1997, p.342. 하지만 영역의 취득방법 중 정복에 의한 영역취

들은 국가영역 획득의 근거로서 소위 고유영토론에 기초한 역사적 권원 또는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⁴⁾ 예컨대 일본은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한국 영토로서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근거로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우고 있다.⁵⁾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간한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또한 기왕의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역사적 문서가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이다. 이들 역사적 문서들은 모두 1696년 안용복의 2차도일과 관련된 울릉도쟁계의 문제를⁷⁾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유럽에서 웨스트파리아 평화조약에 의한 새로운 국제법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작성된 역사 문서라는 공통점이 있다.⁸⁾

우리나라의 울릉도 및 독도와 관련된 이들 일본의 역사 문서 중 작성시기가 가장 앞선 문서는 2005년 2월에⁹⁾ 무라카미 스케쿠로 사저에서 발견

독은 국제연합헌장 하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Sookyoon Huh, Title to Territory in the Post-Colonial Era: Original Title and Terra Nullius in the ICJ Judgement on Cases concerning Ligitan/Sipadan(2002) and Pedra Branca(2008),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Aug. 2015, p. 710.
- 5)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す。”
- 6) 송휘영, 『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학적 연원』, 2013, 7면. 일본은 이에 추가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서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로 남아있으며 한국은 1950년 이후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불법점거론’을 주장하고 있다.
- 7) 울릉도쟁계의 경과에 관하여는 송휘영, 울릉도쟁계(竹嶋一件)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陶山庄 右御門), *일본문화학보* 제49집, 2010, 참조.
- 8) 물론 당시 아시아에서 웨스트파리아 조약체제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국제법에서의 영토획득법리(law of acquisition of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가 그대로 아시아에 적용될 수는 없다.
- 9) 권오엽,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와 安龍福, *일본어문학* 39권, 2008, 412쪽; 김화경은 “2005년 3월에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 오키군 아마정에 거주하는 무라카미 죠쿠로의 집에서 발견되어, 5월에 공표”되었다고 한다. 김화경,

되어 2005년 5월 17일에 공개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원록각서)이다. 이 문서는 1696년 돛토리번(藩)으로 도해하다 표착한 안용복 일행이 진술한 것과 일행을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¹⁰⁾

『원록각서』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숙종 때에 안용복이 현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에 대하여 조선(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1696년(숙종 22년)이었다. 당시에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요나고정의 오야가(家)와 무라카와가(家)에게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바 있으나, 조선 정부에는 아직 통고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원록각서는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강원도에 속하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독도)가 같은 강원도에 딸린 자산도라고 부르는 섬으로 안용복이 이것을 증명하는 지도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는 사실을 지도의 내용을 글로 분명하게 풀어서 기재하여 확인하고 있다.

『죽도기사』는 1693년에 발생한 ‘울릉도 쟁계’(일본 명칭은 ‘죽도일건’)를 계기로 조선과 쓰시마 번 사이에 일어난 울릉도를 둘러싼 외교적 영유권 교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책으로, 1693년 5월부터 1699년 10월까지를 담고 있다.¹¹⁾ 에도 막부가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 경위와 조선으로의 전달을 둘러싼 문제,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한 쓰시마 번의 대처, 죽도도

<겐로쿠 9(병자)년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 해설, 독도연구 창간호, 301쪽 이하 참조.

10) 「산인츄오신보」의 보도, “이 고문서의 보관자인 무라카미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 조례안을 가결하기 전, ‘무엇인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와 관련을 가지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기 집 창고를 뒤지다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는 문자가 적힌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고문서에 정통한 마쓰에시 사이카정에 거주하는 히노 도시하루를 찾아가서 해독을 하였는데, 이것은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공표를 해도 좋을 것인가’하고, 놀랄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한일 두 나라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화경, 위의 글, 참조.

1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죽도기사, 2013, 머리말.

해금지령을 구두로 전한 쓰시마 번의 의도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¹²⁾ 죽도기사를 기초로 당시 조선과 일본간에 오고간 외교문서를 현대 국제법상 교환공문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일본이 조선의 독도 주권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있다.¹³⁾

『죽도고』는 돗토리번의 녹봉을 받는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1828년(일본 연호 문정 11년)에 편찬한 책이다. 상, 하 두 권으로 되어있으며 주로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돗토리외 그 주변지역에서 전해 내려져 오는 기록 및 일본과 조선, 중국 등의 문헌을 들어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상권은 죽도고의 편찬 취지와 과정에 대해 기록한 「서문」, 오야와 무라카와의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경과를 개괄한 「총설」, 다케시마(울릉도)가 그려진 지도를 소개하고 분석한 「도설」,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통설을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후문」, 1724년(일본연호 9년) 막부가 오야와 무라카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의 경위에 관해 조사하였을 때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도해 선단 규모, 울릉도 산물 등을 기술한 「도해 준비 및

12) 위의 책.

13) “1693년 및 1696년 안용복 등의 2차에 걸친 도일 활동 및 대마도주의 울릉도에 대한 야심으로 촉발된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당시 조·일간 확립된 외교관행에 따라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가 1694년 8월(상기 II.1)과 1697년 2월 각각 교환한 왕복문서는 현대 국제법상 ‘교환공문’(Exchange of Letters)의 법적 성격·지위를 가지며, 조선의 1698년 4월 회답공문 및 막부의 1699년 1월 최종 확인공문은 기존 합의를 확인하기 것이다. 즉 1694년 8월 조선의 공문과 1697년 2월 막부가 대마도주를 통해 동래부에 전달한 서한은 양국 간 합의를 기초로 체결된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이며, ‘약식조약’(treaty concluded in simplified form)을 구성한다.”,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 확립·해상국경 묵시 합의,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3號, 2013, 141쪽. 하지만 죽도기사는 그러한 교환공문의 존재와 내용을 기술한 것이지 교환공문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초 조약법상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14) 정영미, 竹嶋考 上·下,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2010.

물산」 및 지리, 해로 등을 기술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지리의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오야와 무라카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대별로 정리해 놓은 것(9편)과 일본으로 떠내려간 울릉도 향나무를 화제로 삼은 이야기(2편)로 구성되어 있다.

원록각서, 죽도기사와 죽도고 등의 일본 측 사료는 공통적으로 안용복의 2차 도해와 관련된 기록을 풍부히 담고 있으나, 그 사료의 작성 시기와 주체, 그리고 형식이 다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역사 문헌에 대한 깊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울릉도쟁계와 관련된 이들 일본 측 사료를 증거법으로서 국제절차법적 측면과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국제실체법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제절차법적 측면에서는 이들 사료의 작성시기와 주체 그리고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국제실체법적 측면에서는 이들 사료의 내용을 기초로 국제법상 영토경계획정의 권원과 영토주권판단의 법리라는 관점에서 이들 역사문서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독도영토주권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의 국제법 절차법상 증거로서의 의미

1) 증거법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개념

영토해양경계 관련 분쟁에서 제출되는 공적인 문서는 당사국의 권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evidence)로서의 법적 지위와 가치에 그 중요한 기능이 있다. 분쟁당사국이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공적인 문서의 가장 두드러진 기능은 당해 문서를 편찬하여 발행한 국가를 구속하는 것

이다.¹⁵⁾

법률용어로서 증거는 “법원 혹은 배심원이 자신의 청구를 신뢰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소송당사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송상 법률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입증력 있는 증언, 기록, 서류, 증거서류, 유형물”을 말한다.¹⁶⁾ 사법절차에서 입증책임, 사법심사수리가능성, 증거로서 관련성, 그리고 일정한 증거의 증거력 내지는 증명력 등을 규율하는 규칙과 원칙들의 총체로서 증거법에 따르면 증거능력이란 어떤 자료가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명하는 법률상의 자격이 있음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부(admissibility of evidence)에 관한 문제이며,¹⁷⁾ 영유권관련 쟁송사건에서 법적 입증자료에는 국내입법을 통한 국경선에 관한 기술이나 언급, 정부 또는 고위관리의 일방선언, 정책선언이나 입장선명·성명, 문서보관소의 자료, 토지 또는 측량관련 정부기관의 행정보고서, 국가실행 내지 행정부의 실행, 그리고 목인의 증거 등이 포함된다.¹⁸⁾

증거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증거들은 다시 일정한 사실 내지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치(value of evidence)의 보유정도에 따라 증명력이 부여된다. 즉 문제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실제로 입증 또는 확립하거나, 입증에 기여하거나, 또는 입증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또는 입증하는 높은 개연성을 가지는 경우에 이를 당해 자료의 증명력이라 한다.¹⁹⁾

다른 차원에서 증거는 입증방식(methods of proof)을 기준으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된다. 직접증거란 계쟁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추론

¹⁵⁾ Charles C. Hyde,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 27, 1933, p. 311.

¹⁶⁾ Black’s Law Dictionary, 10th ed., West Group, 2014.

¹⁷⁾ 박현진, 독도영유권과 지도·해도의 증거능력·증명력, 국제법학회 논총 제52권 제1호, 2007, 92쪽.

¹⁸⁾ 위의 논문.

¹⁹⁾ 위의 논문, 94쪽.

을 거치지 않고 계쟁사실을 직접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는 계쟁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일정한 사실에 관한 정황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즉 간접증거는 통상적·합리적 경험칙 등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거나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증자료이다. 하지만 직·간접증거란 입증·증명의 수단과 방식에 관한 것이며, 증거의 가치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증거라고 하여 반드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재판소의 경우 '국가가 그 주권에 기하여 배타적관할권을 확립·행사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특히 정부 기관이 작성·제작·간행한 공적 기록·문서 등 영유권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1차적 서면증거를 최선의 증거(best evidence)로 평가한다.²⁰⁾ 1차적 문서증거로서 국가가 편찬한 소위 관찬문서는 증거능력을 가지지만 증명력은 문서가 자국 내의 국내문서인지 아니면 상대방국가에게 보낸 문서인지 또는 양국간의 합의사항을 기록한 문서인지와 그 내용의 정확성(accuracy)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다.²¹⁾

2) 원록각서의 증거법상 가치

원록각서는 안용복이 도해했을 당시 일본의 관리에 의하여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증거법상 공적조서(公的調書)에 해당한다. 공적조서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을 적은 공적 문서로서 어떤 사건이나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기록으로서 1차적 증거능력이 있다. 원록각서는

20) D.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v. ed., Charlottesville: Virginia University Press, 1957), p.208,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2000, p.49에서 재인용.

21) 이태규, 국제재판상 지도의 증거력: 카시킬리/세두두 섬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2012), 175쪽.

일본 돗토리번에 표착한 안용복 일행이 자진해서 오키의 대관소에 출두하여 표착하게 된 연유와 도해목적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구했고 대관소는 요구에 응하여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 일행의 도해에 관한 것을 기록하여 이와미노쿠니 및 돗토리번 등에 보고한 보고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²²⁾ 31단으로 나눌 수 있는 원록각서는 조선인이 진술한 내용과 일행을 관찰한 내용, 일행이 대관소와 교류한 내용을 일본의 관리가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록각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右)는 이번에 조선인 한 권의 글귀와 함께 조선인이 제출한 글귀 목록을 여기에 적어서 야자우에몽이 지참하는 구상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나카세 단우에몽 5월 23일 이외미주 야마모토 세이우에몽 사무실”로 되어 있어 공적조서로서의 성격을 입증한다. 이는 원록각서가 안용복이 표착한 현장에서 일본인 관리에 의하여 공적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치다 후미에(内田文惠)의 다음과 같은 글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원록각서의 소장자 무라카미(村上)가문은, 시마마에(嶋前)의 오래된 가문이다. … 시마마에의 공문이며, 해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던 집으로서 이 조선으로부터의 내방자에 관한 정보는 귀중한, 한편 흥미를 당기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문서에는, 배의 화물(積荷)에 대해 상세한 기재가 있어, 승무원의 복장,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 오키에 도달할 때까지의 항로, 일정에 대해서도 써내고 있는 것, 승려가 다섯 명 승선하고 있지만, 그 종파가 무엇인가를 일본 측은 문제삼아 묻고 있는 것 등, 쇄국(정책과), 기독교 금지(정책)하의 일본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내방자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에서 질문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또한 내방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실시했던 것을 행간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방자가 말하는 일을 그대로

22) 권오엽,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와 安龍福, 일본어문학 39권, 2008, 412쪽.

기재한 것도 분명하다. 이 문서가 한 가지의 일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가 작성된 시대를 감안하여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³⁾

일본이 조선은 1904년까지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696년에 안용복이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를 보이며 울릉도와 자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죽도와 송도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고 일본측 공적 문서에 조선팔도지도를 글로 옮겨 적으면서 명시적으로 마쓰시마(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으로 표시하고 있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증거사실을 직접 추론하도록 하는 직접증거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는 당시에 조선이 독도(죽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1차적 직접증거로서 의미도 있다. 물론 원록각서가 당시 일본국의 정부인 에도막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직접증거는 대외적 의사표시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기타 정부기관이 작성한 기록·문서·지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²⁴⁾ 원록각서는 일본이 독도의 영토주권이 조선에 있음을 인정한 1차적 직접증거로서 의미가 있다.

3) 죽도기사의 증거법상 가치

죽도기사는 1693년에 발생한 이른바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조선과 쓰시마 번 사이에 일어난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교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책으로 1726년 12월 쓰시마 번사인 고시 쓰네에몬이 편찬했다. 집필자는 사건 당시 쓰시마번의 공직인 가로(家老)의 지위에 있던 오우라 리쿠에몬이며 아메노모리 호슈가 교열했다.²⁵⁾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주고

23) 内田文恵, 村上家所蔵『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解説について,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島根県総務部(2006) 特集.

24) 박현진, 앞의 논문, 94쪽 각주 14.

25) 이 책은 사건으로부터 멀지 않은 1726년에 교섭 당사자인 쓰시마번에 의해 작성된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죽도기사,

받은 외교문서는 최고통치자간에 주고받는 국서(國書)와 막부로부터 대조선교섭을 위임받은 쓰시마번의 로쥬(老中)와 조선의 예조, 동래의 외교실무자간에 주고 받은 서계(書契)가 있다. 외교문서인 서계는 일본에서는 쓰시마번만이 작성하여 조선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죽도기사의 편찬 주체가 당시 조선과 외교업무에 관한 권한을 막부로부터 위임받은 쓰시마번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죽도기사는 쓰시마번의 외교문서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관리가 작성한 직무상의 공문서로서 법적인 가치를 갖는다.

증거법상으로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²⁶⁾ 공문서의 지위가 부여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작성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인 한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인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니라하더라도 어떤 단체, 기관, 개인 등이 형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의제되는 경우라면 그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된다. 법률 기타 특별법이 그에게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서의 권한을 주었기에 공무원 그리고 공무소로 의제되는 것이다.²⁷⁾

죽도기사는 쓰시마번과 조선정부 사이의 왕복서한, 에도 막부의 최고고위직인 로쥬(老中)에게 보낸 렌조(연명서)와 고쥬쇼(구술서), 나가사키 봉행 등에게 보낸 조(서장), 사자에게 내려진 가키쓰케(문서), 사자로부터의 우카가이쇼(질의서)와 오보에가키(각서), 죠비카에(서장 사본), 닛쵸(일지) 등의 사료를 원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죽도기사는 그 자체가 1차적 외교문서들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교기록의 보존 및 보관을 위해 공무원인 번사에게 편찬의

2013, 머리말.

26) 형법 제225조.

27) 다만, 어떤 단체, 개인 등이 계약 등에 의해 공무(公務)를 일부 대신해서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 할 수 없다.

책임이 부여되고 집필자와 교열을 담당한 자도 공무원인 가로(家老)라는 측면에서 증거능력을 갖는 1차적 직접증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죽도고의 증거법상 가치

『죽도고』는 돛토리번 번사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1828년(일본 연호 문정 11년)에 편찬한 책이다. 상·하 두 권으로 되어있으며 주로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돛토리와 그 주변지역에서 전해 내려져 오는 기록 및 일본과 조선, 중국 등의 문헌을 들어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⁸⁾

죽도고의 머리말에는 “(전략) 오랫동안 우리에게 속했던 땅을 다른 나라의 간악한 어부들이 멋대로 빼앗았으니 뜻 없는 자라면 누구나 그 일을 애석해하지 않으랴. (중략) 대개 사물은 반드시 그 수가 정해져 있다. 아니 기울어 질 때는 즉 커질 때이다. 그 것이 곧 이치이다. 다시 커질 때를 얻어 재차 독도(죽도)로 배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책에서 한 구절이라도 취할 만한 곳이 있어 국가를 위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나의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 (하략)”라고 서술하고 있어 당해 사료의 집필의도가 매우 주관적임을 확인하고 있다.

죽도고는 집필의 주체가 관리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작성한 문서라기보다 독도와 관련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따라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서 의미를 갖으며, 그 내용 또한 사적(私的)으로 듣고 모은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증거법상 증명력이 강한 증거문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울릉도쟁계와 관련하여 조선과 일본간의 주장과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관한 정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서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증거로 이용될

²⁸⁾ 정영미, 竹嶋考 上·下,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2010.

수 있을 것이다. 죽도고는 통상적·합리적 경험칙 등에 의하여 올룽도 쟁계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거나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직접증거라고 하여 반드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증거로서 죽도고를 통하여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에 포함된 1차적 직접증거들의 진정성을 입증·증명할 수 있다면 신빙성이 낮은 직접증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당시 조선의 독도영유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식 외교문서로서 죽도기사 - 페드라 브랑카 판례의 법리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8년 5월 23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는 싱가포르에, 미들락스(Middle Rocks)는 말레이시아에, 사우스 레지(South Ledge)는 두 나라의 영해획정 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²⁹⁾

페드라 브랑카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1979년 페드라 브랑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관할하고 있던 페드라 브랑카 섬은 싱가포르 해협의 선박 통항로에 있었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 도달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24일 ICJ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말레이시아는 이 섬들에 대한 조호르 지역 술탄(Sultan of Johor)의 시원적 권원을 주장했지만 당해 지역 술탄이나 그 승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적 권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는 조호르의 술탄에게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시원적 권원이 있다는 고유영토론을 지지하고 조호르 술탄이 1512년 이래 자신의 주권 하에 주권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선언하였다.³⁰⁾ 그러나 타국이 '주권자의 자격'으로

²⁹⁾ Case Concerning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tteh, Mil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Pedra Branca Case), Judgement, 23 May 2008, ICJ Reports(2008) 12,

행한 영유권의 명시적 표명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 하에서 영유권이 양도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취했다. 싱가포르의 페드라 블랑카 주변 수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말레이시아의 공무원들이 당해 섬에 방문하는 경우 싱가포르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군사 통신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평온무사한 실효적 지배’를 하였지만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이러한 행위를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했다.³¹⁾

ICJ는 특히 섬의 소유권을 부인한 말레이시아의 공문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1953년 싱가포르는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해 페드라 블랑카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레이시아에게 질의한 바 있는데, 이때 말레이시아가 페드라 블랑카의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낸 것을 ICJ는 영유권 (sovereignty)의 포기로 간주했다.

페드라 블랑카 사건은 역사적 권원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역 술탄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해 술탄이 싱가포르에 보낸 공식문서를 근거로 페드라 블랑카의 영토주권이 싱가포르에 귀속된다는 판단을 사례로서 죽도 기사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공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이며, 조선의 영토로서 울릉도는 독도와 ‘하나의 세트’라는³²⁾ 인식을 전제로 그러한 내용을 대조선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쓰시마 번에 의하여 작성된 외교문서의 형식으로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 ICJ의 페드라 블랑카 사건의 증거법상 법리를 준용하여 일본이 독도의 조선영유권을 인정한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30) Ibid., paras 53-59.

31) Phoebe Ganal, *Shifting Winds in the East : A Legal Analysis and Case Comparison of the Diaoyu/Senkaku Island Dispute*, Southern California Interdisciplinary Law Journal, 2016, Summer, pp. 708-709.

32) 송취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제 44집, 2010, 62쪽. 이에 더하여 “일본의 명칭 죽도·송도는 ‘송죽매’라는 전통적 일본 명칭으로 보아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3. 죽도기사·죽도고·원록각서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권원

1)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영토획득의 법적 근거로서 역사적 권원의 개념은 역사적 문서에 근거한 권원이 아닌 근대 국제법의 확립 이전에 형성된 권원을 의미하며 법 이전의 권원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반적 평가나 의견의 증거에 대한 신뢰에 의해 인정되는 권원이다.³³⁾ 역사적 권원은 일련의 행위와 행위의 유형이 생성된 후 오랜 세월의 경과를 통해서 일정 지역에 지속된 점유현상이 국제법상 시효, 묵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는 경우 그 자체로 충분한 영유권의 근거가 된다.³⁴⁾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의 성질과 법적 지위는 영역취득 근거로서 시효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이해될 수 없다. 역사적 권원 개념은 계속성과 함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를 핵심적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³⁵⁾

원록각서와 죽도기사 그리고 죽도고는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토관리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근거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죽도기사에서 “당초에 울릉도를 빼앗은 것은 아니니, 지금이 섬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오직 일본인의 울릉도에의 고기잡이 들어감을 금지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를 명령 하니 이를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역사적·시원적 권원을 재확인하고, 당시 독도에 대하여 막부가 영유의사나 권원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³⁶⁾

33) 김명기, 국제법상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 『독도연구저널』, 2010. 9호, 59면.

34) Artur Kozłowski, The legal Construct of Historic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An Overview, Pol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0, 201, p. 90.

35) Eritrea-Yemen Arbitration,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First Stage, 1998.

36) 박현진, 앞의 논문, 143쪽.

Minquiers and Ecrehos 사건에서³⁷⁾ ICJ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분쟁을 ICJ에 의뢰하기 위해 체결한 특별협정 제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이 당해 도서에 대한 양국의 아주 오래된 권원 또는 시원적 권원 주장에 관련된 분쟁이라고 판단하고,³⁸⁾ 이러한 영유권분쟁의 해결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세의 사건들로 부터 추론되는 간접적인 추론이 아니라 당해 도서의 점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라고 판시하여 역사적 권원보다 실효적 지배를 중시하였다.³⁹⁾ Palau Ligitan섬 사건에서도 ICJ는 모호한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였다.⁴⁰⁾ 역사적 권원의 주장은 역사적 우선권 또는 소유의 기간에 근거한다. 역사적 권원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최초로 영토주권을 행사하였음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더욱 보장된다. 역사적 권원은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당시에 당해 지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영토에 대한 주권주장의 근거가 된다.⁴¹⁾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영토주권 주장의 근거이다. 타국의 역사적 권원 주장에 의하여 자국의 영토주권이 훼손된 국가가 타국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국가의 역사적 권원을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상대방 국가의 역사적 권원이 동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된다.⁴²⁾

37) Minquiers and Ecrehos Case, 앞의 주 8) 참조.

38) Ian Brownlie는 영역취득의 유형을 점유와 침부 등 원시적(original)인 유형과 할양과 같은 파생적(derivative)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파생적 영역취득 권원으로서 할양도 당해 영역을 취득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해 영역에 대한 원시적 권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an Brownlie, *op. cit.*, p. 130.

39) Minquiers and Ecrehos Case, 앞의 주 8) 참조.

40)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 v. Malaysia), 2002 ICJ 684(Dec. 17).

41) Surya P. Sharma, *Territorial Acquisition, Disputes and International Law*(Martunus Nijhoff), 1997, p.31.

42) Brian Taylor Sumner, *Territorial Disputes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ke

분쟁의 대상이 된 지역의 문화적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역사적 권원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역사적 권원은 종종 문화적 영토주권 주장과 연계된다. 역사적 권원은 문제의 지역에 대하여 더 이른 역사적 언급이 이루어 졌으며, 그 기간이 장구하면서 거주자와 문제 지역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강력해진다.⁴³⁾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국가 국민들의 역사와 분쟁 영역이 당해 국가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경우 당해 영역은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국가 국민들과 운명공동체가 되며 영토주권 주장에 생물학적 합법성을 부여하게 된다. 역사적 근거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근거하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에 근거할 수도 있다. 이때 당해 지역과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국민들 간의 정체성은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⁴⁴⁾

2) 지리적 근접성(proximity)법리와 판도이론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역사적 권원의 근거는 서기 512년 하슬라(강릉)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으며 우산국의 거점인 울릉도의 복속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⁴⁵⁾ 우산국 사람들이 어로활동을

Law Journal, vol 53, 2004, p.1789.

43) Land and Maritime Boundary (Cameroon v. Nigeria), 2002 I.C.J. 303.(Oct. 10); Andrew Burghardt, op. cit., pp.232.

44) Brian Taylor Sumner, op. cit., p.1789.

45) 현대 국제법에서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contiguity)은 그 자체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Palmas 섬 사건의 부수의견에서 후버판사는 지리적 근접성의 권원(title of contiguity)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은 분쟁 당사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의 경우 전체적인 정확성이 부족하고 자의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영토주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legal method)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1928, *United Nation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2, 1949, p. 869. 하지만 이러한 후버판사의 판단 전제는 당사국 모두 지리적 근접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의적으로 자국의

하던 활동영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독도에 대한 복속을 포함한다는 판도이론에 기초한 역사적 권원의 승계이다.

원록각서에 따르면 “안용복이 말하기를 대나무섬을 다케시마라고 말하는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합니다. 곧 팔도지도에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쓰시마는 이 도(강원도) 안에 자산(소우산)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마쓰시마라고 합니다.” “5월 15일 다케시마를 출선하여 같은 날 마쓰시마에 도착하였고 동 16일 마쓰시마를 나서 18일 아침에 오키도 내의 니시무라의 바닷가에 도착, 동 20일에 오시사무라에 입항하였다고 합니다.” “다케시마와 조선 사이는 30리이며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는 50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하여 독도를 울릉도 그리고 강원도와의 지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영향권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죽도기사에 따르면 울릉도쟁계와 관련하여 막부는 돛토리번에 당시의 죽도(울릉도)나 당시의 송도(독도)에 대해 여러 가지 조회를 하였고, 돛토리번은 답변을 했다. 이때 돛토리번은 “송도는 (호기와 이나바) 어느 쪽의 나라에 부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송도에 고기잡이 한 일은 죽도로 가는 도해의 길목에 있으므로 들러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라고 막부에 보고하였다.⁴⁶⁾ 그리고 “여지승람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도의 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설로는 본래 한 섬이라고 하므로 다른 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 조선회도에는 두 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방향에 섬이 있다고 알고 있는가?라고 하셔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죽도의 근처에 송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고 한 기록도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며 영향을 받는 판도

지리적 근접성을 주장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독도에 대하여는 울릉도쟁계가 진행되던 당시에도 조선의 울릉도에 가까운 섬이라는 사실을 양측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46) 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 제 44집, 2010, 57-59쪽.

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⁴⁷⁾

특히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조선의 해양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서술로서 “저 섬에 오래된 민가가 있었을 때 조선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저쪽의 서적에 보이며 특히 조선에서 거리가 가깝고 일본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변론할 여지없이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라는 기록은⁴⁸⁾ 17세기 당시 해양에 있어 도서의 영토주권획정이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온 것으로 조선의 섬을 일본에 돌려 달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일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거리를 물어보았더니 호키에서는 160리 정도이고 조선에서는 40리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국의 울릉도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인이 거주하거나 이쪽에서 차지한 섬이라면 이제 와서 돌려주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증거 등도 없으니 이쪽에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라는 기록이나⁴⁹⁾ 죽도기사에 기록된 조선국 예조 참의 박세준이 일본국 쓰시마주 형부대보에게 보낸 문서에 “울릉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여지도서에 실려 있는데 내용이 분명합니다. 울릉도가 그 곳(일본)과 멀고 이곳(조선)과 가깝다는 것은 물론이고 경계가 자별합니다”라는⁵⁰⁾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⁵¹⁾

47)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죽도기사 2, 68쪽.

48) 위의 책, 42쪽.

49) 위의 책, 83쪽.

50) 위의 책, 195쪽.

51) 이는 당시 양국 간 도서영유권 판단 결정에 관한 구속력을 가진 관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용복이 1693년 1차도일 당시 오키도주에게 “울릉도에서 우리나라까지의 거리는 하루 노정이나, 일본과의 거리는 5일 노정이니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항해거리’를 근거로 따지자 그를 호키주로 보내 호키주 태수가 ‘울릉도는 일본 지역이 아니다’는 관백의 서계를 받아 주었다는 주장을 조선 정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현진, 앞의 논문, 149쪽.

죽도고에는 ‘죽도고 도설, 죽도송도지도’라는 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종이에 그리고 있어 일본 측이 죽도와 송도를 하나의 판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지도에 의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책을 살펴보면 종종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같이 기술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⁵²⁾

이러한 기록은 결국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판도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판도이론에 기초하면 죽도기사의 내용처럼 일본이 울릉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결국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 된다.

페드라 블랑카 사건에서도 ICJ는 페드라 블랑카 섬과 같은 작은 섬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the broad area)에 대한 일반적 영토관리의 확인이 있으면, 말레시아의 조호르 지역 술탄이 당해 섬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영토주권의 획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ICJ가 1512년이라는 시대를 고려하여 문제가 된 작은 섬인 페드라 블랑카에 대한 구체적 주권행사에 우선적 초점을 두지 않고 페드라 블랑카 섬이 위치해 있는 싱가포르 해협의 일반적 지리적 또는 역사적 범위(general geographic or historic scope)에 대하여 조호르 술탄이 영토로서 주권을 행사하였는지를 결정적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⁵³⁾ 페드라 블랑카 사건은 죽도기사에서 송도(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이 죽도(울릉도)에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기록해 놓은 것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가 일반적 지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이 결국 울릉도에 대하여 조선이 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울릉도가 위치해 있는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ICJ의 판례이다.

52) 정영미, 앞의 책, 상 129.

53) Sookyeon Huh, op. cit., p.722.

3) 실효적 지배

현대 국제관습법은 무주지에 대한 영역주권의 획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첫째, 발견과 선점이라는 시원적 권원(original title), 둘째, 특정 영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영유 의사(animus occupandi), 셋째,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나타난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⁵⁴⁾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토편입 의사의 존재여부는 실체가 없는 유명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로써⁵⁵⁾ 영토편입 의사는 결국 객관적인 행위로서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원적 권원과 이에 근거한 실효적 지배행위의 존재가 영역취득을 위한 핵심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는 강력한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sine qua non) 결정적인 근거이다.⁵⁶⁾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지역이 과거 소유했던 국가로부터 포기된 지역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당해 지역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⁵⁷⁾ 실효적 지배의 전제 조건으로서 포기된 지역의 지위는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무주지(terra

⁵⁴⁾ Michael C. Davis, Can International Law Help resolve the Conflicts over Uninhabited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 43, Winter 2015, p.137. 실효적 지배는 주권적 행위를 하려는 의도 또는 의지와 주권적 권한의 실제적 행사 또는 시현(display)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통해 성립한다.

⁵⁵⁾ H. Waldock(ed.), *Brierly The Law of Nations*, 1963, p. 152.

⁵⁶⁾ Brian Taylor Sumner, op. cit., p.1787. Brilmayer와 Klein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주권주장이 경합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the most important) 법적 권원의 유일한 지표(single indicator)는 소유(possession)이라고 지적했다. Lea Brilmayer & Natalie Klein, Land and Sea: Two Sovereignty Regimes in Search of a Common Denominator, *N.Y.U.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 33, 2001, pp.714-716.

⁵⁷⁾ Andrew Burghardt, op. cit., pp. 228-9.

nullius)일 것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새로이 발견된 지역만이 무주지였지만 현재는 무주지라는 용어가 최소한의 주권활동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지역으로서⁵⁸⁾ 어느 국가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⁵⁹⁾

죽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의 조정이 보낸 서신 중에서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 왕래하며 수색검사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삼가 82년 전에 폐주(쓰시마도주)가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의죽도를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알린 일을 살피니, 부사의 답서에 이르기를 본섬은 우리나라의 소위 울릉도입니다. 지금은 황폐하지만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용납하여 분란의 단서를 열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⁰⁾ 그 외에도 조선정부의 쓰시마도주에게 보낸 답서에 “간혹 사신을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점검하게 한 일과 우리나라 여지승람에 신라와 고려 및 본조에서 자주 관리를 섬에 보낸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사신이 늘 왕래하지 않는 것도 해로에 위험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전부터 기재한 책은 버려두고 민지 않은 채 도리어 두 나라 사람들이 섬 안에서 만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의심한다면 이 또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라고⁶¹⁾ 하여 조선의 공문서인 여지승람을 근거로 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를 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죽도고에 따르면 “그 나라 사람의 성정이 유약, 우리나라 해적이 그 나라 고을을 소란스럽게 하니 그 해를 당하는 것이 때변이었다. … 무로마치 때의 시대적 혼란을 틈타 9개국의 간민(奸民) 수 만 명이 당을 만들고

58) Robert Y.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niv. Press, 1963, p.30.

59) Norman Llewellyn Hill, *Claims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Oxford Univ. Press, 1945, p.146. Hill에 의하면 무주지의 발견은 소유에 의하여 완성되어야 할 불완전 권원(inchoate title)을 창설하는 데 불과하다.

6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죽도기사* 1, 213-214쪽.

61) 위의 책, 240-241쪽.

군대를 이루어 중국 및 조선국에 도해해서는 마음껏 노략질 하고 풀베듯 사람을 베었다. 그 잔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 호타이코의 조선 정벌로 인해 살육된 그 나라 신민이 흠투성이가 된 채 땅에 굴러다녔고 종묘사직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버렸다.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배가 왕래하는 바다에 있는 고도이므로 그 나라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살지 않았고, 마음 편하게 도해할 수도 없었기에 폐도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다케시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왜구의 난이 한창이었을 때에는 고원절도(孤遠絶島)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해변가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쳐 양전옥답이 온통 쑥대밭이 된 탓일 것이다”고⁶²⁾ 하여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소극적 주권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 있다. 이는 조선이 무관심으로 포기한 지역이 아니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도서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노략질에 대응하여 소극적인 주권행위로서 독도를 생활권으로 어업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에 대하여 쇄환정책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수토를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죽도기사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제법상 영토주권판단 법리에 주는 의미

원록각서(元祿覺書), 죽도기사(竹嶋記事) 그리고 죽도고(竹嶋考)는 모두 울릉도쟁계를 주제로 일본측에 의하여 작성된 역사적 문서들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울릉도 및 독도와 직접 관련된 역사문서가 매우 희귀한 현실에서⁶³⁾ 이들 역사적 문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의 광범성, 정확

62) 정영미, 위의 책, 상53.

63) 원해고도의 작은 섬과 관련된 수 많은 영토분쟁은 공통적으로 영토주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역사적 권원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의 빈곤을 기초로 하고 있다. Michael C. Davis, op. cit., p.141.

성, 객관성, 풍부성 등은 한국이 통치하고 있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밝혀 주는 문서로서 결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웨스트파리아 평화조약에 의한 새로운 국제법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특정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영역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영토획득의 일반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여 국제법상 영토획득의 정당성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정립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소위 '역사적 권원' 개념이나 웨스트파리아 조약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었던 영토획득의 정당성근거는 아시아에서 영토획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대 국제법이 인정하는 영토획득의 정당한 권원은 유럽의 식민지 경쟁을 통한 팽창과정에서 형성된 법리에 의한 것이다. 15세기 이전에 유럽에서 영토획득과 관련된 국제법원칙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왕의 재산으로서 상속되거나, 분리처분되거나, 결혼을 통해 선사되거나, 평화조약 등을 통해 영토가 이전되었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이후 유럽의 팽창과정에서 유럽은 식민지라는 새로운 영토질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법리로 규율될 수 없었다. 이로써 재산법이 법리가 아닌 독립된 법원칙의 체계로서 영토의 법리가 마련된 것이다.⁶⁴⁾

국제법은 영토의 획득과 관련하여 소위 시제법(intertemporal law)에 따라 획득 당시의 법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륙각서, 죽도고 그리고 죽도기사는 울릉도쟁계가 이루어졌던 1690년대 아시아 특정한·중·일의 동북아시아에서 영토획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수용되었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역사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당시의 영토획득 법리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제법이 원칙이라고 해서 과거의

64) J.H.W. Verzij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Part III: State Territory (Reprinted, 1970), Kluwer Pub., pp. 298-325.

법리가 명확하게 문제가 된 사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과거에 받아들여졌던 하나의 원칙적 또는 이념적 정당화사유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⁶⁵⁾

국제법정에서 도서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국가들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또는 무주지(terra nullius)의 발견을 영토획득의 기본적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현대적 영토획득법리에 부합할 수 있는 선점 이후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지배행위가 ‘지속적’ 그리고 ‘평화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는⁶⁶⁾ 증거를 근거로 제시해 왔다. 명확한 성문의 국제 법규범을 통해 영토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역사적 권원의 기초없이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가장 보편적 방식은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영유를 설득하는 논리적인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⁶⁷⁾ 더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주권의 행사를 통한 과거의 영유를 입증하는 사실들을 기록한 역사문서를 통해 문제의 영토와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영토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독도영유권문제는 역사적 권원과 같은 사실(fact)의 다툼이자 과거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인식’(perception)의 다툼이라는 인식은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입장이다.⁶⁸⁾

원록각서, 죽도기사 그리고 죽도고 등은 일본이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

65)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2006, p.271.

66) 실효적 지배의 기준으로서 실제적, 계속적, 평화적, 충분한 지배의 해석에 관해서는 김재형,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실효적 지배관련 주요판례와 시사점,”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방안 전문가간담회 자료집』(국회입법조사처·경상북도), 2012. 4. 26, 23-26면 참조.

67) Surya P. Sharma, *op. cit.*, p.31.

68) 김영수,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 「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008, 114쪽.

구하고 조선의 독도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도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매우 깊은 분석과 통찰이 필요하다. 시제법적 측면에서 울릉도쟁계 당시 한일 양국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었던 영토획득의 정당화사유를 이들 역사문서를 통해 살펴보면 지리적 근접성과 울릉도 및 독도와 관련된 조선의 주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해 주는 역사적 권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이 남긴 역사문서이지만 이들 문서는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이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바다와 섬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권활동을 하였고 당시 한일 간에는 이를 영역결정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제증거법의 측면에서 이들 문서는 각기 그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록각서는 공적조서로서 일본의 국내적 공문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죽도고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이 조선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원록각서와 죽도기사의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 간접증거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죽도기사는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주의 명령에 의하여 공직자인 편찬자, 집필자, 검수자들이 작성한 외교공문서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간 유일한 국제합의문서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 일본이 과거에 공문서 작성의 기준과 형식을 정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일본 공문서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에도막부 시대에 일본의 각 번에서 공직의 조직과 명칭 및 임무 등이 함께 연구된다면 원록각서와 죽도기사 그리고 죽도고를 작성한 편찬 주체의 공무상 지위와 임무를 분명히 하여 당해 역사문서들의 증거법상 가치를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terpretation of Wonrokgakseo, Jukdogisa and Jukdogo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Cheolyoung, Choi

Wonrokgakseo(元祿覺書), Jukdogisa(竹鳴記事) and Jukdogo(竹鳴考) are historical documents which are written by Japan and recorded Ulleungdo Jaenggye(鬱陵島爭界: 1693-1699) regarding the disputes about Ulleungdo and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These documents might have decisive meaning and value as documents supported the historical title of Korean territoriality of Dokdo because these document include broad, accurate, and abundant contents about 17th century situation on Dokdo, there is very rare historic document about Dokdo though.

These documents evidently reveals that Korea recognized Ulleungdo and Dokdo as its territory as well as exerted comprehensive effective control around the wide range of Ulleungdo at that time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principle. As a matter of 17th centur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se document also testify that Korea and Japan accepted geographical proximity as a criteria to determine boundary of territory.

In terms of international evidence law, on the other hand, all of these document have competence as evidence, although there is difference in value of evidence among these document respectively. Wonrokgakseo has legal binding force as a official document which was recorded by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Jukdogo may be recognized procedural legal status as circumstantial evidence supporting the credibility of the Wonrokgakseo and Jukdogo which record that Korea carried out sovereign territorial control over Ulleungdo and Dokdo. If we interpret it actively and broad, Jukdogisa, especially, can be regarded as the only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because it is qualified as diplomatic document produced, written and proof-read by official according to the order of governor of Tsushima who had dealt diplomatic affairs with Korea at that time as an agent of the Shogunate in Tokyo.

Key words: Wonrokgakseo, Jukdogisa, Jukdogo, acquisition of territory, admissibility of evidence, geographical proximity, historical title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 · 결정됨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정 태 만**

〈목 차〉

1. 머리말
2.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와 죽도도해금지령
3.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 태정관지령
4.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와 훈령(SCAPIN) 제677호
5.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와 샌프란시스코조약
6. 맺음말

〈국문초록〉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부속섬과 같은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았다. 1690년대 안용복사건은 일본 에도막부에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이다. 이 지도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할 때 사용된 지도이다.

그 후 명치시대에 들어 안용복사건 당시 조선·일본 양국간 외교교섭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하고 공시한 자료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측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에 공개된 부속지도 「기죽도약도」에 의해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다.

광복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관할지역과 어선조업구역 양면에서 울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 토대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4072398).

**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리하였는데, 관할지역에 있어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SCAP관할지역도」로써 독도가 남한지역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그 관할지역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에 인계됨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합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도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체결되었으나, 최근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는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전에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동 조약의 부속지도로 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고, 국제법적으로 증거능력·증명력이 큰 공적인 지도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판정과 관련된 4개의 공적 지도는 모두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기하고 있거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연합국점령통치 기간 중의 「SCAP관할지역도」를 제외하고, 3개의 지도는 일본정부 스스로 제작한 지도로서, 일본정부 스스로 3번이나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

주제어: 소곡이병위, 태정관지령, 일본영역참고도, 독도, 샌프란시스코조약, 독도, 일본영역도

1. 머리말

지도는 시각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수단이 되는 반면에 크기, 위치 등에 대한 조작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지도라고 하더라도 사인(私人)이 그린 지도 보다는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지도가 사료적 가치나 국제법적인 증명력이 더 크며, 정부기관이 발간한 지도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교육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한 지도보다는 영유권 귀속판단과 관련된 부속지도가 사료적 가치나 증명력이 더 크다. 또한, 자국에서 자국 영토라고 기록한 자료보다는 상대국에서 인정한 자료가 증거능력·증명력이 클 것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공적인 지도(official map)에 관하여는 사인(私人)이 그린 지도에 비해 오히려 연구·홍보면에서 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독도의 영유권 귀속 판단과 관련하여 사용된 공적 지도를 바탕으로, 당시 영유권 귀속판단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의 독도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상태, 김명기, 박현진 등의 연구성과가 주목할 만하다.²⁾ 다만, 공적 지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최근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가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일본 양국간의 외교적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조선 숙종대, 일본 에도(江戸)시대 원록(元祿) 연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에도시대부터, 2차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의 점령통치를 거쳐 일본이 독립한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제 강점기의 일본 지도는 분석의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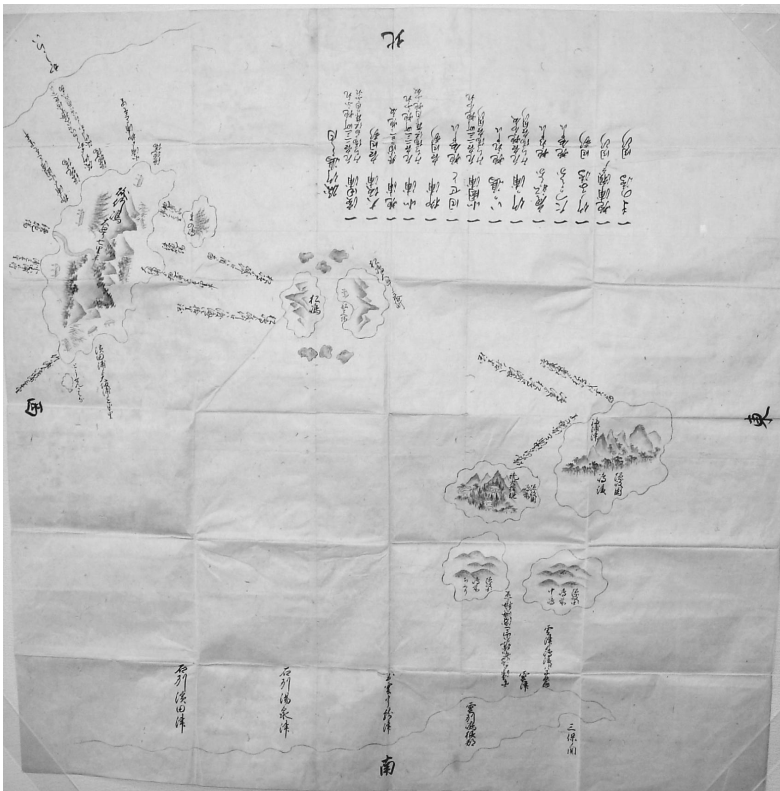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05년 이전의 지도로는 에도시대 안용복사건 당시의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図), 메이지(明治)시대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그리고, 종전후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직전에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 국회에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의 4개 지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1)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증명력은 증거의 가치라고 정의된다. 근래에 들어 국제판결들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현진(2007), 「獨島 領有權과 地圖·海圖의 證據能力·證明力」,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1號 (通卷 第107號), 대한국제법학회, pp.89-128)
- 2) 박현진(2007), 「獨島 領有權과 地圖·海圖의 證據能力·證明力」,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1號 (通卷 第107號), 대한국제법학회, pp.89-128; 김명기(2009), 「국제법상 지도의 영토권원 인정 증거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51-191; 이상태(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10, 2011.6, 7-62 (56 pages),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7-62
- 3) 1905년 일본정부에서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県)에 편입결정한 것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제점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와 죽도도해금지령

1)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와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

〈그림 1〉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는 에도(江戸) 시대 돗토리번(鳥取藩)의 에도연락관(江戸留守居役)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에 의해 에도막부에 제출된 죽도(竹嶋, 울릉도) 회도(繪圖)이다.⁴⁾ 이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에는 울릉도는 '기죽도(磯竹島)', 독도는 '송도

(松島)로 표기되어 있고,⁵⁾ 독도와 울릉도간 거리는 40리(里), 독도와 일본 오키섬간의 거리는 80리로 되어 있다. 특히,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어,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 거의 비슷하다.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는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의 에도(江戸) 연락관으로서,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쓰시마(松島=독도)는 일본 어느 지방에 속하는 섬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1696년 1월 에도막부의 죽도(鬱陵島)도해금지령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 「죽도지회도」(竹嶋之繪図)의 제작 연대는, 당시 돗토리번이 울릉도·독도에 대한 막부로부터의 문의에 답하여 제출한 것인 점과, 소곡이병위가 에도연락관인 기간에 작성된 것인 점에서, 1692~1696년간(元祿 5~9년간)으로 추측된다.⁶⁾

2) 안용복사건과 에도막부의 죽도(울릉도)·송도(독도) 조선령 확인

1693년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 호키주(伯耆州) 어부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상 안용복사건 또는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라 하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잇켄(竹島一件)이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본 양국간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1695년 12월, 에도막부와 돗토리번과의 문답과정에서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일본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확인되었

4) 三田清人(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竹島(鬱陵島)・松島(竹島 / 獨島)關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平成19年3月), 竹島問題研究会, 2007.3, p43

5)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또는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불렀다. 그 후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이름 붙이고 시마네현에 편입결정하였다.

6) 三田清人(2007), 위의 글, p43; 小谷은, 元祿2~13年(1689~1700)에 걸쳐서, 鳥取藩의 間役(江戸留守居役)으로 근무했다.

다. 당시 에도막부의 “울릉도(竹島)는 언제부터 돛토리번 땅이 되었는가?”, “울릉도(竹島) 이외에 돛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돛토리번에서는 “울릉도(竹島)는 돛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에도막부에서 묻지도 않은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그 외에도 돛토리번에 소속된 섬은 없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⁷⁾

독도(松島)에 대해 돛토리번이 돛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에도막부는 다시 독도에 대해 질문했는데, 1696년 1월 25일자 답변 내용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서부」(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각서

(중략)

一 후쿠우라(福浦)로부터 마쓰시마(松島)에 80리⁸⁾

一 마쓰시마(松島)에서 다케시마(竹島)에 40리

이상

(1696년) 1월 25일

7) 박병섭·나이토 세이추(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pp. 16-22.; 당시 鳥取藩은 伯耆州와 因幡州를 관할했다. 질문과 회답은 다음과 같다.

江戸幕府의 鳥取藩에 대한 질문(『磯竹島事略』 元禄8년(1695) 12월 24일)

“因州伯州江附候竹嶋者, いつの頃より兩國江附属候哉[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울릉도는 언제부터 因幡州·伯耆州에 부속되었는가?]”

“竹島之外兩國江附属之嶋有之候哉[울릉도 외에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있는가?]”

右之返答 松平伯耆守(幕府의 질문에 대한 鳥取藩 松平伯耆守의 회답, 『磯竹島事略』 元禄8년(1695) 12월 25일)

“竹嶋者 因幡伯耆附屬二而者無御座候 [울릉도는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

“竹嶋松嶋其外兩國江附屬之嶋無御座候事 [울릉도·독도는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고, 그 외에도 부속하는 섬은 없다.]”

8) 福浦는 일본 오키도에 있는 지명이다. 따라서 『磯竹島事略』과 『竹嶋之書附』에서 오키도-독도(80里), 독도-울릉도(40里) 거리는 『太政官指舎』에서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지

- 마쓰시마(松島)에 호키국(伯耆國)으로부터 해로 120리 정도입니다.
- 마쓰시마(松島)에서 조선에는 80~90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쓰시마(松島)는 (일본) 어느 지방(國)에 속하는 섬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쓰시마(松島)에 어렵(漁獵)을 가는 것은 다케시마(竹島)에 도해할 때 길목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 어렵합니다. 타지방에서 어렵을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모(出雲國)·오키도(隱岐國) 사람은 요나고(米子) 사람과 동선(同船)하여 갑니다.⁹⁾

이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가 뚝토리번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인식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공식확인한 것이다. 한편 에도막부는 마쓰에번(松江藩)에 대해서도 관할지역민의 울릉도(竹島) 도해에 대해 조회하여 1월 26일자 회답서에서 오키(隱岐)·이즈모(出雲) 사람은 울릉도(竹島)도해에 적극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¹⁰⁾

9) 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覺

(중략)

- 福浦より松嶋江八拾里程
- 松嶋より竹嶋江四拾里程
- 以上 子 正月廿五日

別紙

- 松嶋江伯耆國より海路百貳拾里程御座候事
- 松嶋より朝鮮國江は八,九拾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 松嶋は何れ之國江附候嶋ニ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 松嶋江獵參候儀,竹嶋江渡海之節道筋ニて御座候故立寄獵仕候。他領より獵參候儀は不承候事。尤,出雲國,隱岐國之者は,米子之者と同船ニて參候事 以上 (『竹島之書附』元禄9年(1696) 1월 25일); 鳥取藩 松平伯耆守의 에도 연락관 小谷伊兵衛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池内敏(2009), 「江戸時代における竹島および松島の認識について」, 『독도연구』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 184.;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7

에도막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과 당초부터 조선 땅이라는 것이었다.¹¹⁾ 이에 대하여는 1877년 『태정관지령』 부속문서 ‘제1호 구정부 평의의 지의(旨意)’라는 제목으로 첨부되어 있는 1696년 1월 28일자 문서에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 문서에는 에도막부의 로쥬(老中)¹²⁾가 대마도주에게 울릉도(竹島) 도해(渡海)금지를 시달한 내용 및 그 도해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실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조선에 전달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호 병자년 1696년(元祿九年) 1월 28일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는 원래 확실히 모른다. 호키주(伯耆)에서 도해해 고기잡이 해왔던 까닭에 대해 마쓰다이라(松平) 호키주 태수에게 물어보니 이나바주(因幡)·호키주(伯耆)에 부속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중략) 위와 같은 경우로 도해하여 고기잡이를 해왔을 뿐이고 조선의 섬을 일본에 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일본인은 거주하지 않는다. 거리를 물어보니 호키주에서 160리(해리, 필자 주) 정도라고 한다. 조선에서는 40리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조선의 울릉도가 아닌가? 그리고 원래 일본인이 거주하든가 이쪽에서 취한 섬이라면 지금에 와서 (조선에) 넘겨주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같은 증거도 없으니 이쪽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중략) 원래 취한 섬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¹³⁾

11)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7.

12) 최고 권력자인 쇼군(將軍)의 보좌역이다.

13) 一号 丙子 元祿九年正月二十八日

(중략) 竹島元シカト不相知事二候 伯耆ヨリ渡リ漁イタシ来リ候由ニ付 松平伯耆守殿へ相尋候處因幡伯耆へ附属ト申ニテモ無之候 (중략) 右ノ首尾ニテ罷渡リ 漁仕来候マテニテ朝鮮ノ島ヲ日本へ取候ト申ニテモ無之 日本人居住不仕候 道程ノ儀相尋候へハ伯耆ヨリハ百六十里程有之 朝鮮へハ四十里程有之由ニ候 然ハ朝鮮國ノ蔚陵島ニテモ可有之候哉 夫トモニ日本人居住仕候力此方へ取候島ニ候ハハ今更遣シカタキ事ニ候ヘトモ左様ノ証據等モ無之候間此方ヨリ構不申候様ニ被成如何可有之哉 (중략)

이와 같이, 안용복사건 발생이전 에도막부는,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조선땅 울릉도인 줄 모르고 호키주 어부들이 새로 발견한 섬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에도막부는 그 섬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에 대해 잘 모르고 도해면허를 내 주었고, 나중에 안용복사건 이후에 알고 보니 조선 땅 울릉도이므로, 원래부터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에도막부의 일본인 죽도도해금지령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1696년 1월 28일 일본인의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해금지령은 즉시 일본어부와 조선조정에 통보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었다. 1696년 5월에는 안용복과 순천승 뇌헌 등 일행 11명이 독도와 일본 오키섬(隱岐, 玉岐島)를 경유하여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가서 ‘조울양도감세장(朝鬱兩島監稅將)을 가칭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서둘러 조선 조정에 통보되었다. 그 후 양국 간의 외교문서의 교환과정을 거쳐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영유권 분쟁은 1699년 마무리되었다.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다면, 1625년부터 1693년까지 약 70년간 일본 호키주(伯耆州)의 어부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어업을 한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나이토 세이추는 호키주 요나고(米子)어민들이 무인도에서 도해(渡海) 어업을 계속해온 것은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도적질을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실효적 지배에 근거한 영유권확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⁴⁾

元取候島ニテ無之候上八返シ候ト申筋ニテモ無之候(『太政類典』 제2편 2A-9-太-318)

그런데도 일본 제국서원(帝國書院)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17세기(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은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図)(돗토리 현립 박물관 소장)를 제시하고 있다.¹⁵⁾ 전술한 바와 같이, 소곡이병위는 돗토리번에도 연락관으로서 독도가 돗토리번땅이 아님을 주장한 인물이며, 소곡이병위 제출 지도는 그때 제출된 지도이다. 따라서, 소곡이병위 제출 지도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는 지도가 아니라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부인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다.¹⁶⁾ 이 지도가 에도시대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확립의 근거자료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 태정관지령

1) 『태정관지령』의 송도(松島)는 독도임을 명백히 밝힌 「기죽도약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는 1877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한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이다.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랫동안 일본측에 의해 은폐되어 오다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에 의해 공개되었고, 그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가 공

14) 內藤正中(2005),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2005年6月號, 岩波書店, p. 56.;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8

15) 김영수,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 비교」,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331.

16) ⑥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繪図)

막부(幕府)의 도해면허에 관한 문의에 대(對)하여 제출하였다고 생각되는 죽도회도(竹嶋繪図)이다.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는, 막부(幕府)와의 섭외(涉外)를 담당한 문역(聞役)(에도 留守居)로 근무한 인물이다. 작성년대는, 막부로부터 죽도(竹島)도해(渡海)에 관한 문의가 있는, 원록(元祿)9년(1696년)경이라고 추측된다(三田清人(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竹島(鬱陵島)・松島(竹島 / 独島)關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平成19年3月), 竹島問題研究会, p28)

개된 것은 2006년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에 의해서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시마네현의 질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問)가 발단이 되었다. 이 질의에 대해 약 6개월간 검토를 해서, 그 이듬해인 1877년 3월 29일,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¹⁷⁾은 울릉도와 독도는(竹島外一島) 일본과 관계없는 섬임을 유념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아래와 같이 내려보냈다.

메이지10년(1877년) 3월 20일

별지 내무성이 질의한 일본해내 竹島外一島 지적편찬 건, 右는 원록 5년(1692년) 조선인 입도 이래, 구정부와 해당국과의 외교교섭 결과, 일본(本邦)과 관계없다고 하여 신립(申立)해 온 바, 질의의 취지를 받아들여, 좌와 같이 지령을 내리는 이 건에 대해 품의합니다.

지령안: 질의한 竹島外一島건은 일본(本邦)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心得)할 것.¹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태정관지령』을 인정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태정관지령』과 독도와의 관련을 부인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松島, 마쓰시마)는 독도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이었다. 특히 2006년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가 일

17)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명치초기 내무성, 외무성을 비롯한 8개성을 관할하던 최고국가기관으로서, 1885년 내각제도 발족과 함께 폐지되었다.

18) 明治十年三月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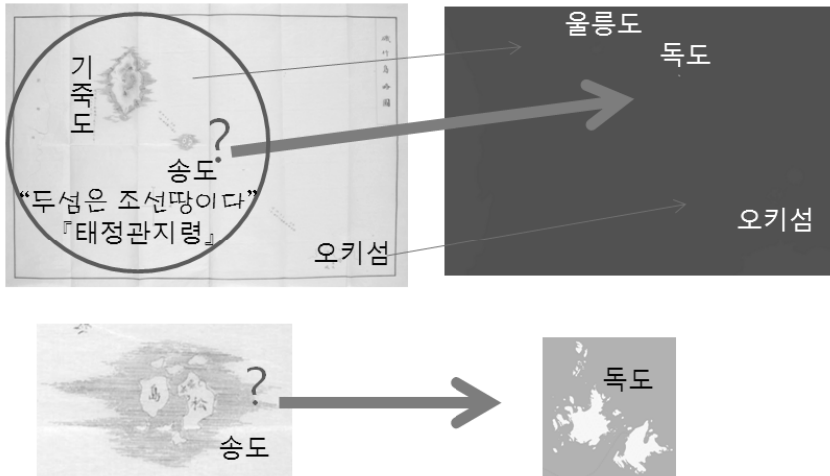
別紙内務省伺 日本海内竹島外一島 地籍編纂之件 右八元禄五年 朝鮮人入嶋以來 旧政府 該國卜往復之末 遂二本邦關係無之相聞候段 申立候上八伺之趣御聞置 左之通 御指令相成可然哉 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伺之趣 書面竹島外一島之義 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公文錄』内務省之部一, 明治十年 三月, 2A-10-公-2032); 품의는 3월 20일, 최종 결재는 3월 29일이다.

본 가나자와(金沢) 교회 목사에 의해 발견·공개된 이래,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관해, 거기에 나오는 섬 송도(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하는 억지주장을 하기에 급급하다.

〈그림 2〉 『태정관지령』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¹⁹⁾와 실제지도의 비교



그러나,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가 독도인지 아닌지는 『태정관지령』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림 2〉와 같이, 그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에도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기죽도약도」를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가 독도임을 명명백백하다.

「기죽도약도」는 섬의 명칭, 모습, 거리 등 대부분이 전술한 소곡위병위 지도와 비슷하다. 울릉도 동북쪽 2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멧섬(죽도)도 ‘마노도’(まの嶋)라 하여 대략 비슷한 위치에 그려져 있다. 요컨대, 「기죽도약도」는 『태정관지령』에서 일본땅이 아니라고 한 섬 송도가 독도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19) 『公文錄』, 內務省之部一, 明治十年 三月, 2A-10-公-2032, 일본 国立公文書館 소장.

2) 독도논쟁에 있어서 『태정관지령』의 중요성

『태정관지령』은 당시 총리급 1명과 장관급 3명이 지령안(指令按) 결재 품의서에 날인하여 확정된 일본정부의 총체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또한, 『태정관지령』은 단일의 문서가 아니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결재품의서, 시마네현과 내무성의 질의서 등 14개의 문서와 「기죽도약도」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문서·지도의 집합체이다. 그 중에서 『태정관지령』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는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²⁰⁾ 우대신(右大臣)과 당시 일본의 장관급 3명이 날인한 『태정관지령』 결재품의서이다.

『태정관지령』은 1877년 당시 일본정부는 독도를 조선땅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 당시보다 최소한 180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의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으므로,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영토가 아닌 것, 즉 일본의 고유영토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당시 관보성격의 문서인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까지 했다.²¹⁾ 『태정류전』에서는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卜定ム)’이라는 제목을 새로이 붙였다.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표현하였다.²²⁾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명백히 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로 본 것이다.²³⁾

20) 태정관(太政官)은 관직명이 아니라 합의체 기관인 관청명이다.

21) 일본의 관보는 『태정관지령』(1877년) 이후 메이지(明治) 16년(1883년)에 창간되었다.

22) 岡田卓己, 「1877年 太政官指令 「日本海內 竹島外一島ヲ 版圖外卜定ム」 解説」, 『독도연구』 12호 (2012년 6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199.

23) 정태만(201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獨島研究』 제 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0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 부족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되고 있다.²⁴⁾ 『태정관지령』은 첫째, 일본정부에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둘째, 그 판단근거를 조선 숙종 때의 안용복 사건에 두고 있으므로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며, 셋째, 관보성격의 문서인 『태정류전』에 공시한 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것과, 『태정류전』에 공시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만큼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을 최초로 공개한 호리 가즈오는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것이 『태정관지령』에 의해 ‘선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내연구자는 『태정관지령』은 안(案)에 불과하다 라든가, 내부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²⁵⁾ 일부 연구기관에 의하여도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²⁶⁾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이 독도가 아니라고 거저된 주장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외무성에서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논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²⁷⁾

24) 정태만(201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獨島研究』 제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36

25) 이동원, 「독도문제 이대로 좋은가」, 『법률신문』, 2012.7.23.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826>, 2015.10.5 열람)

26) 동북아역사재단은 내무성의 질의서를 『태정관지령』을 대표하는 문서로 전시하고 있으며, 『태정관지령』을 1870년 일본 외무성의 내부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보다 더 작은 크기로 전시했다(2016.5.17 현재).

27) 정태만(2014), 위의 논문, pp.36-37

4.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와 훈령(SCAPIN) 제677호

1)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훈령에 의한 독도분리

독도는 카이로선언(1943년 12월 1일)에서 규정하는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에 의해 일본이 빼앗은 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에 요구한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은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항복문서에 일본이 서명(1945년 9월 2일)한 시점에, 한반도와 함께 반환되었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절차의 이행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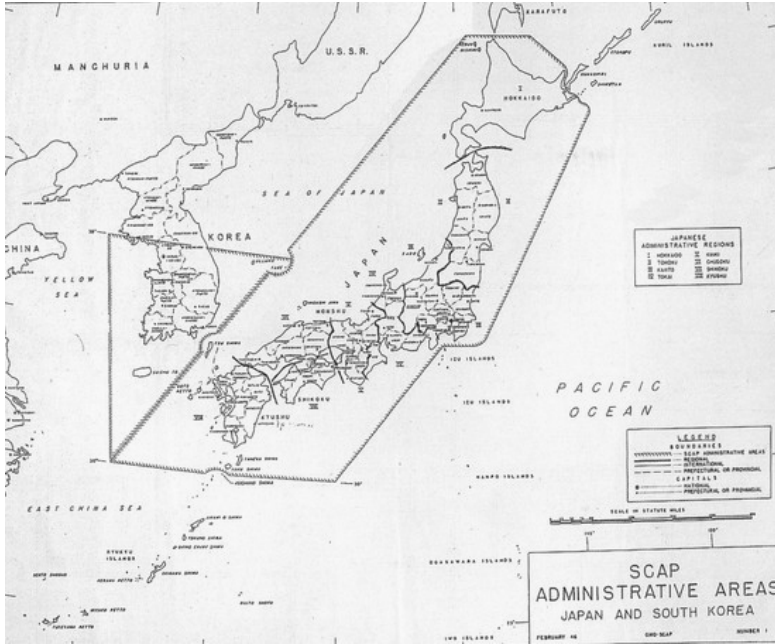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훈령(SCAPIN) 677호(1946.1.29)로 독도를 통치권적·행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 또한, SCAPIN 1033호(1946.6.22)로 일본의 어업허가구역을 공포하여, 독도로 부터 12마일 이내에 일본선박의 접근을 금지했다. 독도는 통치권적·행정적 관할구역 및 어선조업구역의 양면(兩面)에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²⁸⁾

이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항복문서(1945.9.2)에 근거한 구 일본 영토의 분할을, 통치권적·행정적 조치로서 뒷받침한 것이다. 즉,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영토에 대한 반환과, 추가적인 조치로서 일부 ‘작은 섬’들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중 한국 주변의 섬들에 대하여는 SCAPIN 677호 제3항의 (a)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제외했다.²⁹⁾

28) 어선조업구역은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에 의해 약간의 변경을 거쳤으나, 통치권적·행정적 관할구역은 독도에 관한 한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시까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10.

29)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

〈그림 3〉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SCAPIN 677) 제 3, 4항
 제목: 일정 일본 외곽지역에 대한 통치권적, 행정적 분리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定義)되며, (일본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제도(구 치노시마 제외)이고, (일본에서)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 Island), 제주도, (중략)

4. 또한, 일본제국 정부의 통치권적, 행정적 관할권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a) 1914년의 세계대전 이래, 일본이 위임통치 그 외의 방법으로 탈취 또는 점령한 전태평양 제도. (b) 만주, 대만, 평후(澎湖)열도. (c) 한국 (korea) 및 (d) 사할린³⁰⁾

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7.

30)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SCAPIN 677호는 제3항과 4항에서 구(舊) 일본 영토를 통치권적·행정적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분할하고 남은 영토를 일본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이러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³¹⁾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SCAPIN 677) 제5항 5. 이 지령에 규정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금후의 모든 지령·각서·명령에도 적용된다.³²⁾

SCAPIN 677호는, 한국과의 영토문제에만 한정하여 생각하면,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 것을 일본(Japan)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Korea)의 경우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한 것을 한국(Korea)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의(定義)는 독도문제에 관한

POWERS (29 January 1946) (SCAPIN 677)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ima Islands and the Ryukyu(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국사편찬위원회(2008), 『독도자료 I 미국편』, p. 1)

31)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18

32)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국사편찬위원회(2008), 앞의 책, p. 1)

한, 그 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체결·발효시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³³⁾

2) 독도가 남한지역에 속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SCAP관할지역도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는 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국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에 의한 영토분할 내용을 지도로써 보다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는 SCAPIN 제677호와 함께 이 지도를 발간했는데³⁴⁾,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간접통치 지역인 일본과, 직접통치(미군정) 지역인 한국(South Korea)을 구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도 한국에 소속시켰다. SCAPIN 제677호에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에서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 의해 독도의 소속이 한국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³⁵⁾

〈그림 3〉과 같이, 울릉도는 'ULLUNG'로, 독도는 일본명 다케시마의 'TAKE'로 표기되어 있고, 한일간 관할구역 경계선은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독도 부근에서 반원 곡선으로 그려져, 독도가 한국(당시는 하지 중장에 의한 미군정) 관할구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한국 영역에 표기하는 방식은 그 후 1951년의 「일본영역참고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위치관계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적인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맥아더 원수는 일본정부를 그대로 둔 채로 일본을 간접 통치하고,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은 남한지역을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단순히 연합국 최고사령부 내부의 관할구역 설정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

33)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18-119

34) 신용하 편(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 256.

35) 정태만(2014), 위의 논문, p.120

미를 가진다.³⁶⁾

SCAPIN 677호와 「SCAP관할지역도」에 의한 독도 한국령 공포 조치는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발효시까지 연합국에 의해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독도에 관한 한, 연합국에 의해 이와는 다른 내용이 공포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제정한 총리부령, 대장성령³⁷⁾ 등의 법령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³⁸⁾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독도 관할권 인수

1948년 8월 15일, 종전 후 주한미군에 의한 통치를 받은 지 만 3년 만에 한국은 역사적인 자체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간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³⁹⁾에 의해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으로부터 관할지역의 통치권을 이양받았다.⁴⁰⁾ 이 협정은 1948년 8월 9일 및 11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eed Hodge)중장 사이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었다.⁴¹⁾

36)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0

37) 이는 최근에 공개된 일본 대장성령 제4호(1951.2.13)와 총리부령 제24호(1951.6.6)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8) 정태만(2014), 위의 논문, p.120

39) 8월 11일자 교환각서의 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로 되어 있다(외무부 방곡국편(1948-1961), 『조약집』: 양자조약 1, pp. 234-23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1981), 『國防條約集』 第1輯, pp. 30-33).

40) 김진홍(2006), 「일본에 의한 독도 침탈과정과 연합국에 의한 독도 분리과정에 관한 고찰」, 『독도논총』 제2호, 독도조사연구학회, p. 60.; 이대근(2002),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p. 155.

41) 정태만(2014), 위의 논문, p.127.

당시 독도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Korea)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한미군(미군정)의 통치하에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Korea)의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이양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에 의해서도 국제법상 합법적 정부로 공인되었다.⁴²⁾

카이로선언에서 규정하는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땅에 해당하는 독도에 대하여는,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1945.9.2)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SCAPIN 677호(1946.1.29)에 의해 구일본제국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으로 그 반환절차가 종료된 것이다.⁴³⁾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연합국의 훈령(SCAPIN 677)에 의해 정해진 영토범위대로, 즉 독도를 포함한 통치권을 인계받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명시된 바 없었고, 어느 나라의 항의도 받은 적이 없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당연히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일평화조약이 체결(1951.9.8)되기 3개월전인 1951년 6월 20일 주한미8군 부사령관 존 쿨터(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의 장면 총리⁴⁴⁾에게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장면총리는 7월 7일 이를 허가했다. 이는 독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을 3년간 통치한 주한미군이 독도를 완전히 한국에 인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같은 시기에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임의로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다시 지정(SCAPIN 2160, 1951. 7. 6)하여으로 혼선을 빚게 된다.⁴⁶⁾ 독도 영유권 귀속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

42)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8.

43) 정태만(2014), 위의 논문, p128.

44)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승만정권하의 국무총리를 말한다.

45) 정병준(2011), 앞의 책, pp. 931-933.; 정태만(2014), 위의 논문, p.128

46) 川上健三는 SCAPIN 2160호(1951.7.6)에 의한 독도 폭격훈련장 지정이 ‘1950년 7월 6일’에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古今書院, pp. 252-253), 이는 오류이다. 국내 연구자도 川上健三의 책을 인용

께 대한민국 영토로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대일평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다시 이슈화된다.

5.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와 샌프란시스코조약

1) 해상보안청에 의한 「일본영역참고도」 제작과 그 용도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는 그동안 은폐되어 오다, 2014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⁴⁷⁾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⁴⁸⁾ 조인 직전에 해상보안청에 의해 제작되어, 조약 조인후 비준 과정에서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조약의 부속지도로 쓰인 지도이다.

「일본영역참고도」에는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일본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어선조업허가구역’의 경계선이 독도 바로 위를 지나고 있고, 경계선 오른쪽에 명칭(竹島, Take Shima, Liancourt Rocks)이 기록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도 동쪽에 분명하게 별도의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기하고 있다.⁴⁹⁾ 이점에서 「일본영역참고도」는 1946년의 「SCAP관할지역도」와 표기 방식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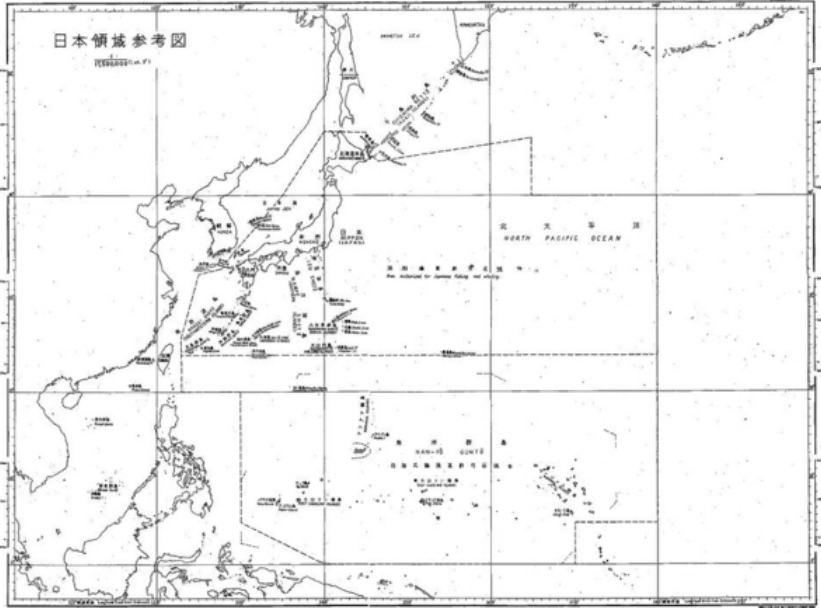
하여 1950년이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47) 「일본영역참고도」 공개 직후 동북아역사재단은 검증해 봐야 한다고 하여, 중요한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독도는 한국땅’ 인 증한 일본 지도 발견, 《중앙일보》2014.8.24)

48) 영문명칭은 'Treaty of Peace with Japan'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므로 통상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불린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 한다.

49) 그런데,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그려져 있다고 속기록을 잘못 번역한 책자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의해 발간되어, 이에 대한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1부』, p.43).

〈그림 4〉 「일본영역참고도」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에 의해 1951년 8월에 제작되었다.⁵⁰⁾ 이는 지도의 우측하단 난외에 ‘소화26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 調製’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⁵¹⁾ 샌프란시스코조약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었으므로, 조약 조인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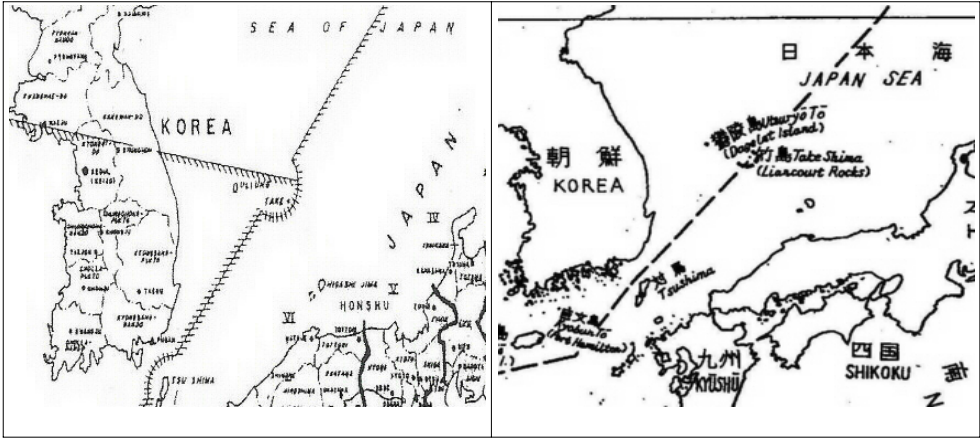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제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본영역참고도」는 ‘어선조업허가구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⁵²⁾ 그러나, 이는 다음의 4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⁵³⁾

50) 国立国会図書館 憲政資料室所蔵 芦田均関係文書 (寄託) 380-18.; <http://1953fevtakes.hima.hatenablog.com/>(2014.6.20. 열람) 에서 재인용.

51)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산하기관이다.

52)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8/iken-C.html>(2015.9.30 열람)

〈그림 5〉 「SCAP관할지역도」(1946년, 좌)와 「일본영역참고도」(1951년, 우)의 비교



첫째, 「일본영역참고도」는 영토에 관한 조약을 비준승인⁵⁴⁾하기 위한 국회에, 영토에 관한 조약의 부속지도로서 제출된 것이며, 둘째, 지도의 명칭에서도 ‘영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셋째, ‘어선조업허가구역’은 영역과 전혀 관계없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영역을 고려하여 어선조업허가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어선조업허가구역의 바깥은 일본영역이 아니라 라는 취지에서 그 바깥으로는 일본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것이다. 넷째,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일본영역참고도」에 표기된 그대로 일본영역이 되었다.⁵⁵⁾

53)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19-220

54) 일본헌법상 국회는 조약비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한국헌법에는 주요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55) 북위 29도선 아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신탁통치 대상이 되었다가, 그 후 「일본영역참고도」에 표기된 북위 24도선 이북의 섬들은 모두 일본에 반환되어 일본 영토가 되었다. 오키노 도리시마(沖の鳥島)만 북위 24도선 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최남단은 오키노 도리시마라고 하는데, 북위 20도에 위치하며, 섬으로서의 지위에 논란이 있다.

요컨대, 「일본영역참고도」에서 동해에 그려진 한일간의 경계선은 일본 어선 조업의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역’의 경계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⁵⁶⁾

2)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시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 제출과 부속지도로 사용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과정에서 조약 조인 직전에 제작(1951년 8월)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국회에 부속지도로 제출(1951년 10월)하였다.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에서는 195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차에 걸쳐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심의되었고, 10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되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10월 22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차에 걸쳐 심의 되었고, 11월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되었다. 독도에 대한 논의는 32차에 걸친 중의원·참의원 회의 중 중의원 6차회의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일본헌법상 조약의 비준권자는 내각이며,⁵⁷⁾ 중의원 및 참의원은 조약 비준시 승인권을 가진다. 일본 중의원은 총리 지명, 예산 의결, 조약 승인에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⁵⁸⁾ 1951년 11월 19일 ‘천황’이 비준서를 인증하고, 11월 28일에는 미국 정부에 비준서가 기탁되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미국이 비준절차를 마침으로

56) 부수적으로 어선조업허가구역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57) 毎日新聞社 圖書編集部 編(1952. 5.),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p.273.; 일본 헌법 제73조 제3호 참조.

58) 총리 지명, 예산 의결, 조약의 승인에서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의결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일본 헌법 60조 2항, 61조, 67조 2항).

써 발효되었다.⁵⁹⁾

「일본영역참고도」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준과정에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은 1953년 11월 4일의 중의원회의록에 의해 증명된다. 당시 가와카미(川上) 의원이 “평화조약을 비준할 때 국회에 제출한 부속지도라는 것이 있다. 그 부속지도를 보아도 다케시마는 분명히 제외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고다키(小瀧) 정부위원은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곧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⁶⁰⁾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에서 부속지도로 썼다”는 것은 “부속지도이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과 조약에 서명한 48개 연합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배부된 부속지도는 아니다.⁶¹⁾ 「일본영역참고도」는 조약 상대국인 48개 연합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일본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조약의 부속지도로서⁶²⁾ 비준 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⁶³⁾

59)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29

60) 이에 대하여는 ‘일본영역참고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속지도’로 쓰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국회에서는 ‘참고지도’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한국명으로 표기한 지도의 정부 제작과 국회제출만으로도 ‘독도를 한국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29-230

61) 대일평화조약은 초기에는 일본령인 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침부지도에 의해 경계선을 그어 명확히 하는 방식이 검토되었지만, 최종 조약에서는 두루무실하게 조약을 체결하기로 해서 부속지도를 만들지 않았다.

62) 국회 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영역참고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특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2015),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33회(35차, 2015.5.15), 『제19대 국회 회의록』, 특별위원회, p.11.)

63)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30.

3)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간략화와 「일본영역참고도」의 중요성

「일본영역참고도」가 중요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독도영유권 귀속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당시, 소련과의 분쟁대상이 된 하보마이(齒舞)군도나 미국의 신탁통치 대상이 된 태평양상의 섬들과 달리, 독도에 대하여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없었으며, 미국의 공개적인 입장표명도 없었다.

그런데, 조약 조인후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일본국회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조문과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를 부속지도로 하여 조약의 비준을 승인했다.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독도 한국령’을 인정한 것이다.⁶⁴⁾ 따라서 일본이 한국(Korea)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할 것을 규정한 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상으로도 ‘독도는 한국령’이 된다.⁶⁵⁾

「일본영역참고도」를 가지고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⁶⁶⁾ 일본 외무성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신문에 낸 것이나, 조약비준을 위한 국회에서 그렇게 갑론을박한 것은, 당시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증거능력·증명력 면에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평화조약 비준을 위한 국회에 제출한 법적행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

64)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228

65)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상 독도를 한국영토로 볼 수 있는 논리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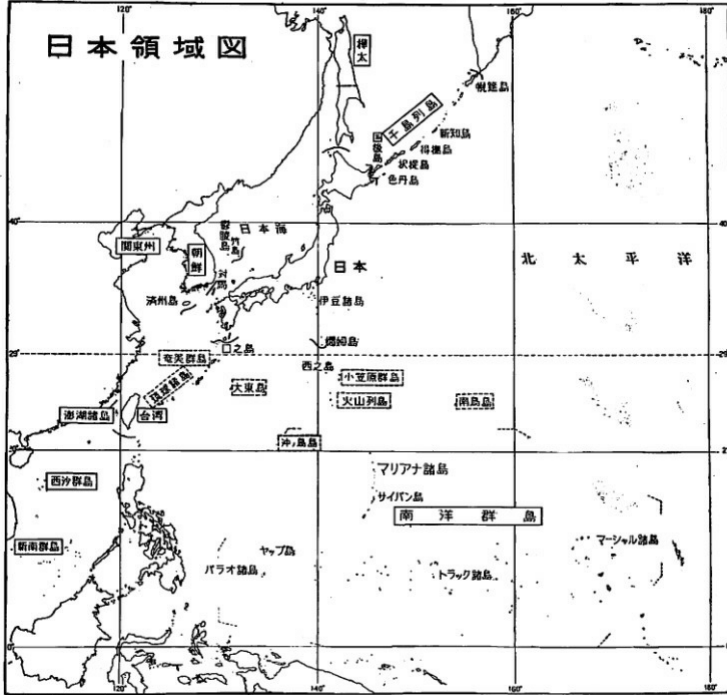
66) 박병섭(201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54-259; 박병섭(20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독도연구』 2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33-38

또한, 독도 이외에 다른 지역이 그 지도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으며, 그 다른 지역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독도 문제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은 각각의 사정이 있고 독도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영역참고도」에 일본 영역 밖으로 그려져 있는 하보마이섬(齒舞島)의 경우에는⁶⁷⁾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 땅임을 주장했으나, 독도의 경우에는 연합국을 상대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하보마이섬의 경우 「일본영역참고도」에 근거하여서는 일본영토 바깥(소련영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므로 「일본영역참고도」에 근거하여 한국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 직후에 제작된 또 다른 지도, 마이니치(毎日)신문사의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 <그림 6>)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조약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마이니치(毎日)신문사는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안쪽 표지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도」를 게재하였다. 이 지도에도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는 '竹島'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한국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67) 하보마이섬(齒舞島)은 일본영역밖인 것으로 경계선이 그려져 있으나, 섬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 애매하게 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코탄섬(色丹島), 구나시리섬(國後島), 에토로후섬(択捉島)은 명칭도 경계선 밖에 기재되어 있다.

〈그림 6〉 「일본영역도」



6. 맺음말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내무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독도를 조선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이며, 그 내용을 당시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했으므로 단순한 내부분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측에서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2006년에 공개된 「기죽도약도」에 의해 『태정관지령』에서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한 섬은 독도임이 명명백백해졌다. 또한, 일본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약 300년 전인

1690년대 안용복사건 때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으므로, 독도가 절대로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메이지(明治)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된다. 또한, 그 안용복사건 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에도막부가 확인한 기록이 바로, 소곡이병위가 제출 죽도지서부(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이며, 당시 이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図)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훈령(SCAPIN) 677호(1946.1.29)로 독도를 통치권적·행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로써 독도가 주한미군 관할하의 남한지역에 속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SCAPIN 1033호(1946.6.22)로 일본의 어업허가구역을 공포하고,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일본선박의 접근을 금지했다. 독도는 통치권적·행정적 관할구역 및 어선조업구역의 양면(兩面)에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과 함께, 주한미군으로부터 「SCAP관할지역도」에 표기된 그대로 독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의 관할권을 인계받음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체결(1951.9.8) 이전에 이미 국제연합(UN)과 세계 각국의 승인을 얻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독도문제가 일단락된 후, 대일(對日)평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일본과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도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들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미국전권대표 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와 같은 작은 섬은 그 영유권의 귀속이 조약에 일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약 조인 직전(1951년 8월)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제작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일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는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半圓)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SCAP 관할지역도」와 비슷한 형태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다시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부속지도로 일본국회에 제출하고(1951년 10월), 일본 국회는 「일본영역참고도」를 부속지도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의도했든 안했든 국제법적으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었던 것이 된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제작된 또 다른 지도, 마이니치(毎日)신문사의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일본영역도」에도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고, 국제법적인 증거능력·증명력이 큰 공적 지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판정과 관련된 4개의 공적 지도는 모두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기하고 있거나,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용복사건(1696년)과 『태정관지령』(1877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1951년) 때의 3번에 걸쳐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참고문헌】

- 박현진(2007), 「獨島 領有權과 地圖·海圖의 證據能力·證明力」, 『國際法學會論叢』 제52卷 第1號 (通卷 第107號), 대한국제법학회.
- 김명기(2009), 「국제법상 지도의 영토권원 인정 증거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이상태(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10, 2011.6, 7-62 (56 pages),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三田清人(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竹島(鬱陵島)・松島(竹島 / 独島)関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平成19年3月), 竹島問題研究会.
- 박병섭·나이토 세이추(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 池内敏(2009), 「江戸時代における竹島および松島の認識について」, 『독도연구』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수,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 비교」,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岡田卓己(2012), 「1877年 太政官指令「日本海内 竹島外一島ヲ 版圖外ト定ム」解説」, 『독도연구』 12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정태만(201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獨島研究』 제 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정태만(2015),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신용하 편(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외무부 방교국편(1948-1961), 『조약집』: 양자조약 1.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1981), 『國防條約集』 第1輯.
- 김진홍(2006), 「일본에 의한 독도 침탈과정과 연합국에 의한 독도 분리과정에 관한 고찰」, 『독도논총』 제2호, 독도조사연구학회.
- 이대근(2002),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정병준(2011), 『독도1947』, 돌베개.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古今書院.
-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I부』.
- 박병섭(20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독도연구』 2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毎日新聞社 圖書編集部 編(1952. 5),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 대한민국 국회(2015),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33회(35차, 2015. 5.15), 『제19대 국회 회의록』, 특별위원회.
- 박병섭(201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독도연구』 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254-259.

<Abstract>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official maps of Japan since the Edo period

Chung, Taeman

Dokdo is the attached island of Ulleungdo geographically. Historically, Japanese also regarded Dokdo as an island attached to Ulleungdo. In the 1690s, the An Yongbok Incident ended with Japanese prohibition of fishing in Ulleungdo by the Japanese Edo shogunate. Kotani Ihei Map was submitted to the Edo Shogunate from Tottori Prefecture at that time to explain that 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Since then, after confirming the result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of the An Yongbok Incident, Japanese Meiji Government confirmed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hosun's territory once again by 1877's Dajyoukan directive. Japan claims that Matsushima in Dajyoukan Directive is not Dokdo. However, the fact that Matsushima in Dajyoukan Directive is Dokdo has been clarified by the Isotakeshima Map, subsidiary map of Dajyoukan Directive, which was published in 2006.

The Supreme Command of the Allied Powers, which ruled Japa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eparated Ulleungdo an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on both sides of the jurisdictional area and the fishing area. In August 1948, the Dokdo issue was concluded, as it wa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peace treaty to make Japan independent from the occupation of the Allied Powers, Dokdo issue came out again due to the interests of the Allied Powers and Japan. At the end of the twists and turn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without reference to Dokdo, but the recently published Japanese Territory References Map shows that Japan had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at that time. Japanese government had produced a map of 'Dokdo in Korea' before sign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 was used as an attached map to the treaty in ratify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our Japanese official maps related to Japan's sovereignty over Dokdo from the Edo period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e showing Dokdo as a Korean territory or intended to show Dokdo as a Korean territory. Of these, except for the SCAP Map during the Allied Power's occupation, the three maps prov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Key words: Kotani Ihei, Dajoukan Directiv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Liancourt Rocks, Treaty of Peace with Japan, Dokdo, Japanese domain Map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 · 결정됨

일본의 해적어법 · 약탈어업과 평화선 · 독도에 대한 오해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
3. 약탈어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4. 약탈어업에 대한 한국의 대응
5. 이승만라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
6. 일본정부 성명의 '자발적 조치'
7.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에서는 이승만라인(평화선) 및 독도에 관한 오해가 심하다. 특히 이승만라인 선포는 그 당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다는 이해가 거의 일본인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 글은 최신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오해나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배경과 경위, 경과 등을 검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각국은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약탈어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후 곧 트루먼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을 맥아더라인 안에 제한했다. 이런 정책은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은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만들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은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비해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 등 대국이 선포한 어업관할수역이나, 혹은 일본 어선에게만 제한 조항이 있는 미·캐·일 어업조약 등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940년 당시에 일본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보존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억제한다는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연안에 '총독부 라인'을 긋고 보존어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 일본 독도=竹島연구넷 대표

이승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

주제어: 트루먼선언, 어업관할수역, 맥아더라인, 이승만라인, 총독부라인

1. 머리말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이승만라인(평화선)¹⁾ 즉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해양주권선언’으로 약칭)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오해가 심하다. 특히 독도와 관련된 오해는 한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화제의 인물이 된 박유하는 저서 『화해를 위해서』에서 “일본의 [이승만라인] 주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 즉 독도 때문에 일본인이 사살되기도 했고 한국이 어선을 나포했으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썼다.²⁾

박유하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저서 『다케시마는 일·한 어느 쪽의 것인가?』³⁾를 참고로 하여 이렇게 썼는데, 시모조 자신은 결코 “독도 때문에” 사살 사건이나 나포 사건이 일어났다고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하가 그렇게 오해한 것은 일본에서의 이승만라인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일본인은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선들이 많이 나포되었고, 독도 근처에서 나포된 어선 중에는 사살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믿고 있다. 언론도 그런 보도를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2006.4.20)에서 “일찍이 [한국은 독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많

1) 한국에서는 ‘해양주권선’에 대해 주로 용어 ‘평화선’을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다른 국제적 규제선과 표기 방식을 맞추기 위해 주로 ‘이승만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본고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다.

2)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atプラス』14号, 2012, 94쪽;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뿌리와이파리, 2005, 175쪽; 朴炳涉, 「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号, 2011, 24쪽.

3)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2004.

이 나포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간 포수토』는 독도 문제에 어민 사살 사건을 관련시켰다.⁴⁾ 이런 기사들에 대해 시마네현(島根縣)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후지이 겐지(藤井賢二)는 “다케시마 문제 때문에 일본인이 살해됐다고 하는, 사실에 어긋난 이런 기사의 논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⁵⁾

이런 일본인의 오해 내지 선입관을 이용했는지 일본 외무성이나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팸플릿에 반드시 이승만라인(리라인)을 기술하고 있다.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2008) 및 이를 개정한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2014)에서는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라고 썼다. 또한 시마네현 팸플릿 『다케시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2006)는 오키(隱岐) 도민들의 예로부터의 강치 잡이 등이 “갑자기 리라인 설정으로 인해 상황은 돌변, 1965년에 일·한 어업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300척을 넘는 일본 어선들이 한국 측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 중에서 시마네현 어선은 11척이며 승무원 114명이 연행 당했다”고 썼다.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아마 (A) 리라인의 설정으로 인해 오키 도민들이 강치잡이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B) 다케시마(독도) 주변에서 많은 일본 어선들이 나포 당했다고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A) 강치잡이가 중단된 것은 전쟁 때문에 어민들이 스스로 어업을 포기한 것이며 이승만 라인과는 무관하다.⁶⁾ (B) 시마네현이 말하는 어선 11척이 나포된 곳은 모리스 가즈오(森須和男)⁷⁾ 및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⁸⁾ 등의 연구에 의하

4) 「竹島はなぜ韓国に実効支配されてしまったのか」, 『週刊ポスト』, 42(43), 2010.10.22호, 52쪽.

5) 藤井賢二, 「島根県の漁業者と日韓漁業紛争」,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2011, 88-89쪽.

6) 朴炳涉, 前掲「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 23쪽.

7) 朴炳涉, 前掲「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 26쪽.

8)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II』, 선인, 2010, 203-204쪽.

면, 한국 남해 등이며 독도 근처에서 나포된 어선은 1척도 없었다. 따라서 “독도 때문에” 일본 어선이 나포됐다고 하는 박유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렇듯 일본 정부나 시마네현의 책략 혹은 아사히신문이나 박유하 등의 오해가 만연하게 된 이유는 이승만라인을 침범해 나포 당하고 한국에서 억류 생활을 보낸 어민들의 고난 및 “불법 이승만라인”을 선포한 한국 정부의 ‘폭거’가 일본 언론에 의해 널리 주지되어 이승만라인 안에 넣은 “독도 때문에” 나포나 사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단이 일본 국민에게 정착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승만라인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배경에는 오로지 ‘공해 자유의 원칙’을 믿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트루먼선언에서 시작된 어업 질서의 변화를 보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다. 또한 그런 변화를 초래한 것은 대전 전 일본 어업에 원인이 있다는 것에는 눈을 감으려 한다. 대전 전 일본 어선들은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공해 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세계 각지의 어장에서 마구잡이 어업을 했다. 그런 일본 어업은 각국에서 경계를 받아 때로는 ‘해적어법(海賊漁法)’, ‘약탈어업’이라는 오명을 받았다.⁹⁾ 그런데 ‘해적어법’이란 어떤 것인지 이에 관한 설명이나 연구는 거의 없으며, 그 실태는 분명하지 않는다. 본고는 그 실태를 살펴보고 또한 해적어법·약탈어업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런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선포한 이승만라인을 각국의 대처와 비교 검토한다. 또한 이승만라인 및 클라크라인의 경위와 경과에 관해 2007년 이후 일본 외무성이 순차적으로 공개한 문서나 일본 신문 기사, 문헌 등을 활용해 재검토한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를 이용한 어업 문제의 선행연구로서 최영호, 후지이 겐지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영호의 연구는 1952년 2월부터 시작된 제1차 한·일회담 어업협정 교섭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것이었다.¹⁰⁾ 후지이의 연구는 “이승만라인 선언은 ‘영해 3해리,

9) 《朝日新聞》社説, 1965.12.13, 「日韓條約と日本の漁業の進路」.

공해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그 당시의 해양법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는 입장에 머물고 있어 발전적인 내용은 거의 볼 수 없다.¹¹⁾

2.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어업은 세계 각국에게 위협이었다. 크고 작은 어선 35만 척이 조업하고 있었으며, 그 어장은 일본 주변을 비롯해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 대서양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서는 좋은 어장은 포경 등을 제외하면 연안 가까이에 한정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어업에 유리하도록 영해를 3해리로 좁게 주장하고, 그 이외는 공해이므로 자유로운 어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명분으로 일본은 각국 연안의 좋은 어장에 출어하여 각국으로부터 경계를 받았다. 게다가 일본은 트롤어업 등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가는 가차 없는 어법과 타국의 권리나 이익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인해 국제적인 반감을 사고 있었으며,¹²⁾ '약탈어업'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또한 일본 어업은 때로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 해적어법의 전형적인 예를 소련 연안 어업에서 볼 수 있다. 1920년대 소련은 12해리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일본 어선은 이를 개의치 않고 소련 연안 3해리까지 접근하여 연어 및 송어를 남획했다. 이를 발견한 소련 감시선이 일본 어선을 잡으려 하면, 일본의 해군 군함이 나타나 소련 감시선을 위압하여 쫓아냈다. 군함은 어업자들의 협력으로 아오모리현(靑森縣) 오미나토(大湊)항을 근거지로 삼아 오호츠크 해에서 일본 어선을 호위한 것이

10) 최영호,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50권, 2015.

11) 藤井賢二, 「韓国の海洋認識—李承晩ライン問題を中心に」,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1卷, 2011.

12) 天川晃 [ほか]編, 『GHQ日本占領史 (第42卷) 水産業』,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13쪽.

다. 일본 어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어선들은 “소련 감시선 등이 와서 조금이라도 일본 어선을 괴롭히면 곧 우두머리(해군)에게 일러바친다”고 했다.¹³⁾ 또한 게 잡이 어선의 경우, 무력을 배경으로 한 해적어법은 더욱 뚜렷하다. 당시 일로(日魯)어업회사 관계자인 후지타 이와오(藤田巖)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것(해군의 호위)이 없었으면 옛날에는 할 수 없었지요. 특히 게 가공선 등은 캄차카 서해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는 가능한 한 연안에 근접하지 않으면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물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해 3해리를 침범했다고 하여 [소련 감시선이] 잡으러 오거든요. 그것을 이쪽의 구축함에 알리면, 금방 출동하여 “너희들은 왜 붙잡느냐?”라며 위협해요. 그러면 저쪽은 항만 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나오면 혼내 준다고 해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잡으러 나올 수가 없지요. 붙잡힌 경우는 바로 석방하도록 교섭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우 활기차게 했습니다.¹⁴⁾

이처럼 일본 어선은 해군 무력을 배경으로 소련 영해 안에서 게 잡이를 했던 것이다. 이윽고 일본 어선들은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소련 근해에 회유하는 연어·송어를 잡기 위해 모선식(母船式) 유망(流網)어업 기술을 발전시켜 연어·송어를 공해에서 대대적으로 남획하기 시작했다. 이 어법은 남획 및 혼획(混獲)문제 때문에 현재는 유엔에 의해 대형선은 금지되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을 쇠퇴시킨다. 이런 대규모 유망어업 때문에 연어·송어 어획량이 한계에 이르자, 일본 어선들은 다음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1930년대에는 미국 알래스카 근해에 진출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성(農林省)은 1936년부터 연어·송어 시험 어업을 브리스톨(Bristol)만에서 시작했다. 그 당시 알래스카 주는 예산 세입의 50%를

13) 日本農業研究所, 『農林水産省百年史』中巻, 日本農業研究所, 1980, 759-761쪽.

14) 위의 책, 761-762쪽; 다케우치 다케시, 앞의 책, 58쪽.

연어·송어 어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브리스톨 만이 그 중심이었다.¹⁵⁾ 그만큼 중요한 어장에 일본 어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어업 단체는 맹렬히 반발했다. 1937년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에 따른 남경(南京) 대학살 사건 등과 아울러 브리스톨 사건이 보도되어 대일 감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¹⁶⁾ 이 때문에 일본은 알래스카에서의 어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미국인에게 일본은 어업 침략국이라는 낙인을 깊이 새기는 결과가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소련, 미국 근해에서 해적어법, 약탈어업을 저질렀는데 하물며 대국이 아닌 나라의 근해에서는 가차 없는 약탈어업을 저질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선진적인 기술, 어선, 어구 등을 구사하여 극동은 물론 호주, 동남아, 혹은 지구 반대편인 남미까지 트롤 어선이 진출하여 약탈어업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국제적인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이기도 했다. 일본은 ‘국제포경단속조약(1931)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남극해에서 포경을 했다. 또한 일본은 국제 조약에 가입했다가 조약을 파기시킨 일도 있었다. 1911년 일본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4개국 사이에서 ‘물개보호조약’을 맺었는데, 1940년에 이를 파기하는 통고를 하고 조약을 실효시켰다. 이런 일본의 행동이 패전 후에 엄한 반격을 받았다.

3. 약탈어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맥아더라인

대전 전 일본의 약탈어업을 문제 삼은 미국은 1945년 9월 일본 어업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하나는 후술하는 트루먼선언이며,

15) 川上健三, 『戦後の国際漁業制度』, 大日本水産会, 1972, 85쪽.

16) 다케우치 다케시, 앞의 책, 22-23쪽.

또 하나는 27일에 발표한 제1차 맥아더라인이다. 이 라인은 일본을 통치하는 연합군이 일본정부에 지령(FLOTLOSCAP-80)을 내렸는데 일본 어선의 조업 허가 구역을 제한한 것이다. 이 구역은 다음 해 6월 22일 SCAPIN-1033에 의해 확장되었다. 이는 제2차 맥아더라인이라고 불리는데 한국 근해에서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좋은 어장을 일본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한편 독도 근처에서는 제1차 맥아더라인과 거의 같으며 독도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¹⁷⁾ 다만 일본 선박은 독도에서 12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맥아더라인을 확장해도 이를 침범하는 어선이 속출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일본 정부가 무모하게 어선 건조를 허가하고 또한 건조하도록 용자해준 사실을 들 수 있다.¹⁸⁾ 이 때문에 어선이 과잉 건조되었고, 일본 연안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민들의 수입이 점점 줄었다. 특히 고등어 건착망(巾着網) 어업자나 저인망(底引網) 어업자는 도산하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있었다.¹⁹⁾ 곤경에 빠진 이들 어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포될 것을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맥아더라인을 침범한 것이다.

맥아더라인은 SCAPIN-1033/1(1948.12.23) 및 SCAPIN-2046(1949.9.19)에 의해 확대되었고, 1950년 5월에는 다랑어 어업이 SCAPIN-2097에 의해 남쪽 적도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등어나 전갱이 등을 잡는 어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책의 잘못을 알게 된 일본 정부는 5월 '수산자원 고갈 방지법'을 제정하고 감선(減船) 정리나 조업 구역 축소 등 조치를 취하고 보상금을 지불하고 어업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으며 여전히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어선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어선이 맥아더라인을 침범해도 일본 정부는 물론 SCAP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주변국들은 맥아더라인을 침범

17) 박병섭, 「「일본 영역 참고도」와 일본 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영토해양연구』 13호, 2017, 51쪽.

18) 朴炳涉, 前掲「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29쪽; 최영호, 앞의 글, 171-172쪽.

19) 朴炳涉, 앞의 글, 「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29쪽.

하는 일본 어선들을 독자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국이 나포한 일본 어선은 맥아더라인이 철폐되기 2개월 전인 1952년 2월 20일까지 소련이 151척, 한국이 89척, 중국이 77척, 다이완이 44척이었다.²⁰⁾

2) 미국 및 캐나다의 대응

일찍이 ‘브리스톨 사건’에서 일본의 어업 침략을 문제 삼았던 미국은 1945년 9월 28일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일본 어업을 엄두에 두고 대륙붕과 수산 자원 보존 수역에 관한 두 가지 선언, 이른바 ‘트루먼 선언’을 공표했다. 이 선언의 의의를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새 정책이 확립된 결과 미국은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어장인 알래스카에서 연어·송어를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생을 되풀이한 보존 노력과 과학적 경영에 의해, 미국은 알래스카의 연어·송어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뛰어난 진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연어·송어는 성숙하기까지 상당한 세월을 외양에서 지내기 때문에 미국 국민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 어느 쪽 사람이든 외양에서의 무제한 어업 활동은 연어·송어 어업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는 것이다.²¹⁾

위의 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본인을 말하는 것이며, 가와카미 겐조는 “이 선언은 단적으로 말하면 미국 근해 어장을 일본 어업의 진출로부터 지키려는 데 그 최대의 주안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강화 후의 일본 어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취해진 하나의 중대한 포석이라고 단정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²²⁾

20) 水産庁編, 『水産業の現況』 1952年版, 324쪽; 朴炳涉, 前掲「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30쪽

21) Press Release, Concerning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No.2668, 28 Sept.1945. (Department of the State Bulletin", Vol.13, 1945); 川上健三, 前掲書, 82-83쪽에서 재인용함.

22) 위의 책, 83쪽.

이 선언은 공해의 자유를 인정하는 당시의 국제법으로 보아 의문점이 많았으나, 일본 어선을 배척하려는 세계 각국은 미국을 비난하기는커녕 이를 환영했다. 다음 달 아메리카대륙에서는 멕시코가 대륙붕선언을 선포하고 어업 자원 보존 수역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1950년 말까지 아르헨티나, 파나마,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 공해상에 최대 200해리에 달하는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했다. 아시아에서는 사우디, 필리핀, 파키스탄, 이즈라엘, 호주 등이 대륙붕선언을 선포했다. 이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및 파키스탄은 관할 수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²³⁾

이런 흐름은 1955년 해양법회의를 거쳐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 연안국의 경제수역 관할권을 인정하는 새 국제법의 확립을 향했다. 이것이 현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확립으로 이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트루먼선언 후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맥아더라인이 폐지될 것에 대비하여 미국 서해안 어장을 일본 어선으로부터 지키려고 애썼다. 덜레스(John F. Dulles)는 대일 강화 7원칙(1950.11.24)에서 “일본은 마약 및 어업에 관한 다수 국가 간 조약에 가입할 것에 동의한다”는 항목을 넣었다. 이에 대해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다음해 2월, 공해라 할지라도 어장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은 미국이 걱정하는 태평양 동쪽이나 베링 해에서의 보존 어장에서 일본이 1940년에 조업하지 않았던 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억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 어장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각국과 속히 어업 교섭을 할 것을 덜레스에게 약속했다.²⁴⁾ 일본은 이런 약속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정부 성명을 7월 13일 발표했다.²⁵⁾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요시다 시게루는 미국이 우려하는 물개의 해상

23) 緑間栄, 『海洋開發と國際法』, 近代文芸社, 1995, 59-64쪽.

24)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1952, 302-320쪽.

25) 위의 책, 427쪽.

포획에 관해서도 자발적으로 억제할 것과 주권 회복 후에는 조약 가입 교섭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일본은 대전 전처럼 ‘공해 자유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 및 캐나다에 대해서는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5개월 전부터 어업 교섭을 시작하여 한 달 후에 가조인했다. 게다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10일 후 미·캐·일 어업조약(북태평양의 공해 어업에 관한 국제 조약)을 조인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각국과 앞으로 행할 어업 교섭의 기초가 되므로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주목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공해 자유의 원칙’ 및 ‘평등의 입장’에 집착했다. 조약은 전문에서 “주권국으로서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해의 어업 자원을 개발할 각자의 권리에 비추어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글을 강조하여,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1조 2항은 “본 조약은 어떠한 규정도 영수(領水)의 범위 또는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체약국의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존중했다.²⁶⁾ 또한 조약 부속 의정서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그림 1> ①과 같이 서경 175도 동쪽에서 연어, 송어, 청어, 넙치(halibut) 잡이를 억제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조약은 훗날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철폐 논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²⁷⁾ 실제로 이 규정에 대해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을 어떤 특정국의 실질적인 독점하에 놓는 것이며 불공평하고 또한 공해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²⁸⁾ 게다가 일본 어선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조약이 말하는 “국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26) 「日米加漁業條約全文」, 『水産界』, 809号, 1952, 60쪽; 지철근, 「어업관할수역(평화선)과 최근 각국 어업조약의 국제적 동향」 『국제법학회논총』 제2호, 1957, 107쪽.

27) 「日米加三国漁業會議最終本會議における日本代表部の挨拶」, 前掲 『水産界』, 135쪽.

28) 「抑止原則とは(日米加漁業條約の改定問題にからんで)」, 『時の法令』 478号, 1963, 34쪽.

보존 조치를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 조사도 없이 처음부터 일본 어선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교섭에 참가한 일본 대표자는 “조약에서는 공해 어업 자원의 개발은 모든 국가에 평등한 기초에서 개방된다”는 일본 측 의견이 충분히 양해됐다고 평가했다.²⁹⁾ 이 발언이 대표자의 강변이라는 것은 누구에 눈에도 뚜렷했다. 이런 불평등 조약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는 맹렬한 비판이 있었다. 비판 중에는 앞으로 가질 외국과의 어업 교섭에 영향을 미치며, 이승만라인에 핑계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 교섭에 주목하고, 주일 대표부(현재 대사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회담 내용을 파악했으며,³⁰⁾ 이 조약을 어업관할수역에 관한 주장에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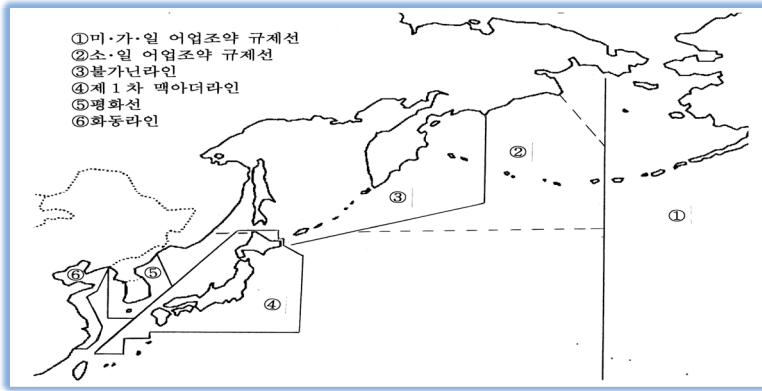
3) 중국 및 다이완

1950년에 들어서자 일본 어선들은 맥아더라인을 침범해 황해나 동중국해까지 출어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해 12월 중국 정부는 연안에 ‘기선 저인망(機船底引網)어업 금지구역 및 발해 만에 ‘군사규제구역’을 설정하고 일본어선 5척을 나포했다. 이들 구역 <그림 1> ⑥은 일본에서 ‘화동(華東)라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폭은 최대 60해리에 달한다.³¹⁾ 또한 화동라인 남쪽은 경계가 명시되지 않는 군사 작전구역이며 역시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29) 「日米加三国漁業會議最終本會議における日本代表部の挨拶」, 『水産界』 809号, 1952, 67쪽.

30) 외무부 공개 자료,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어업관계 자료」.

31) 片岡千賀之, 「日中韓漁業關係史」, 『長崎大学水産学部研究報告』 87号, 2006, 20쪽. 화동라인은 ‘毛沢東라인’이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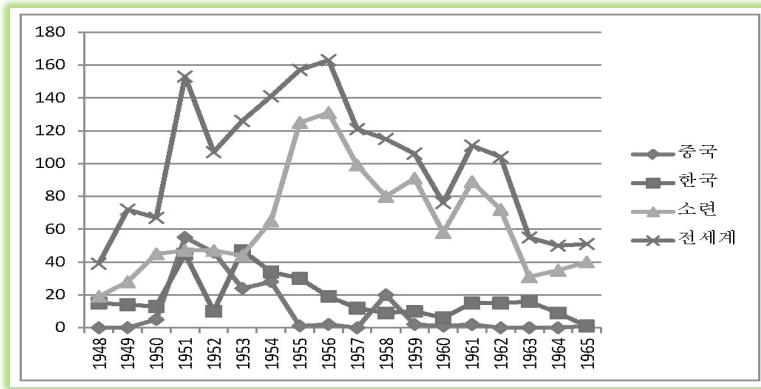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어선에 대한 규제선³²⁾

중국 정부는 화동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선을 1951년에 55척, 1952년에 46척 그 후에는 〈그림 2〉와 같이 나포했다. 이런 화동라인을 공해 3해리 설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일본 정부는 어선이 나포되어도 중국 정부에 거의 항의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화동라인은 어디까지나 중공(中共)의 국내 법규이며 일본은 이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견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이 라인을 묵인하여, 이 라인 안을 저인망 어업의 조업 허가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었다.³³⁾ 일본정부의 허가라는 것은 ‘민간어업협정’에 따라 출어하는 어선들에 대해 내린 것이다. 민간어업협정은 중·일 양국 간에 국교가 없어 정부 간 어업 협정을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일 양국 민간단체가 맺은 것인데, 이 협정은 화동라인 규제를 그대로 인정했다. 훗날 이 협정을 위반한 일본 어선들이 속출하고 민간어업협정의 존속이 위태롭게 되자, 일본 정부는 일본 어선들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선을 파견하고,³⁴⁾ 적극적으로 화동라인의 규제를 지켰던 것이다.

32) 朴炳涉, 「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2쪽을 개정.

33) 《朝日新聞》 1962.12.25, 「華東ライン 読者応答室から」.

34) 《朝日新聞》 1965.6.13, 「中国側、強く抗議」.



〈그림 2〉 주요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연도별 나포 ³⁵⁾

한편 다이완은 1948년부터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의 나포를 시작했다. 다이완도 영해 밖으로 ‘방위수역’을 설정했는데 규제 구역의 범위는 군사 기밀이므로 공표하지 않았다.³⁶⁾ 이 수역에 출어한 일본 어선이 ‘괴선(怪船)’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1954년 11월 22일 나가사키현(長崎縣) 어선 2척이 다이첸도(大陳島) 동쪽 농림(農林) 554구에서 충격을 당해 침몰하고 불행히도 2명이 죽었다.³⁷⁾ ‘괴선’은 간첩선을 단속하는 다이완 혹은 중국 선박이라고 생각된다.

4) 소련

1952년 일본의 모선식 연어·송어잡이 선단(船団)이 패전 후 처음으로 소련 근해에 출어했다. 이 해와 다음 해는 3선단이었는데, 1954년에는 7선단, 1955년에는 14선단, 1956년에는 19선단으로 늘었다. 일찍이 일본의 해적어법에 쓴 맛을 본 소련은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일본 어선의 규제에

35)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1979, 434-435쪽을 바탕으로 작성.

36) 《夕刊山陰》, 1953.10.6, 「国府も防衛水域」.

37) 《山陰新報》, 1954.11.22, 「漁船二隻が沈没」.

나섰다. 1956년 3월 캄차카 반도 주변 공해에 <그림 1> ③과 같은 이른바 불가닌라인을 설정했다. 이 수역에서의 조업은 소련정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이 조치는 소·일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 조치이며, 일본 어선들의 남획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일 어업 교섭 및 국교정상화 교섭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 직후 소·일 간 어업 교섭이 진전되고 5월에 어업 조약 ‘서북 태평양 공해에서의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소련과의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결과 일본 어선에 대한 규제 구역은 <그림 1> 단선 ②와 같이 확대되었다.³⁸⁾ 이런 규제선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5) 호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폭격 피해를 입은 호주는 대전 후에는 “스스로를 태평양의 주요국”을 자임하고 태평양 안보 문제나 대일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호주는 일본을 통치하는 연합군 극동위원회 회원국이 된다든지, 영연방 제국을 대표해 SCAP에 조언을 하는 대일이사회(対日理事会) 회원국이 되는 등 활약했다.³⁹⁾

이렇듯 일본 사정을 숙지한 호주는 이른 시기에 맥아더라인 폐지 대책을 세웠다. 대일강화조약 조인 직전 호주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구상서(1951.8.14)를 보내, 호주는 대전 전에 근해 어장에서 “일본의 약탈 행위를 입었기 때문에” 강화조약 9조에 따라 일본과 어업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남획을 막기 위해 근해 어장에서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서간을 교환하고 싶다고 제의했다.⁴⁰⁾

38) 川上健三, 前掲書, 411-421쪽.

39) 菊池努, 「オーストラリアの対日講和外交」,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東京大学出版会, 1986, 193쪽; 朴炳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号, 2014, 40쪽.

이는 종전 이전 일본의 아라푸라(Arafura) 해에서의 진주조개 채취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제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호주의 '새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제의에 대한 검토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회답하여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8월 27일 호주 정부는 "제안은 새로운 혹은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만 편의적으로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일정 지역에서 일본 어부들을 배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협정을 목표로 한 것일 뿐이며, 말하자면 맥아더라인 규정의 잠정적인 연장이다"라고 주장했다.⁴¹⁾ 호주는 일본과의 어업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맥아더라인의 잠정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임의로 공해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특정 국가의 어선의 항행 혹은 어업을 제한하는 것 같은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호주 국내법에 따라 호주 국민과 평등하게 일본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9월 7일자 서간으로 잠정기간을 12개월로 변경했을 뿐 여전히 일본 어선의 조업 금지를 주장했다.

1952년 3월 호주는 '진주조개 어업법'을 개정했고,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에서의 진주조개 채취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선언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 이 때문에 4월 25일에 맥아더라인이 폐지됐을 때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었다. 따라서 25일 이후 일본은 아라푸라 해에서 진주조개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호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은 자발적으로 어업을 억제한 것이다. 양국 간 어업 교섭은 1953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8월에는 결렬되었다. 9월 10일 호주는 '대륙붕주권선언'을 선포하고 호주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뉴기니 대륙붕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또한 10월에는 '진주조개 어업법'을 개정하고 대륙붕에서의 진주조개

40) 川上健三, 앞의 책, 284-286쪽.

41) 위의 책, 286쪽.

채취를 규제했다.⁴²⁾

이런 조처는 모두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호주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할 것을 호주 정부에 제의했다.⁴³⁾ 호주도 이에 동의하고 양국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잠정조처를 1954년 5월에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 제소는 최종 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은 실현되지 않았고 1958년에 ‘제네바 4개 해양법 협약’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항의 구상서는 “공해의 어업 자원은 만민의 개발, 이용을 위해 개방되어야 할 공유 재산이며, 그 자원의 지속적 최대 생산성 유지를 위한 규제는 그 개발, 이용에 대한 참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⁴⁴⁾ 직접 ‘공해 자유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미 미·캐·일 어업협정에서 ‘공해 자유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호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듯하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호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출어를 자발적으로 억제했다는 사실이다.

6) 각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

대전 후 일본 어선은 세계 각국에서 영해나 어업 규제선을 어겼으므로 나포 당했다. 이승만라인이 철폐되는 1965년까지 각국이 나포한 일본 어선은 소련이 가장 많으며 1,146척, 한국이 320척, 중국이 187척, 미국이 53척, 다이완이 51척, 인도네시아가 23척, 필리핀이 13척, 북한이 9척, 파키스탄이 4척, 호주·에콰도르가 각각 3척, 스페인·멕시코가 각각 1척이며 모두 합쳐 1,814척이었다. 이들 중에 주요국에 의한 연도별 나포 추세는 <그림 2>와 같다.⁴⁵⁾

42) 위의 책, 6쪽.

43) 緑間栄, 前掲書, 70쪽.

44) 위의 책, 70쪽.

4. 약탈어업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해양주권(이승만라인) 선언

1950년 후반기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맥아더라인 경비가 소홀하게 되자 일본 어선들이 남해에 대거 출어하게 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한국 정부는 1951년에 들어와 단속을 강화하고 일본 어선을 3월에 10척, 4월에 23척 나포했다.⁴⁶⁾ 4월에 나포된 어선이 많았던 것은 연합군 해군 함정이 군집한 일본 어선을 만나 이들을 나포했기 때문이다.⁴⁷⁾ 이런 집단적인 일본 어선들의 불법행위에 분격한 한국 국민은 이순신 장군 생일인 4월 8일 맥아더라인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한국 어민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자, 7월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은 델레스에게 심각한 한일 간 어업 문제를 설명하고 대일 강화조약에 맥아더라인 존속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⁴⁸⁾ 그러나 델레스는 복잡한 어업 문제 때문에 강화조약 조인이 늦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강화조약에서 어업 문제를 분리하는 대신 조약 9조에서 일본은 어업 교섭을 원하는 연합국과 속히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맥아더라인의 존속이 어렵게 되자, 10월 한국은 한·일회담 예비회의에서 강화조약 9조에 따라 어업 교섭을 시작할 것을 일본 측에 제의했다. 한국은 조약 9조가 말하는 연합국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9조 등이 적용된다고 21조에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회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회담의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어업 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은 맥아더라인을 지킬 생각이 있을지를 질문했으나

45) 朴炳涉, 前掲 「竹島=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34쪽.

46) 森須和男, 「李ラインと日本船拿捕」, 『北東アジア研究』 28号, 2017, 91-92쪽.

47) 日韓漁業協議會, 『日韓漁業對策運動史』, 日韓漁業協議會, 1968, 58쪽.

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p.1205-1206.

일본은 명확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태도를 보고 외무부 김동조는 “일본은 평화조약의 비준에 의해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후에 실력행사에 나서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미·캐·일 어업조약을 분석한바 “일본 측이 미국·캐나다 등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없으나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공해 자유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⁴⁹⁾ 게다가 1952년 1월에 들어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맥아더라인의 조기 철폐를 SCAP 총사령부와 교섭한다는 뉴스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검토 중이던 해양주권선언을 급히 18일에 선포했다고 한다.⁵⁰⁾

한국 연해에서는 맥아더라인을 침범하고 나포된 일본 어선이 앞에 쓴 바와 같이 1952년 2월까지 89척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5척은 좌초한 어선들이었다.⁵¹⁾ 이들은 너무 육지나 섬에 접근했기 때문에 좌초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영해 침범이었다. 바로 약탈어업의 전형적인 예다. 일본 정부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이 많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2차 한일 회담 어업위원회(1952.6.29)에서 “일본 어선의 한국 영해 침범이 많다고 하므로 이런 사태의 방지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일·한 어업 협정 요강」을 제출할 정도였다.⁵²⁾ 한국 영해조차 자주 침범하는 일본 어선의 마구잡이 어업에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한국 어장이 머지않아 쇠퇴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위 조치로서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한 것이다. 해양주권선언의 성격은 호주처럼 일본과의 어업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맥아더라인의 잠정적인 연장을 도모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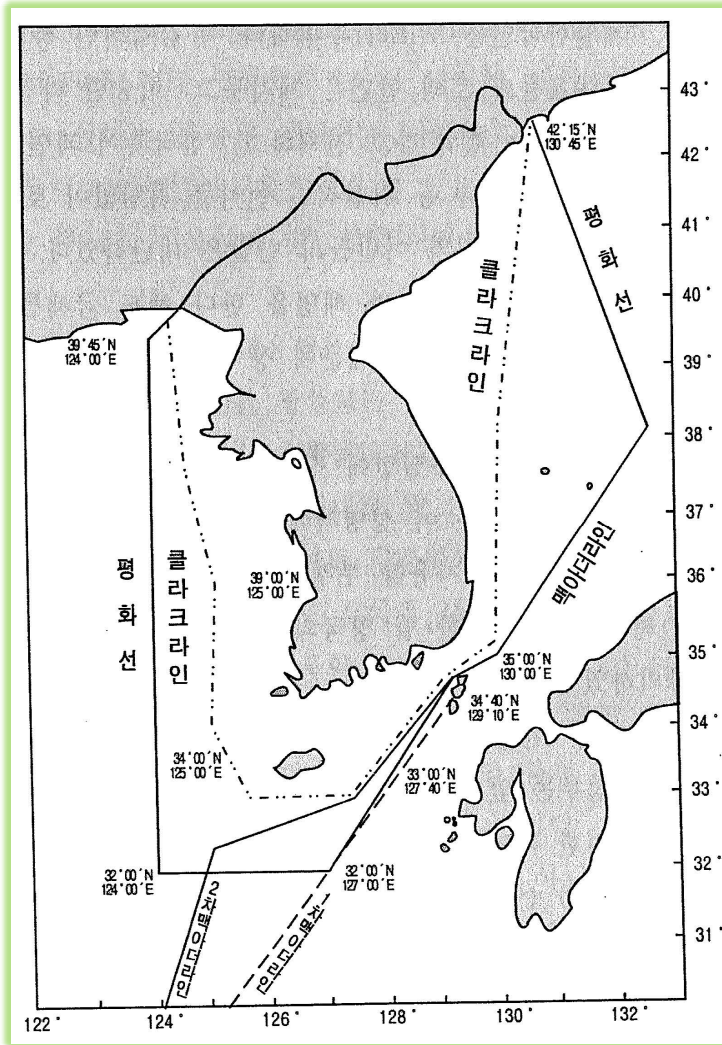
49) 浅野豊美·吉沢文寿·李東俊,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第1期7卷, 現代史料出版, 2010, 47쪽.

50) 浅野豊美·吉沢文寿·李東俊,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第1期7卷, 現代史料出版, 2010, 47쪽.

51) 水産庁編, 前掲書, 324쪽; 朴炳涉, 前掲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 29-30쪽.

52) 浅野豊美ほか, 前掲書, 基礎資料編第1卷, 17쪽.

이며, 동시에 어업 협정 체결의 촉진을 노린 소련 불가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평화선(이승만라인), 맥아더라인, 클라크라인⁵³⁾

53) 최종화, 『현대 한일 어업 관계사』 23쪽.

해양주권선의 범위는 <그림 3>와 같이 한·일 간에서는 제1차 맥아더 라인과 거의 같다. 한국은 제2차 맥아더라인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제1차 맥아더라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해양주권선은 독도를 포함하도록 구획되었다. 당초 수산국 초안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은 어업 가치가 높지 않으므로 독도는 해양주권선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무부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한 것이다.⁵⁴⁾

이 해양주권선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는 중국 화동라인을 묵인한 자세와 전혀 다르다. 게다가 항의문은 독도에 관해 “한국 측은 다케시마(獨島)로 알려진 일본해동해의 소도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런 참칭(僭稱) 혹은 요구를 인정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구상서에 독도를 넣도록 제안한 자는 가와카미 겐조이다.⁵⁵⁾

한편 일본 정부는 소련이나 한국 등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 대책으로 5월 ‘나포사건 대책’을 세웠다. 한국에 대한 대책은 일본 어선들이 ‘한국 영해’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 지도하고, 더불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순시선 2척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중점 수역으로 A, B, C라인을 정했다. C라인은 전라도와 제주도와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직선, B라인은 C라인에 이어 경상남도 와 쓰시마(對馬)와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직선, A라인은 B라인에 이어 북쪽으로 북위 38도까지 가는 직선이다. 이 대책은 해양주권선을 어기고 나포되는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어민들에게 “이승만라인을 개의치 않고 나가라”고 지도했으므로 어민들은 “위험을 각오하고 속속 출어했다”고 한다.⁵⁶⁾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 어선의 해양주권선 침범을 묵과하지 않았다.

54) 金東祚, 『韓日の和解』, サイマル出版会, 1993, 11쪽; 朴炳涉, 前掲 「竹島 = 獨島漁業の歴史と誤解(2)」, 32쪽.

55) 外務省,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 「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15-52쪽.

56) <朝日新聞>, 1952.11.16, 「ラチのあかぬ「防衛水域」」.

8월 14일 제주도 동남쪽에서 제5 시치후쿠마루(七福丸)를 나포, 9월 12일 제주도 남쪽에서 제28 가이호마루(海鳳丸), 제2 및 제5 쇼주마루(松壽丸)를 나포했다.⁵⁷⁾ 이즈음 일본이 자국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순시선이 순회한다는 방송 뉴스가 한국에 전해졌다. 앞의 ‘나포사건 대책’의 실시다. 이를 알게 된 한국 정부는 21일 국방·외무·법무 관계자가 긴급 회의를 열어 “해양주권을 고의로 침입하는 일본 어선에 대처하는 해군 당국은 무장 경비정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초계중이며 유사시에는 발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다.⁵⁸⁾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를 우려한 주일 미국 대사 머피(Robert D. Murphy)는 24일 일본 외상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에게 ‘나포사건 대책’ 중 C라인을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C라인에 격분하여 “일본에게 선전포고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⁵⁹⁾ 머피는 매주 정기적으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와 회담을 하며 한·일 간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⁶⁰⁾ 일본 정부는 미국 해군이 일본 어선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머피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2) 방위수역(클라크라인)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에 선전포고 한다”라는 강경한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주권선 문제는 한·일 간에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클라크는 이승만 대통령과 상의하여 공산군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

57) 《朝日新聞》, 1952.10.9, 「韓国海軍, 日本漁船再び捕獲」; 日韓漁業協議會, 前掲書, 44쪽.

58) 《東亞日報》, 1952.9.23, 「主權線侵犯時發砲」.

59) 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Ⅲ(第6次日韓会谈文書公開, 文書番号 1915), 46쪽.

60) Robert Murphy, 「Security information」, RG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Entry 2846,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Box. 4.

해 <그림 3>와 같은 방위수역(클라크라인)을 선포했다. 이 선포는 해양주권선을 둘러싼 한·일 간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방위수역의 범위는 해양주권선보다 약간 좁다.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방위수역 안에 넣도록 클라크에 요청했으나, 이는 전시를 감안한 일시적인 봉쇄선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¹⁾

유엔군은 방위수역 선포 당시 특히 “일본 어선도 그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했다.⁶²⁾ 그렇다면 일본 어선은 방위수역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어민들은 이를 환영했으며 한국군은 나포 체제를 강화했다. 10월 4일 한국 정부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에 의한 포획심판령 및 대통령령 제703호로서 고등포획재판소를 개설하여 이승만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⁶³⁾ 실제로 단속하는 해양경찰대도 내무부에서 해무청으로 이관하고 단속 체제를 강화했다. 10월 13일 제주도 동쪽에서 방위수역을 침범한 일본어선 40 수척에 대해 한국 군함 3척이 총격을 가하여 규슈(九州) 지방 어선 제2 고헤이마루(こうへいまる)를 포획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 어선을 곧 석방했다.⁶⁴⁾ 또한 25일에는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순시선 이키(いき)를 총격, 정지시키고 입검했다.⁶⁵⁾

이 당시 일본 수산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방위수역 안에서 어선 1,753척, 어부 31,961명이 출어하고 연간 어획고 74억 엔을 올리고 있었다.⁶⁶⁾ 만약 이들이 출어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외무성이 주일 미국대사관에 방위수역으로의 출어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 “유엔군 군사 행동의 수행을 저해할 요소가 된다고 생각되면 퇴거하도록

61) 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水友會, 1987, 1161쪽.

62) 日韓漁業協議會, 前掲書, 44쪽.

63) 최종화, 『현대 한일 어업 관계사』, 세종문화사, 2000, 26쪽.

64) <朝日新聞>, 1952.10.15, 「三隻は韓国軍艦」.

65) 森須和男, 前掲論文, 93쪽.

66) 參議院法制局,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1953, 40쪽.

경고한다”는 회답이 14일에 있었다. 이로써 외무성은 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대사관에 일본 어선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표지를 붙여 출어시킬 것을 전했다. 또한 ‘한국 측 불법행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유엔군사령관에 주선을 당부했다.’⁶⁷⁾ 그러나 머피는 20일 외무성에 “일본 어선은 작전 상 무해(無害)통항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위수역 안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전했다.⁶⁸⁾ 이 때문에 방위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3로 줄었다고 한다.⁶⁹⁾

이런 혼란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어선은 별로 다른 나라 어선과 차별 대우를 받을 것 없이 출어가 가능하며, 암암리에 유엔군이 그 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외무성은 설명했다. 어선에 ‘출어 확인 교부증(出漁確認交付証)’을 발행하여 일장기 및 표지를 붙이고 출어하도록 지도했는데, 그렇게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배라도 유엔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방위수역 외로 쫓겨났다라고 보도하고, 외무성 판단이 잘못된 것을 비판했다.⁷⁰⁾ 실제로 나가사키현(長崎縣)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는 유엔군 해군 관계자도 방위수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본 어선에 경고하고 있었으므로⁷¹⁾ 외무성의 지도는 너무 무모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수역으로의 출어 문제에 대한 “외무 당국의 실태”에 대해 “어업 문제를 통해 드러난 그 무능함은 국민을 너무나 실망시켰다”고 엄히 비판했다.⁷²⁾

3) 다이호마루(大邦丸)사건

외무성의 방위수역에 관한 자의적인 해석이 불행한 다이호마루(大邦丸

67) 外務省, 앞의 책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 III, 3・51.

68) 《朝日新聞》, 1952.10.23, 「出漁は認められず」; 日韓漁業協議會, 前掲書, 48쪽.

69) 《朝日新聞》, 1952.11.16, 「ラチのあかぬ「防衛水域」」.

70) 《朝日新聞》, 1952.12.26 社説, 「出漁問題に対する外務当局の失態」.

71) 《朝日新聞》, 1953.2.20, 「韓国に嚴重抗議」.

72) 《朝日新聞》, 1952.12.26 前掲社説.

事件) 사건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1953년 2월 4일 후쿠오카(福岡)시를 본거지로 하는 제1 및 제2 다이호마루가 제주도 서쪽에서 방위수역을 침범했다. 한국 순시선이 이들에게 정선을 명했다. 순시선에는 해군 헌병이 동승하고 있었으나 유엔군 관할에 있지 않았다. 곧 제2 다이호마루는 명에 따랐는데 제1 다이호마루는 도주했기 때문에 순시선이 총격하고 승조원 1명이 부상했다. 제1 다이호마루도 정지했으므로 순시선은 이들을 나포했다.⁷³⁾ 순시선은 다이호마루 2척을 제주도로 연행하고 부상자를 병원에 옮겼으나 부상자는 사망했다.

사건의 처리를 보면, 사세보 주재 ‘조선 연안 봉쇄 호위 사령관’이나 ‘한국 주재 무관’ 등의 주선으로 다이호마루는 석방되고, 16일 유엔군에 호위되어 사세보로 돌아왔다. 이 배는 이틀 후 사세보 미군기지에서 석방되었다.⁷⁴⁾ 한국에서 석방될 때 다이호마루는 유엔군 ‘방위수역 봉쇄 사령관’으로부터 “앞으로 일본 어선은 일체 방위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만약 조업할 경우 나포하고 어선은 반환하지 않겠다”고 언도되었다.⁷⁵⁾ 역시 방위수역으로의 출어가 가능하다고 장담한 외무성의 설명이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방위수역은 출입금지이며, 따라서 나포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이호마루 선주는 유엔군 고급장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⁷⁶⁾ 다이호마루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침입했고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으므로 도저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① 불법행위에 대한

73) 나포 지점은 2월 25일자 《朝日新聞》에 따르면, 제주도 서북쪽 10마일(농림 274구), 日韓漁業協議會의 앞의 책 71쪽에 따르면, 제주도 서쪽 20해리(농림 283구), 한국정부 공보처 발표에 따르면, 동경 126도 6분, 북위 33도 29분이지만 어느 것도 방위수역 안에 있다.

74) 森須和男, 前掲論文, 113쪽.

75) 日韓漁業協議會, 前掲書, 72쪽.

76) 위의 책, 77쪽.

사과, ② 책임자의 처벌, ③ 손해배상, ④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총격이 합법적이었다고 반론하고 요구를 거부했다.⁷⁷⁾

이 사건에 대해 앞에 쓴 바와 같이 박유하가 오해하여 “독도 때문에” 사살 사건이 일어났다고 썼지만, 사살 사건은 유엔군 방위수역에서 일어난 것이며 독도와는 무관하다. 결코 “독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한편 박유하가 참고로 한 시모조 마사오의 저서는 “1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안에 출어한 일본 어선의 나포를 지시, 2월 4일에는 일본의 제1 다이호마루가 나포되고 어로장(漁勞長)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적었다.⁷⁸⁾ 시모조는 사건이 방위수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즈음부터 ‘해양주권선’ 대신에 ‘평화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⁷⁹⁾ 한편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이에 따라 8월 27일 유엔군은 방위수역의 운용을 정지했다. 방위수역의 존속 기간은 11개월이었는데 이 사이에 나포된 일본 어선은 1952년 12월에 3척, 다음해 2월에 3척, 3월에 3척, 모두 9척이었다.⁸⁰⁾

4) 이승만라인 수호

1953년 8월 27일에 방위수역의 운용이 정지되자, 다음날에는 일본 어선들이 대거 이승만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남해에서는 고등어의 성어기인 지라 일본어선 60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순천경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⁸¹⁾ 한국 군경은 일본 어선을 9월 6일에 1척, 7일에 2척을 나포하여 이

77) 위의 책, 73쪽.

78) 下條正男, 前掲書, 145쪽.

79) 박창건,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日本研究論叢』 39호, 2014, 49쪽.

80) 森須和男, 前掲論文, 93쪽.

81) 《京郷新聞》, 1953.9.5, 「警察隊現地出動」.

승만라인을 단호하게 지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군함 115호는 제주도 부근을 순회하고 있던 일본 수산청 감시선 제1 세이요마루(成洋丸)에 대해, 7일 24시를 기해 이승만라인 안으로 일본어선이 출입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므로 부근에 있는 어선들에게 시급히 연락하도록 통고했다.⁸²⁾ 8일 내무부 치안국장 문봉제는 이승만라인과 영해를 침범하는 어선을 발견하면 즉시 나포할 것이며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발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⁸³⁾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선 중에는 “[한국 감시선을] 두려워하여도 할 수 없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여 조업하고 있는 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일본 어선에 의해 제주도 근해는 100척을 넘는 어선들의 어화(漁火)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⁸⁴⁾ 해군은 이런 어선을 9월에 32척, 10월에 13척, 11월에 3척 나포했고, 9월 27일에는 일본 수산청 감시선 제2 교마루(第2京丸)를 나포했다.⁸⁵⁾ 12월 한국 정부는 ‘어업자원보호법’을 시행하여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어선·어구·어획물 등을 압수하는 벌칙을 정했다. 나포된 일본 어선의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또한 이 시기는 독도 분쟁이 격화된 시기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탈취하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순시선을 17번 파견하였고, 독도에 일본 영토 표지를 4번이나 세웠다. 이런 일본의 침략에 한국 측이 반발하여 7월에는 독도에 침입한 일본 순시선 ‘헤쿠라(へくら)’를 문책하고 도망가는 헤쿠라를 총격했다.⁸⁶⁾ 이런 독도 분쟁 및 이승만라인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82) 《朝日新聞》, 1953.9.7, 「李ライン追出通告」; 日韓漁業協會, 前掲書, 82쪽.

83) 《東亜日報》, 1953.9.9, 「日漁船領海侵犯斷念視」.

84) 《毎日新聞》, 1953.9.9, 「豊漁、夜は火の海の盛漁」.

85) 森須和男, 前掲論文, 93-96쪽.

86) 박병섭,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독도연구』 17호, 2014, 209쪽.

5. 이승만라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

이승만라인 문제가 한·일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53년 10월 8일부터 시작된 제3차 한·일회담 때였다. 이 회담의 계기는 일본 어선의 대량 나포였다. 이 회담의 어업위원회에서 일본 측은 이승만라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⁸⁷⁾

① 공해를 일반적으로 구획하고 외국선이나 외국인에 관할권을 미치게 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습법에 반한다. 따라서 거기서 국내 법규로서 강제 조치를 행하는 것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② 어족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국 간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선례도 있다. 일방적인 관할권 설정은 불가하다. ③ 어업 능력의 차이 등 혹은 분쟁의 방지라는 것은 관할권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양국 어업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조처에 관해서는 일본 측에도 고려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반론 속에서 한국 측도 이승만라인을 ‘리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⁸⁸⁾

① 1951년 10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어업 문제 교섭을 일본에 제의했으나, 일본 측은 조약 발효에 따라 맥아더라인이 사라지면 한국 연안의 한국이 보존하고 있는 어장에서 자유로운 조업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또한 어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존중해야 할 맥아더라인을 무시하여 이를 침범하는 등 일본 측 성의는 의문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부득이 1952년 1월에 리라인을 선포했다.

② 어업 기술이 발달된 까닭에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측 자료가 말하는 바이다.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족을 보호 육성하고, 어업 자

87) 外務省, 「日韓交渉報告(再八)」, 1953.10.14, 日韓會談公開文書番号 177.

88) 외무부 공개 자료, 「제3차 한일회담(1953.10.6-21) 어업위원회 회의록」.

원의 계속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안국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일찍이 한국은 융희(隆熙)시대로부터 총독일제시대, 전후에는 맥아더라인이나 리라인, 클라크라인에 따라 한국만이 계속해서 어업 자원의 보존이나 개발을 했다.

③ 트루먼선언이 말하듯이 실질적으로 연안국 일국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역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은 앞으로 어족의 보호를 도모하고 어업 능력에 차이가 있는 한·일 어민들의 어업 교착(交錯)이나 일본 어민들의 남획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리라인을 선언했다.

④ 선언에서 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이는 제4항에서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선언은 영해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업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기본 취지는 트루먼 선언과 다름이 없다.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⁸⁹⁾

① 1951년 당시 일본은 일·미·캐 어업회의 준비에 바빠서 한국과의 교섭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일본은 결코 교섭을 연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음해 2월 평화조약 발효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한 회담에서 어업 문제를 다루었다. ② 트루먼선언에 관한 한국 측 해석은 완전한 오해다. ③ 한국의 리라인 강제 조치에 관한 실제 행동은 어업 목적에 한하지 않으며 주권의 전면적 발동과 다름이 없다. ④ 맥아더라인은 연합군이 일본의 점령 정책상 행한 것이며 동 라인이 사라지면 일본 어선이 공해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공해 자유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남미 등 국제적인 선례를 바탕으로 ‘어업관할수역’의 설정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일본의 선진적인 어업 기술을 구사한 약탈어업에서 연해어업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져, 세계적으로

89) 外務省, 前掲「日韓交渉報告(再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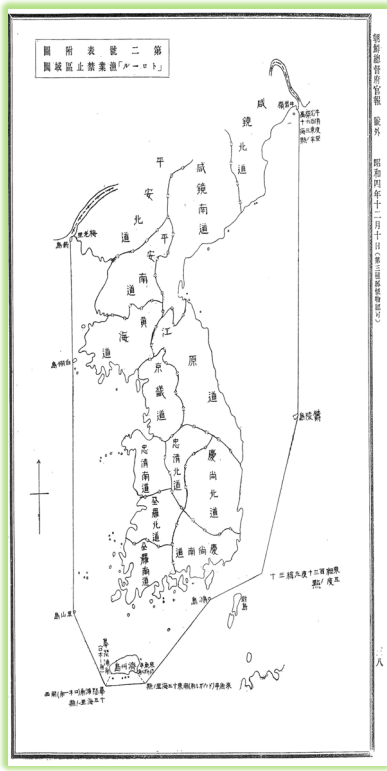
‘공해 3해리 설’로부터 트루먼선언을 거쳐, 어업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대륙붕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이윽고 공해를 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200해리로 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에 도달했는데 그 당시는 과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일 간 어업 대립은 어업의 신질서와 구질서의 대립이었다.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너무나 컸다. 게다가 양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겹쳐서 이승만라인 및 어업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양국은 교섭의 결렬을 피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어족 보존 구역 등 구체적인 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회의는 재산·청구권 위원회에서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망언 탓으로 결렬되고 말았으며, 이후 5년 동안 회담이 중단되었다. 그사이 한국은 앞의 ‘어업자원보호법’을 성립시키고 이승만라인을 침범한 일본 어선을 계속 나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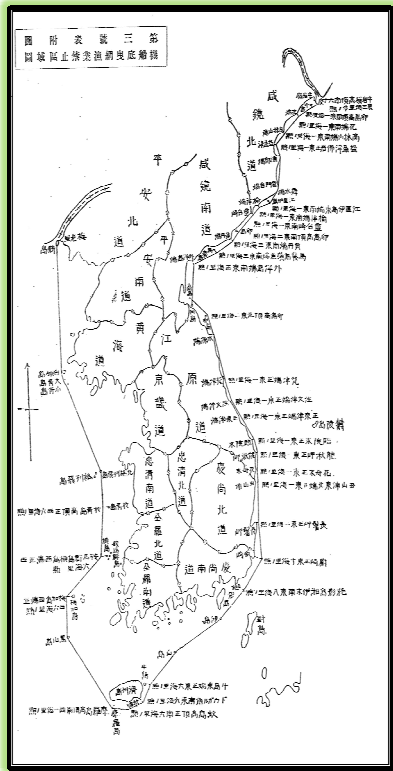
6. 일본정부 성명의 ‘자발적 조치’

일본 정부가 맺은 미·캐·일 어업조약은 어업관할권에 관한 체약국의 주장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약국의 어업관할권을 존중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은 자발적 조치로 서경 175도 동쪽의 연어잡이 등을 억제한다고 약속했으므로 ‘공해 자유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처럼 일본이 자발적 조치로서 공해에서의 어업을 억제한 예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내지(内地)’ 및 ‘외지(外地)’ 근해 공해상에 어업관할구역을 설정하고 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는 어업을 억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지’인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1929년에 어업령 시행규칙을 정하여 트롤어업을 <그림 4>의 구역에서,⁹⁰⁾ 저인망어업을 <그림 5>의 구역(이들을 ‘총독부라인’으로 약칭)에서 금지했다.

90)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1989, 41쪽.



〈그림 4〉 1929년 어업령 시행규칙에 의한 트롤어업 금지 구역



〈그림 5〉 1929년 어업령 시행규칙에 의한 저인망어업 금지 구역

한편 일본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 성명(1951.7.13)에서 각국과 어업 교섭을 하는 동안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이미 초처된 모든 수역에 있는 현 보존 어장에서, 그리고 일본 국민 혹은 일본 등록 선박이 쇼와(昭和)15년(1940)에 조업하지 않았던 어장에서는 자발적 조치로서, 다만 일본이 가지는 국제적 권리의 포기를 의미할 것 없이, 일본 거주 국민 및 일본 등록 선박에 대해 어업 조업을 금지할 것을 다시 명언한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자발적 조치로서 총독부라인을 지킬 의무가 있었으며 “맥아더라인이 사라지면 일본 어선은 공해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일본 자신의 공약을 깨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총독부라인을 한·일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확인하고 있었다. 1951년 1월 31일 ‘일·한 어업 교섭 제4회 사전 협의’에서 수산청 해양2과 과장 마스다(栴田)가 식민지 조선의 “보호 수역 라인은 지금의 리라인과 대체로 비슷한데 동쪽에서는 조금 좁다”고 보고하고, “리라인이 당시 것과 관련이 있다면 당시의 생각을 반박하는 재료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⁹¹⁾ 그는 한국 측이 이승만라인을 총독부라인과 관련시킬 것을 걱정했다. 이 걱정은 적중했다. 회담에서 일본이 이승만라인 철폐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 측은 그 정당성을 바로 일본인들이 설정했던 트롤어업 금지구역 설정의 배경을 인용 반박자료로서 사용했던 것이다.⁹²⁾

이 총독부라인은 일본에게는 문제가 많았다. 총독부라인 안에 있는 제주도 북쪽은 좋은 어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발적 조치’로 어업을 억제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앞의 사전 협의에서 수산국 차장 나가노(永野)는 “현재 제주도 북부 해면을 모두 [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은 앞의 정부 성명에서 약속한 의무를 수행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관할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했다.

이런 일본의 자세는 미국 같은 대국에 대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이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고 일본 어선을 나포해도 거의 항의하지 않고 묵인했는데, 한국이 설정한 어업관할수역에 대해서는 심하게 반발했다. 이런 차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국민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에 관해 자유당 국회의원 사사키 모리오(佐々木盛雄)는 국회에서 “나라가 패배했다고 하나 이 지구상 하나의 약소국인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나 나포문제에서] 이런 굴욕을 받고도 꿈쩍도 못한다, 참으로 추태가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발언했

91) 浅野豊美ほか, 前掲書, 第1期 7卷, 8-9쪽.

92) 지철근, 앞의 책, 41-42쪽.

다.⁹³⁾ 사사키는 소련 같은 대국에는 순순히 복종했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의한 나포는 굴욕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솔직히 말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견해가 아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사설(1953.9.9)에서 “리라인의 일방적인 조치”나 “다케시마(독도)의 불법점거” 등 “한국의 잇따른 모일적(侮日的) 폭거에 관해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쓰고, 한국이 일본을 모멸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승만라인이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나쁜 자는 한국이라는 것이 정부, 야당을 포함하여 이미 일본인 전체의 공통 인식”으로 되고 있었으며,⁹⁴⁾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나 어업의 새 질서 등을 냉정하게 보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7. 맺음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공해 자유의 원칙’을 명분으로 세워 세계 각지의 좋은 어장에서 ‘마구잡이 어업’을 벌였으므로 ‘약탈어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는 일본해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소련 영해 안에서 게 잡이 등을 했다. 이런 해적어법이나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은 세계 각국은 대전 후 일본 어선에 엄한 눈을 돌려 그 대책에 나섰다.

미국은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에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한다는 트루먼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합군최고사령관(SCAP)을 통해 일본 어선의 활동범위를 맥아더라인 안으로 제한했다. 남미나 아시아 여러 나라는 트루먼 선언을 환영하여 잇따라 대륙붕선언을 발표하고 공해에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했다. 세계적으로 어업의 새 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는 정부의 무모한 어선 건조 허가 와 용자로 인해 어선이 과잉으로 되었고, 과당경쟁에서 일본 어민들의 수

93) 衆議院外務委員會, 1953.10.28.

94) 加藤晴子, 「戦後日韓関係史への考察」, 『日本女子大学紀要』文学部 28号, 1978, 27쪽.

입이 급격히 줄었다. 어민들은 필연적으로 맥아터라인을 침범하게 되었고, 한국 남해, 오호츠크 해, 황해, 동중국해 등으로 출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SCAP은 이를 거의 단속하지 않았다. 부득이 소련을 비롯한 극동 각국은 독자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여 1952년 2월까지 350척에 달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독립하고 맥아터라인이 사라지게 되면 일본의 약탈어업이 재개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각국은 대책을 세웠다. 중국은 공해상에 화동라인(1950)을 설정하고 일본 어선의 나포를 시작했다. 한국도 공해상에 해양주권선(이승만라인, 1952)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일본 어선을 나포했다. 미국은 트루먼선언을 실시하는 대신에 미·캐·일 어업조약(1952)에서 서경 175도 동쪽에서 일본이 연어·송어잡이 등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규정했다. 호주는 대륙붕선언(1953)을 선포하는 등 일본의 진주조개 채취를 막았다. 소련은 불가닌라인(1956)을 선포하고 일본 어선의 조업을 제한해 놓고 곧 어업조약을 맺었다.

이런 각국의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로 대처했다. 미·캐·일 어업조약은 훗날 일본에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철폐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조약을 일본은 감수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훗날의 한·일 어업 교섭 등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서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됐다고 강변했다. 또한 중국의 화동라인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고 묵인했다. 게다가 화동라인을 인정하는 중·일 민간어업협정을 지원하고 때로는 화동라인을 일본 순시선이 지켰다. 소련에 대해서는 불가닌라인을 인정해 어업 교섭을 시작했고, 결국은 불가닌라인보다 훨씬 넓은 어업 규제선을 받아들였다. 호주에 대해서는 어업관할수역에 항의는 했지만 아라프라 해에서의 진주조개 잡이를 자발적으로 억제했다. 이처럼 일본은 대국이 제시한 어업관할수역을 순순히 받아들였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어업을 억제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1950년대에는 ‘공해 자유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어업관할수역을 일체 받아들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주장은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었다. 일본은 1940년 당시 일본이 조업하지 않았던 국내외 보존 어장에서는 조업을 자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정부 성명(1951.7.13)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 주변 공해에 어업관할수역인 총독부라인을 설정하고 트롤어업 등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공약에 따라 일본은 당연히 그 어업관할수역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만 일제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강경한 자세의 배경에는 일본의 이중적인 국민감정이 있었다. 대국이 설정한 어업관할수역에 대해서는 순순히 복종하고 어선이 나포 당하더라도 가만히 받아들였지만, 일본의 식민지였던 ‘약소국’ 한국이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고 일본 어선을 나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이승만라인이나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한국이 나쁘다는 의식이 일본인 전체의 공통 인식으로 발전했다.

이런 일본인의 공통 인식의 잔재를 이용하여 외무성이나 시마네현 등은 독도에 관한 팸플릿에서 반드시 이승만라인을 넣어 기술한다. 특히 시마네현 팸플릿 『다케시마, 돌아오라 섬과 바다』는 이승만라인의 설정으로 인해 다케시마독도에서 시마네현민의 강치잡이가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섬 주변에서 많은 일본 어선이 나포당했다는 오해를 줄 만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언론에서는 아사히신문까지 다케시마독도 주변 이승만라인에서 일본 어선이 다수 나포 당했다는 기사를 쓰게 되었다. 이런 오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박유하 같은 한국 지식인까지도 “독도 때문에” 일본인 어부가 사살되었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이런 이승만라인이나 독도에 대한 오해는 하루라도 빨리 불식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어

- 다케우치 다케시,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II』, 선인, 2010.
- 박병섭,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독도연구』 17호, 2014.
-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뿌리와이파리, 2005.
- 박창건,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日本研究論叢』 39호, 2014.
- 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水友會, 1987.
- 외무부, 「제3차 한일회담(1953.10.6-21) 어업위원회 회의록」.
- 지철근, 「어업관할수역(평화선)과 최근 각국 어업조약의 국제적 동향」, 『국제법학회 논총』 제2호, 1957.
- _____,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1989.
- 최영호,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50권, 2015.
- 최종화, 『현대 한일 어업 관계사』, 세종문화사, 2000.

영어·일본어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 Robert Murphy, 「Security information」, RG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Entry 2846,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Box. 4.
- 加藤晴子, 「戦後日韓関係史への考察」, 『日本女子大学紀要』 文学部 28号, 1978.
- 金東祚, 『韓日の和解』, サイマル出版会, 1993.
- 菊池努, 「オーストラリアの対日講和外交」,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東京大学出版会, 1986.
- 緑間栄, 『海洋開發と国際法』, 近代文芸社, 1995.
- 大日本水産会, 『大日本水産会百年史』 後編, 大日本水産会, 1982.
- 藤井賢二, 「島根県の漁業者と日韓漁業紛争」,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2011.
- _____, 「韓国の海洋認識—李承晩ライン問題を中心に」,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1卷, 2011.
-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1952.

- 朴炳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号, 2014.
- _____,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号, 2011.
-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atプラス』14号, 2012.
- 森須和男, 「李ラインと日本船拿捕」, 『北東アジア研究』 28号, 2017.
- 水産庁編, 『水産業の現況』 1952.
- 外務省, 「日韓交渉報告(再八)」, 1953.10.14, 日韓会談公開文書番号 177.
- _____,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 III(第6次日韓会談文書公開, 文書番号 1915).
- _____,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 「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 日本農業研究所, 『農林水産省百年史』 中巻, 日本農業研究所, 1980.
- 日韓漁業協議会, 『日韓漁業対策運動史』, 日韓漁業協議会, 1968.
- 参議院法制局,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1953.
- 川上健三, 『戦後の国際漁業制度』, 大日本水産会, 1972.
- 浅野豊美・吉沢文寿・李東俊,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現代史料出版, 2010.
- 天川晃 [ほか]編, 『GHQ日本占領史(第42巻) 水産業』,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 片岡千賀之, 「日中韓漁業関係史」, 『長崎大学水産学部研究報告』 87号, 2006.
-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2004.
-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1979.

<Abstract>

Japanese pirate fishing method and plunder fishery and misunderstandings for the Peace line and Dokdo

Byoungsup Park

There are serious misunderstandings about the Peace line (Lee Seungman line) in Japan. It is Japanese common understanding that a declaration of the Lee Seungman line is illegal against principle of 'free on the high seas'. Utilizing recent Japanese official documents and materials, this paper clarifies such misunderstandings and studies details,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Lee Seungman line.

Before the World War II, many countries suffered from Japanese pirate fishing method or plunder fishery. Soon after the World War II, keeping them in mind, USA announced Truman declaration and restricted Japanese fishery within the MacArthur line. These policies are welcomed by many countries and made worldwide trend to set exclusive fishery zone. Also, Korea declared it, Lee Seungman line to prepare for abolition of the MacArthur line. For these measures, Japanese correspondence was double standard.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exclusive fishery zones decided by power countries such as USSR or China, also accepted a fishery treaty between USA, Canada and Japan, which posed restriction to Japanese fishermen only. But they never accepted exclusive fishery zone by the lesser power, Korea. This stance is contrary to Japanese pledge to avoid fishery of their own accord at preserved fisheries

in and out Japan which Japanese did not fish in 1940 at. At that time, there was the preserved fishery off Korea. It was the regulated line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similar to the Lee Seungman line.

Key words: Truman Declaration, MacArthur line, the Lee Seungman line, the preserved fishery, the regulated line by Governor-General of Korea.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 · 결정됨

죽도문제연구회의 칙령41호 「石島=獨島」 날조에 대한 논증

최 장 근*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조선어사전』의 「독(獨)」에 대한 사실 날조
3. 고문헌상의 「獨島」와 「칙령41호」와의 관계성 부정
4. 고지도로 보는 「우산도=석도=독도」의 고증
5. 시모조의 칙령 41호의 「석도=독도」에 대한 날조
6. 맺으면서

〈국문초록〉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石)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주제어: 죽도문제연구회, 독도, 석도, 칙령41호, 조선어사전

1. 들어가면서

과거부터 한국측 동해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두 개의 섬이 존재했다. 그래서 한국측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이전부터 동해의 2섬에 대해 영유권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해의 두 섬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뿐이다. 조선조정은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군정편) 등 조선시대 내내 동해의 두 섬에 관해 영토로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서 관할해왔다는 증거이다. 특히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한국영토로서 우산도(지금의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일본의 오키섬 동북쪽에 두 개의 섬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1667년에 저술된 『은주시청합기』 이후 조선측의 동해에 “조선 영토로서 죽도(竹島; 지금의 울릉도)와 송도(松島; 지금의 독도)”¹⁾라는 명칭으로 두 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두 섬은 정통한 일본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서 조선의 영토로서 기록되어 있고, 일본영토라고 기록한 증거는 없다.

일본이 근세 에도시대에 시작된 해금정책을 파기하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근대에 들어와 서양지도의 영향으로 1880년대에 종래 죽도(竹

1)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서북경계는 오키섬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大西俊輝(2007)『続 日本海と竹島-隱視聽會合紀を讀む-』, pp.3-388.

島)라고 불리었던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잘못 비견하는 오류를 범하여 울릉도, 독도의 명칭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섬의 명칭은 일본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리적 무지에 의해 다양하게 등장했던 것이다. 요컨대 분명한 것은 근대 이전 한국에서는 동해 2섬이 「우산도(지금의 독도)와 울릉도」라고 명칭으로 불리었고, 일본에서는 「송도와 죽도」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세시대에 해금정책으로 조선조정이 울릉도나 우산도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해금정책이 파기된 근대에 들어와서 두 섬에 대한 섬 명칭의 혼란이 생겼던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측에서는 「죽도」²⁾를 「우산도(독도)」라고 표기한다든가, 일본측에서는 울릉도를 송도(지금의 독도)라고 표기한 것들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석도=독도설의 오류와 문세영³⁾씨의 『조선어사전』”⁴⁾이라는 제목으로 칙령41호에서 울도군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정해진 「울

2) 이 섬은 울릉도 본섬에서 2km지점에 위치한 섬으로서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였을 때 ‘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외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명칭이다.

3) 조선어사전에 대해, 「최초의 뜻풀이(주석)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은 문세영(한국전쟁 때 행방불명이) 1917년부터 추진을 시작해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 뒤 이윤재·한징 등의 도움을 받아 20여년 만인 1938년 약 10만 어휘를 정리해 풀이해놓은 역작이다.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년), 김윤경의 「조선문자급어학사」(1938년)와 함께 우리말 관련 3대 중요 도서로 선정된 책이다.」 「최근 국내 한 고서점에서 ‘조선어사전’을 입수한 이훈석 우리문화가꾸기회 상임이사(세미원 대표)는 “우리나라 지명이나 고유명사 중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한자가 많고, ‘돌=독=석’으로 쓴 사례는 무수히 많아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껏 일본은 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쪽 주장을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제의 통제 속에서 조선어사전간행회 주도로 박문서관에서 펴낸 ‘조선어사전’ 초판본에서 분명하게 용례를 밝혀놓은 만큼 “일본 쪽 ‘역지’에 반박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그는 평가했다.”라고 했다. 「‘독도=석도’ 입증할 ‘조선어사전’ 초판본 찾았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758755.html#csidx1482988413327e49d5c73c49a790971>(검색일: 2017년 5월 4일).

4)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説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掲載), 『実事求是~日韓のトゲ, 竹島問題を考える~』,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검색일: 2017년 4월 26일).

릉전도, 죽도, 석도(=독도)에 대해 비논리적으로 「석도=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했다.⁵⁾ 일반적으로 교수가 연구한 것은 모두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시모조는 다쿠쇼쿠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악용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근대 문호개방 이후 고종황제는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침입이 본격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행정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시모조의 주장처럼 「울릉전도, 죽도, 석도(관음도)」라고 한다면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건국 이후 선조대대로 계승해온 독도 영토를 포기했다는 말이 된다. 고종은 동해의 영토인 울릉도와 우산도(지금의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일부러 울도군을 설치한 것이었다.⁶⁾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⁷⁾에서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규명했음에도

- 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편(2014) 『“죽도문제10문100답”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pp.99-102. 下條正男(2004)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pp.105-133. 下條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pp.74-113.
- 6) 나이토우 세이쥬우 저, 권오엽, 권정 역(2005) 『獨島와 竹島』제이앤씨, pp.116-212.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pp.9-252.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pp.184-207. 신용하(2011)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163-186. 内藤正中, 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新幹社, pp.152-165. 内藤正中, 金炳烈(2007) 『史的檢証 竹島獨島』新幹社, pp.77-100.
- 7) 선행연구로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국내 학계에서는 지금껏 ‘석도=독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 기록 조사와 연구 작업을 벌여왔다. 국립중앙도서관 이기봉 고서전문원의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석도·독도 고찰’(2012년 「문화역사지리」 제24권) 논문이 가장 최근의 대표 자료에 속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한자어인 ‘독도(獨島)의 ‘독’이 구한말 울릉도 일대 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전라도 지방에서 ‘돌’(石)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쓰였다는 사례를 일제가 펴낸 「조선지리지자료」(1911년)와 남한 모든 지역을 망라한 「한국지명총람」(1966-86년) 등 전국 지명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해 밝히고 있다. 특히 1979년 나온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 IV)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독도(獨島) [독섬]’으로 나와 있다. “순우리말 지명의 첫번째 글자에서 ‘돌(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독’의 사례로 모두 319개나 확인됐고, 이 가운데 ‘독’이 ‘돌’과 같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자 석’

불구하고, 죽도문제연구회는 이를 부정하기 위해 억지로 논리를 날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지적하여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조선어사전』의 「독(獨)」에 대한 사실 날조

1)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에 의한 “독도=한국영토” 해석 부정

시모조는 칙령41의 「석도(石島)」 해석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지금까지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제2조)에 울도군의 행정구역이 “울릉도 전도, 죽도, 석도”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근거로 그 석도를 독도라고 해석하여 독도는 1900년에 한국영토가 되었다고 해왔다. 이번에 발견된 문세영씨의 “조선어사전”은 그 석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증거이라는 것이다.⁸⁾라고 한국측의 논리를 비판했다. 또한 「이 책을 발견한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에 따르면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는 【독(獨), “돌(石)”의 사투리, 석(石)】(돌은 명사로서 돌의 사투리이고, 石을 의미한다)이라는 기술이 있고, 그것은 「당시 석도(石島)가 독도(獨島)의 다른 명칭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라고 한다.»⁹⁾라는 내용도 부정했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있는 시모조의 날조 사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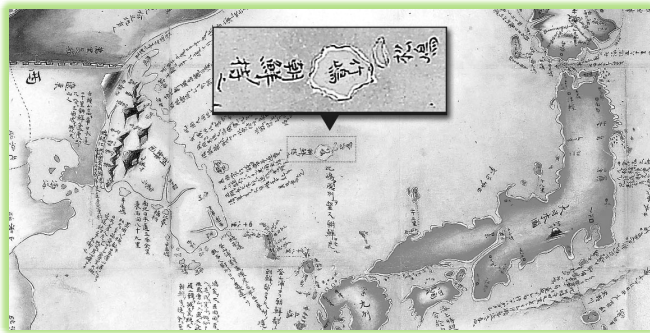
으로 표기된 사례도 68개나 된다”고 이 고서전문원은 분석해놓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시모조 마사오 등 일부 일본 학자들이 일본어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석도=깎세섬’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 오류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2017년 9월 2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758755.html#csidx1482988413327e49d5c73c49a790971> (검색일: 2017년 5월 4일).

8)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9月9日掲載) 참조.

9)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9月9日掲載) 참조.

시모조는 「우리문화가꾸기회」에 대해 평가하여 「그것은 “우리문화가꾸기회” 관계자의 독단이다.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는 지난해 7월에도 ‘하야시 헤이(林子平; 1738-93)’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가 독도를 조선령(朝鮮ノ持也)이라고 해서 사실무근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¹⁰⁾」라는 식으로 독도관련 역사를 날조하는 단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시모조가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다. 하야시의 『대삼국지도』에는 동해바다에 2개의 섬을 그리고 있고, 한쪽은 죽도(울릉도), 다른 한쪽은 송도(독도)라고 표기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에도시대의 일본에서는 한국령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해왔다. 여기에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하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¹⁾ 따라서 「우리문화가꾸기회」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 것은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데 시모조 마사오는 하야시 시헤이 지도는 독도와 무관한 지도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10) 下條正男, 「第48回 石島 = 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11) 1802년 일본 지도 ‘독도는 조선 것’, <http://joongangjoins.com/article/937/18258937.html?ctg=1700&cloc=joongang|article|hotclick>(검색일: 2017년 5월 17일), 「중앙일보」 2015.07.17.

2) 『조선어사전』에 의한 “석도=독도”의 해석 부정

시모조는 「우리문화가꾸기회」의 「석도=독도」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칙령41호의 “석도”에 대해서도 하여시의 『대삼국지도』를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¹²⁾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조선어사전』의 같은 페이지에 【독(獨)】(名; 「단독(單獨)」약자)【獨은 명사 單獨의 약자이다.】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문화가꾸기회”식으로 해석을 하면 “독(獨)은 단독(單獨)의 약자이다.” 이 때문에 독도(獨島)는 단독(單獨)으로 존재하는 섬이라는 의미에서 독도(獨島)라고 표기되었다. 따라서 이 【독(獨)】은 독도(獨島)가 울도군(鬱島郡)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석도(石島)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같은 『조선어사전』의 기술을 근거로 해서 정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독(獨); 「돌(石)」이 변화된 것. 석(石)】에는 석도(石島)를 현재의 독도(獨島)라고 하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¹³⁾라고 사실을 조작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사전을 찾으면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있다. 바로 「독」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조선어사전에는 「독」이 여섯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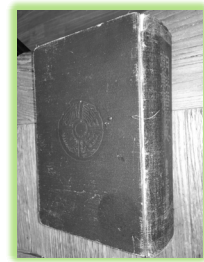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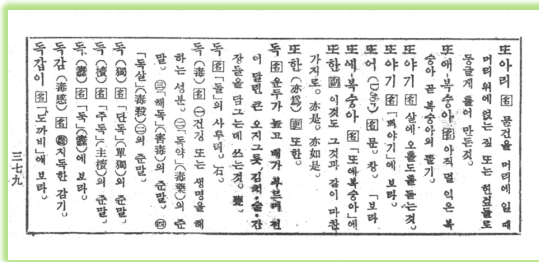
첫 번째의 「독」은 그릇에 관한 설명, 두 번째의 독은 ‘돌’이라는 의미, 세 번째의 「독」은 「독약」의 준말, 네 번째는 「단독」의 줄인 말, 다섯 번째는 「주독」의 준말, 여섯 번째는 「독(蠶)과 관련되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시모조는 6개의 「독」의 의미 중에서 왜 「단독」의 줄인 말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확실한 논증이 있어야한다. 시모조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논증은 없고 비논리적인 주장만 존재한다. 지금의 「독도(獨島)」는 돌로 된 섬이다. 돌섬을 독도(獨

12) 下條正男, 「第48回 石島 = 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13) 下條正男, 「第48回 石島 = 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島)라고 칭하는 사례가 많다.¹⁴⁾ 또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고인돌을 「고인독」이라고 불렀고,¹⁵⁾ 「독웃」이라고 하여 바위에 붙은 해초를 두고 돌이 웃을 입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¹⁶⁾ 따라서 6개의 「독」의 의미 중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미는 두 번째의 「독」인 「돌의 사투리」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네 번째의 「독」인 「단독(單獨)의 줄인 말」이라고 하여 지금의 독도가 칙령41호의 석도(石島)와 무관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3. 고문헌상의 「독도(獨島)」와 「칙령41호」와의 관계성 부정

1) 일본 고문헌의 「독도(獨島)」에 대한 해석 날조

시모조는 칙령41호의 「석도(石島)」가 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1904년 일본군함일지에 니이타카호가 이미 울릉도에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날조한다.

14) 이기봉(2012)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석도·독도 고찰」, 『문화역사지리』 제24권, 『조선지리지자료』(1911년), 『한국지명총람』(1966-86년),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 IV)』(1979) 참조.
 15) KBS1 「한국인의 밥상」 제311회(진도 편) 참조.
 16)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제349회(깡깡한 독[돌] 혹은 고인독) 참조.

즉,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는 한국측에서는 지금까지도 비슷한 궤변을 늘어왔지만,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칙령 제41호”의 성립 과정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석도가 어떤 섬인가가 아니라 울도군(鬱島郡)의 행정구역이 정해진 역사적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게다가 독도가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1904년 9월 군함 ‘니이타카(新高)호’의 항해 일지에 “한국인은 이것을 독도(獨島)라고 쓴(書)다”라고 기록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울릉도의 한국인이 현재의 다케시마(竹島) 주변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출어한 1904년경이다. 그 독도가 ‘석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¹⁷⁾라는 것이다.

군함 니이타카(新高)호는 동해바다의 두 섬 주변을 왕래하던 일본인들이 전통적인 송도(松島; 독도)와 죽도(竹島; 울릉도)의 섬 명칭에 혼돈을 일으켜서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칭하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했던 것이다. 이때에 니이타카호는 울릉도에서는 이미 「독도(獨島)」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기록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공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의 울릉군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⁸⁾ 당시 울릉군청에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명칭이 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주민들이 먼저 「독도」라는 호칭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독도(獨島)」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니이타카호¹⁹⁾가 1904년에 조사하였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라고 호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04년에 확인된 것이므로 거슬러 올라가서 1900년 ‘칙령41호의 「석도」=독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

17)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説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18) ‘독도(獨島)’라는 명칭으로 표기한다고 하는 것이 울릉도의 어떤 문서에서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증이 필요하다.

19) 1904년 9월 ‘군함 新高號 행동일지’ 참조.

그런데 시모조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규명을 피하고, ‘한국어의 반절차음’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법적인 것을 갖고 와서 사실을 날조한다. 즉 1904년경에 울릉도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갔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일본의 영향이라는 주장이다.²⁰⁾ 이것 또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날조된 비논리이다. 1904년에 나카이 요사부로가 울릉도에서 강치잡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²¹⁾ 1903년(明治36) 시점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한 것과 1904년의 울릉도 행정문서에 「독도(獨島)라고 기록(書)하고 있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2) 한국 고문헌의 「독도(獨島)」에 대한 해석 날조

시모조는 한국문헌에 등장하는 독도(獨島)명칭에 대해서도 사실을 날조했다. 즉, 「대한제국 관계자가 독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1906년. 그것도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이 “본국 소속(本邦所屬) 독도(獨島)가 먼 바다 백여리(外洋百餘里) 밖(外)에 있다”고 한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그 발언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울도군수라면 당연히 행정구역이 “울릉도 전도(鬱陵島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가 어떠한 섬인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죽도(竹島)도 석도(石島)도 아니고, 독도(獨島)를 본방 소속(本邦所屬)”이라고 한 것은 독도가 “칙령 제41호”에서 정한 울도군의 행정구역 외에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대한제국 정부도 혼란스러웠다. 참정대신이 다시 독도의 ‘형편’(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은 울도군의 행정 구역 외에 새롭게 출현한 독도에 대해 중앙정부가 그 존재

20)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実事求是~日韓のトゲ, 竹島問題を考える~』,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검색일: 2017년 4월 26일).

21)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40-66.

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²²⁾라는 것이다.

심흥택 군수가 「본국 소속 독도(獨島)」라고 한 것은 울도군에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으로 문헌상으로 기록하여 관할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1904년 니이타카호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그 섬의 명칭은 1882년 개척 당시 울릉도에 개척민이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울릉도민들로부터 ‘독도(獨島)」라고 호칭되었음을 알게 한다. 그런데 시모조는 울도군수가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라는 섬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석도」라고 하지 않고 「독도」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모조는 심흥택 울도군수가 반드시 「석도가 독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처럼 시모조는 논증되지 않은 비논리적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날조했다.

중앙정부의 행정문서인 칙령41호는 분명히 한자어로 문헌을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울도군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속칭으로 불리어진 것을 ‘독도(獨島)」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울도군수 심흥택이 「본방(本邦) 소속 독도(獨島)」라고 한 것은 당시 울도군에서는 그 섬을 「독도(獨島)」라고 호칭하고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흥택군수가 중앙정부가 작성한 칙령의 표기인 「석도」라는 명칭을 도민들에게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울도군의 행정문서에 반드시 동일하게 석도(石島)라고 표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1900년의 칙령41호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독도가 외양바다에 「단독」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시모조의 주장은 비논리적인 사실의 날조이다. 독도는 울릉도 본섬에서 배로 전방으로 20km 이상을 진행하거나,²³⁾ 해발 100m 이상의 높은 지점에 올라가면 보이는 섬이

22)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23) 가와카미 겐조는 “날씨가 맑은 날 독도로부터 「27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섬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확한 재검증을 요한다. 川上健三 저, 權五曄 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 백산자료원,

다.²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날조행위이다.

시모조는 심홍택 군수가 일본에 의해 「본국 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참정대신이 “독도의 형적을 보고 하라”라고 한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참정대신이 울릉도의 외양바다 100리 밖에 있는 당시의 독도에 대해 일본의 침략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고 하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시모조의 비논리적인 행동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부정하는 날조 행위이다.

4. 고지도로 보는 「우산도=석도=독도」의 고증

1) 섬의 위치순으로 보는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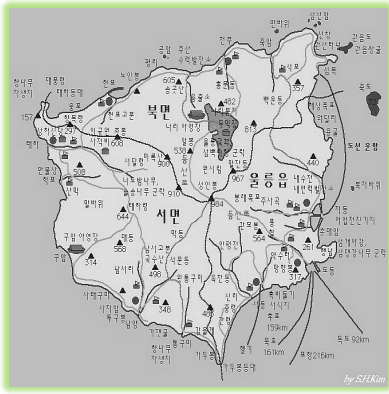
시모조는 별도의 논증없이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가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1900년 이전에 제작된 다양한 지도에서 「울릉전도, 죽도, 석도」가 어떠한 섬을 두고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현재의 울릉도 지도²⁵⁾를 보면서 섬을 위치적으로 볼 때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가 어떠한 섬인지를 확인해보면,

316-320.

24) 상동.

25) 「울릉도관광지도」, <http://cafe.daum.net/yeosasa/DDe6/6?q=%BF%EF%B8%AA%B5%B5%20%C1%F6%B5%B5&re=1>(검색일: 2017년5월10일), 위의 지도에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92km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는 87.4km이다. 또한 울릉도 주변에는 관음도와 죽도를 제외하고 공암, 판바위, 삼선암, 북저바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릉도의 행정관할구역 「울릉전도, 죽도, 석도」 중에서 「울릉 전도」라는 것은 칙령41호에 제시된 「죽도」를 제외한 그 내측에 산재하는 울릉도 주변의 모든 섬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따라서 「울릉 전도」는 위의 울릉도 지도에서 울릉도 본섬을 포함하여 그 주변의 관음도(과거 명칭은 도항)와 4개의 작은 암초들이 포함된다. 「죽도」라는 명칭은 1882년 이규원 관찰사가 「울릉도외도」에 표기하여 「죽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울릉도 본섬에서 2km지점에 위치하여 상시로 보이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²⁶⁾을 말한다. 그리고 「석도」라는 섬은 「죽도」²⁷⁾보다 거리적으로 더 멀리 있고, 크기 면에서도 더 크지 않으면서도 영토로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섬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2) 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 유형

현재의 독도를 나타내는 고지도의 변천사²⁸⁾는 단순한 한 가지 형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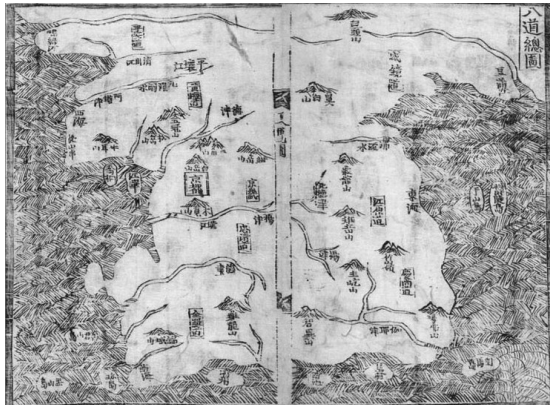
26) 실제로 이 섬에는 한 가정의 거주민이 살고 있다.

27) 「이아러브울릉도」. http://dd1.co.kr/board/bbs/board.php?bo_table=mboard02&wr_id=31(검색일:2017년 5월6일),

28)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 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2017년 5월6일), 이 지도목록은 독도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아니다. 크게는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가 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인 팔도총도 유형」, 둘째는 수토사들의 경험에 의해 작성된 「광여도 유형」, 셋째는 수토사들이 광여도를 참고로 하여 그린 「청구도 유형」, 넷째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울릉도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독도의 위치가 명확해지면서 그려진 「대조선국전도 유형」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동람도인 팔도총도²⁹⁾ 유형은 「우산도-울릉도」 형식으로 나열되어 우산도가 울릉도에 서쪽에 위치하고, 또한 우산도도 울릉도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은 조선조정의 쇠퇴정책으로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가 금지되어있어서 실제로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동해에 2개의 섬이 영토로서 있다고 인식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 동국여지승람이 1531년에 작성되어 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1900년의 칙령41호에 행정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칙령41호와는 전혀 무관한 지도이다.



〈동국여지승람 동람도(東覽圖)·팔도총도(八道總圖), 1531〉

29)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 2017년 5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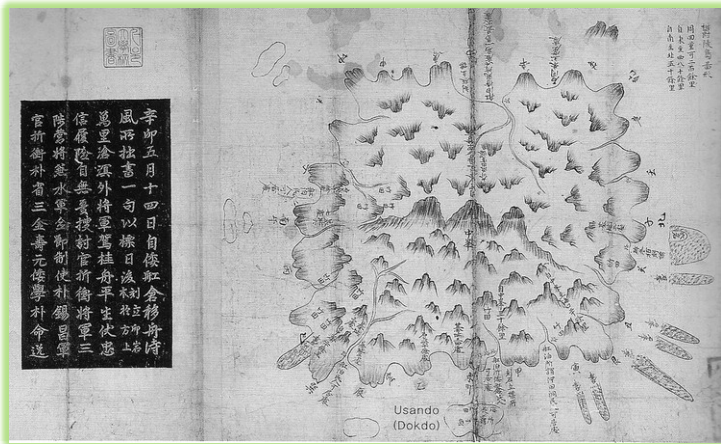
3) 박석창의 수토지도,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1711년(숙종 37) 수토사 삼척영장 박석창³⁰⁾이 울릉도 수토를 바탕으로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³¹⁾을 제작했다. 「울릉도도형」은 섬의 여러 가지 사정에 관해서 상세히 표기한 것으로 볼 때 현지를 답사하여 직접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죽도(竹島)에 대해 「소위 우산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소위」라는 말은 「말하자면」이라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하는 표현이다. 즉 다시 말하면 박석창은 수토사로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수토할 임무를 명받았지만, 「우산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의 죽도를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하여 「이 섬이 우산도 일수도 있다」고 추측하여 표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박석창이 말하는 「소위 우산도」라는 섬은 『동국여지승람』에서 말하는 「우산도」가 아니다. 실제의 「우산도」(독도)를 찾지 못하여 추측으로 「죽도」에 「소위 우산도」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1882년 ‘울릉도외도’가 작성될 때 명명된 「죽도」라는 섬의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우산도」라고 잘못 명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도에는 칙령41호의 「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30) 「有政。兵批，同知梁益命，文兼吳勳，同知崔萬尙，全羅左水使李壽民，文兼朱恒道，景福宮假衛將具文行，文兼洪錫九，部將趙德基，忠壯衛將金泰雄，三陟營將朴錫昌，五衛將李徵瑞，...」,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inspection/insp_result.jsp?mode=k&sjwid=SJW-D36090270-00500(검색일; 2017년 5월 17일)

숙종 36년(무오) 원본456책/탈초본24책 (5/5) 康熙(淸/聖祖) 49년.

31) 「울릉도도형」은 비변사에 소장된 기밀본이다. “辛卯 五月十四日 自倭舡倉移舟待風所 拙書一句以標 日後(刻立卯岩木於方上) 萬里滄溟外 將軍駕桂舟 平生伏忠信 履險自無漫 搜討官折衝將軍 三陟營將兼水軍節制使朴錫昌 軍官折衝朴省 三金壽元 倭學朴命逸 (신묘(1711) 5월 14일 왜선창에서 대풍소(待風所)로 배를 옮겨 서툰 글 한마디 표기하다. 뒷날 (方上에 묘암목을 세워 새겨넣었다). 만리 푸른 바다밖 장군 계수나무 배에 오르다. 평생을 충신(忠信)에 기대어 험난함이 스스로 사라진다. 수토관 척위장군 삼척영장 겸 수군 침절제사 박석창, 군관 절충 박성삼·김수원, 왜학 박명), 한글 번역; 한마음님,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 2017년 5월 17일)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1711, 박석창(朴錫昌)〉

4) 광여도 유형의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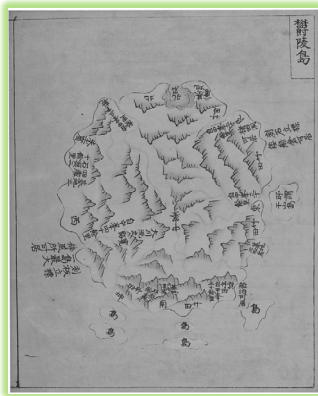
광여도³²⁾의 울릉도 지도³³⁾에는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된 섬이 있다. 이것은 박성창의 울릉도도형처럼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상세한 지형은 그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박성창의 지도를 참고로 하여 단지 울릉도 주변의 6개섬만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광여도는 울릉도에 속하는 부속 섬만을 표기하여 소위의식을 담은 지도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지도의 「소위 우산도」도 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우산도」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여 추측성으로 박성창의 「울릉도도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잘못된 지도라고 하겠다. 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에서는 동해에 두 개의 섬을 표기하여 영토의식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광여도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일부에 포함시켜서 6개의 부속 섬 중의 하나로 표기하여 동해에는 유일한 섬으로 울릉도만 존재한다고 잘못 표기한 지도이다.

32) 광여도-울릉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37-1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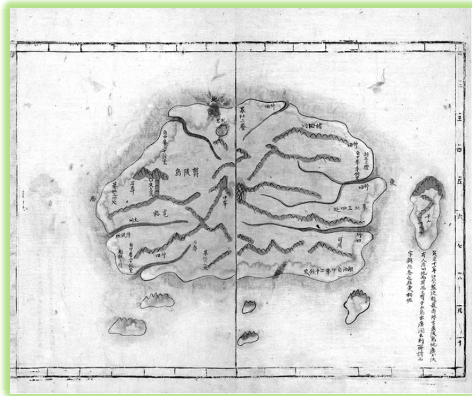
33)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 (검색일: 2017년 3월 15일).

5) 청구도 유형

청구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주변에 6개를 그린 것은 광여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도의 특징은 광여도의 「소위 우산도」에 대해 단순히 「우산」이라고 변경한 점이 특징이다.



〈광여도-울릉도〉



〈청구도-울릉도〉

또한 「우산」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광여도를 토대로 하여 ‘산의 표시’로 「우산」이라고 하여 섬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우산」을 현지답사³⁴⁾로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우산」 표시는 종래 우산도와 울릉도 2섬의 인식이 아니고, 동해에 울릉도뿐인 1개의 섬 인식으로서 울릉도 주변에 수목이 없는 5개의 암초와 나무가 자라는 「우산」³⁵⁾을 울릉도의 부속섬으

34) 당시 울릉도를 답사한 사람은 수토사들이었기 때문에 수토사들에 의한 정보로 추측된다.

35)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대동여지도”의 필사본에는 목판본과 똑같이 그려진 울릉도 외에 그 동쪽으로 그보다 작게 ‘우산’으로 표기된 섬이 있고, 『청구도』와 마찬가지로 조취수의 오류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대동여지도와 청구도는 동일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산”에 두 개의 산봉우리가 표시된 점은 곧 현재의 독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청구도³⁶⁾의 「우산도」는 지금의 「죽도」이다. 수토사들이 실제의 우산도(지금의 독도)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동해바다의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의 인식을 변경하여 죽도에다 「우산」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사실 많은 수토사들이 동해에 영토로서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울릉도에서 87.4km에 위치하고 있는 우산도(지금의 독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던 것이다.

청구도에는 「우산」 아래쪽에 “영조 11년(1735)에 강원도 감사 조최수(趙最壽)가 장계를 올려 ‘울릉도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람이 거주한 터가 있다. 또 그 서쪽에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광활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른바 서(西)자는 이 지도의 동쪽에 있는 것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³⁷⁾ 여기서 청구도를 그린 김정호는 1735년에 제작된 조최수의 「울릉도 지도」를 참고로 했는데, 「그 서쪽에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광활하다」라고 표기한 것은 1531년에 제작된 「증보 동국여지승람」 「동람도」의 2섬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죽도에 「우산」이라고 표기한 것은 조최수의 「울릉도 지도」에 「그 서쪽에 우산도가 있는데, 역시 광활하다」라고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마침 지금의 「죽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을 「우산」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이다. 김정호는 실제로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 2017년 1월 5일))라는 설명은 잘못이다. 산봉우리라고 하는 표기는 바위가 아니고 수풀이 자라고 있다는 표기이다.

36) 김정호(金正浩) 『청구도(靑邱圖)』는 1834년 김정호가 전국을 동서로 22판, 남북으로 29층으로 나누어 제작한 건·곤 2책의 지도책이며, 『청구요람(靑邱要覽)』 혹은 『청구선표도(靑邱線表圖)』라고도 부른다(「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 2017년 2월 12일)).

37) “조최수의 장계는 김정호가 저술한 『여도비고(輿圖備考)』와 『대동지지(大東地誌)』에도 실려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 2017년 2월 12일).

있었지만, 실제의 「우산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쪽’을 ‘동쪽’으로 방위만 수정하여 「우산」이라는 지명으로 표기하여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표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호는 실제의 「우산도(지금의 독도)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정호는 조최수의 오류를 지적하여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했다. 그러나 김정호도 우산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안용복사건 이후 「죽도」를 「이른바 우산도」 혹은 「우산도」라고 오류를 범한 수토사들의 잘못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늘날의 「죽도」에 「우산」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죽도」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1900년의 칙령41호의 「석도」의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부적절한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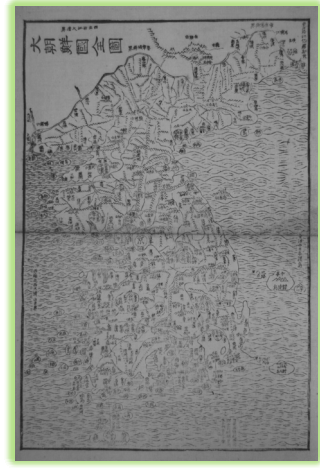
6) 「대조선국전도」 유형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의 강원도(江原道)」³⁸⁾ 지도는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됨으로써, 사람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는 울릉도에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내왕하여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잘 알려진 시기에 그려진 지도이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대체로 정확하다.

그런데 ‘대조선국전도-강원도’ 지도도 「울릉도」-「우산」이라는 형태로 표기된 것으로 볼 때,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같이 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로 이루어진 2개의 섬 인식이 아니고, 「우산」을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해서 동해에 1개의 섬만이 존재한다고 그린 지도이다. 이 지도도 청구도의 인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울릉도 주변의 5개의 암

38)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7>(검색일: 2017년 5월 1일).

초를 그리지 않고 「우산」만 그렸다는 사실로 볼 때는 이 「우산」은 지금의 독도를 가리키지만, 울릉도가 아닌 또 다른 별개의 섬, 즉 2개의 섬이 동해에 존재한다는 인식은 아니다. 그 이유는 1882년대 이전에 안용복 및 일부 수토사를 제외하고 실제의 독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산」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그려졌다고 하겠다. 또한 이 지도에는 대마도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동여지도³⁹⁾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⁴⁰⁾ 따라서 이 시기에도 죽도라는 명칭의 섬이 없었기 때문에 칙령41호의 「석도」를 고증하기에는 부적절한 지도이다.



「대조선국전도-강원도(大朝鮮國全圖-江原道)」, 19세기말, 독도박물관 소장

39) 대동여지전도 영인본, 1861~1865, 송실대학교 소장,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총22첩으로 구성됨. 「tapclass」(2011년6월), <http://topclass.chosun.com/board/print.asp?catecode=&tnu=201106100007>(검색일: 2017년 5월 17일)에서 인용.

40)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제작되었는데, 대마도를 조선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동여지도도 조선조정의 영토인식을 전적으로 반영한 지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독도는 한국영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요컨대, 조선조정이 지금의 독도에 대해 영토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 위치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울릉도와 독도로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을 때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17세기 이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도항이 금지되었던 쇄환시기에는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산도(지금의 독도)의 위치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1882년 이후 울릉도가 개척되어 울도군수가 관할하던 시기에는 독도의 존재가 거주민들에 의해 명확해짐으로써 독도라고 불리는 섬(고지도의 우산도, 지금의 독도)에 대해 1900년의 칙령41호에서는 공식문서표기인 한자표기로 「석도(石島)」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현재적 관점에서 울릉도와 독도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날조하여 지금의 거리⁴¹⁾ 인식을 바탕으로 석도가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세기말에 제작된 「대조선국전도-

41) 「울릉도-독도 간의 거리」, http://4.bp.blogspot.com/_fYDUrEP3tL0/TTBXccscKFI/AAAAAAAAAQ/2w8-i0vVWJE/s640/img_158.jpg(검색일: 2017년 3월 2일).

강원도(大朝鮮國全圖-江原道)에서는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독도의 존재를 확인했던 것이다. 따라서 칙령 41호가 발령되었던 1900년 시점에서는 이규원 검찰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미 1882년 시점에 울릉도에 한국인 140여 명과 일본인 78명이 이미 거주⁴²⁾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는 독도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시모조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5. 시모조의 칙령 41호 「석도=독도」에 대한 날조

1) 「칙령41호」에서의 울도군 영역에 대한 사실 날조

칙령41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수치로서 밝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독도까지를 범위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칙령 제41호」에서 정한 울도군의 행정구역 범위는 어디까지 였는지, 지금까지 한국은 “본방 소속 독도”를 석도라고 어원론을 중심으로 열심이었기 때문에 역사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칙령 제41호」는 1900년 6월 울릉도에서 한일 공동조사를 행한 우용정(禹用鼎) “청의서(請議書)”가 바탕이 되어 성립된 것이다.⁴³⁾라고 사실관계를 날조한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를 수치로 표기하여 “석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즉, 「그 때, 우용정 스스로 “울도기(鬱島記)”에서 울도군이 되는 울릉도의 강역(疆域)를 “섬둘레 140~150리”라고 명기하고 있다. 게다가 울릉도 “둘레를 140-150리”라고 한 것은 1882년에 울릉도를 답사한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이다. 이규원은 “계본초(啓本草)”에서 울릉도를 “둘레 대략 140~150리”라 했고, 『울릉도검찰일기(鬱島檢察日記)』

42)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43)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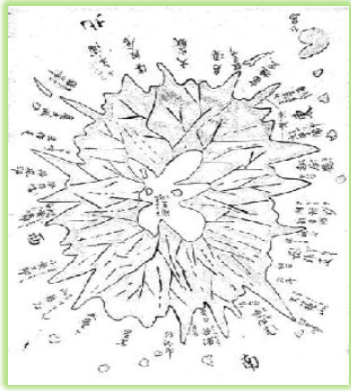
에서는 “이 섬의 바다 둘레는 수로 140~150리 정도”이라고 했다. 또한 이 규원은 이때 울릉도의 전모를 유연고(劉淵 示古)에게 그리게 하여 “울릉도외도”를 그렸다. 그 “울릉도외도”는 현존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죽도(竹島)와 도항(島項)이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⁴⁴⁾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에 포함되어 있지않다고 날조하고 있다.

여기서 울도군의 범위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포함한 여러 섬을 말한다. 시모조가 지적하는 『울도기(鬱島記)』, 『계본초(啓本草)』에서는 울릉도의 둘레(周廻)가 「140~150리(一百四五十里)」라는 것이고, 『울릉도외도』는 울릉도의 외측 그림지도이다. 따라서 이들 수치는 「울도군」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울도군의 일부에 해당하는 「울릉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시모조는 울릉도와 울도군의 범위를 동일시하여 울릉도의 범위를 언급하면서 「울도군」의 범위로 해석을 날조하여 독도가 울도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사실을 조작했다. 울도군의 범위는 「울릉도와 죽도, 그리고 석도(독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조선조정이 울도군의 범위를 정한 것은 영토 수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당시는 섬에 대한 영유권 인식은 존재했지만, 바다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도군의 범위를 바다 건너 독도까지를 수치로 나타내지 않았다. 시모조는 수치를 활용하여 울도군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논리로 사실을 날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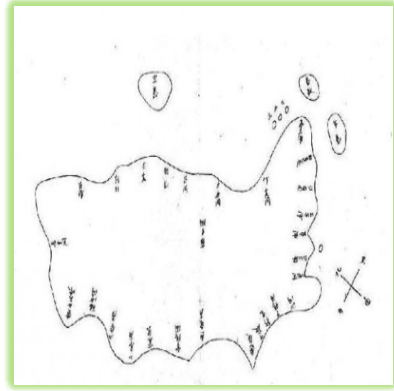
시모조는 동해바다에 한국영토로서 울릉도 이외에 독도는 없다고 하는 증거로서 ‘울릉도외도’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규원의 ‘울릉도외도’는 이후 울릉도의 강역(疆域) 인식의 기본이 되었고, 일본 측에서도 그것을 답습하고 있었다. 1883년 울릉도로 건너갔던 내무 소서기관(內務少書記官)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의 “복명서(復命書)”⁴⁵⁾에 첨부된 울릉도지도에는

44)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죽도(竹島)와 도항(島項)이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없다.⁴⁶⁾라는 것이다. “울릉도외도”에는 울릉도의 “외도”에 관한 것으로 독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독도는 동해바다에 울릉도와 또 다른 1개의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울릉도외도”에는 독도가 있으면 안 된다.



히가키 나오에 『복명서(復命書)』



아카즈카 쇼스케 『울릉도 보고서』

시모조는 울릉도의 범위에 관해서도 「1900년 6월 한일 공동울릉도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조선 측에서는 우용정(禹用鼎)이 시찰관으로 임명되었고, 부산의 일본영사관에서 사무 대리 영사 관보 아카즈카 쇼스케(赤塚正助)⁴⁷⁾ 등이 참여했고 해관세무사 프랑스인 라뵈테(羅保得; Laporte)가 동행했다. 그 모두가 울릉도의 위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아카즈카 쇼스케는 “동경 130도 2분, 북위 37도 5분”이며 라뵈테는 울릉도의 위치를 “북위 37도 30분, 동경 131도”라고 했다. 이것은 둘레 ”140-150리“ 범위 내에 있다.”⁴⁸⁾라는 것이다. 시모조는 1900년 한일공동으로 울릉도를 조사한

45)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 『복명서(復命書)』에 수록된 「지도」(1883년).

46) 下條正男, 「第48回 石島 = 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47) 「아카즈카 쇼스케(赤塚正助) 『울릉도 보고서(麟陵島報告書)』, 삽도(挿図)1900년.

48) 下條正男, 「第48回 石島 = 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결과, 울릉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울릉도를 조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의 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울릉도의 일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때 “황성신문”은 한일합동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 ‘울릉도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두드러진 섬은 우산도 죽도」⁴⁹⁾라고 하여 우산도와 죽도가 동일한 섬으로 1개의 섬 인식을 하고 있다. 시모조는 우산도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도항과 죽도」가 별도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도 유형의 「소위 우산도」와 청구도 유형의 「우산도」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9세기말의 「대조선국 전도 유형」에서 지금의 독도로 인식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산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

시모조는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와 아카츠키 쇼스케가 그린 「울릉도 지도」와의 관련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사실, 아카츠키 쇼스케가 남긴 울릉도 지도는 부속 섬으로 공도(空島), 도목(島牧), 죽도(竹島) 3섬을 그렸다. 이 가운데 공도(空島)는 공암(孔岩; 섬)을 한국어음에 맞게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도목(島牧) 역시 도항(島項)을 한국어음을 차음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나머지 죽도(竹島)는 울릉도 동쪽 약 2킬로미터에 위치한 죽도(竹島)로서 울도군의 행정구역에 기록된 죽도(竹島)이다. 도항(島項)은 울릉도의 동북에 있고, 공도(空島)는 울릉도의 북쪽에 있다. 모두 독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여 독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칙령41호의 「석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울릉도 조사의 목적은 울릉도에서 별채문제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⁵⁰⁾으로 독도 영유권을 다투기 위해 조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揭載) 참조.

49) 「울릉도사항」, 『皇城新聞』 1899년 9월 3일자. 최장근(2014)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되는 과정의 고찰」,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105-159.

50) 최장근(2014)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되는 과정의 고찰」,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

울릉도만을 조사한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독도와 무관한 울릉도 조사에 관해 소개하면서 독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칙령 41호는 독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즉, 「울릉도 조사 후 시찰관 우용정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청의서를 제출한 것은 1900년 10월 22일이다. 그것은 10월 25일 “칙령 제41호”가 되었고, 군의 행정구역도 “울릉도전도·죽도(竹島)·석도(石島)”로 정해졌다. 하지만 우용정 등의 조사는 5일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조사 범위도 외륜선(外輪船)으로 울릉도를 일주한 것뿐이다. 당연히,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 킬로미터나 떨어져있는 독도에 건너가지 않았다. 이때 시찰관 이용정이 인식하고 있던 울릉도의 강역(疆域)은 둘레 “140-150리”의 울릉도 한 개의 섬이었다. 이것은 울릉도에 대한 이규원의 강역 인식을 계승한 것으로 그 둘레 “140-150리”로서 현재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실제거리는 200여리이지만, 1906년 2월 심흥택 군수는 “먼 바다 100리 밖에 본국 소속 독도가 있다”라고 했다.⁵¹⁾

시모조는 1905년 이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 실태는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대한제국이 1909년에 간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울도군의 부속 섬으로 죽도(竹島)와 서항도(鼠項島; 도항島項)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도사 소관이 되었어도 울릉도의 부속 섬은 여전히 죽도(竹島)와 서항도(鼠項島; 도항島項)뿐이었다. 이것은 울도군의 행정구역인 “울릉도 전도와 죽도·석도”에서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우선 1909년의 『한국수산지』⁵²⁾는 이미 1905년 일본에 외교권을 수탈당하고 1907년 군대도 해

영토론』 제이앤씨, 105-159.

51) 『各觀察道案』 第1冊, 「報告書號外」, 신용하 편저(1999)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제2권 독도영토보전협회, 172.

52) 『韓國水産誌』(1909),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koreanfisheries-1909/(검색일:2017년5월12일)

산되고 내정권도 장악당하여 대한제국이 의지대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다. 이미 편찬을 주관한 부서는 농상공부 수산국이었고, 발행인은 후지타 켄이치(藤田謙一)로서 일본인들이 수산국을 장악하고 있었다.⁵³⁾ 그런데 시모조가 대한제국이 1909년 울도군의 행정구역을 정하면서 일부러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것이 사실의 조작행위이다.

2) “한국어 반절차음론”으로 사실 날조

시모조는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고,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 대해 「한겨레신문」(전자 판)은 한국 측 연구자의 발언으로 “시모조 마사오 등 일부 일본학자가 일본어 발음이 같다고 해서 ‘석도=관음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실 본인(시모조)도 결과적으로는 ‘석도=관음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관음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인 도항(島項)이기 때문이다. 관음도는 일본 측 호칭으로서 한국 측에서는 도항(島項)이라고 부른다. 게다가 내가 ‘일본어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석도=관음도’라고 주장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주장을 곡해하여 논란거리로 만드는 수법은 한국 측의 독도 연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논지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논란을 반박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내 견해를 “일본어 발음이 같다고 하는 이유 운운”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사례이다.⁵⁴⁾라는 것이다.

석도가 「관음도」가 되는 이유로서 도항이 울릉도의 속도이고, 그 도항이 일본명칭으로 관음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모조는 아무런 논증없이 주장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논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53)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복명서(復命書)』에 수록된 「지도」(1883년), 동상.

54)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説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掲載)」 참조.

둘째로 단지 관음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이기 때문에 칙령41호의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성이 없다. 왜 석도가 지금의 독도가 아니고 관음도인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논증해야한다. 시모조는 아무런 논증 없이 단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관음도가 석도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관음도가 ‘울릉도 전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증해야한다. 따라서 시모조의 칙령41호의 석도가 관음도라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칙령41호의 석도가 관음도라고 하는 시모조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관음도라고도 불려온 도항(島項; 섬목)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등에 따르면, “형태가 소목덜미 같다(形如臥牛)”라는 점에서 “소의 목덜미”를 의미하는 차자(借字)에서 1909년 간행의 「해도 306호(竹邊灣至水源端)」에서는 한국어음에 따라 “SOMOKU-SUM”이라고 영문표기를 하고 “서항도(鼠項島)”라고 한자표기를 하고 있다. 죽도(竹島)와 서항도(鼠項島; 도항島項)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하는 것은 1909년 간행의 “한국수산지”도 마찬가지다. 내가 ‘석도=도항(島項; 서항도鼠項島)’라고 한 것은 서항도(鼠項島)를 한국의 전통적 읽는 법에 따라 반절차음(反切借字)으로 읽으면 ‘SOMOKU-SUM’이 ‘SOKU’(돌)-‘SUM’(섬)으로 ‘석도’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어 발음이 같다고 해서”라고 한 적은 없다.⁵⁵⁾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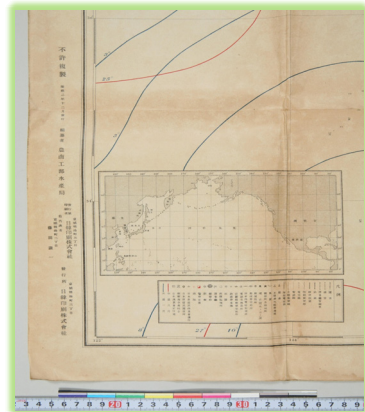
첫째는 1909년 간행의 『해도(海圖_306호)』와 『한국수산지』에서 관음도라고 불리는 도항(島項)은 울릉도를 검찰한 이규원이 「소의 목과 같은 형태」라고 하여 한자음을 빌려서 서항도(鼠項島)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모조가 석도(石島)=도항(島項; 서항도鼠項島)이라고 한 것은 반절차자로 읽으면, 「SOMOKU-SUM」이 「SOKU」(石)-「SUM」(島)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한국어에서 “섬목섬”이 “석도”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시모조의 논리는 사실을 날조한 아주 비논리적 주장이다.

55) 동상.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하고 “울릉도외도”를 작성할 때 지명에 대해 시모조는 「이규원의 “울릉도외도”를 비롯해 당시 울릉도의 지명에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유래한 지명이 차자(借字)에 의해 한자표기로 된 것도 많이 있었다.」⁵⁶⁾고 하여 도항에 관해 「한국어로 “소 목덜미”를 의미하는 도항도 차자(借字)하여 한자 표기한 것이다.」라고 하여 「소의 목」이 「섬목」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도항의 위치가 「섬의 목」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섬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소 납득이 가지만, 소목덜미와 섬목은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비논리적 주장이므로 사실 날조에 해당한다.

칙령41호의 「석도」에 대해 시모조는 「칙령 제41호」가 공포 될 때 한국어적인 표현이었던 도항(島項)이 "반절차음(反切借字)"에 의해 한자어로 표기되면 석도(石島)가 된다. 석도가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행정지역으로 된 것은 1882년 이규원 검찰 이후부터 울릉도의 강역(疆域)이 되었다. 거기에는 도항(島項)이나 죽도(竹島)는 있어도 독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어원론을 만들어 석도(石島)를 독도라고 말해대는 것은 아전인수식의 견강부회(牽強附會)적 설명이라는 것이다.



56) 동상.

첫째, 시모조는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울릉도 사람들이 「서목도」를 ‘반절차음’하여 「석도」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관음도를 석도라고 불렀다거나 기록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완전히 비논리적인 사실날조 행위이다.

둘째, 시모조는 칙령41호의 석도는 1882년 이후에 전라도에서 울릉도에 이주한 사람들이 사투리로 독도라고 불렀다고 하는 한국측의 논리에 대해 아전인수격의 황당무계한 논리라고 부정한다. 그것은 시모조가 한국말의 연구가 없고 무지해서 하는 말이다. 1904년 일본군함 니이가타호의 군함일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울릉도 주민들이 돌로 된 섬을 「독도」라고 표기했다고 하는 기록이 울릉도에 있었고,⁵⁷⁾ 중앙정부가 「울도군」을 설치하는 행정조치를 하면서 행정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음으로 돌섬을 「석도」라고 표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3) 시모조의 논리조작 방식

칙령 41호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한국측의 논리에 대해 시모조는 「앞으로 한국 측이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울릉도의 강역(疆域)이 “돌레 140-150”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고, 또한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기 이전에, 석도가 독도라고 칭하고 있었다는 확증을 문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조선어사전”에 【독(獨)명; “돌(石)”의 사투리. 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칙령 제41호”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무시한 망언⁵⁸⁾라는 것이다. 시모조의 주장의 모순점은 다음과 같다.

57)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175-178.

58) 下條正男, 「第48回 石島 = 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첫째, 울릉도와 독도는 별개의 섬이다. 울릉도의 둘레가 140-150리라고 하는 것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울도군이 울릉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서 「울릉전도」와 「죽도」 거기에다가 지금의 독도인 「석도」를 포함하고 있다. 시모조는 독도가 한국영토인 것을 부정하기 위해 울릉도와 울도군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하여 칙령41호의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로서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둘째, 시모조는 1900년 이전에 지금의 독도를 「석도」라고 불렀다는 확실한 문헌을 제시하면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역사가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올바른 해석이라는 주장은 역사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시모조 자신은 본인이 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도 아니고, 간접적인 증거자료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갖고 와서 논리를 날조하는 행위와는 사뭇 다른 주장이다.

셋째, 「우리문화가꾸기회」가 제시한 『조선어사전』에 【독(獨): 「돌(石)」의 사투리, 석(石)】으로 울릉도 사람들이 돌섬이기에 「독도」라고 불렀다는 논리에 대해 아전인수격의 황당무계한 비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시모조의 성향을 보면, 「이번 “조선어사전”을 발굴하고 “이것은 당시 (칙령 41호의) 석도가 독도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한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 관계자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 이유는 “칙령 제41호” 제2조의 석도가 한국영토 독도가 아니고 일본영토 다케시마(한국명칭 독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⁵⁹⁾라고 하는 것처럼, 시모조는 아무리 객관적이고 논리가 정연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사실을 부정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날조하는 죽도문

59) 下條正男, 「第48回 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2016年 9月 9日 掲載)」 참조.

제연구회의 대표격인 시모조 마사오의 사실 날조 방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6. 맺으면서

죽도문제연구회가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시모조 마사오는 석도를 관음도라고 주장하면서 비논리적으로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논리를 날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시모조의 사실 날조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논리성을 규명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는 「독(獨)」자가 6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회피하고, 일부러 「독(獨)」이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인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둘째,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新高)호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 서는 독도(獨島)라고 기록(書)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를 볼 때 1904년 이전에 이미 울릉도 거주민들은 오늘날의 독도 명칭에 대해 「독도」라고 명칭하고 있었고, 문서기록상으로도 「독도(獨島)」라고 표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기 때문에 울릉도 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는 주장으로 고문헌상의 「독도(獨島)」와 「칙령41호」 「석도」와의 관계성을 부정했다.

셋째, 시모조는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한국측의 고지도에는 원래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토사 박석창이

「울릉도도형」을 그릴 때,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지금의 죽도에 「소위 우산도」라는 형태로 비견했다. 이 잘못된 것이 바탕이 되어 「광여도」에서 그대로 답습하여 「소위 우산도」라고 했고, 「청구도」에서는 「우산」이라고 답습하여 울릉도의 부속 섬처럼 표기했다. 이런 형식은 그 후 검찰사 이규원이 직접 답사하기 전까지 답습되었다. 이규원은 이런 잘못된 형식을 완전히 파기하고 새롭게 울릉도 주변의 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어 도항, 죽도라고 표기했다. 우산도라는 지명은 울릉도 부속 섬의 지명으로서 사라졌다. 그것은 이규원이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관찬지도에서 「우산도」, 칙령41호에서는 「석도」, 울릉도의 속칭으로는 「독도」라고 호칭되었음에 분명하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에서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가 되었다는 것은 1904년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1906년의 심홍택 군수가 “본방 소속 독도(獨島)”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맞다. 그런데 시모조는 만일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라면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편입조치한 “시마네현고시 40호”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칙령 41호의 「석도」는 지금의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상과 같이 독도는 칙령41호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영토내 서널리즘에 의한 타국영토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나이토우 세이추우 저, 권오엽, 권정 역(2005) 『獨島와 竹島』 제이앤씨, pp.116-212.
- 송병기 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9-252.
-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pp.184-207.
- 신용하(201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p.163-186.
- 최장근(2014)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105-159.
- 大西俊輝(2007) 『続 日本海と竹島-隱視聴会合紀を読む-』, pp.3-388.
- 川上健三 저, 권오엽 역(2010) 『일본의 독도논리-죽도의 역사지리학적연구』 백산자료원, 316-32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편(2014) 『“죽도문제10문100답”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pp.99-102.
- 下條正男(2004) 『竹島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pp.105-133.
- 下條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pp.74-113.
-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40-66. 内藤正中, 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新幹社, pp.152-165.
- 内藤正中, 金柄烈(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新幹社, pp.77-100.
- 「한겨레신문」, 2017년 9월 2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758755.html#csidx1482988413327e49d5c73c49a790971>(검색일: 2017년 5월 4일).
-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검색일: 2017년 4월 26일).
- 「韓国水産誌」(1909), 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koreanfisheries-1909/(검색일: 2017년 5월 1일).
-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한 조선지도목록」, <http://blog.naver.com/cms1530/1003324190>(검색일: 2017년 5월 14일).
- 「topclass」(2011년 6월), <http://topclass.chosun.com/board/print.asp?catecode=&tnu=201106100007>(검색일: 2017년 5월 14일).
- 「울릉도관광지도」, <http://cafe.daum.net/yeosasa/DDe6/6?q=%BF%EF%B8%AA%B5%B5%20%C1%F6%B5%B5&re=1>(검색일: 2017년 5월 10일).
- 「중앙일보」 2015년 7월 17일, <http://joongang.joins.com/article/937/18258937.html?ctg=1700&cloc=joongang|article|hotclick>(검색일: 2017년 5월 17일).
- 「이아러브울릉도」. http://dd1.co.kr/board/bbs/board.php?bo_table=mboard02&wr_id=31(검색일: 2017년 5월 6일).

<Abstract>

The Untruth of Takeshima Issues Research Study on 「Seokdo = Dokdo」 of Emperor Statute No. 41

Choi, Jangkeun

Masao Shimozo, chairperson of the Takeshima Issue Research Study, speculated on the illogical claim that Seokdo was not Dokdo in Ulleungdo, Jukdo, and Seokdo of Emperor Statute No. 41.

First, in spite of the fact that “Dok” was used as a dialect of the stone in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it avoided this 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ed the part used in the meaning of "solitary" And that the Seokdo of edict can not be Dokdo.

Secondly, Shimozo refused to argue that the Japanese Niitakako naval ship history journal records as the name of Dokdo in Ulleungdo Island 1904, and Ulleungdo people entered Dokdo Island in 1904, and the Ulleungdo people were hired by the Japanese. It faked the fact that it entered Dokdo for the first time.

Thirdly, Shimozo claims that the 「Seokdo」 is the present 「Ganumdo」 in 「Ulleung-dong, Jukdo, and Seokdo」 of the edict 41 issued in 1900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resent Jukdo with the Usando. It was the fact falsified by Kwangyeodo and Cheongudo. But Shimozo are avoiding the argument of the fact be based on the misrepresentation of Park Seok Chang 's “Ulleungdo Shape”.

Fourth, Seokdo in the Edict No.41 of 1900 describe by Chinese characters a dialect of stone island in Ulleungdo. It was described as Dokdo in the Japanese naval ship Nitaka of 1904. It is clear that the executive of Shim Heung-Taek labeled “Dokdo belonging to our nation”. However, Shimozo is falsifying facts illegally to justify invasive Shimane Prefecture. Thus, it is the territorial aggression by territorial nationalism that the Takeshima Issues Research Study claims the sovereignty over Dokdo.

Key words: Takeshima Issues Research Study, Dokdo, Seokdo, Emperor Statute No. 41, Korean Language Dictionary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결정됨

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 일본 측 주장의 국제법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

나 흥 주*

〈목 차〉

1. 소위 “독도문제” 개황
2. 독도가 한국영토란 역사적 및 국제법적 주요 근거 일별
3. 일본 측의 “고유한 자국영토(독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독도’ 수호책
5. 결론

〈국문초록〉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

* 전 주미대사관 해무관,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 한국독도영유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불법성

1. 소위 “독도문제” 개황

- 우리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국권회복의 상징이다....
한·일관계와 동 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간음하는
시금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6.4.25)
- 일본이 독도침탈을 꾀하는 것은 한국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영태 전 외무부장관, 1954.10.28)

독도는 역사적 및 국제법상 우리영토이며, 우리관할 하에 있다. 우리나라의 그 영토주권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소위 “독도문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탐욕(“greed”)에 따른 부당하고 근거 없는 그들 주장이 각종 매체¹⁾를 통하여 전파되어 국내외에서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아베정부 출현 이후 우리 독도영유권에 관한 왜곡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동 일본정부가 자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내용을 게재하여 교육시키고 있음은 오늘날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이라 할 것

1) 일본정부는 외교청서, 국방백서 등 공문서와 공공기록물(10 Issues of Takeshima: 2007. 12월 10개국어로 번역 국내외 배포, 등 포함)을 통하여 그간 독도왜곡내용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왔음.

이다.²⁾ 아직 판단능력과 역사인식능력이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에 관한 이런 왜곡된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침은 미래 한·일세대간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견지에서우리 교육부가 일본교과서상 동 독도왜곡내용에 관하여 “日 잘못된 역사교육에 동북아평화 위태” 제하의 성명³⁾을 그 때(2015.4.6) 즉각 발표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일본의 집권당이 “민간분야의 영토주권수호운동 지원을 위하여 2017년 예산에 ‘5억 엔’ (약 50억 원) 증액을 일본정부에 요구(2016.10)하였다”고 국내언론(YTN)이 보도한 바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세대는 합심단결하여 ‘독도영토주권’을 온전히 수호하여 후대에 남겨 주어야할 역사적 사명을 다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독도와 관련한 이러한 엄숙한 현실 하에서도, 우리정부는 여전히 소위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현재 찾기 어렵고, 오늘날 우리학계 일부도 일본의 이러한 독도왜곡 행태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조사를 통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애매하고 미온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가 한국영토란 제 근거, 일본의 불법·부당한 독도

2) 일본정부는 2015.4.6. 중학교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내용을 실어,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으며, 2016.3.18. 그 같은 왜곡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반영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땅”이란 교육의무를 규정기로 결정하였 다(YTN뉴스 자막보도: 2017.3.31).

3) “日 잘못된 역사교육에 동북아평화 위태”-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라 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를 검정합격 시켰다. ... 역사적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역사나 영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미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신문, 2015.4.7. 보도).

영유권주장, 우리의 현실적 대응방안,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영토주권에 관한 모호하고 미온적 논조 및 향후 학문적 과제 등에 관하여 일별하여 보고자 한다.

2. 독도가 한국영토란 역사적 및 국제법적 주요 근거 일별

1) 역사적 근거

가. 삼국사기(김부식, 1145년);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우산국(울산도와 울릉도로 구성)이 신라에 복속.

나. 세종실록지리지(1454, 于山武能 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晴明 卽 可望見 新羅時稱 于山國 一云 鬱陵島).

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권 45 蔚珍縣部 于山島 鬱陵島條: 二島 在 縣正東海中 二島風日晴明 歷歷可見 風便卽二日可到 一說 于山 武陵本一島地方百里, 八道總圖(于山島와 鬱陵島 도시).

참고. 본 동국여지승람에 포함되어 있는 “八道總圖”가 특히 중요함. 국제중재재판에서 조약, 공문서 및 공공자료 등이 최고의 증거력을 가지나, 지도는 기본적으로 아니라 부차적인 증거력을 갖는다. 그러나 본문과 함께 있는 지도는 그 본문과 같은 증거력을 갖는다.⁴⁾

- 1698.4월: 조선국 예부참의 이선부(李善傅) 명의의 서계(요지): 일본에서

4) Durward V. Sandifer, Evidence Before the Tribunals, Charlottesville, UVA Press, 1975) : “Generally speaking, an official document or a public record is the best of the facts or rights it purports to record and is always admissible in international, as it generally is in municipal proceedings.” p.208. “The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use of maps in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constitutes a collateral rather a principal, part of the best evidence rule as defined in the foregoing sections. ...It is only in occasional instances in which maps are mad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to which they are attached.” pp.229-30.

말 하는 죽도(竹島)가 1도 2명임을 알고 있으며, 그 땅이 동국여지승람과 “八島總圖”에 실려 있다.

- 1699.1월(일본 측 회신), 일본 대마도(형부십유) 평의진(平義眞) 명의의 서계
(요지): 조선의 서계를 막부 동무(東武)에게 보고 했으며, 잘 되었음. (필자 주. 수용).

이로써, 조선국과 일본 간 수년에 걸친 소위 “울릉도 쟁계”는 외교교섭을 통하여 국제법적으로 종결되었다. 즉,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이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최종적으로 국제법상 완결되었던 것이다. 국제간 합의는 당사국 간에는 바로 법이 되기 때문이다.⁵⁾ 또한, 이와 같이 국제간 최종적으로 확정된 영토주권은 소유국가가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영유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국제판례가 있다.⁶⁾ 조선국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 ‘독도’가 조선국 영토라는 것은 다음의 일본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과 태정류전(太政類典)이 증명하고 있다.

- 태정관지령(1877.3.29): “질의한 일본해(동해)내 죽도의 1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수신: 일본 내무성).

참고. 동 태정관지령 검토서 중에, 기죽도(磯竹島) 약도가 있음이 2005년 일 본인 목사 ‘우루시자키 히대유키’ (漆琦英之)에 의거 일본 공문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동 약도에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송도’(松島)란 일본이름으로 그려져 있다. 즉, 태정관지령 중 “죽도 외 1도”가 ‘독

5) J.L. Brierly, *The Law of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68), p.57.

6) Victor Emmanuel, *Clipperton Island Case*, 1931, Vol.26,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394: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France subsequently lost her right by derelictio since she never had the animus of abandoning the island and the fact that she has not exercised her authority there in a positive manner does not imply the forfeiture of an acquisition already definitely perfected.”

도'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동 약도의 유무에 관하여 오늘날 침묵만 지키고 있다.

- 태정류전(太政類典, 1877.3.29.): “제목: 일본해(동해)내 竹島 외 1도를 판도(영토)외로 정함” 하에, 전기 태정관지령 내용이 공포되었다. 동 태정류전은 관보(官報)의 전신이었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이 관보를 통하여 국내외에 공포된 셈이다.

참고. 1699.1월의 일본서계에 의하여, ‘울릉도 및 독도’의 조선국영토주권이 합의됨으로써, 국제법상 ‘독도’영유권문제는 결정적으로 종결된 것이다. 그 후 역대 일본정부는 200여년간 (1905년 러·일전쟁 중의 일본정부가 불법적으로 은밀히 국제법을 위반하며 ‘독도’를 무주지란 억지를 내세워 일본에 편입할 때 까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동 일본 정부의 ‘독도’ 일본편입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함은 국제간 합의는 당사국 간에는 법⁷⁾인데, 1699.1월 일본서계에 의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요, 국제법상 반금언원칙 (principle of Estoppel)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또한, 1905년 당시 일본정부가 ‘독도’를 무주지(terra nullius)란 구실로 불법적으로 일본에 편입한 것은 1905년 전에는 ‘독도’가 일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독도’를 “고유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가당착임을 웅변하다. 이와 비슷한 지적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벤 다이크 (Jon M. Van Dyke) 교수의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⁸⁾

7) J.L. Brierly, *The Law of Nations*,(Oxford: Clarendon Press, 1968, p.57: Treaties as a source of law. Agreement is a law for those who make it, which supersedes, supplements, or derogates from the ordinary law of the land. Modus et conventio vincunt legem....Treaties then are clearly a source of law for the parties to them, of ‘special’ or ‘particular law’”.

8) Jon M. Van Dyke, *Dokdo, Chapter III, Addressing and Resolving the Dokdo Matter*,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Justice, Edited by Sokwoo Lee and Hee Eun Lee, (Londo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2011), p.29: “Japan claimed sovereignty over Dokdo on January 28, 1905, stating that this territory was terra nullius....there being no evidence of its being occupied by any country“. This Japanese statement

- 일본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2.22)에 의한 ‘독도’의 일본편입 고시: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법상 원천무효인 일본정부의 ‘독도’불법편입 각의의 결(1905.1.28.)에 기반을 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역시 국제법상 원천무효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무주지 편입에 관한 고시 주체는 지방현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제관례이기도 하다.)

- 라. 만기요람(萬機要覽, 軍政編, 1808): 우산은 곧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輿地志云 鬱陵 于山 皆 于山國地, 于山 卽, 倭所謂松島也).
- 마.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軍政編, 1908):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곧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輿地志考: 輿地志云 鬱陵 于山 皆 于山國地, 于山 卽 倭所謂松島也).
- 바. 고종환제칙령(勅令) 제41호(1900.10.25):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 제1조: ...
 - 제2조: 군 위치한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 할사.
 - 제3조: ...
- 사. (일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일본의 건지(乾地, 서북쪽 땅)는 은주(隱州)로 한한다.(...隱州 在北海中 古隱岐島...自子之卯 無可住地 戊亥間行二日夜一日 有松島...又一日丁有竹島(俗言 磯竹島 多竹海鹿) 然即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that Dokdo was “terra nullius”(referring to land that is unclaimed by any country) is significant, because it serves as anacknowledgement that Japan has no meaningful claim to Dokdo based on historical activities prior to January 1905.”

2) 임진왜란 후, 19c 일본의 한반도 재 침략행태 일별

일본정부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것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이 19c 말-20c 초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⁹⁾ 당시 일본정부의 그 역사적 침략 행태를 일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c 임진왜란 후 우리의 동해상 한·일국경선은 상당기간 일본어민들의 불법 월경어업으로 혼란 상태에 떨어 졌었다. 그 과정에서 안용복 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조선국과 일본 막부 간 외교협상으로 1699. 1월 ‘독도’의 조선국 영토주권이 최종적으로 국제법상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런지 200여 년 후 일본정부는 러·일 전쟁 중 군사력을 배경으로, 불법적으로, 은밀히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일본에 편입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19c 말 일본 내 “정한론”(征韓論)의 맥을 잇는 20c초 일본의 한반도 재침행태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역사학자 이태진 교수는 “근대 일본 초슈(長州)번벌의 한국침략 법과 윤리의 실종”(2010.8.23.,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56년에 요시다 쇼인(吉田松隱)이 하키(萩)에 소규모 학교를 열어 초슈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면서, 〈정한론〉(征韓論)을 가르친 이래 1910년 한국강제병합을 거쳐 1919년 1월에 고종황제가 독살 될 때 까지 63년간에 걸친 명치 일본국가의 한국침략사를 초슈번벌세력의 “정한”의 실현이란 각도에서 정리해 본 것이다. … 이웃나라의 왕과 왕비를 살해하면서까지 목적달성하려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인류의 문제... 무사사회의

⁹⁾ Harry B. Scheiber, professor, U.C., Berkely, op. cit. supra note 8), pp.16-17: “...To accept Japan’s argument based on unilateral annexation and the duration of subsequent control is indeed difficult, for it requires that we should set aside as irrelevant the actual historic context in which it acted-that is, that this seizure of control in Dokdo occurred at the very moment in history when Japan was coercibly depriving Korea of its sovereignty and more over, that this was but the first subservient to exploitive and often cruel Japanese rule. Hence, Korea was deprived of effective means of asserting its nation-based claim in a diplomatic arena.”

전통이 저지른 과오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왜 이런 일 까지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가에 대한 민족적 수치심이 밀려들어 오기 때문이다“고 끝을 맺었다.

이런 비극적 역사 속에서 ‘독도’가 제1번째 일본에게 탈취당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국권회복의 상징이다”고 말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 의미를 알 것 같다. 미국 하버드대학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 교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아서 그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고 갈파하였다.

우리가 ‘독도’를 재 침탈당하지 아니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폭구민(除暴救民)과 척왜척양(斥倭斥洋)의 기치를 든 동학농민군이 1894.5.30.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초토사 홍계훈(洪啟勳)을 전주지방에 파견함과 동시 청나라에 원군을 청했다. 우리조정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동학을 진압하기 위하여 동년(1894) 6월 11일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불청객인 일본군은 침략군으로서, 동학은 남쪽의 호남에 있는데 그 보다 앞서 6월 9일 서울의 문호인 인천항에 불법 상륙하였다. 그리고 주한 일본공사 오도리(大鳥義昌)는 “조선정부의 철군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와 있는 6척의 군함에서 420명의 해병을 차출하고 대포1문을 이끌고 동년 6월 10일 서울에 입성했다.” 뒤이어, 일본군 1개 독립대대(1,050명)가 동년 6월 12일 인천항에 상륙 후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동년 6월 16일에는 일본군 혼성여단(2,673명, 馬186두)이 인천항에 상륙한 후 일본인 거류지에 숙영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상륙은 불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병자수호조규(제1조)위반임은 재언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 측은 천진조약에 근거한 것임을 내세우나 그것은 조선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일 양국 간의 문제일 뿐이다.

척왜척양의 기치를 들고 봉기하였던 동학군은 일본군의 인천상륙소식에 접하자 동년 6월 10일 초토사 홍계훈(洪啓勳)과 전주화약(全州和約)

을 맺고 해산하였다. 동년 6월 10일 서울에 입성한 불법상륙 일본군은 동년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점령 후 청나라에 전쟁을 도발하였다. “경복궁 무력점령사태를 합법화하고 군작전상의 편의를 핑계로 일본은 조선정부에 한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정부는 한동안 동 협상에 불응하였으나, 일본 측 강요와 일본군의 경복궁 철수를 조건으로 동년 8월 20일 합의하였으니, 이것이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 7조관)이다.”¹⁰⁾ 일본 측의 강요로 동년 8월 26일 또 하나의 협상안이 체결되었으니, 이것이 한·일맹약(韓·日盟約)이다.¹¹⁾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 아산만으로 향하던 중 동년 7월 26일 조우한 청나라군대를 공격하였고, 8월 1일 청·일양국은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동 전쟁은 익년 일본군의 승리로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條約) 강화조약의 체결로 끝났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조선국 내정간섭은 극심하여 갔으며, 1895년 10월 8일 미명의 명성황후시해사건은 그 절정에 이른 것 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가 우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고, 러시아가 청나라와 체결한 천진조약에 의거 요동반도의 여순항(Port Arthur)을 조차하여 이를 러시아 해군의 요새로 하였다. “러시아의 태평양진출과 그 연해에 미칠 러시아의 영향을 우려한 일본의 야마가다 아리도모(山縣有朋)는 1898.5.24.부터 로마노프와 형상을 하였으며, 그 제시안은 조선을 분할점령(38°선을 기준)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이를 거절하였다.”¹²⁾ 이 대목을 영국의 해군전략가 베라드 제독(G.A. Ballard, Vice-Admiral)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0) 이광린, 한국사강좌 (근대편), (서울:一潮閣, 1984), p.330(‘94.7.27.대궐근처 양국군 충돌 불문 등).

11) Ibid. p.331. (일본은 청국에 전쟁을 담당, 조선국은 일본군의 진퇴와 그 식량준비 등 편의제공 등).

12) Ibid. p.390.

러시아가 1898년 중국으로부터 여순항(Port Arthur)을 포함한 요동반도를 조차하여 태평양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진출을 양해하나 그 이상은 불가하고, 조선(Korea)을 일본의 진출영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가 이것을 거부하자, 일본은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¹³⁾

일본은 7년¹⁴⁾이란 장구한 노력 끝에, 1902.1.30. 영일동맹조약(Anglo-Japanese Alliance Agreement) 체결에 성공했다. 더 나아가서 일본내각은 러시아와의 개전을 대비하여 1903.12.30. 대한방침(對韓方針)을 의결하였으니, 이는 20c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들어낸 정한론(征韓論)에 이은 또 하나의 명백한 한반도침략정책이었음이 들어났으니, 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韓國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臨하더라도 이를 我의 權勢下에 두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은 물론이나, 될 수 있는 한 名義가 서는 것을 택함

13) G.A. Ballard, Vice Admiral, U.K..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London: John Murray, Abemarle, St. W., 1921),pp.188-91: "...and on this part lay the fine natural harbour of Vladivostok, the Headquarters and Supply Base of the Russian Pacific Fleet. But as already observed, this was not an ice-free port, and the Russian Authorities constantly kept their eyes towards, the Yellow sea farther to the South. Especially on its eastern arm extending between Korea and Liao-Tung Peninsula. To establish a footing on its shores, they began in 1898 by obtaining from Peking, under practical compulsion, a "lease" of part of Liao-Tung peninsula itself, which included Port Arthur.(p.187). ...In their endeavors to settle the matter peacefully by compromise, the Japanese went so far as to propose a convention whereby "they would pledge themselves to recognize Manchuria as being outside their legitimate sphere of influence, the Russians would meet them half-way by agreeing to recognize that Korea was outside of Russiabut Russia was to be subject to no pledges or restrictions as regards Korea.... and the last word had apparently been said on the Russian side, a situation arose which nothing but war could end, should neither nation be afraid to face the ordeal."

14) 영일동맹조약: 제1조(요약); 일본은 조선에 상업적, 산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유할 정도로 (in a peculiar degree)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보호키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치강구를 이해한다.

이 得策이기 때문에 혹은 往年의 淸日戰爭에 있어서와 같이 攻守同盟 혹은 다른 保護的 協約을 체결하면 便宜할 것이다.¹⁵⁾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쉬아이버(Harry B. Scheiber, Professor, U.C., Berkeley) 교수도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일본이 한국침략과정에서 탈취한 그 역사적 사건들의 정당화가 곤란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1905년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하여 Ⅱ차 세계대전 말까지 점령관리를 유지한 것들 내 세우고 있지만, 그 시기에 일본이 협박으로 조선(Korea)의 주권을 빼앗고, 조선국민의 전체생활과 사회를 일본의 착취와 잔인한 통제 하에 두어서 조선(Korea)이 외교경로를 통한 국가적 항의의 수단마저 박탈당한 때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했던 것이어서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¹⁶⁾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존 벤다이크(Jon M. Van Dyke) 교수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청구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는 자국의 독도편입이 조선(Korea)을 자국에 예속 시키고 그 조선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의 원

15) 이광린 전 각주 10) p.474.

16) Harry B. Scheiber, professor, U.C., Berkely, Perspectives from Law and History in War Guilt In Relation to the Dokdo Island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Edited by Seok Woo Lee & Hee Eun Lee,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1), pp.16-17: "...To accept Japan's argument based upon unilateral annexation and the duration of subsequent control is indeed difficult, for it requires that we should set aside as irrelevant the actual historic context in which it acted—that is that, this seizure of control in Dokdo occurred at the very moment in history when Japan was coercibly depriving Korea of its sovereignty, and moreover, that this was but the first subservient to exploitive and often cruel Japanese rule. Hence, Korea was deprived of effective means of asserting its own nation-based claim in a diplomatic arena."

천이 되었던 ...팽창주의 군사 활동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믿게 해야 할 것(인하대, NAHF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2007년, 그랜드 힐튼 호텔)

이런 견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늘날 소위 “독도문제”에 관한 다 음 지적은 그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국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 배, 역사 교과서문제와 더불어 과거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 래의 한일관계와 동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간음하는 시 금석입니다. 일본이 잘 못된 과거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 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고(1894),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병력 및 함정 등 증강뿐만 아니라 영일동맹조약체 결(1902)과 대한방침(1903) 수립 등 만반의 태세를 가춘 후, 마침내 일본의 소함대가 1904년 1월 28일(Gregorian 동년 2월 9일) 11:45 인천항에 있던 러시아 순양함 발야그(Varyag)함과 포함 커리에쓰(Koreyets)함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양국 간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 러일전쟁 발 발 1주년이 되던 1905년 1월 28일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 일본 막부정부가 1699년 1월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가 조선국 영토임을 인정한 이래 200 여 년 간 존중하여 왔던 ‘독도’에 대한 조선국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무주 지’(terra nullius)라며, 국제법원칙(금반언원칙, the principle of Estoppel)을 위반하고,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일본에 편입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일 본인들이 호칭하여 왔던 명칭인 “마쓰시마”(松島) 대신에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한 것이 오늘날 소위 “독도문제”가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즉, 일본은 한반도를 수중에 넣기 위하여 벌린 러일전쟁 중 1905년에 제일먼저 ‘독도’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갔던 것이

나, 일본이 Ⅱ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후 포츠담선언(8)에 근거하여 ‘독도’가 다시 1946.1.29(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677호, the Directive, SCAPIN 677) 한국 땅으로 원상대로 귀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위 “독도영토분규”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근거 없는 일본 측의 만부당한 주장만이 허공에서 메아리 칠 뿐이다. 대한사람들은 그 관할권행사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결코 ‘독도’에 관한 일본 측의 헛된 “자국 땅”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일본 측의 “고유한 자국영토(독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탐욕(“greed”)을 버리지 못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독도가 소위 “자국 땅”이란 근거 없는 주장을 하여 왔다.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아베 정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어 왔다. 급기야 아베정부는 중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2015.4.6. 아직 판단력과 역사인식이 부족한 일본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같은 ‘독도’에 관한 거짓 내용을 신기로 2016.3.18. 결정하여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소위 “독도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영국과 알헨티나 간 포크랜드 전쟁(the Battle for Falklands)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일헨티나의 1955년 교과서개정 내용: “Malvinas(Falklands에 대한 알헨티나 명칭)는 알헨티나 땅인데 영국이 감점하고 있다.”을 학교에서 가르친 결과, 1세대 후 포크랜드 전쟁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측 교과서 상 ‘독도’왜곡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알헨티나 교과서에도 없는 일본 측 독도왜곡 내용 중 특히 한국이 “불법” 점거란 용어는 내셔널리즘이 강한 일본 어린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견지에서, 전기 일본 교과서상 독도왜곡 내용이 역사적 사실왜곡은 말할 것 없지만,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위반사항만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1) 1699.1월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간 ‘울릉도와 독도’가 당시 조선국 영토란 국제합의 위반. 국제간 합의는 당사국간 일종의 법¹⁷⁾이며, 국제간 합의된 영토주권은 영유국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영유권은 유지된다.¹⁸⁾

- (2)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8) 조건 위반

동 (8): “카이로선언 조건은 시행한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크와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소 도서들에 국한한다.”(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일본의 영토주권은 4대 도서(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크)와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소 도서들로 국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소도로 결정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 땅 소위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7) J.L. Brierly, op. cit., supra note 5) p.57: “Agreement is a law for those who make it, which supersedes, supplements or derogates from ordinary law of the land, Modes et conventio vincunt legem.” p.325: “The general rule is that treaties creates rights and duties only for the parties to them.”

18) Victor Immanuel, Clipperton Island Case, 1931, Vol.26,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394: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France subsequently lost her right by derelictio since she never had the animus of abandoning the island and the fact that she has not exercised her authority there in a positive manner does not imply the forfeiture of an acquisition already definitively perfected.”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포츠담선언(8) 후단의 일본영토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3) 스카핀(SCAPIN) 훈령(지령) 677(1946.1.29.) 위반

동 스카핀(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발령근거는 포츠담선언(8), 일본의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 2 Sept. 1945), 일본항복 후 초기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26 August 1945, approved 6, September 1945) 및 일본항복 후 일본점령과 통제에 관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기본훈령(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ember 1945)을 들 수 있다.

특히, 전기 ‘처음 기본훈령’에서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 대통령이 스카핀에 부여한 다음 최고권한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 일본에 대한 귀 권한과 권위의 근거는 미국대통령에 의한 스카핀(SCAP) 지명.

* 일본왕이 수용한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 등

(위 2 문서는 포츠담선언에 근거함.)

이들 문서에 근거한 “귀하(SCAP으로서)의 권한”.

: (1) 이 항복 집행목적상 최고(supreme for the purpose of the carrying out the surrender.)

(2) 적국군사점령관의 재래의 권한에 추가하여, 포츠담선언조건과 이 항복을 집행하기 위하여 귀하가 적당하고 권고할만하다고 고려하는 어떤 단계적 조치도 취할 권한(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owers of a military occupant of enemy territory, you have the power to take any steps deemed advisable and proper by you to effectuate the surrender and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2. The Basis and Scope of Military Authority, Part I, General and Political of the Basic Initial Post_Surrender Directive)

#1. 스카핀 677(1946.1.29.)의 3., 4. 및 6. 고찰

(1) 3. 규정 (발췌)

: 본 훈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홋카이도, 혼슈, 큐슈 및 시코크)와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보다 작은 도서들과 북위 30°의 북쪽 유구(난세이) 열도(구치노시마 포함)로 국한 하며, (a) 울릉도, 리앙코드 암석(다케시마, 독도) 및 켈파트(사이슈도 또는 제주도), (b)북위 30°이남 유구(난세이) 열도(구치노시마 포함), 이즈 ... (c)... 등을 제외한다.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 (c)...

본 규정 3.의 중요성: '독도'가 명문으로 일본에서 제외(exclude) 된 것이며, 그 후 변경된바가 없음에 있다. 동 '독도'제외 규정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시 "일본에 '독도'가 포함된다" (Japan comprises ... Liancourt Rocks (Take Island)는¹⁹⁾ 규정을 포함코자 적극적 로비를 했으나 실패하였다.

(2) 4. 규정 (발췌)

: "일본 제국정부의 통치적 및 행정적 관할로부터 특별히 제외되는 추가적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 (2) ... (3)코리아(Korea) ... (4) 화태(가라후토).

¹⁹⁾ 해양수산부, 바다는 왜 파란가?, (1998), p.174, 우리나라 전 도서의 수: 4,198개 도서(남한: 3,153개 섬, 북한: 1,045개 섬).

본 규정 4.의 중요성: 코리아(Korea)는 한반도와 총 4,198개의 도서 (남북함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일본에서 ‘코리아’(Korea) 제외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총체적으로 ‘코리아’가 일본에서 제외된 것이다.

(3) 6. 규정 (발췌)

: “본 훈령(지령) 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the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본 조항의 중요성은 일본 측이 전기 규정 3.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에 대하여, 동 제외조치가 임시적인 것이며, 최종적 제외조치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잘 못된 주장의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본 규정 6.의 본 뜻은 “일본의 영토는 전기 4대 도서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서로 국한 한다”는 전기 포츠담선언(8) 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본의 소도서들에 관한 연합국의 결정을 스캇(SCAP)훈령(지령)677호로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소도서에 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추후 새로 또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동 훈령 677호로 결정한 소도서들이 “임시적”인 것이란 뜻은 결코 아님을 지적하여 둔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연합국에 의하여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된바가 없고, 도리어 일본주권에서 ‘제외’(exclude) 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자국 땅이란 주장을 하는 일본은 국제특별법 시행령격인 스카핀(SCAPIN) 677(1946.1.29.)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9(d)²⁰⁾

²⁰⁾ Article 19(d), Peace Treaty, SanFrancisco: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규정(일본은 점령당국에 의한 조치효력 인정)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평화조약 제2조(a) 상 소위 “독도 누락론” 비판

일본 측 일부 학자들은 동 제2조(a) 규정상 “울릉도”에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마치 오늘날 소위 “독도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로 인한 결과물이란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거리낌 없는 말을 주저치 않는다. 소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란 실재를 부인할 수는 없을 지라도, ‘독도’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독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츠담선언(8)의 카이로선언조건 시행차원에서 동 평화조약체결(1951) 보다 “6년 전”에, 동 평화조약을 주관했던 존 포스터 딜레스 미국대표가 연설(1951.9.5)을 통하여 지적했던 것처럼, 연합국의 일본점령당국(the Occupation Authority)에 의거 이미 시행되었었기 때문이다.

동 평화조약 제2조(a) 규정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2조(a) 규정 (발췌): “일본은 코리아(Korea)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2) 검토
 - ㉞ 일반사항
 - 누락: * 한반도
 - * 4,198개 주변 도서
 - 문제: 동 규정상 실제로 “코리아(Korea)에서 누락된 것은 위 두 개 사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

항이라 볼 수 있으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Law of Treaties) 제32조(Supplementary Interpretation) 규정에 의거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㉔ 구체적 검토

평화조약을 시종 주관했던 미국대표 덜레스(John F. Dulles)는 동 조약체결 3일전 연설(1951.9.5)에서 동 조약체결여건 성숙과정과 관련, 연합국의 점령당국이 그간 만족스러운 정도로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 규정을 사전 성취함으로써 이제 ‘평화조약’체결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포츠담선언 항복조건상 영토규정을 6년 전에 기 시행하였음과 금반 동 조약체결로 공식적으로(formally) 이를 비준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동 제2조(a)의 일본이 포기하는 내용은 포츠담선언(8)의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크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서들로 국한 되어야 한다”**는 영토조항과 엄격히 일치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일본에서 ‘독도’가 제외된 것을 함축한다. 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할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함은 포츠담선언(8) 후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What is the territory of Japanese sovereignty? Chapter II deals with that. Japan formally ratifies provisions of Potsdam surrender terms, provisions, which so far as Japan is concerned, were actually carried into effect 6 years ago. The Potsdam Surrender Terms constitutes the only definition of the peace terms to which and by which Japan and the Allied Poers as a whole are bound...Therefore, the Treaty embodies Article 8 of the Surrender Terms which provided that Japanses sovereignty should be limited to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ome minor islands. The renunciations contained in Article 2 of Chapter II strictly and scrupulously conform to that Surrender Terms.”).

#3. 한·일 기본관계조약(1965.6.22.)

(The Treaty On the Basic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14년간의 긴 협상(1951-1965): 한·일과거사 등 난제 중 시종 ‘독도’문제가 특히 난항 초래(1965년 서명식 때까지).
- * 동 조약서명식 때의 양해각서 파동: 일본 측은 1965.6.22. 17:00에 있었던 동 조약서명식 때 예상치 못 했던 한 장의 ‘양해각서’를 우리대표단 앞에 내밀고, 서명을 요청했다. 그 안에는 조약시행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포함하여, 조약문해석문제 등이 있을 때 우선 외교계통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담고 있었다. 우리대표단이 그 각서내용 중 “독도문제” 삭제를 요구하며, 서명을 완강히 거부하자, 일본 측은 그 회의를 중단하고, 비상각의를 열어 “독도문제”를 삭제하였고, 그 문자 삭제 후에 우리대표는 동 기본관계조약에 서명하였던 것이었다.²¹⁾ 이는 ‘독도’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수용하여 공식적으로 묵인(acquiescence)한 것이 되고, ‘독도’에 관한 동 기본관계조약 해석상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보충적 해석)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²⁾

위와 같은 견지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일본정부가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ce)한 것으로써, 오늘날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동 기본관계조약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1) 김동조, 냉전시대의 우리외교,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회고록, 회상 80년), (서울: 주) 문화일보 2000), p.198.

22) Jon M. Van Dyke, Addressing and Resolving the Dokdo matter, (Dokdo: Historical Appraisal and International Justice edited by Seokwoo Lee and Hee Un Le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p.30: “**Dokdo was never listed as official agenda item for discussion during the protracted negotiations that produced this Treaty, and the issue is ignored in the Treaty. Japan’s willingness to enter into normalizing treaty without pressing its claim to Dokdo might be seen as a waiver by Japan of its claim and acceptance of (for acquiescence to)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4. 유엔결의 2625호 (1970.10.24.) 위반

(‘독도’가 자국 땅이란 일본의 주장).

- * 결의 내용: “국가의 영토는 다른 나라의 협박이나 무력사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협박과 무력의 사용 결과로 취득한 어떠한 영토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²³⁾

일본정부는 그간 근거 없이 ‘독도’가 자국 땅이란 불법적 주장을 하여왔으며, 특히 이배정부에 이르러서 ‘독도’왜곡은 더욱 심화되어 갔으며, 마침내 일본 중학교교과서에 일률적으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내용을 실어(2015.4.6)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일본정부는 그 같은 ‘독도’왜곡 내용을 2016.3.18. 고등학교교과서에도 실었다. 아직 판단 능력이나 역사인식 능력이 부족한 어린 일본학생들이 이런 잘못된 교육을 학교에서 배운다면 장차 그들이 성장하여 일본을 지도해 나갈 때 미래 한국세대에 큰 위협이 우려된다. 당시 우리 교육부의 대변인의 다음 성명은 이런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日 잘못된 역사교육에 동북아평화 위태=

: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를 검정합격시켰다. … 역사적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역사와 영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미래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²⁴⁾

23) UNGA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s. 2625, 24 October 1970. [Adrew Clapham, Brierly’s Law of Nations, (Oxford Univ. Press 2021).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그 실효적 관할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정부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거짓내용을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게재하여, 어린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독도’ 재 침탈을 꾀하는 “위협”으로서,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유엔총회결의 제2625호(UNGA Res 2625, 1970.10.24)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즉각 동 교과서상 ‘독도’왜곡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5. 일본영역참고도(일본영역참고도) 상 울릉도의 속도 ‘독도’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샌다이퍼(Durward V. Sandifer, professor, U.V.A.)교수는 그의 역저 ‘국제중재재판에서의 증거론’(Evidence Before the International Tribunals, Revised Ed., Charlottesville:U.V.A. Press, 1957)에서, 최고의 증거력은 조약, 정부분서, 공공기록 등이나, 지도의 증거력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본문과 함께 있는 지도는 그 본문과 같은 증거력을 가진다고 설파했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의회에 비준요청(1951.10) 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함께 보냈다.

동 영역참고도 상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일본국경선 밖의 한국영역에 들어가 있다. 일본 중의원 심의과정에서 ‘독도’의 위치관계로 일본정부위원과 국회의원 간에 질의응답 중 논란이 있었으나, 동 참고도상 ‘독도’가 한국령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조치도 없이 그대로 비준되었다(중의원: 1951.10.26., 참의원: 동년 11월 18일, 참의원에서는 동 참고도를 배포하다가 돌연 배포중단됨). 이는 일본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의회도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한 것이고, 1699. 1월 완성되었던 당시 조선국의 ‘독도’영토주권이 국제법상 재확인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소위 “독도가 일본 땅”이란 일본정

24) 서울신문 보도, 2015.4.7.

부주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 일본의회의 동 비준관계 속기록 (발췌).

* 중의원 속기록(1951.10.22. 비준심의회 질의응답 발췌)

야마모토(山本)위원 (질의): “이번 우리가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이 다케시마가 이 지도에서 보면, 우리의 영토인가 혹은 울릉도에 부속조선 등에 옮겨지는 지...이 기회에 확실히 하여주시기 바람.

구사바(草葉) 정부위원(답변): “현재 점령하의 행정구획에는 다케시마가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평화조약에 있어서는 일본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 속기록 (1953.11.4.) 발췌.

가와가미 간이치(川上貫一)위원 (질의): “처음부터 이것은 애매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조약 비준 당시 제출한 그 지도, 뒤에 정부가 서둘러 취소했습니다만, 그 지도에 일본영역참고도(일본領域參考圖)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에 분명하게 ‘竹島’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의원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중의원위원회에는 제출되었습니다. 왜, 배포를 하다가 중단 되었을까요? 이는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다(小紡)부총리께서 노동당의 질문에 대해 평화조약에 의해서 ‘竹島’는 일본영토라고 대답하지 못 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리(일본)영토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조약에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다고 답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상에서 ‘竹島’가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하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료(동북아역사재단):일본국회 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1948-1976)]

본 일본 국회속기록 발췌 본은 ‘독도’가 평화조약상 한국영토임을 반증한다.

기타: 국내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애매모호한 논조 비판.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은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시 '독도'는 지난 날 일제의 한반도침략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불법적으로 침탈된 우리영토로서 해방 후 다시 "우리 품"에 돌아온 땅이다.

오늘날 일본정부의 소위 "독도가 자국 땅"이란 주장은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주장으로서 '독도' 재 침탈을 노린 일종의 "위협"이며,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침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 결의 2625호(1970.10.24.)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불법적 주장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학계의 '독도영토주권'에 관한 애매모호한 논조는 우리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적 단합과 그 수호의지를 저하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간과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그러한 논조들은 앞으로 각종 학술회의를 통하여 학술적 연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이런 논조들이 정부예산지출과 관련된 논문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것은 더욱 참담한 일이라 할 것이며, 이점 정부예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살피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정부관계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논조들이 학술적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일본 측은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한국 측은 그러하지 못 하다.
- 영토문제란 정치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지, 국제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영토문제란 정치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지, 국제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일본은 정치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한다. 한국도 그래야 할 것이다.
- 러시크 서한 (1951.8.10.)은 독도가 일본 측에 유리하게 기술되어 있다고만 소개 하는 것(그 2년 후, 이 내용에 부정적인 John F. Dulles 장관의 주·일 미국대사 앞 전보(1953.12.9.)는 소개함이 없이.)
- 한·일간 독도분규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 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것은 미국의 러스크 차관보 서한(1951. 8. 10)으로 보아 그렇다.
- 한국이 독도실효 지배 강화를 위하여 독도에 시설을 하다가 일본과 물리적 충돌이 생겨서, 유엔 안보리가 개입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결정을 권고 결의할 경우 한국은 그 권고결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영토문제에 관한 당사국간 쌍무협상은 경직성이 있어서 성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당해 지역 관계국가들 간 집단적으로 협의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영토주권은 분할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관계국이 공동 개발하여 수익을 배분하자는 일부 일본시민들의 주장(2012년 9월)을 언급하며, 국내 학자가 보인 “영토분쟁 푸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운운.
- 스카핀(SCAPIN) 677호(1946.1.29.)에 의한 ‘독도’ 등의 일본주권에서 제외조치는 잠정적인 것.
-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정부가 평화조약비준요청서를 일본의회에 송부할 때 함께 보냈으나, 후에 철회했다 운운 등.
- 한·일 간 안보 및 경제적 협력관계 상 독도문제는 상호 원만한 타결이 바람직할 것이다.
- 독도문제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침략에 따른 ‘역사적 문제’이다.) 영토분규가 아닌데도, 국제법상 “결정적 일자” (critical date)가 1905년 또는, 1952년인가로 논란 하는 행태.

- ‘대마도’가 옛날 우리 땅이므로 일본 측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국제법상 현재는 합법적 주장 근거 부재인데도).
- 일본이 독도의 육지는 한국의 땅으로 인정하되, 그 주변 바다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제사회에 개방하자는 일본학자의 제안에 동조하는 행태.
- 기타 독도관련 일본자료를 번역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여 원문의 뜻이 왜곡되어지는 것.

4. ‘독도’ 수호책

1) 우리의 ‘독도’관할권 행사 철저

- 독도방파제 즉각 착공
성수기 1일 2,000명 이상의 독도방문객운송 여객선의 독도선착장 접안안전 확보. 현재 약 30%의 여객선이 강한 파도로 접안을 못하고 귀환한다.
-독도어민의 집(4층 건물)에 약7세대(부부기준) 입주허용: 소득발생 시 과세, 분규발생 시 사법권행사.

2) ‘독도’ 관련 일본정부의 국제법위반사항 규탄 강화

- 국제학술회의(국내외) 등을 통하여, ‘독도’관련 일본 측의 국제법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독도’ 재 침탈행태를 규탄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독도 재 침탈 저지.

3) ‘독도’ 관련 정부부서조직 강화

- 외교부 주. 유엔대표부 조직일부 강화: 독도실 (참사관 급) 신설.
일본정부는 소위 “독도문제 10개 사항”(10 Issues of Takeshima)이란 소

책자를 제작하여 10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2007.12월경부터 국제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아베정부에 들어와서는 내각에 “영토관계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독도’문제를 내각수준에서 다루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경우는 외무부 영토해양과가 ‘독도’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본이 ‘독도’를 재 침탈하려는 지속적 각종 행태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이 용이치 않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외교부 영토해양과 직원들은 소위 “독도문제”를 검토·처리함에 있어서 수년간의 직무수행 끝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만큼 되면 인사제도상 ‘독도’와 전혀 관련 없는 해외로 전보되고, 새로 보직 받은 직원이 또 그 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소위 “독도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강화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제도적 ‘독도’왜곡 심화와 ‘독도’ 왜곡 국제홍보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정부의 독도관계 업무수행 인력의 보다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 유엔 우리대표부에 가칭 “독도실”(참사관 급)을 신설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일본 측의 국제홍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영토해양과와 가칭 주. 유엔대표부 “독도실”과의 인력 교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일본정부가 우리영토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국제법을 위반한 근거 없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효율적 대응책은 우선 ‘독도’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의 철저 행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즉각 “독도방파제”를 착공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일본 측의 전기 ‘독도’관련 국제법 위반사항들은 특히, 지속적 국제학술 회의를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규탄하여 국제사회에서 근거 없는 일본의 ‘독도’관련 왜곡이 좌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학술회의는 가급 적 포츠담선언 상의 연합국(미·중·영·러) 출신학자들이 많이 참여토록 독려하고, 국제학술회의에 현장(독도)회의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들 제3국인들도 ‘독도’현장을 보면, 그 땅이 뉘 땅인지 보 다 진솔한 느낌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오늘날 일본정부의 근거 없는 소위 “독도가 자국 땅”이란 주장 과 그 내용의 일본교과서상 반영과 교육은 특히 일종의 “위협”으로서 오늘날 유엔총회결의 2625(영토란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과거 한반도침략을 위한 “제 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정부관계 부서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전술한 주.유엔 우리대표부 에 가칭 “독도실”(참사관 급)이 조속히 신설될 것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7).

이광린, 『한국사강좌』(근대편) (서울: 일호각, 1984).

G.A. Ballard, C.V., Vice-Admiral,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London: Jonn Murray, Albamarle St. W. 1921).

F.A. Mackenzie, the Tragedy of Korea, (London:Hodder & Soughton).

J.L. Brierly, the Law of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68)

Andrew Clapham, Brierly's Law of Nations, (Oxford Univ. Press, 2012).

Durward Sandifer, Evidences Before International Arbitrary Tribunals(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75).

<Abstract>

A View on How To Protect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 In Appreciation of the Fact that Japanese Claim over Dokdo Can not
Stand without Violating International Law Concerned -**

Hongju Nah

Dokdo is the Korean islets in light of histor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Islets without any controversy. However,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lay a claim over the Korean islets without any reasonable evidence. In particular, the Japanese Ab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istorted truth on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Dokdo, reflecting on Japanes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with such wrong information as that “Takeshima (or Dokdo) is Japanese ancient island, but it has illegally been occupied by Korea“. Such kind of Japanese government distortion on the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can not be made without violating various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 that is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Korean kingdom and that of Japanese Shogun in Jan. 1699 over Korean sovereignty over ‘Ullung island and Dokdo (Wusan), and Potsdam Declaration (8), SCAPIN 677(Jan. 29, 1946), Article 2(a) and Article 19(d), Peace Treaty, SanFrancisco, In addition to them, such Japanese government action as to reflect its wrong claim over Dokdo on Japanese textbooks may be a kind of ”threat“ falling in the

purview of UN Res. 2625. In this light of view, all the above mentioned potential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 by Japanese government's distortion about Dokdo

reflected on its textbooks should be strictly screened and rebuked. Some part of Korean articles appears to be ambiguous to Korean sovereignty shall also be put into strict examinations so that those articles be rebuked and expelled from Korean society.

Key words: Dokdo, Japanese claim on Dokdo, Japanese textbook distortion on Dokdo.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결정됨

독도연구의 기본방향 제의

김 명 기*

〈목 차〉

1. 서론
2. 선제적 연구
3. 연구내용상의 기본방향 제의
4. 연구방법상의 기본방향 제의
5. 결론

〈국문초록〉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은 독도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의 학문분야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특정학술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독도연구소마다 각기 다른 연구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의미하는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은 개별 학자와 전문가의 전공분야와 학문분야를 초월해서, 각 독자연구소의 설립목적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포괄적, 총체적인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의 제시는 국가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 되고, 민간 대학 연구소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범위를 넘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 그간 독도를 연구하면서 느낀 소박한 소감을 토로하여 향후 한국의 독도연구의 기본방향 제시에 미호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과욕을 가져본다. 저자는 국제법 전공자이므로 결국 이 소감의 토로도 국제법의 영역에서의 편파적 소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 그러나 국제법학자 이외의 독도연구학자, 특히 사학자에게 친국제법 연구를 권고해 보려는 것이 저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하 선제적 연구로 “독도연구에서 국제법과 사학의 관계”, “국제법의 법원”, “역사적 권원의 대체”, “지도의 증명력” 그리고 “지리적 접근론”에 관해 논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상의 제의에서 “학제연구”, “연구결과의 보급” 그리고 “독도연구소의 특성화연구”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에 관해 논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학제 연구의 필요성과 독도연구 결과의 대중화 필요성을 제의해 본다.

주제어: 독도연구, 전공분야, 학문분야, 국제법, 사학, 법원, 권원의 대체, 학제연구, 특성화, 대중화

1. 서론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은 독도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의 학문분야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특정학술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독도연구소마다 각기 다른 연구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발표자가 의미하는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은 각 학문분야를 초월해서 학자와 전문가의 전공분야를 초월해서 각 독자 연구소의 설립목적 초월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포괄적, 총체적인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정의에 의하면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의 제시과제는 국가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고 독도연구소나 학자, 전문가의 과제는 아니니 국가가 이 기본과제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한바 없으므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이하 “독도연구소”라 한다.)가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독도연구소가 국가적인 과제를 대행하는 것으로 참으로 중차대한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발표자는 독도연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 그간 독도를 연구하면서 느낀 소박한 소감을 토로하여 독도연구소의 독도연구의 기본방향 제시에 미호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과욕을 가져본다. 발표자는 국제법 전공자이므로 결국 이 소감의 토로도 국제법의 영역에서의 편파적 소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음을 용인하면서 국제법학자 이외의 독도연구학자, 특히 사학자에게 친국제법 연구를 권고

해 보려는 것이 발표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하 선제적 연구로 “국제법과 사학의 독도연구 관계” 사학자·지리학자·정치학자·사회학자(이하 “사학자”라 한다), “국제법의 법원”에 관해 고찰하고 친국제법연구를 위해 “역사적 권원의 대체”, “지도의 증명력” 그리고 “지리적 접근론”에 관해 논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상의 제의를 “학제연구”, “연구결과의 보급” 그리고 “독도연구소의 특성화연구”에 관해 논급하기로 한다. 결론으로 독도에 대한 학제 연구의 필요성과 독도연구결과의 대중화 필요성을 제의해보려는 것이 이 발표의 핵심이므로 이에 관해서 상술하고 이 이외의 영역에서는 항목을 열거하는 정도로 대하기로 한다.

2. 선제적 연구

1) 국제법학과 사학·지리학·정치학·사회학 등과의 관계

독도영유권을 연구하는 국제법학자의 임무는 연구에 의해 제시되어진 확정된 역사적 사실에 국제법을 적용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확정된 사실 없이 국제법학자들은 어떠한 연구도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법의 적용(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은 확정된 특정사실(fact)에 국제규범(norm)을 정합(整合, combine)하여 결론(conclusion)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급작용이다. 이는 국제법을 대전제(major premise)로 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전제(minor premise)로 하여 이들을 결합하여 결론(conclusion)을 도출하는 3단논법(syllogism)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전제인 사실의 인정을 “사실확인”(establishment of fact)이라 한다. 예컨대, 백기주태수(白耆州太守)가 안용복에게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라는 서계(書契)를 써주었다는 “사실”을 여러 문헌과 기타 사료를 근거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확정된 사실(소전제)에 영토주권의 승인에 관한 “국제법”(대전제)

을 정합하여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라는 “판단”(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제시된 역사적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만 국제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의 확정만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확정된 역사적 사실에 국제법을 적용하여서만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흔히 사학자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확정만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고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 사학자들의 속단은 명백한 법적 과오라 아니할 수 없다. 예컨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지한 영국의 저명한 지리학자가 제작한 지도를 발견하고 이 지도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명백히 한국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을 조약과 같은 법적 문서에 첨부된 지도가 아니면 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국제 판례법(국제관습법)을¹⁾ 이 지도에 의해 확정된 사실에 적용하면 명백히 법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2) 국제법의 연원

가. 국제법의 연원의 의미

(1) 일반적 의미의 국제법 연원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연원이란 법의 존재형식(existence in certain forms)의 의미로,²⁾ 즉 국제법 규칙의 창설방법(methods of creation of

1)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ol.3, 3rd ed. (Hague: Martinus, 1997), pp. 1280-81; D.V.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ed.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75), p. 203 ; G. Weissberg,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57, 1963, p.785; C.C.Hyde,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27, 1933, p.315; PCIJ, Series B, No.8, 1923, pp.32-33.

2) Alf Ross, *A Text Book of International Law*(London : Longmans,1947), p.79.

international legal rules)의 의미로 사용되며³⁾ 이를 ‘전통적 국제법의 법원(tradition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이라 한다. 그런 의미의 법원에는 성문법인 국제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있다.⁴⁾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칙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의 준칙으로 (i) 국제조약, (ii) 국제관습법, (iii) 법의 일반원칙, (iv) 사법적 재판(Judicial decisions)과 학설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라는 조약의 당사자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국제법의 법원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과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제법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의 일반원칙, 판례 등은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법적 재판의 법원성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은 사법적 재판의 적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법적 재판 및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sher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3) Michael Virally,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in Max So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 Macmillan, 1968), p.120.

4)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oston : Little Brown, 1988), p.4 : Ross, *supra* n.2, p.79 :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1(London : Longman, 1992), p.23.

위의 규정 중 “사법적 재판”(judicial decisions)에는 국제재판과 국내재판을 포함하며,⁵⁾ 국제재판에는 국제사법재판과 국제중재재판을 포함하며,⁶⁾ 국제사법재판에는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과 권고적 의견을 포함하며,⁷⁾ 재판에는 판결 이외에 명령 등 기타 재판을 포함한다.⁸⁾

“법칙 결정”(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중 “법칙”은 국제조약(제1항), 국제관습법(동), 법의 일반원칙(동)의 규칙을 뜻하며⁹⁾ 가장 일반적으로는 국제관습법을 뜻하게 된다.¹⁰⁾

“보조적 수단”(subsidiary means)이란 법칙의 존재와 사용을 지정하는 수단(means of indicating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rules of law),¹¹⁾ 즉 적용하여야 할 법의 애매성을 명백히 하는 수단(means of clarifying ambiguities in the law which is to be applied)을 의미하며,¹²⁾ 제2차적 수단(secondary means)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¹³⁾ 국제법의 간접적 법원(indirect source of international law)이란 의미인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사법적 재판은 그 자체 법칙, 즉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의 규칙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principle of precedent)’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5) Jennings and Watts, *supra* n.4, pp41-42 ; G. Schwarzenberger and E.D. Brown, 1976,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s), pp.29-30.

6)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th ed., 1979, p.21; Rosenne, *supra* n.1, p.20.

7) Rosenne, *supra* n.1, pp.22-23.

8) Rosenne, *supra* n.1, p.1609.

9)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Praeger, 1950) p.523 ; Rosenne, *supra* n.1, p. 1607.

10) Rosenne, *supra* n.1, p.1608.

11) Virally, *supra* n.3, p.150.

12) Hons-Jurge Schlochauer, 1981,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PIL*, Vol.1, p.81.

13) Virally, *supra* n.3, p 152.

14) Jennings and Watts, *supra* n.4, p.41.

나.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을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

(1) 학설

(가) Peter Malanczuk

Malanczuk는 국제법상 보통법체제에서 인정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은 없으나 국제재판소는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편견을 피하기 위해 선 재판을 따라 재판한다고 명시적으로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결국 판례의 법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사법재판과 중재재판은 관습법의 증거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체제에서 알려진 바와 같은 공식적인 선례구속의 원칙은 없다. 국제법상 국제재판소는 선 재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국제재판소는 선 재판을 고려한다.

재판관 역시 새로운 법을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진실인 것이다. 이 점에서 국제재판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동 재판소의 많은 재판이 후속적으로 일반적인 수락을 가져 온 국제법의 혁신을 유도했다.... 국제재판소가 후의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재판을 따를 높은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법적 일관성은 편견의 비난을 피하는 아주 명백한 수단이기 때문이다.¹⁵⁾

15) Judicial and arbitral decisions can be evidence of customary law. There is no formal stare decisis doctrine, as know in common law system.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ourts are not obliged to follow previous decisions, although they almost always take previous decisions into account. ... It is probably true to say that judges can also create new law.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is respect. Many of its decision introduced innovation in to international law which have subsequently won general acceptance.... There is strong probability that international court follow such decisions in later cases, since accusations of bias. Peter Malanczuk(ed.), *Akeb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London: Routledge), 1997, p.51.

(나) Shobtai Rusenne¹⁶⁾

(다) David H. Ott¹⁷⁾

(라) Valerie Epps¹⁸⁾

(마) Mark W. Janis¹⁹⁾

(바)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²⁰⁾

(사) Ian Brownlie²¹⁾

(아) Malcolm N. Shaw²²⁾

(자) Hans- jurgen Schlochauer²³⁾

(차) H. Thirlway²⁴⁾

(카) Stephen Allen²⁵⁾ 등에 의해서도 수락되어 있다.

(2) 판례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은 판례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중요 판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6) Rosenne, *supra* n.1, p.1610.

17) David H. Ott, 1987,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London: Pitman), p.29.

18) Valerie Epps, 2009, *International Law*, 4th ed.(Druhorn : Carolina Academic Press), p28.

19) Mark W.Janis, 1998,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Boston : Little Brown), p.69.

20) Jennings and Watts, *supra* n.4, p.41.

21) Brownlie, *supra* n.6, p.19.

22)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86.

23) Hons-Jurge Schlochauer, *supra* n.12, pp.80-81.

24) H. Thirlway, 1990,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 *BYIL*, Vol.61, pp.3-127.

25) Stephen Allen, 2013, *International Law*(London : Pearson), p.31.

(가) *Anglo-Iranian Oil Co. Case*(1952)

Anglo-Iranian Oil Co. Case(1952)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법적 재판은 재판의 기초가 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규정 제38조는 명령이며 임의가 아니다. 이는 재판소에게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법적 재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적 재판”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이 재판소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법리학을 포함하고 있다. 본인은 재판소의 재판의 기초로의 재판소에 의해 적용된 원칙을 포함한다고 의심하지 아니한다.²⁶⁾

(나) *Barcelona Traction Case*(Second phase)(1970)²⁷⁾

(다) *Polish Postal Service in Danzig Case*(1928)²⁸⁾

(라) *Lotus Case* (1927)²⁹⁾

(마) *Eastern Greenland Case*(1933)³⁰⁾

(바) *Nottebohm Case*(1953)³¹⁾

(사) *Gulf of Maine Case*(1984)³²⁾

(아) *Chorzow Factory Case*(1927)³³⁾

(자) *Fisheries Case*(1951)³⁴⁾

²⁶⁾ Article 38 of the Statutes is mandatory, and not discretionary. It requires the Court to apply judicial decisions as a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The expression “judicial decisions” certainly includes the jurisprudence of this Court, and of Permanent Court. I have no doubt that it includes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as the basis of its decisions. ICJ, 1952, *Reports*, p.143.

²⁷⁾ ICJ, 1970, *Reports*, p.40.

²⁸⁾ PCIJ, 1925, *Series B*, No.11, p.30.

²⁹⁾ PCIJ, 1927, *Series A*, No.10, p.26.

³⁰⁾ PCIJ, 1933, *Series A/B*, No.53, pp.45-46.

³¹⁾ ICJ, 1953, *Reports*, 1953, p.119.

³²⁾ ICJ, 1984, *Reports*, pp.302-303.

³³⁾ PCIJ, 1927, *Series A*, No.(1927), No.9, p.31.

³⁴⁾ ICJ, 1951, *Reports*, p.131.

(차) *Reparation Case*(1949)³⁵⁾

(카) *Genocide Case*(1951)³⁶⁾

(타) *Corfu Channel Case*(1949).³⁷⁾

3. 연구내용상의 기본방향 제의

1) 친국제법 연구

가. 역사적 권원

(1). 역사적 권원의 의의

(가). 권원의 의의

영토주권의 권원(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이란 타 국가에 대한 영토주권의 주장 근거(the validity of claims to territorial sovereignty against other states)를 의미한다.³⁸⁾

(나). 역사적 권원의 의의

영토에 대한 주권의 현시(display of sovereignty), 즉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되는 것은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 “권원의 취득”(acquisition of title) 또는 “권원의 유지”(maintenance of title)를 위해서이다.

영토주권의 권원은 시간의 경과의 축에서 구분해 볼 때, “현대국제법상 권원”과 그 이전의 “역사적 권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은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봉건적 권원(feudal title) 등 현대국제법 이전의 영토주권의 타당 근거를 말한다. 역사적 권원은 전법적 주권(pre-legal sovereignty)의 권원, 즉 국제법

35) ICJ, 1949, *Reports*, p.174.

36) ICJ, 1951, *Reports*, p.15.

37) ICJ, 1949, *Reports*, pp.4-21.

38)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121.

이전의 권원을 뜻한다.³⁹⁾ 따라서 역사적 권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권원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역사적 권원이 성립할 당시에 타당한 현대국제법 이전의 규범으로 관렴하면 역사적 권원도 법적 권원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대국제법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y of Westphalia)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⁴⁰⁾ 결국 역사적 권원은 1648년 이전 근대국가성립 이전의 권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한 이후에 후속적으로 증가된(subsequent increase) 권원과 구별된다.⁴¹⁾

(2) 역사적 권원의 대체

(가)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의의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상 권리 획득시의 법과 권리 존재시의

³⁹⁾ 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 1972), p.96.

⁴⁰⁾ Stephan Verosta, "History of Law of Nations, 1648 to 181" *EPIL*, Vol.7, 1984, pp. 160-62; B. S. Chimni,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London : Sage, 1993), p.226; John Westlake,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UP, 1895), p.59; Triggs, *Infra* n.14, p. 10; D. P. O'connell, "A Cause Celebre in the History of Treaty Making," *BYIL*, Vol.42, 1967, pp.71-90;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19; John O'Brien, *International Law* (London : Cavendish, 2001), p. 15; Turan Kayaglu, *Legal Imp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14,27; Steven Wheatley,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 Hart, 2010), p. 124; Leo Gross,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AJIL*, Vol.42, 1948, pp.20, 29; J. R. Strayer, *On the Medieval Origins of Modern State* (Princeton : PUP, 1979), pp.9-10; Mark W. Zocher,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 B. A. Simmons and R. H. Steinberg(ed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UP, 2006), p.260; Alind Kaczorowska,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Routledge, 2011), pp. 11-12; Recharld Joyce, "Westphalia : Event, Memory, Myth," in F. Johns, R. Joyce and S. Papahuja (eds.), *Events : The Force of International Law*(London : Routledge, 2011), pp.55-56; Paul F. Diehl and Charlatte Ku, *The Dynamic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 CUP, 2012), p.28.

⁴¹⁾ Antonio Tores Bernordez,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 10, 1987, p.498.

법은 다른 것이다.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는 그 취득 당시에 타당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권리의 존재에 관해서는 오늘 평가시에 타당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권원의 대체”란 역사적 권원을 현대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다른 권원(another title valid by modern International law)으로 대체(replacement)하는 것을 말한다.⁴²⁾ 즉 역사적 권원이 그 후의 역사적 발전의 효과에 의해 대체(superseded)되는 것을 뜻한다.⁴³⁾ 요컨대, 고전적 권원, 본원적 권원, 봉건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을 현대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새로운 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역사적 권원의 대체라 한다. 이를 “권원의 교체”(supersede of title), “권원의 변경”(change of title) 또는 권원의 변형(transformation of title)이라고도 한다.

권원의 대체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는 “권원의 취득”과 구별되고, 기 취득한 권원의 현상을 유지하는 “권원의 유지”와 구별된다.

(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효과

1) 대체된 권원의 발효

역사적 권원의 대체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역사적 권원은 대체된 당시의 법에 따라 새로운 권원이 성립·발효되게 된다. 즉 역사적 권원이 근대 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어 근대국제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게 된다.

2) 역사적 권원의 실효

역사적 권원의 대체로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권원은 대체 이후 법적 권원으로 주장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체 이후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42) ICJ, *Reports*, 1953, p.56.

43)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 Pitman, 1987), p. 109.

(3)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인정한 판례와 학설

역사적 권원을 현대국제법상 타당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면 현대국제법상 효력이 없으며, 역사적 권원은 대체된 이후에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그 판례와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판례

- (i) *The Island of Palmas Case* (1928)⁴⁴⁾
- (ii)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⁴⁵⁾
- (iii) *Western Sahara Case* (1975)⁴⁶⁾
- (iv)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992)⁴⁷⁾
- (v)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bean Sea Case* (2007)⁴⁸⁾
- (vi) *Pedra Branca Case* (2008)⁴⁹⁾
- (vii) *Rann of Kuch Arbitration* (1968)⁵⁰⁾

(나) 학설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지 아니하면 현대국제법상 효력이 없고, 대체된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학설에 의해서도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 (i) Gillian D. Triggs⁵¹⁾
- (ii) Richard K.Gardiner⁵²⁾

44) UN, *RIAA*, Vol.2, 1949, p.839.

45) ICJ, *Reports*, 1953, p.56.

46) ICJ, *Reports*, 1975, p. 39.

47) ICJ, *Reports*, 1992, paras. 343-44.

48) ICJ, *Reports*, 2007, para.259.

49) ICJ, *Reports*, 2008, para.48.

50) ILR, Vol.50, P.494.

51) Gillan D. Triggs, *International Law* (Australia: Butterworth, 2006), p.225.

- (iii) David H. Ott⁵³⁾
- (iv) Santiago Terres Bernardez⁵⁴⁾
- (v) Peter Malanczuk⁵⁵⁾
- (vi) Georg Schwarzenberger⁵⁶⁾
- (vii) Ian Brownlie⁵⁷⁾
- (viii) P. C. Jessup⁵⁸⁾
- (ix) F.C. Wade⁵⁹⁾
- (x) R. Y. Jennings,⁶⁰⁾
- (xi) M. N. Shaw⁶¹⁾
- (xii) D. H. N. Johnson⁶²⁾

나. 지도의 증명력

지도는 문서증거의 하나이고 모든 문서증거는 국제재판소에 제출되었을 때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의 “증명력”의 평가는 재판소의 자유판단에 의하게 된다. 국제소송법상 재판소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52) Richard K. Gardiner, *International Law* (London Longman, 2003), p.177.

53) Ott, *supra* n.6, p.109.

54) Antonio Tores Bernordez,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 10, 1987, p.499.

55) Peter Malanczuk(ed.),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London : Routledge, 1987), p.155.

56) Schwarzenberger and Brown, *supra* n.2, p.96.

57) Brownlie, *supra* n.1. p. 129.

58) P. C. Jessup,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AJIL*, Vol.22, 1928, pp.739-40.

59) E. C. Wade,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Grotius Society transactions for year 1954, Vol.40, 1954, pp.98-99.

60) Robert Y.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Dobbs Ferry : Oceana, 1963), pp.28-31.

61)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347.

62) D. H. N. Johnson, “Acquisitive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BYIL*, Vol.27, 1950, p.332.

명시적 규칙이 규정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다.⁶³⁾

재판소에 의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의 판단은 결국 직접적 증거이나 간접적 증거이냐의 판단으로 되고, 이 판단의 기준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증성”(authenticity)과 “정확성”(accuracy)이 제시되고 있다.⁶⁴⁾

이하 재판소의 증거에 대한 증명력 판단의 기준으로 이 양자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1) 인증성

조약(treaties)과 재판(decisions)과 같은 법적 문서(legal instruments)에 부속되어 그 법적 문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는 직접적 증명력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지도는 간접적 증명력만이 인정되는데 불과하다. 이와 같이 법적 문서에 부속된 지도를 “인증지도”(authenticated maps)라 하고,⁶⁵⁾ 이러한 지도의 특성을 “인증성”(authenticity, authentic character)이라 한다.⁶⁶⁾ 이 “인증지도”에는 법적 문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뿐만 아니라 서명된 지도와 같이 지도 그 자체가 법적 문서인 지도도 포함된다.⁶⁷⁾

63) J.F.W., “Rules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Proceedings” *BYIL*, Vol.IV, 1929, pp.220-21.

64) 증명력 판단의 기준으로 “인증성”(authenticity), “정확성”(accuracy) 이외에 “원본성”(originality)이 논의되고(D.V. 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 ed.(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5, p.236), “공정성”(impartiality)이 논의된다(Charles Cheney Hyde,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27, 1933, p.314).

65) Opinion and Award of Guatemala-Honduras Special Boundary Tribunal, January 23, 1933.9.8; Charles Cheney Hyde, “Maps as Evidence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27, 1933, p.313; G. Weissberg,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57,1963, p.782.

66) Monastery of Sant-Naum Advisory Opinion, PCIJ, *Series B*, No.9, 1924, p.21; A. O. Cukwurah,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7), p.219.

67) PCIJ, *Series B*, No.9, 1924, p.21; Weissberg, *supra* n.3, p.784.

“인증지도”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도인 “공식지도”(official maps)와 구별된다. “공식지도”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지도 이외에 국가의 찬조(auspice) 또는 취지(purporting)로 발행한 지도를 의미한다.⁶⁸⁾ “인증지도”는 직접적 증명력이 인정되나 “공식지도”는 간접적 증명력이 인정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공식지도”는 승인, 묵인,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⁶⁹⁾

공식지도는 국가가 생각하는 영역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represented what that state deemed the limits of its domain) 때문이다.⁷⁰⁾

지도의 인증성을 인정한 학설과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설

- (i) Durward Sandifer⁷¹⁾
- (ii) Charles Cheney Hyde⁷²⁾
- (iii) Guenter Weissberger⁷³⁾
- (iv) A. O. Cukwurah⁷⁴⁾

(나) 판례

- (i) The Misiones Boundary Arbitration between Argentined and Brazil⁷⁵⁾
- (ii) Timore Island Arbitration⁷⁶⁾

68) Hyde, *supra* n.3, p.315.

69) Weissberg, *supra* n.3, p.803.

70) Hyde, *supra* n.3, p.315.

71) Sandifer, *supra* n.2, pp.141-142.

72) Hyde, *supra* n.3, p.142.

73) Weissberg, *supra* n.3, p.143.

74) A. O. Cukwurah, *supra* n.4, pp.143-144.

75) *The Misiones Boundary Arbitration*, John Bassett Mo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Washington, D. C.: U.S. GPO, 1898), pp.144-145 .

76) *Arbitral Award Rendered in Execution of the Compromise Signed at Hague*, April

(iii) Jaworzina Advisory Opinion, Polish-Czechoslovakian Frontier Advisory Opinion⁷⁷⁾

(iv) Monastery of Saint-Naoum, Advisory Opinion⁷⁸⁾

(v) Palmas Island Arbitration⁷⁹⁾

(vi) Guatemala-Hondras Boundary Arbitration⁸⁰⁾

(vii)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urkina Faso/Republic of Mali⁸¹⁾

(viii)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itan⁸²⁾

(ix)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⁸³⁾

(2) 정확성

지도가 증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첫째의 요건은 지리적 정확성(geographical accuracy)이다. 지도가 인증지도이든 아니든, 공식지도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것이 권원 인정의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리적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⁸⁴⁾ 이 “지리적 정확성”을 “정확성”(accuracy)이라 한다.⁸⁵⁾ 특정 장소의 이름의 철자의 차이(difference of spelling of place names), 그리고 이름의 차이(difference of place name)는 언어감정인의 진

3, 1913, between the Netherlands and Portugal Concerning the Subject of Boundary of a Part of their Possessions in the Island of Timor, *AJIL*, Vol.9, 1915, p.145.

77) Jaworzina, Advisory Opinion, PCIJ, *Series B*, No.8, 1923, p.146.

78) *Monastery of Saint-Naoum, Advisory Opinion*, PCIJ, *Series B*, No.9, 1924, p.147.

79) *Palmas Island Arbitration*, *AJIL*, Vol.22, 1928, p.148.

80) *Guatemala-Hondras Boundary Arbitration, Opinion and Award of Guatemala-Hondras Special Boundary Tribunal, January 23, 1933*.9.8. p.148.

81)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Burkina Faso/Republic Mali*-, ICJ, *Reports*, 1986, para.54.

82)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itan*, ICJ, *Reports*, 2002, para.88.

83)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ICJ, *Judgement*, 23 May 2008, para.270.

84) Hyde, *supra* n.3, p.314.

85) *Ibid*; Cukwurah, *supra* n.4, p.219.

술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지리적 정확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⁸⁶⁾

지도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지도의 정확성을 제시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도의 정확성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승인되어 있다.

(가) 학설

(i) Charles Cheney Hyde⁸⁷⁾

(ii) Guenter Weisberger⁸⁸⁾

(iii) A. O. Cukwurah⁸⁹⁾

(나) 판례

(i) The Misiones Boundary Arbitration between Argentina and Brazil⁹⁰⁾

(ii) Walfisch Bay Arbitra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Germany⁹¹⁾

(iii) Palmas Island Arbitration⁹²⁾

(iv) Guatemala-Hondras Boundary Arbitration⁹³⁾

(v)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itan⁹⁴⁾

(vi)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⁹⁵⁾

86) *Ibid.*, p.220.

87) Hyde, *supra* n.3, p.142.

88) Weissberg, *supra* n.3, p.143.

89) Cukwurah, *supra* n.4, pp.143-144.

90) *Ibid.*, pp.143-144.

91) *Ibid.*, pp.143-144.

92) *Ibid.*, pp.143-144.

93) *Ibid.*, pp.143-144.

94) *Ibid.*, pp.143-144.

95) *Ibid.*, pp.143-144.

다. 지리적 접근성의 원칙

(1) 지리적 접근성의 원칙의 의미

지리적 접근성의 원칙(principle of contiguity)은 지리적 접근의 사실이 영토 권원의 실질적 근거 또는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계속성의 원칙(principle of continuity) 또는 근접성의 원칙(principle of contiguity)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상 지리적 접근성의 원칙은 국제법상 영토 권원의 근거로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원칙을 규정한 국제협약은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2) 지리적 접근성의 원칙을 부정한 학설과 판례

지리적 접근성의 원칙을 부정한 학설과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설

(i) Gerald Fitzmaurice⁹⁶⁾

(ii) C.H.M. Waldock⁹⁷⁾

(iii) H. Lauterpacht⁹⁸⁾

(iv) K. Narayana Rao⁹⁹⁾

(v) Malcolm N. Shaw¹⁰⁰⁾

(vi) Robert Jennings¹⁰¹⁾

⁹⁶⁾ Gerald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4," *BYIL*, Vol.32, 1955-6, p.72.

⁹⁷⁾ C.H.M. Waldock, "Disputed Sovereignty in the Falkland Islands Dependencies", *BYIL*, Vol.25, 1948, p.342.

⁹⁸⁾ H. Lauterpacht, "Sovereignty over submarine Area", *BYIL*, Vol.27, 1956, p.438.

⁹⁹⁾ K. Narayana Rao, "The Problem of Goa", *In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affairs* 1996; 952, p.54.

¹⁰⁰⁾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355.

- (vii) Malanczuk¹⁰²⁾
- (viii) Ian Brownlie¹⁰³⁾
- (ix) Santiago Torres Bernardoz¹⁰⁴⁾

(나) 판례

- (i) *British Guiana Boundary Case*(1904)¹⁰⁵⁾
- (ii) *Palmas Island Case*¹⁰⁶⁾(1928)¹⁰⁷⁾
- (iii) *Minquievs and Ecrehos Case*¹⁰⁸⁾(1953)¹⁰⁹⁾
- (iv)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Certain Frontier Land*¹¹⁰⁾(1959) ¹¹¹⁾
- (v)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1992) ¹¹²⁾
- (vi)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e*¹¹³⁾¹¹⁴⁾(2008)¹¹⁵⁾

101) Robert Jennings,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Dobbs Ferry : Oceana, 1963), p.73.

102) Peter Malanczuk(ed.),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London : Routledge, 1987), pp.157-58.

103)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147.

104) Santiago Torres Bernardez,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10, 1987, pp.501-502.

105) British and Foreign State Papar, Vol.99, 1904, p.930; Fitzmaurice, *supra* n.1, p.75, n.1; Brownlie, *supra* 15, p.147, n.154.

106) UN, *RLAA*, Vol.2, 1949, p.854.

107) *Ibid.*, p.855.

108) ICJ, *Reports*, 1953, p.102.

109) *Ibid.*

110) ICJ, *Reports*, 1959, p.257.

111) *Ibid.*

112) ICJ, *Reports*, 1992, p.579, para. 281.

113) ICJ, *Reports*, 2008, para. 280.

114) *Ibid.*, para. 281.

115) *Ibid.*, para. 290.

라. 고유영토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이다.”고 외무부 홈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고유영토”의 의미, “역사적으로”의 의미, “지리적으로”의 의미 그리고 “국제법적으로”의 의미에 관해서 해석이 없다. 독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의미에 관해서는 논급이 없다.

“고유영토”란 국가가 성립할 당시 그 국가의 성립기초인 영토를 의미한다.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승복되어 그 때부터 독도는 신라의 고유영토, 즉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논한다. 이는 분명히 전후가 모순되는 주장이다. 한국을 신라로 보면 이는 모순되나 한국을 통일신라로 보면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독도연구 한국학자는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에 취득한 신라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고유영토의 지리학·정치학의 정의를 연구하여 한국의 독도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 해양의 명칭과 도서의 영유권

국제법상 해양의 명칭과 그 해양 내에 위치한 도서의 영유권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해양의 명칭은 지리학적 의미를 갖는데 불리한 것이다.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공해의 명칭에 따라 공해가 그 명칭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공해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해 내에 있는 도서와 그 명칭과 관계되어 있는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2) 한국정부의 독도정책 비판 연구

가. 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중간수역을 선정하여 한국의 독도의 영

해·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토를 훼손하는 협정이므로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나. 독도유인도화 정책

정부의 독도유인도화 정책은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인간의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 해양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 같으나, 인위적인 유인도화는 “안정적 인간 공동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도의 인위적인 유인도화는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창출하는 해양지형으로 조성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접안지원센터·해양과학기지

독도에 접안지원센터, 해양과학기지 건설은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지형은 “자연적 능력”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창출하는 해양지형의 형성을 저해한다.

3) 한국정부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보완 연구

가. 다케시마 10포인트

2008년의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소의 비판은 반(半) 국가기관의 비판으로는 수준이하이다. 특히 난해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없다. 논리적·체계적 비판의 보완이 요구된다.

나. 교과서

일본정부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다.

다. 방위백서

위 교과서의 경우와 같다.

4) 일본 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가. 예상되는 제소유형별 대책 연구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중 어느 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대책의 연구가 요구된다.

나. 매뉴얼과 답변서 초안 연구

예상되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대처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4. 연구방법상의 기본적 제의

1) 학제 연구

흔히 독도는 사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관념하기 쉬우나 사학·지리학·정치학 등이 연계되어 풀 수 있는 종합과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필히 학제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동일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학술회의가 요구된다.

2) 지역단체와의 컨소시움 결성

독도연구소의 경우 경상북도, 울릉군과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이론과 실무에 부합되는 연구를 추구하고 있고 연구와 사업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다.

3) 지역단체와의 연구협약 체결

이는 위 컨소시움을 보완하는 수단이 된다.

4) 연구결과의 보급

독도연구소의 연구결과인 『독도연구』는 독도연구소의 업적이고 동시에 이는 한국의 독도연구의 업적이다. 이 업적을 국내외에 확산·보급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독도연구」의 배포선을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독도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요구되는 바이다.

5) 독도 교육 표준교재의 제작

독도 교육의 내용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독도연구소가 표준교재를 제작하여 독도의 실상과 연구의 결과를 정형화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독도연구소가 바람직한 표준교재를 제작할 때 다른 독도연구소도 이를 이용할 것이다. 아직 바람직한 독도교재는 출간된 바 없다.

6)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가.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한국에 독도연구소와 유사연구소(예컨대 영토연구소, 영토해양연구소)가 다수 존재한다. 독도연구소가 이들 연구소보다 상대적 우위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독도연구의 제 분야에서 독도연구소가 모두 우위의 위상을 점하려는 의도는 독도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 발전해야할 것인지는 소장과 소속 연구원의 진지한 논의와 검토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간의 연구소의 업적, 타 연구소의 업적 등의 분석·검토도 독도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의 방

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도연구소의 역량은 한정적이다. 한정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연구보다는 특징적 연구의 집중적 연구로 연구소의 특정화가 요구되며 그 결과로 연구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연구소의 연구원의 특성화 연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전공분야가 각각 다르므로 연구원의 특성화는 연구소의 특정화에 비해 오히려 용이하다고 본다. 연구원의 특성화가 결국 연구소의 특정화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다.

7) 독도연구소의 홍보

어떤 사업도 그것이 대외적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없다.

가. 학술회의

독도연구소는 연구소이므로 연구결과를 학술회의를 통해 반포하는 것은 독도연구소의 위상제고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술회의의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나. 뉴스레터 발간 배포

『독도연구』 이외에 월간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독도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널리 보급한다.

다. 독도강의

독도연구소가 제작한 표준교재로 독도강의를 하여 독도연구소의 역할을 널리 알린다. 월 1회 정도 독도행 페리에서 1시간정도 선상강의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제의를 했으나 독도연구소는 연구기관이므로 무엇보다 더 연구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독도연구』를 계속 간행하고 특집으로 학제연구를 도모하도록 하고 독도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매년 1명의 우수 연구교수를 선발하여 학술상을 수여하고 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그 명의로 독도총서를 발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술상 수여자는 총장 또는 독도연구소장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전국적으로 우수연구학술상을 독도연구소장의 명의로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ICJ, Reports, 1949.*
ICJ, Reports, 1951.
ICJ, Reports, 1952.
ICJ, Reports, 1953.
ICJ, Reports, 1959.
ICJ, Reports, 1970.
ICJ, Reports, 1975.
ICJ, Reports, 1984.
ICJ, Reports, 1986.
ICJ, Reports, 1992.
ICJ, Reports, 2002.
ICJ, Reports, 2007.
ICJ, Reports, 2008.
UN, RLAA, Vol.2, 1949.
PCIJ, eries B, No.11, 1925.
PCIJ, Series A, No.10, 1927.
PCIJ, Series A/B, No.53, 1933.
PCIJ, Series B, No.8, 1923.
PCIJ, Series B, No.9, 1924.
- A. O. Cukwurah, *The Settlement of Boundary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7).
 Alf Ross, *A Text Book of International Law*(London : Longmans,1947).
 Alind Kaczorowska,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Routledge, 2011).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B. S. Chimni,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London : Sage, 1993).
 D.V.Sandifer, *Evidence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re.ed.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75).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 Pitman, 1987).
 E. C. Wade,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Grotius Society transactions for year 1954, Vol.40, 1954.
 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 1972).
 G. Schwarzenberger and E.D. Brown,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s), 1976.
 Gillan D. Triggs, *International Law* (Australia: Butterworth, 2006).

-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Praeger, 1950).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J. R. Strayer, *On the Medieval Origins of Modern State* (Princeton : PUP, 1979).
- John O'Brien, *International Law* (London : Cavendish, 2001).
- John Westlake,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UP, 1895).
-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Boston : Little Brown, 1988).
- Mark W.Janis, 1998,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Boston : Little Brown).
- Paul F. Diehl and Charlatte Ku, *The Dynamic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 CUP, 2012).
- Peter Malanczuk(ed.),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ed.(London : Routledge, 1987).
- Richard K. Gardiner, *International Law* (London Longman, 2003).
-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1(London : Longman, 1992).
- Robert Jennings,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Dobbs Ferry : Oceana, 1963).
- Robert Y. Jennings,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Dobbs Ferry : Oceana, 1963).
- Shabtai Rosenne,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Vol.3, 3rd ed. (Hague: Martinus, 1997).
- Stephen Allen, 2013, *International Law*(London : Pearson).
- Steven Wheatley,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 Hart, 2010).
- The Misiones Boundary Arbitration, John Bassett Mo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Washington, D. C.: U.S. GPO, 1898).
- Turan Kayaglu, *Legal Imp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Valerie Epps, 2009, *International Law*, 4th ed.(Druhorn : Carolina Academic Press).
- Antonio Tores Bernordez,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 10, 1987.
- C.C.Hyde,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27, 1933.
- C.H.M. Waldock, "Disputed Sovereignty in the Falkland Islands Dependencies", *BYIL*, Vol.25, 1948.
- Charles Cheney Hyde,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 Vol.27, 1933.
- D. H. N. Johnson, "Acquisitive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BYIL*, Vol.27, 1950.
- D. P. O'Connell, "A Cause Celebre in the History of Treaty Making," *BYIL*, Vol.42, 1967.
- G. Weissberg, "Maps as Evidence in International Boundary Disputes", *AJIL*, Vol.57, 1963.
- Gerald Fitzmaurice,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51-4," *BYIL*, Vol.32, 1955-6.
- H. Lauterpacht, "Sovereignty over submarine Area", *BYIL*, Vol.27, 1956.
- H. Thirlway, 1990, "Th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60-1989, *BYIL*, Vol.61.
- Hons-Jurge Schlochauer, 1981,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PIL*, Vol.1.
- J.F.W., "Rules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Proceedings" *BYIL*, Vol.IV, 1929.
- K. Narayana Rao, "The Problem of Goa", *In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affairs* 1996.
- Leo Gross,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AJIL*, Vol.42, 1948.
- Mark W. Zocher,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 B. A. Simmons and R. H. Steinberg(ed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UP, 2006).
- Michael Virally,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in Max So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 Macmillan, 1968).
- P. C. Jessup,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AJIL*, Vol.22, 1928.
- Recharad Joyce, "Westphalia : Event, Memory, Myth," in F. Johns, R. Joyce and S. Papahuja (eds.), *Events : The Force of International Law*(London : Routledge, 2011).
- Santiago Torres Bernardez,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10, 1987.
- Stephan Verosta, "History of Law of Nations, 1648 to 181" *EPIL*, Vol.7, 1984.

<Abstract>

Suggestions of Basic Direction of Dokdo Study in Korea

Mungki KIM

The basic direction of Dokdo study can be different for each academic field of scholars participating in Dokdo research, and it may be different for scholars belonging to specific academic fields.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Dokdo study that the author suggest here, is defined as the basic direction of comprehensive Dokdo studi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ranscends the fields of study and disciplines of individual scholars and experts, and beyond the purpose of establishing of each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However, this suggestion or presentation of the basic direction of Dokdo research in Korea is eventually linked to the national task, and it goes beyond the scope of Dokdo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as a private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the author intends to express his simple feelings while having studied Dokdo, rather than presenting the basic direction of Dokdo study. The author also hopes that this will be a reference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Dokdo research in Korea. The author acknowledge that he himself can be criticized for having a bias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author's major is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the author's sincerest desire to recommend Dokdo research scholars other than thos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historians, to study Dokdo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following, as preliminary studies to suggest, will be discussed ‘the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history in Dokdo research’,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by modern International law’, ‘Maps as Evidence’, and ‘the principle of contiguity’. In addi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Dokdo research results’, and ‘specialization of researches of Dokdo institute’ will be proposed by the author. Finally, the necess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Dokdo and the necessity of popularization of Dokdo study results will be hopefully proposed.

Key words: Dokdo Study, Direction, Academic Field, International Law, Historians,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Specialization, Popularization.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결정됨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독도 발견

– 곤차로프의 여행기와 팔라다호의 항해기록을 중심으로 –

김 영 수*

〈 목 차 〉

1. 머리말
2. 팔라다호의 구성과 운영 및 곤차로프의 항해 이유
3. 발트해-보닌제도와 나가사키-시베리아 항해 과정
4. 러시아함대의 울릉도·독도 발견
5. 맺음말

[국문초록]

기존 연구는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과 도착의 항해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대해서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팔라다호의 이동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탐사 과정을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발견 과정을 추적하였다.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부자핀(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제독 부자핀은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감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шиков)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 부자핀은 소령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을 맡았다.

뿌짜핀은 1855년 1월 26일 일본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을 체결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미국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후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팔라다호 소속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그 후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주제어: 팔라다호, 곤차로프, 뿌짜핀, 태평양함대, 독도

1. 머리말

곤차로프의 『전함 팔라다호』는 19세기 중엽 세계 여행기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주목받았다. 팔라다호는 젊은 시절 안톤 체홉(А.П. Чехов)을 비롯한 여행을 동경하는 당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였다. 팔라다호는 영국, 일본 등의 식탁을 소개해주는 ‘식유기(食遊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¹⁾

※ 러시아 속담에 따르면, 남을 위해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기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진다.

1) Лотман Ю. и Погосян Е. Великосветские обеды. Спб. 1996. С.37 ; 석영중, 「오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는 1812년 6월 6일(러시아력) 심비르스크(Симбирск)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곤차로프는 1820년 사제 트로이츠키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곤차로프는 1822년 모스크바 상업학교에 입학했고, 1831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하였다. 당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는 게르첸, 레르문토프, 푸르게네프 등이 다녔고, 곤차로프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뿌쉬킨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곤차로프는 1834년 대학을 졸업하고 심비르스크 현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곤차로프는 1847년 장편소설 『평범한 이야기』를 발표하였다. 1849년 잡지 『현대인』에 「오블로모프의 꿈」을 발표하였다. 곤차로프는 제독 뿌쨌핀(Е.В. Путятин)의 비서(секретарь)로 전함 팔라다호를 탔고, 1852년 10월 7일 러시아를 출발해서 1855년 2월 13일 삐제르부르크로 돌아왔다.

곤차로프는 항해 중 일지를 작성하고 편지를 보냈다. 여행기는 1855-57년 사이 『전함 팔라다호』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1858년 2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곤차로프는 1855년 12월 검열관이 되었지만 1860년 2월 사직하였다. 곤차로프는 1859년 10년 전부터 준비한 『오블로모프』를 완성하였다. 곤차로프는 1862년 7월 신문 『북방우편』의 편집장을, 1863-67년 사이 출판과 관련된 위원직을 맡았다.

곤차로프는 1869년 소설 『절벽(단애)』을 20년 만에 완성하였다. 곤차로프는 1870-80년대 「안하는 것보다는 늦는 것이 낫다」, 「백만의 고통」, 「벨린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단상」 등의 몇몇 비평만 썼다. 곤차로프는 1891년 말년에 쓴 모든 작품, 편지, 단상을 소각했고, 1891년 9월 15일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²⁾

블로모프의 맛없는 음식」, 『러시아문학연구논집』 35, 2010, 65쪽. 이 논문의 러시아 표기는 이미 굳어진 표기만 제외하고 러시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페테르부르크를 ‘삐제르부르크’로 표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의 날짜는 러시아 역을 채택하였다.

2)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1800—1917: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일찍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사의 연구자가 주목하였다.

박보리스(Б.Д. Пак)는 팔라다호의 주요 인물과 함대 구성, 조선 항해 이유, 조선 동해안 조사 일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보리스는 팔라다호가 거문도에서 만난 김유의 해상기문 정보, 1854년 5월 8일 뿌짜핀이 조선정부에 보낸 문서까지 조사하였다. 박보리스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 관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1854년 2월 크림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팔라다호는 안전한 장소로 거문도를 선택하였다.³⁾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1854년 10월 러시아 크림반도 세바스타폴을 공격했고, 1855년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인 세바스타폴을 함락하였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출발배경, 청국과 일본과의 교섭 과정, 거문도와 동해안 탐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명에 대해서 러시아와 한국 사료를 교차하며 조사하였다. 박태근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청국 5개항의 통상권 교섭,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를 위해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청국 양광총독(兩廣總督) 엽명침(葉名琛)은 1853년 6월 18일 팔라다호의 5개항 무역 교섭을 거절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 일정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박태근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도 초산만(울산만)부터 함경도 두만강까지 실측하였다. 1854년 4월 21일 북위 36도 양일만 상륙, 4월 24일 강원도 초진 통과, 4월 26일 강원도 금관진 정박, 4월 27일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 송전만(라자레프항)에 정박하였다.⁴⁾

T.I. M. 1989. C.628 ; 최윤락, 「곤차로프와 그의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오블로모프』, 2권, 문학과 지성사, 2002, 351-356쪽

3)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4-144쪽.

4)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전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박보리스와 박태근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만 주목했기 때문에 팔라다호의 전체적인 항해과정과 기록자인 곤차로프의 시선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2000년 이후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는 조선에 관한 러시아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 조선과 러시아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팔라다호가 주목 받았다면 이번에는 팔라다호에 비친 조선의 모습과 사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영은은 러시아의 조선 탐사와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를 살펴보았다. 이영은은 조선 관련 곤차로프의 개인적인 설명과 관찰에 관한 조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⁵⁾

이희수에 따르면 곤차로프는 ‘대식가에 게으르며 거친 성격’, ‘침묵하며 척박한 환경과 궁핍한 생활에 순응하는 모습’ 등으로 한국인을 묘사하였다. 이희수는 곤차로프의 팔라다호에 관한 텍스트 분석도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곤차로프가 일부러 항해과정의 탐사활동과 외교협상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곤차로프가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 탐사과정의 일부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⁶⁾

선행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과 도착의 항해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1984, 34-37쪽.

5) 이영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 2011.

6) Тюнькин. К. Примечание//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И.А. Гончарова в 6 Томах. М. 1956. Т. 3. С. 371; Знгельгардт Б.М. Фрегат Паллада//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Спб. 1995. СС. 225-269; 이희수,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08, 20-21쪽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사료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국가의 기록을 교차하는 차별성을 제공할 것이다. 필자는 팔라다호 제독 뿌짜진의 항해 관련 공식적인 정부의 기록을 토대로, 뿌짜진의 비서로 참여한 곤차로프의 항해 관련 개인적인 여행기를 상호 보완하여, 팔라다호 함대의 전체적인 항해와 탐사 과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개인의 목표에 대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팔라다호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한국 영토로써 인식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세기 후반 러시아 함대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 기록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인 독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팔라다호의 구성과 운영 및 곤차로프의 항해 이유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짜찐(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뿌짜찐은 1852년 8월 스쿠너범선(보스톡호)을 구매하기 위해서 민간 증기선을 타고 영국으로 출발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스쿠너 범선 ‘보스톡’(Восток) 호와 함께 극동으로 항해하였다.⁷⁾ 이들은 1851년 극동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Олибуца)호 및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Князь меншков)호와 합류하여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⁸⁾

7)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а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С.1-2.

제독 뿌짜핀(Е.В. Путятин)은 1852년 함대를 구성하였다.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캄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шиков) 등이다. 제독은 소령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을 맡았다.⁹⁾

전함 팔라다호(Палада)에 승선한 인원은 다음과 같았다.

소령(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운콥스끼(И.С. Унковский)는 함장으로 전함 팔라다호(Палада)를 지휘하였다. 소령 뽀시예트(К.Н. Посьет)는 제독 뿌짜핀의 전속 부관이었다.

대위 꼬르사코프(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부따코프(И.И. Бугаков), 찌흐멘예프(П.А. Тихменев), 크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티르코프(С. Тырков), 사비치(Н.Н. Савич), 슈바르츠(С.П. Шварц), 벨라브네츠(И. Белавнец), 실리뻬바흐(А.Е. Шлипенбах) 등이 승선하였다. 또한 소위 안주(П. Анжу), 볼진(А.А. Болтин), 콜로콜리쨌프(А.А. Колокольцев), 질료누이(П. Зеленый) 등이 참가하였다. 포병 대위 로세프(К.И. Лосев)와 하레조프(А.А. Халезов), 중위 뽀뽀프(Л. Попов)와 이스토티민(Я. Истомин), 소위 모이세예프(И. Моисеев), 의사 아레피예프(А. Арефьев)와 베이리흐(Вейрих), 통역관 고쉬께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승선하였다. 또한 4명의 해군소위 후보생

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0

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

(Гардемарины), 1명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юнкер), 32명의 하사관(унтер-офицеры), 365명의 수병(рядовые), 30명의 비전투 장병(нестроевые), 26명의 악사(музыканты) 등이 승선했다.¹⁰⁾

팔라다호에 승선했던 장교와 수병은 러시아정교에 따라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수행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장교와 수병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일요일과 명절에는 예배를 가졌다.

팔라다호의 장교는 탐험과 항해 관련 서적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승선했던 장교를 통해서 과목을 이수하면서, 영국에서 구입한 육각기를 이용하여 천문을 관측하였다. 러시아정부는 천문관찰 도구와 다양한 교과서 등을 해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제공하였다.¹¹⁾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대포와 무기를 이용한 군사훈련을 매일 실시하였다. 팔라다호는 장교를 위한 공동 도서실이 준비되었고, 모든 수병은 각자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팔라다호는 장거리 항해를 위한 식량을 준비하였다. 러시아 해군부는 소금에 절인 돼지비계, 건빵 등 빨리 상하지 않는 식품을 제공하였다. 나머지 식품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보충되었다. 대부분의 식품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통조림이었다.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육지에서 먹던 음식을 바다에서도 먹을 수 있어서 괴혈병을 피할 수 있었다.¹²⁾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독 뿌짜핀(E.B. Путятин)의 비서(секретарь)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출발하였

1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627

11)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6.

1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7.

다.¹³⁾ 곤차로프는 공식적으로 항해 기록을 위한 비서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비공식적인 목표도 있었다.

곤차로프는 “자신이 아주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도시 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출렁이는 대양의 수면으로 돌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곤차로프는 항상 여행을 꿈꿔왔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도와 극지방, 열대지방을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는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이 술기운처럼 내 머리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였다.

곤차로프는 자신의 삶은 둘로 나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평범한 관리였다.

“나는 상관의 시선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기 걸리는 걸 두려워하고, 수십 명의 제복들과 함께 사방의 벽에 갇혔다. 보고서와 통보서, 명령서 등을 손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지의 탐험에 나선 모험 여행가였다.

“나는 밀집으로 된 모자에 하얀 외투를 걸치고 입에는 껌을 씹으면서 그루지야의 심연을 따라 금빛 양털을 찾으러 간다. 매달 기후와 하늘과 바다와 나라를 바꾸어 가며 여행한다. 항해를 노래한다.”

곤차로프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고민도 토로하였다.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세계의 시민이 될까?”

13) Путьтин Е.В. Вс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а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С.1-2.

몰입하면 할수록 위협적인 환영까지 그에게 나타났다.

“과연 나 같은 식견을 지닌 여행자가 나의 동포들과 사회에 지게 될 의 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에게 부과된 일은 세계 일주를 하고, 그것을 지루하지 않고, 초 조하지 않게 이야기를 경청하게끔 말해주는 것이다.”¹⁴⁾

제독 뿌짜진이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명이 넘는 인원을 조직하고 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에, 작가 곤차로프는 지식인 으로서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을 고민하면서 팔라다호에 승선하였다. 곤차로프는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하는 강인한 사람을 꿈꾸었다.

3. 발트해-보닌제도 및 나가사키-시베리아 항해 과정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전함 팔라다호가 러시아 크론슈타트(Крон штат)를 출항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

“나는 출발과 함께 매 순간의 움직임과 걸음들, 인상들이 이전과 다르게 시작되었다.”

곤차로프는 스웨덴 동쪽의 발트해에 위치한 고틀란드(Gotland)를 통과 하면서 기록하였다.

“거기서 나는 바다의 미신 하나를 들었다. 이 섬을 통과하는 배는 이 섬 을 지키는 영혼에게 폭풍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 동전을 던진다.”

¹⁴⁾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하지만 팔라다호는 덴마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콜레라가 발생했고 3명의 장례식을 치렀다.

팔라다호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젤란드 섬 사이에 있는 순드(Sund) 해협, 덴마크 남쪽 카테가트(Kattegatt) 해협, 노르웨이 남쪽 스카게라크(Skagerrak) 해협을 향해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20일경 영국 남부 포츠머스(portsmouth)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열흘 동안이나 영국 해협(English Channel)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다.

팔라다호는 영국 동남부 항구도시 도버(Dover)를 지났고, 곤차로프는 ‘흐릿한 회청색을 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프랑스의 해안을 보았다. 팔라다호는 화이트 섬(Isle of Wight)과 포츠머스 요새 사이에 있는 스피트헤드(Spithead)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¹⁵⁾ 제독 뿌짜핀은 전함 팔라다호의 정비,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건조, 그리고 강력하고 거친 바람 때문에 1853년 1월 6일까지 영국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하였다.¹⁶⁾

1852년 11월 20일 곤차로프는 장기간 체류한 영국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선이 사회적 의무의 수준으로 승화되었다. 이 도덕적인 국민은 일요일마다 딱딱한 빵을 먹는다. 당신이 포르테피아노를 방에서 연주하거나 거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명하고 실무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영국의 평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¹⁷⁾

1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1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4.

1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곤차로프는 ‘동물을 사랑한다’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총과 화약을 수출한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비판하였다.

“총과 화약이 아프리카에 없다면 영국인은 한 번의 전쟁으로 아프리카의 약탈을 멈출 수 있다. 영국인은 자국을 위해 화약을 아프리카에 실어 날랐다. 정말 끔찍이도 나쁜 상업적 민족이다.”¹⁸⁾

팔라다호는 1853년 1월 6일 아바꿈 수도원장이 진행한 예배를 마친 후 포츠머스를 출항하였다. 영국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나 1월 11일 겨우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었다.¹⁹⁾ 팔라다호는 1853년 1월 12일과 13일 향해 도중 거친 바람을 만났다. 팔라다호는 스페인 북서부 해안 비스케이 만(Bay of Biscay)을 통과했고, 스페인 서쪽 끝에 위치한 피니스테레(Finisterre) 곶에 도달하였다. 1853년 1월 18일, 영국을 출발한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9시 대서양 북쪽 포르투갈령 마테이라(Madeira) 섬을 지나갔다.²⁰⁾ 1853년 1월 22일 팔라다호는 북회귀선을 지났다.

곤차로프는 1853년 2월 3일 적도를 통과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

“우리 모두는 갑판위로 쏟아져 나와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 보았다. 마치 지구의 허리를 둘러싼 적도라는 이름의 나무 테두리를 보 기라도 할 듯 말이다.”²¹⁾

1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19)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4.

2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35-47. II. Атлантический океан и остров Мадера. 영국에서 마테이라까지 거센 북풍이 불어서 7일이 걸렸다. 뿌 짜편은 보스톡호에게 식량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4.).

2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47-53. III. Плавание в Атлантичес

팔라다호는 1853년 3월 9일 남아프리카 희망봉 동쪽 폴스 만(False Bay)을 지나갔다. 팔라다호의 일부 승무원은 케이프타운인 카프스타드(Kaapstad)로 떠났다. 하지만 곤차로프는 배에서 머무르며 갑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으려 하였으나, 읽지 못했고, 뭍 쓰고 싶었으나 쓸 수가 없었다. 사흘, 나흘 그렇게 날들이 지나갔고, 타성은 계속되었다.”²²⁾

제독 뿌짜핀은 희망봉에서 홍콩으로 출발할 것을 보스톡호에게 지시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홍콩은 필요한 모든 시설과 보급품을 갖추어 정박지로 편리하며, 동인도와 홍해를 통하여 유럽과 연락할 수 있었다.

뿌짜핀은 희망봉에서 영국의 우편선으로부터 뻬제르부르크에서 보낸 지시서를 받았다. 지시서는 러시아 외무부에서 전령 2명을 미국을 경유하여 파견하였다는 내용이였다. 뿌짜핀은 새로운 임무를 전달할 전령과의 만남 장소를 일본 인근에 위치하는 보닌 제도를 지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뿌짜핀은 올리부차호와 공작 멘쉬꼬프호에게 보닌 제도로 입항할 것을 통보하였다.²³⁾

곤차로프는 1853년 4월 12일 남아프리카 폴스 만을 출발한 이후 항해의 어려움을 기록하였다.

ких тропиках

22)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53-55. IV. На мысе Доброй Надежды. 팔라다호는 1853년 3월 10일 폴즈만에 닿을 내렸다. 팔라다호는 영국에서 6,000 마일을 항해하였고, 59일 걸렸다. 보스톡호는 3월 15일에 폴즈만에 도착하였다. 보스톡호는 장거리 항해에 적합했으며 파도도 잘 견뎠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8.) .

23)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11.

“인도양은 대서양보다도 더 나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대서양에서는 바람이 거셴지만 그래도 순풍이었는데, 여기는 바람도 거세고 또 역풍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17일 자카르타의 인근 마을 안예르(Anyer)의 정박장에 도착하였다. 곤차로프는 정박 직후 마닐라로 병력을 실어 나르는 스페인 수송선을 목격하였다.²⁴⁾

뿌짜핀은 팔라다호가 인도양 항해를 통해서 장거리 항해에 취약하고 불안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팔라다호의 갑판 위로 물이 올라왔고, 팔라다호 상부의 고정장치에서 흔들림이 발견되었다. 뿌짜핀은 팔라다호 대신에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에서 새로 건조한 프리깃함 디아나(Диана)호로 교체해 줄 것을 해군부에게 요청하였다.²⁵⁾

팔라다호는 유럽과 정기 우편선이 있는 싱가포르로 항로를 결정하였다. 이 항로는 청국 해안을 향해 가는 직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21일 시속 3마일까지 빨라지는 해류를 만났고, 5월 25일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였다.²⁶⁾

곤차로프는 싱가포르의 도착한 선원의 기쁨과 싱가포르의 자연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늘 전함에 감돌던 긴장과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 선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은 태평한 휴식으로 바뀌었다.”

2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55-59 V. От мыса Доброй Надежды до острова Явы

2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12.

2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13-14.

“여기의 하늘은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는 책과 같다. 이곳의 하늘은 마치 땅과 더 가까운 듯이 더 열려있고 더 선명하다. 밤마다 밝게 빛나는 새벽, 특히 불꽃처럼 빛을 내며 가끔씩 온갖 방향으로 하늘에 지나간 자국을 내는 혜성들을 감상하였다. 나는 대위 크리드네르(Лейтенант Н. Криднер)와 오랫동안 당직용 긴의자 위에 함께 서있었다.”²⁷⁾

뿌짜핀은 싱가포르에서 부따꼬프 대위가 영국의 우편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유는 부따꼬프 대위를 통해서 본국 정부에 보고서를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팔라다호는 보급품을 보충한 후 1853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출항했습니다. 팔라다호는 12일 동안의 순항 끝에 홍콩에 입항해서, 하루 반 전에 도착한 보스톡호를 만났다.²⁸⁾ 곤차로프는 팔라다호가 홍콩에 도착한 이후 단상을 적었다.

“해는 천정(天頂)에 걸려있었고, 햇별은 직선으로 내리쬐었다.”

“영국이 홍콩에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흉벽(胸壁)을 만들어서 대포를 설치하였다.”²⁹⁾

뿌짜핀은 페리(M.C. Perry) 제독이 미국 함대를 이끌고 류큐제도에서 일본 해안을 향해 출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에서의 출발을 서둘렀다.³⁰⁾ 팔라다호는 1853년 6월 26일 홍콩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역동풍

2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59-61. VI. Сингапур.

28)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15.

2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1-63. VII. Гон-Конг.

30)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17. 미일조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정하미, 「미국 표류민 학대 문제와 맥도널드의 경험 : 미일화친조약의 전야」, 『일본연구』 17, 2012.

(逆東風)을 만나 7월 5일까지 겨우 300마일 정도만 항해하였다. 곤차로프는 홍콩에서 서태평양 보닌(Bonin Is.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총 1600마일 이고 순풍을 만나면 7-8일 정도 걸린다고 기록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7월 7일 인도네시아 바탄(Bataan) 섬으로 접근하였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영국 해군장교 벨처(Edward Belcher)의 표시처럼 닻을 내릴 장소가 있어야 했지만 거대한 절벽과 사방에서 해안을 때리는 물결의 하얀 테두리만 보았다.

팔라다호는 태평양으로 출발하였다. 곤차로프는 태평양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항해가 지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저녁 무렵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나는 글을 써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잉크병도, 촛불도 탁자에 서있질 못했고, 종이는 손아래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몇 자 쓴다고 해도, 뒤로 자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손을 뒤로 뻗쳐 벽에 기대야하였다.”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다. 파도는 꼭대기 부분을 편평하게 만들고, 그 파도를 마치 채를 통해 뿌리듯이 대양에 뿌리고 있었다. 파도 위에는 물 분말이 구름을 이루었다. 광란에 싸여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사자와 호랑이 등의 야생 동물 같았다.”

곤차로프는 1853년 7월 16일 보닌(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여전히 500마일 정도 남았다고 항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일주일 내내 70마일 정도만 갔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무풍이 왔다. 이제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태평양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롱하였다. 이제 태평양은 그가 정말로 태평하다는 걸 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들이 움직이면서 수평선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에게 속도를 붙여주지는 않았다. 무더웠고, 대기에 움직임은 없었다.”³¹⁾

3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3-71. VIII.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팔라다호는 30일을 넘는 항해 끝에 1853년 7월 26일 보닌(오가사와라) 제도 로이드 항구(Port Lloyd)에 정박하였다. 팔라다호는 보닌제도에서 올리부차호, 홍콩에서 하루 전날 출항한 보스톡호, 그리고 전령을 태워 하와이 제도를 경유한 공작 멘쉬꼬프호를 만났다. 크라운(Кроун) 대위와 보디스코(Бодиско) 비서는 공작 멘쉬꼬프호를 타고 왔으며, 일본에서 지켜야 할 추가 명령서를 가져왔다. 공작 멘쉬꼬프호는 팔라다호에 공급할 양식을 실어왔다. 팔라다호는 8월 4일 3척의 함정과 함께 나가사키로 출항하였다.³²⁾ 곤차로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보닌 제도는 청국어나 일본어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다. 여러 국가의 포경선들이 끊임없이 출몰한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은 미국 포경선이다.”³³⁾

추가 명령서를 전달 받은 뿌짜핀은 일본과의 협상 원칙을 정하였다. 뿌짜핀은 일본과의 교류에서 친절과 우정을 우선시하고, 러시아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법규와 풍습을 최대한 수용하며, 침착한 자세로 러일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팔라다호는 10개월의 항해 끝에 1853년 8월 9-10일 사이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였다.(일본 1차 방문) 뿌짜핀은 신비한 미지의 땅인 일본의 해안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일본의 관료는 나가사키에 입항하기 전에 항구에서 수 마일 밖으로 마중 나와 국적을 확인했

32)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а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19.

3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3-71. VIII.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34) 그 후 뿌짜핀은 일본정부와 장기적이고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а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1.)

고, 항구 입구에 정박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⁵⁾

뿌짜핀은 나가사키 정박 이후의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작 멘쉬꼬브호를 상하이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사할린섬과 아무르강 인근에서 러시아의 소식을 입수할 목적으로 보스톡호를 타타르 해협으로 보냈다.³⁶⁾

곤차로프는 일본의 첫 인상을 기록하였다.

“바로 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있는 보석함이다. 이제껏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 보람 없는 노력을 들인 그 나라. 황금이나 또는 무력으로 또는 간교한 정치로 서로의 만남을 이끌어내려는 나라다.”

팔라다호는 한 달 간의 협상 끝에 1853년 9월 9일 나가사키 영주를 접견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의 협상 지연 때문에 1853년 11월 5일 식료품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하였다.³⁷⁾

사실 1853년 9월 14일 공작 멘쉬꼬프호는 터키,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 단절에 관한 소식을 입수하였다.³⁸⁾ 그럼에도 공작 멘쉬꼬프호는 아직 상하이

3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0. 곤차로프는 나가사키에 8월 10일 도착, 뿌짜핀은 8월 9일 도착이라고 기록하였다.

3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2.

3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뿌짜핀에 따르면 일본인은 교활하고 미꾸라지 같은 자신들의 성격을 이용하여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권리와 풍습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1)

3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항구 입항이 위협하지 않으며, 상하이에 주둔한 적군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선단보다 우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팔라다호는 상하이에서 신용장을 현금화하고 석탄, 항해물품, 양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³⁹⁾ 곤차로프는 상하이로 출발하는 순간 또다시 항해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물에 떠다니는 삶, 또다시 바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바람의 자비에 따라 평온해지겠지. 지금 바람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석 달 동안 바다가 낮설었다.”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14일 450마일 가량을 항해해서 상하이 인근 새들 군도(Saddle Islands)에 정박하였다. 뿌짜핀은 보스톡호의 손상된 부분(잠수 부위 도장 등)을 정비시키고, 유럽과 청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항해 준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뿌짜핀은 새들 군도에서 동인도 우편으로 보내온 해군부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 통지서는 디아나호(Диана)가 팔라다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1853년 10월 끄론쉬파트에서 출항했고, 미국을 경유하여 하와이 제도로 항해했다는 내용이었다.⁴⁰⁾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23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났던 순간을 기록하였다.

“보스톡호는 상하이에서 야채, 살아 있는 황소들, 닭, 오리들, 말 그대로 신선한 식료품과 새로운 소식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즉 지금은 11월 인데 8월자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29.

³⁹⁾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31.

⁴⁰⁾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31-32.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 군도(Saddle Islands)를 출발하여 4일 동안 항해한 이후 1853년 12월 24일 나가사키에 정박하였다.(일본 2차 방문) 곤차로프는 다시 도착한 나가사키를 묘사하였다.

“그런 날을 잊기는 힘들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의 푸른 덩어리가 되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가사키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햇볕을 듬뿍 받은 무언가 훌륭해 보였다. 갈색의 언덕들 사이 어딘가에서 쌀, 밀, 채소가 새롭게 파종되고 새싹이 올라와서 선명한 파란색을 띄고 있다. 바다를 쳐다보면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감청색 휘장이었다.”⁴¹⁾

뿌짜핀은 1853년 12월 초 크로운(Кроун) 대위를 전령으로 홍콩과 동인도를 거쳐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뿌짜핀은 탐사 관련 자료와 지도, 사할린 섬의 석탄매장지발견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였고, 청국 물품 등을 견본으로 보냈다.⁴²⁾

곤차로프는 1854년 1월 1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일본 전권대표를 만났다. 이 특별한 날의 감정을 곤차로프는 기록하였다.

“1월 1일입니다. 항상 그렇듯 모여서 늘 했던 대로 춤을 추고 떠들고 카드놀이를 하고 자정에 싸움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하품을 하고 결국 고대했던 순간을 맞이해서 잔을 잡았겠죠.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지난해의 마지막 날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다. 나는 이날 일본 귀족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⁴³⁾

이날 곤차로프와 함께 소령 운콥스끼(И.С. Унковский)와 나지모프

4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42) 뿌짜핀은 12월 17일 네 척의 함정을 이끌고 나가사키로 출발하였다(Пуятин Е. 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 IV. No.10. Спб. 1856. С.35.).

4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66-210. XI. 1854 год.

(Н.Н. Назимов), 대위 꼬르사코프(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와 크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소령 푸루겔름(И.В. Фуругельм), 청국어 통역관 고쉬케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참석하였다.⁴⁴⁾

일본 전권대표는 1854년 1월 4일 답방으로 팔라다호를 방문하였다.⁴⁵⁾

뿌짜찐은 1854년 1월 말 나가사키의 팔라다호에서 일본 전권대표와 함께 고별 오찬 및 우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뿌짜찐은 봄에 사할린 섬 남단 아니바(Анива) 해협에서 러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⁴⁶⁾

팔라다호는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854년 2월 15일 마닐라 만에 도착하였다. 곤차로프는 마닐라에 도착한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우리는 항로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바람은 잠잠하였다. 밤이 왔다. 당신은 빛이 없어도 밝고 따뜻하며 짙고 고요한 열대의 밤을 모를 것이다. 바람 한 점, 소리 하나 없이 별들이 떴고 있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았다. 주의의 모든 것은 저녁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머릿속에서 호기심이란 즐거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톨릭을 믿는 남쪽의 그림과 형상들이 망각의 잔해들에서 떠올랐다.”⁴⁷⁾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하였다.(한국 1차 방문) 4월 6일 팔라다호 소속 군함 올리부차호가 독도를 발견하는 사이에, 곤차로프는 거문도의 인상을 기록하였다.

44) “И.С. Уньковский, 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Назимов и Фуругельм, лейтенант барон Криднер, переводчик с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О.А. Гошкевич.”(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401.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4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66-210. XI. 1854 год.

4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39.

4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210-230. XII. Манилла.

“여기저기 조선인의 농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보이는 것은 초가지 붕뿐이었고, 드물게 주민이 보였다. 모두들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했고, 필담으로 조선 주민과 대화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9일 나가사키에 정박했고, 곤차로프는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일본 3차 방문)

“나가사키까지의 이동은 마치 강에서 배를 향해하듯 훌륭했고 정속하였다. 일본인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도착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⁴⁸⁾

제독 뿌짜핀은 일본 전권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나가사키 영주에게 전달한 다음 조선 동해안의 조사를 결정하였다.⁴⁹⁾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18일 쓰시마 섬을 통과하였다.⁵⁰⁾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한국 2차 방문)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5일 위도 39도의 조선 동해안을 측량했고, 5월 5일 위도 41도의 동해안을 측량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9일 두만강에서 6마일 거리에 정박하였다. 팔라다호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2일간 초산만(울산만)에서 북위 42도 31분(두만강 하구) 지점에 이르는 동해안 전역을 실측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7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났다.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는 유럽의 소식과 편지를 가져왔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러

4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I

4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3

5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8일 시베리아와 사할린 섬을 가르는 타타르 해협(Tatar Strait)에 들어섰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0일 만주 해안에 배를 정박하였다. 곤차로프는 시베리아 퉁구스 족을 만났고 길랴크(Gilyak, Nivkh) 족에 대해 기록하였다.

“길랴크 족은 바람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 무더기 아래서 영하 36도에도 살아간다고 한다. 심지어는 젓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 몸을 녹이고 싶으면 모닥불을 피우고, 송어와 곰 마늘(마늘의 한 종류)을 먹는다.”⁵¹⁾

팔라다호는 북위 42도 34분 포시에트(Посыет)만까지 탐사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2일 시베리아 동해안에서 공작 멘쉬코프호를 만났다. 뿌짜핀은 데카스트리 해협(залив де-Кастри)에 주둔시키고,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Муравьев)의 지시를 받으라는 러시아황제의 명령을 받았다. 총독 무라비요프(Муравьев)는 1854년 6월 22일 팔라다호의 정박지에 도착하여, 팔라다호가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타타르 해협(Tatar Strait)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뿌짜핀은 북쪽에 가서 팔라다호를 아무르 강으로 끌어 들여 빙하와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작전을 세웠다. 팔라다호는 아무르강의 하구에서 40마일 떨어진 라자레프 곳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팔라다호는 1854년 8월 시베리아 연안에 닻을 내렸다.⁵²⁾

5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9. XIV.Обратный путь через Сибирь

5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47-48.

곤차로프는 바다에서 육지로 내려야하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다. 육지에 가고 싶지만, 전함을 떠나는 것도 아쉽다! 하지만 이 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억지로 팔라다호를 떠난다는 것에 놀라지 않으실 것이다.”⁵³⁾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1854년 9월 니콜라예프 검문소로 파견되었다. 팔라다호는 1854년 9월 26일 정박하여 전함의 무장 해체를 진행하였다. 제독 뿌짜핀은 1854년 10월 3일 러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함 디아나호(Диан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출항하였다.⁵⁴⁾

그 후 전함 디아나호는 1854년 12월 나가사키에서 지진의 여파로 난파당하였다. 디아나호의 난파에도 불구하고 뿌짜핀은 1855년 1월 26일 일본 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⁵⁵⁾을 체결하였다. 뿌짜핀은 1855년 4월 26일 가벼운 남서풍이 불자 새로 건조한 범선 헤다호(Хедда)를 타고 일본 시즈오카 건너편 헤다 항구를 출발하였다. 헤다호는 뽀시에트 중령과 로세브 중령, 뽀슈로브 준위, 콜로콜쑈브 대위, 세묘노브 준위, 사관생도 2명과 수병 40명 등이 승선하였다. 뿌짜핀은 1855년 6월 5일 라자레프 곶에 도착하였다.⁵⁶⁾

한편, 곤차로프는 오호츠크 연안 아얀(Аян)에 상륙했고, 야쿠츠크(Якутск)

5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54)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а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50.

55)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Japan and Russian(日露和親條約).

56) Пул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а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71, 75, 77.

와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를 거쳐 1855년 2월 13일 페레르부르크(Перербург)에 돌아왔다.

제독 뿌짜핀은 팔라다호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다만 뿌짜핀은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기록하였다.⁵⁷⁾ 그런데 작가 곤차로프는 항해과정에서 도착한 국가에 대한 자연과 풍경 및 인간과 민족에 대한 특징을 포착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공존을 생생히 기록하였다. 그는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보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 러시아함대의 울릉도·독도 발견

서양에서 울릉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1787년 5월 27일 프랑스의 장-프랑소아 갈로 라페루즈(Jean-Francois de Galaup Laperouse, 1741-1788) 탐험대에 의해서이다. 울릉도를 가장 먼저 목격한 천문학자 다즐레(Dagelet)의 명칭을 사용해서 ‘다즐레’라고 명명하였다. 당시 함대는 새로 건조한 두 척의 호위함인 부솔(Boussole)과 아스트롤라브(Astrolabe)로 구성되었다.⁵⁸⁾

57) Пулятин Е.В. Вс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С.84.

58)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7, 32쪽. “1787년 5월 27일. 북북동에 어떤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섬 하나를 발견하였다. 이 섬은 조선의 해안으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 섬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섬은 바람의 방향과 똑 같은 방향에 있어 어려웠다. 다행히도 밤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1787년 5월 28일. 해가 뜰 무렵 섬을 측정하기 위해 섬 쪽으로 향하였다. 나는 이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한 천문학자 다즐레의 이름을 따서 ‘다즐

러시아함대도 동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며 기록하였다.

뿌짜핀 제독은 1854년 4월 타타르 해협에서 빙하와 안개를 만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한국의 동해안 탐사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팔라다호는 “한반도 동해안 남동쪽부터 만주와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까지, 그리고 만주연안을 따라 몇 십 마일 더 먼 곳에 이르기까지 등의 동해안 지역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기록하였다. 팔라다호는 라자레프만(송전만) 등을 측량했고, 날씨가 좋은 날 잠수 도구를 이용하여 수중 지형까지 조사하였다.⁵⁹⁾

팔라다호의 소속 함정 중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6일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의 타타르(Татарский) 해협으로 항해하던 도중 독도를 발견하고,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였다.

“아침에 발견한 2개의 높은 바위는 반나절 동안 시야에 있었으며, 이제 명확해졌다. 2개의 제법 높고 예각의 발가벗은 바위는 약 300사젠(642미터) 떨어져 있었다. 이들 중 서쪽 섬은 북위 37-13도, 동경 131-55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더 높은 서쪽 섬을 ‘올리부차’라 명명하였다. 동쪽 섬을 현재는 발틱함대 그 후에 캄차트카 전단으로 소속되기 전에 1846년까지 흑해함대 소속이었을 때 함정의 최초 이름을 기념하여 ‘메넬라이’라고 불렀다. ‘올리부차’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 가량 물위에 나타난 암초였다. 올리부차 및 메넬라이 섬을 청명한 일기상태의 30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다. 1854년 4월 6일(양력4.18) 우리 함정은 올리부차 서쪽 4마일 해상에서 반나절 동안 머물렀다.”⁶⁰⁾

레’라 명명하였다. 섬의 둘레는 17km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섬에서 1.9km 떨어져서 섬을 거의 한 바퀴 돌았지만 깊은 곳을 찾지 못하였다. 섬의 북동 첨단부는 북위 37도 25분, 동경 129도 2분이었다.”(La Pérouse, Voyage autour du monde, Vol.2(Paris, 1797), pp.390-392.)

59) РГАВМФ. Ф.296. Оп.1. Д.75. ЛЛ.219-223. 1854.5.25/6.6

60) РГАВМФ. Ф.870. Оп.1. Д.7208. ЛЛ.87-88. Шханечный Журнал Корвета Олибуца (1854년 올리부차호의 항해일지) : 최명복,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102, 1999, 217쪽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한국 동해안의 북위 35-30도 지역에서부터 북위 42-30도, 동경 131-10도 지역까지 약 600마일의 해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에 게재하였다.

“다젤레트(Дажелет)는 보스톡호가 북위 37-22도, 동경 130-56도에서 관측했는데, 둘레 20마일 크기의 원형 모양이고, 해안은 협소하며, 거의 접근할 수가 없었다. ‘다젤레트’ 최고봉의 높이는 2,100피트이다.

아르고나트섬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 섬은 보이지가 않는다.

해조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은 올리부차 호가 북위 37-14도, 동경 131-57도에서 발견했으며,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 도라 불렸다. 이 섬의 발견은 항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들 섬은 근접한 섬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서 동해 북방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⁶¹⁾

그 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조선 동해안 지도’는 1857년 판본, 1868년 판본, 1882년 판본이 국내에 알려졌다. 1857년 판본은 1854년 올리부차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를 처음 발견했다고 소개되었다. 그런데 1860년 러시아 해군 항해부대 소속 지휘관 세르게예프 중령(Под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ев)은 독도에 대한 지형의 측량을 실행하였다. 1868년 판본은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지도에 소개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 그림을 포함시켰다. 1882년 판본은 1861년부터 1880년까지의 러시아 조사에 기초하여,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및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동일하게 수록하였다.⁶²⁾ 이것은 팔라다호 함대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이

61)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T.14. N.1, 1855, CC.34-35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지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19세기 후반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의 지속적인 지도 발간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 후 러시아 함대는 동해를 경유하면서 울릉도를 기록으로 남겼다.

1886년 8월 포함 시부치(Сивуч)호는 진해(Bate Crichton 북위 34.2, 동경 128.18) 군도를 탐사하면 군사적 방어시설 및 저탄소의 기능을 관찰하였다.⁶³⁾ 그 후 시부치(Сивуч)호는 1887년 4-5월 사이 두만강을 정밀하게 측량하였다. 시부치호는 1887년 4월 나가사키-히케-타케-울릉도 등을 경유하여 두만강에 도착하였다.

“4월 7일 오전 8시 3개의 증기기관을 보유한 시부치호는 나가사키 정박지에서 닻을 올렸다. 이오시마(Иво-Сима) 등대를 벗어나면서 나침반으로 항로를 결정했으며, 그 후 북서쪽 65도 방향으로 항로를 잡고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오전 11시 30분 히케(остров Хике, 이키 壱岐) 섬 옆을 지나면서 항로를 북서쪽 29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오가 지나면서 초속 3-4미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오후 3시 10분 타케(камень Таке, 타케시마) 암초를 지나면서 북서쪽 15도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후 8시 동쪽의 조선해협(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олив, 대한해협)에 도달하여 항로를 북쪽

62) 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сост. с описи, произвед. офицерами на фрегате Паллада. Грав. В. Поляков. Вырез. слова Д. Комов. [СПб.] Гидрогр. Деп. Мор. М-ва. 1857.(РНБ КЗ-ВАЗ/4-51)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1876년 ‘조선동해안도’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독도의 명칭이 러시아 해군이 명명한 명칭인 ‘오리우츠(올리부차)’와 ‘메네라이(메넬라이)’를 채택했다.(김영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2009, 180쪽) 한철호에 따르면 일본 해군성 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는 1875년 초판이 발간되었다.(Han Cheol-Ho,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Recognition of Dokdo, Korea Journal, Vol.57-1,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pp.36-47)

63)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Л1.64а-64б. 1886.8.29

27도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4월 8일 오전 6시에는 북쪽 11도 방향으로 항로를 설정하였다. 이 항로는 다젤레트(остров Дажелет) 섬 서쪽 6마일을 지나는 것이었다. 그곳으로부터 북서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볼틴(Болтин) 곳 방향으로 향하였다.”⁶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케’(камень Таке, 타케암초)라는 명칭이다. 히케는 이키(壹岐)로 대한해협과 나카사키 중간에 위치하였다. 시부치(Сивуч)호의 항해 기록에 나오는 ‘타케’는 독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타케’를 거쳐 한국해협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시부치호 함장은 울릉도 ‘다젤레트’를 항로로 이용하면서 동해를 탐사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는 1896년 1월 한국의 주요 항구를 조사하면서 전략적 가치에 관한 탐사 보고서를 러시아 해군부에 제출하였다. 알렉세예프는 거제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주요 항구 중 제물포-부산-원산-울릉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알렉세예프는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⁶⁵⁾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테브란트(Я.А. Гильдебрандт)는 1899년 11월 20일 블라디보스톡 소속 러시아호, 류릭호, 파마티 아조프호,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 등의 순서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였다. 태평양함대는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 서쪽으로 5마일 지점부터 시작되는 나가사키로 항로를 잡았다.⁶⁶⁾

결국 러시아함대도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며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관찰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

64) РГАВМФ. Ф.417. Оп.1. Д.257. ЛЛ.57-79. 1887.5.23.

65)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1.21.

66)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б. 1900.7.9.

을 실시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5. 맺음말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짜핀(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제독 뿌짜핀은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감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шиков)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 뿌짜핀은 소령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을 맡았다.

작가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독 뿌짜핀의 비서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함께 출발하였다. 곤차로프는 항해과정에서 도착한 국가에 대한 자연과 풍경 및 인간과 민족에 대한 특징을 포착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공존을 생생히 기록하였다. 그는 발의 청결과 절의 풍습에 관한 동양 문화를 설명하였고, 속담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도 인정하였다. 그만큼 곤차로프는 동양을 이해하는 학습과 노력이 남달랐다. 곤차로프는 공식적으

로 향해 기록을 위한 비서 신분이었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다. 그는 지식인으로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을 고민하면서 팔라다호에 승선하면서,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하는 강인한 사람을 꿈꾸었다. 그는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보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⁶⁷⁾ 그것은 국가의 목표와는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인간성 회복을 꿈꾸는 개인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뿌짜진은 1855년 1월 26일 일본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条約)을 체결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그 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조선 동해안 지도’는 1857년 판본, 1868년 판본, 1882년 판본이 국내에 알려졌다. 1857년 판본은 1854년 올리부차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

67) 먼 여행을 돌아온 곤차로프는 전함 팔라다호에 자신이 깨달은 진실들을 쏟아 부었다. 예를 들면, 그는 절대 악의 비판과 처벌에 관한 이중성을 꼬집었다. “천개의 돌을 던져보아 소용없던 악에 또 하나의 작은 돌을 쓸데없이 던져야 할까? 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비난 받는 쪽은 죄를 인정하면서 침묵한다. 재판은 선고로 내렸지만 선고를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차를 처음 발견했다고 소개되었다. 1882년 판본은 1861년부터 1880년까지의 러시아 조사에 기초하여,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및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동일하게 수록하였다. 이것은 팔라다호 함대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이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지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19세기 후반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의 지속적인 지도 발간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 후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2009.
-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전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1984.
- 석영중, 「오블로모프의 맛있는 음식」, 『러시아문학연구논집』 35, 2010.
- 이희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 2011.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 이희수,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08.
- 정은상, 「곤차로프의 전함 빨라다호에 나타난 조선과 조선인」, 『인문논총』 37집, 2015.
- 정하미, 「미국 표류민 학대 문제와 맥도널드의 경험 : 미일화친조약의 전야」, 『일본연구』 17, 2012.
- 최명복,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102, 1999.

- 최윤락, 「곤차로프와 그의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오블로모프』, 2권, 문학과 지성사, 2002.
- Han Cheol-Ho,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Recognition of Dokdo, Korea Journal, Vol.57-1,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 Тюнькин. К. Примечание//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И.А. Гончарова в 6 Томах. М. 1956. Т. 3.
- Знгельгардт Б.М. Фрегат Паллада//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Спб. 1995.
-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IV. No.10. Спб. 1856.
-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Т.14. N.1, 1855.
- 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сост. с описи, произвед. офицерами на фрегате Паллада. Грав. В.Поляков. Вырез. слова Д. Комов. [СПб.] Гидрогр. Деп. Мор. М-ва. 1857.(РНБ КЗ-ВАЗ/4-51)
- РГАВМФ. Ф.296. Оп.1. Д.75. ЛЛ.219-223.
- РГАВМФ. Ф.870. Оп.1. Д.7208. ЛЛ.87-88.
-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Л.64а-64б.
- РГАВМФ. Ф.417. Оп.1. Д.257. ЛЛ.57-79.
-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б.

<Abstract>

Russia's maritime exploration and the discovery of Dokdo and Ulleungdo in the Age of Modern

Young-Soo Kim

Ivan Alexandrovich Goncharov(1812–1891) was a Russian novelist best known for his novels *A Common Story* (1847), *Oblomov* (1859), and *The Precipice* (1869). He also served in many official capacities, including the position of censor.

Goncharov was born in Simbirsk into the family of a wealthy merchant; as a reward for his grandfather's military service, they were elevated to gentry status. He was educated at a boarding school, then the Moscow College of Commerce, and finally at Moscow State University. After graduating, he served for a short time in the office of the Governor of Simbirsk, before moving to Saint Petersburg where he worked as government translator and private tutor, while publishing poetry and fiction in private almanacs. Goncharov's first novel, *A Common Story*, was published in *Sovremennik* in 1847. Goncharov's second and best-known novel *Oblomov* was published in 1859 in *Otechestvennye zapiski*. His third and final novel *The Precipice* was published in *Vestnik Evropy* in 1869. He also worked as a literary and theatre critic.

Frigate 'Pallada' is a book by Ivan Goncharov, written in 1854-1857 and based on a diary that he kept as a secretary for Admiral Yevfimiy Putyatin

during his 1852-1854 around-the world expedition on board Frigate Pallada.

In the autumn of 1852 Goncharov received an invitation to take part in the Admiral Putyatin-led around the world expedition through England, Africa, Japan, and back to Russia. The flotilla, led by Frigate Pallada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Ivan Unkovsky, included also corvette Olivutsa, schooner Vostok and Knyaz Menshikov, a small merchant vessel. The mission's objective was to establish trade relations with Japan, then a closed and, as far as Russia was concerned, mysterious country. As it was successfully completed, Pallada, unable to enter the Amur River because of her draft, had to overwinter in Imperatorskaya Gavan. Goncharov returned to Saint Petersburg on 25 February 1855, after traveling through Siberia and the Urals, this continental leg of the journey lasting six months.

Key words: Frigate Pallada, Goncharov, Putyatin, Olivutsa, Dokdo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결정됨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동북아국제정치

– 2016년 일·러 ‘북방4도’* 교섭의 관점에서 –

이 명 찬**

〈목 차〉

1. 서론
2. 북방영토문제와 일·러 관계
3. 일·중 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4.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
5. 결론

〈국문초록〉

2016년 일러수뇌회담은 일러 양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나아가 아베 수상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회담이었으며, 동북아국제정치의 큰 판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아베 수상의 의도가 엿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북방4도의 반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북방영토문제의 미해결은 많은 부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4도 일괄 반환’ 주장과 ‘2도 선행 반환’ 주장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잦은 ‘골대 이동’이 북방영토 해결을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물론 일본정부의 그러한 결정에 미국정부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의 산물이거나, 미일동맹정책의 대가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대국간 힘의 전이 현상이 배경에 있어 복잡한 정치역학이 작용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북방4도

* 일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관계로 쿠릴열도 남단 4도를 ‘북방4도’로 표기한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에 대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명확해진다.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독도에 대한 주장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그 주장의 공허함이 같은 이유에서 오버랩 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주제어: 영토 분쟁, 쿠릴 열도, 일본, 러시아, 고유영토론, 독도

1. 서론

아베 총리와 푸친 대통령은 2016년 15일과 16일, 야마구치 현 나가토시에서 일러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이 가장 주목하고 있던 것은 북방영토 문제였다. 그러나 반환에 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북방영토 문제에 진전이 없었음이 밝혀지자, 국민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었다.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16일, 「해결 전망이 설 것 같은 보도가 계속 되었는데 아무 진전도 없이 이대로 끝난다면 도대체 그 예고는 무엇이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의 외교 당국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한편, 일본 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카마다 시게키(袴田茂樹) 니이가타 현립 대학교수는 12월 정상회담에서의 푸친의 강경 자세를 「예기치 못한 밥상 엇기」(주간아사히)라든가, 「푸친의 표변」(문예춘추, NHK 해설위원 기사) 등으로 보도하였지만,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면, 미디어가 오랜 세월 흘러보낸 낙관론의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수상 관저도, 많은 러시아 전문가나 미디어도, 「무승부(ヒキワケ)」라든가, 「상호의 타협」, 또는 「평화조약 체결은 중요」라는 등의 푸친의 감언에 끌려 다녔다. 그리고 미디어는 「경제협력을 진행시켜도 영토에서의 양보는 하지 않는다」라는 푸친의 발언(2016년 9월)이나, 「2도반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백퍼센트 확실하다」고 한 정권관계 러시아 전문가의 말 등의 강경론은 단순한 협상기술

이라고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아, 수상관저나 정치가, 국민 등에게 환상을 계속 안게 했다는 것이다.¹⁾

미디어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푸친의 일본 방문은 성공이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 전문가인 아비루 다이스케(畔蒜 泰助)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²⁾ 일러관계에는 2개의 면이 있는데, 하나는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의 체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큰 진전은 없었다. 또 하나의 면은,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러의 관계의 긴밀화가 불가결한데, 이번 정상회담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비루는 북방영토의 반환과 평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제1은, 해결 한다고 해도,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즉, 인도의 대상은 하보마이 군도(齒舞群島)와 시코탄섬(色丹島)만이라는 것이다.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擇捉) 두 섬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각오하고 교섭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2는, 일정한 신뢰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푸친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문가가 매년 항례로 모이는 바르다이 회의 장소에서, 「중국과의 사이에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제3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적용 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이 만일 인도되더라도, 일본이 주권 혹은 시정권을 가지게

1) 袴田茂樹 「6月 1日, プーチン大統領は北方領土めぐり「重大発言」不可解すぎる官邸の対露政策」『産経新聞』2017年 6月 13日.

2) 森永輔, 畔蒜 泰助 인터뷰 「北方領土と日ロ平和条約、次の勝負は2018-21年」『日経ビジネスONLINE』2016年12月19日.

되어 미군이 주둔 하는 일이 있으면 러시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여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푸친 대통령에게 북방영토를 인도할 의사는 없다」 「푸친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경위를 되돌아보면, 러시아 측의 발언은 일관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외무성은 「일러 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뿐이다」라고 계속 말해 왔다. 푸친 대통령은 「무승부」라고 말했을 뿐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 표현에 일본 측이 과잉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본의 대러시아 외교에는,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면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전략적 중립을 유지시킨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면이 있다. 전자는, 국내 정치의 관점으로부터, 보다 짧은 시간 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후자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진행된다. 전자에 대해 큰 진전은 없기는 했지만, 우선은, 전 도민의 보다 간소한 형태로의 북방영토 방문에의 길이 열렸다. 동시에, 북방 4도에서, 「특별한 제도」아래에서 행하는 공동경제활동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 개시에 합의했다. 후자에 대해서는, 3000억 엔 상당한 경제협력 안전에 합의함과 동시에, 안전보장 분야에서 2+2를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공동경제활동」에 대해서 「평화조약 체결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푸친도 아베 총리의 주장에 동의 했다.³⁾ 그렇다면 성과는 없었다거나, 아베 수상이 너무 양보했다고 하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결국, 푸친의 일본 방문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를 분단하는데 성과가

3) 北野幸伯 「北方領土「進展なし」でもプーチン来日が成功だった理由」『DIAMONDOnline』2016年 12月 19日.

4) 森永輔, 畔蒜 泰助 インタビュー 「北方領土と日ロ平和条約, 次の勝負は2018~21年」『日経ビジネスONLINE』2016年 12月 19日.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국영 신화사통신은 일리회담에 관한 논평으로 「아베 수상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중·러 관계의 토대를 흔드는 것은 어렵고, 계획은 기대를 벗어날 것이다」라고 반발하였다. 게다가 「(아베 씨의) 사익만을 추구한 제멋대로인 외교적 사고는, 일본이 이웃나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을 틀림없이 곤란하게 할 것이다. 단순한 일방적인 망상이다」라고 비판했다.⁵⁾

그렇다면 아베 수상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중·일간에 벌어진 갈등, 즉, 2010년의 중국 선박 나포 사건이나, 2012년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둘러싼 일중간 갈등이 현재까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에는,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 관방부장관이 6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군기가 17일에 일본을 향해 남하하여 항공 자위대기가 긴급발진(스크램블) 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양 비행기는 서로의 배후로 접근하려고 서로 추적하는 「공중전」과 같은 상태에 한때 빠져 있었다고 한다.⁶⁾

자위대의 고노 카츠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동년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4-6월에 일본 영공에 접근한 중국 전투기에 대한 항공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의 회수가 작년의 동시기에 비해 80회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는 4분기마다의 긴급발진 회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통합막료장이 회견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4-6월의 중국기에 대한 스크램블은 114회에 과거 최다였다. 2016년은 그 1.7배 이상인 약 200회가 된다.⁷⁾

5) 『時事通信』 2016年 12月 16日.

6) 『時事通信』 2016年 6月 29日.

7) 『産経新聞』 2016年 7月 1日.

아베 총리가 이번 일러수뇌회담에서 언급한 것은,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것이 1차 목표였지만,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전략적 중립을 유지시킨다, 라고 하는 1차 못지않게 중요한 2차 목표가 있었다. 이번 회담은 일러 양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국제정치의 큰 판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일본의 의도가 엿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일본의 영토정책을 검토하면서, 특히 쿠릴열도를 둘러싼 일러 양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북방4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⁸⁾

본 논문은, 제2장에서 2016년 일러수뇌회담의 개최 경위 및 의의에 대해 고찰한 다음,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북방영토의 현상과 국경 교섭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중·일간 갈등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양국 갈등의 촉발요인이었던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의 어선 충돌사건과, 2012년 9월 11일 센카쿠 세 개 섬을 일본정부가 국유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센카쿠제도에 대한 미일동맹의 역할과 그 한계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일본이 주변국과 안고 있는 영토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몇 가지 시사점으로

8) 김인성, “러시아의 쿠릴열도(북방4도) 정책”, 남상구, “남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윤영미(2006), “탈냉전기 러-일 영토 분쟁 : 남쿠릴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안보적 접근과 인식” 『현상과 인식』 봄·여름호. 이영형(2006), “쿠릴열도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 『한국시베리아연구』 제9집 6-1호. 손기섭(2008), “북방4도와 센카쿠열도 해양 분쟁의 특성” 『일본문화연구』 제27호 등이 있다.

정리하고자 한다.

2. 북방영토문제와 일러관계

1) 북방영토의 현상과 교섭 과정

(1) 2016년 12월 15일 일러수뇌회담 개최 경위⁹⁾

2016년 5월 7일에 아베 수상이 러시아의 소치를 비공식 방문하여 푸친 대통령과 약 3시간 10분에 걸치는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당시, 아베 수상은, 「2도 반환을 할지 말지만을 논하는 것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프로치로 평화 조약의 교섭을 하자」라고 푸친 대통령에 제안했다. 새로운 어프로치란 일본이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여, 북방 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측은 과감히 대형의 경제협력을 진심으로 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푸친 대통령은 매우 만족하고 받아 들였다.

그리고 9월 2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일러정상회담으로는 한층 더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9월의 내각 개조로 경제산업대신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를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담당대신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일본은 공동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도 마음껏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 회담이 끝난 단계에서 아베는 북방영토 문제에 큰 자신을 가지고 있었고, 12월 15일의 일러정상회담에서는 푸친 대통령으로부터 「2도 반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9) 이 절은 다음의 글을 근거로 기술하였다. 田原総一郎 「安倍・トランプ・プーチン連携で狙う新世界秩序の行方」 nikkeiBPnet(2016.12.22).

<http://www.nikkeibp.co.jp/atcl/column/15/100463/122100097/>(검색일자 2016.12.23).

그런데, 11월 19일의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의 일러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러시아의 태도가 일변했다. 푸친 대통령이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러시아의 주권 하에서 실시한다」라는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다. 당시의 기자회견에서, 아베 수상의 표정이 굳어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왜, 러시아 측의 태도가 돌연 냉엄해졌는가. 여러 가지 억측이 있지만,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는 푸친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차기 국무장관에 엑스모빌 CEO인 렉스 틸러슨을 임명했는데, 그는 푸친 대통령과 지극히 사이가 좋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트럼프는 러시아의 크림미아 침공에 이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러시아에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제국은 러시아의 크림미아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를 G8로부터 제외했다. 시리아 문제에서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고, 간접적인 전투상태를 초래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걸핏하면 푸친 대통령과 대립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최악의 관계였던 것이다.

푸친 대통령이 본심을 털어놓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일본 밖에 없었다.¹⁰⁾ 그래서 아베는 12월 15일의 정상회담은 잘될 것이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차기대통령으로 정해짐으로써 단번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회복되었다. 푸친 대통령은 고립된 입장으로부

10) 알렉산더 파노프 전 주일러시아 대사의 다음 발언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아베 수상은 ‘서방측의 단결을 흐트리지 말라’고 하는 미국의 조언을 거부하고,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친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하고 있다. 아베 씨의 말이나 행동은 일본이 서방측의 대러시아 제재 망으로부터 사실상 이탈하였음을 말해준다. G7에서는 일본뿐이다. 러시아와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각 성청의 조정 역을 담당하는 대신포스트도 신설되었다” 『朝日新聞』 2016年 10月 5日.

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이제 일본에 다가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태도를 경화했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영토 문제로 강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푸친 자신이 16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북부에는 기지가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한다. 일미안보조약으로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는 모른다. 일본의 여러분은, 러시아 측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즉, 푸친은, 두 개의 섬이 일본의 주권 하로 복속되는 순간,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해 미군이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닌가, 러시아를 견제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려하고 있다.¹¹⁾

2도 반환문제에 관해서, 일본 기사가 「56년의 일소공동선언에서, 소련 측이 하보마이·시코탄의 두 개의 섬을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푸친 대통령은 「우선 국교 회복을 선행시켜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하보마이·시코탄을 어떤 형태로 반환할 것인지 교섭한다, 라고만 정해진 것이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즉, 두 개의 섬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주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반환할 것인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다.

푸친 대통령은 한층 더 놀랄 만한 말을 했다. 「게다가, 그 후 일본은 일소공동선언을 부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일소공동선언을 부정했던 시기는 고이즈미 내각 때이다. 그 이전의 하시모토 내각, 오부치 내각, 모리 내각까지는, 일러 사이에 일소공동선언에

11) 덧붙여서, 러시아가 「크리미아 병합」을 결의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탄생한 친 구미 신정권이, 「크리미아로부터 러시아 흑해 함대를 쫓아내고, NATO군을 받아들 이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러시아 국민은 크리미아 병합 후, 항상 「미국과 전쟁중」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4개 섬이 사실상 미군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푸친이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北野幸伯 「北方領土「進展なし」でもプーチン来日が成功だった理由」『DIAMONDOnline』2016年12月19日.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고이즈미 내각 시대에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다나카 마키코가 「일러관계는 1973년에 행해진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과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발표한 일소공동성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부정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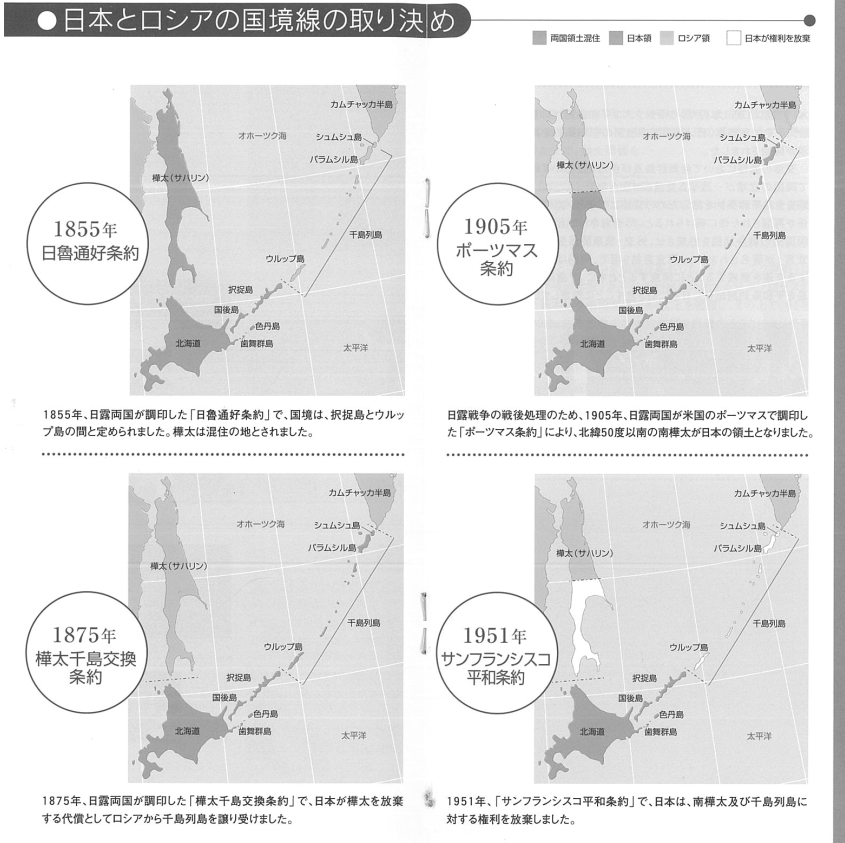
73년의 일소공동성명에서는, 56년의 일소공동선언으로부터 한층 더 나아가, 북방영토문제를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의 두 개 섬뿐만이 아니라, 구나시리, 에토로후섬도 추가한 네 개 섬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경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다나카의 뒤를 이은가와 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도 그것을 긍정해 버렸다. 이렇게 하여 4도 반환을 전제로 하자 일러교섭은 다시 단절됐던 것이다. 푸친 대통령은 이것을 상기시키고 「러시아에 영토문제는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자.

(2)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의 변천(1855~1945)

일러 간에 처음 법적으로 국경을 결정한 1855년의「일노통호조약日魯通好條約(러일화친조약)」에서, 가라후토(樺太)를 양국민이 함께 거주하는 땅으로 하고, 쿠릴열도의 에토로후섬과 우루프섬 사이에 국경선을 정하고 에토로후섬 이남을 일본령, 우루프섬(得撫島) 이북을 러시아령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20년 후인 1875년, 가라후토는 러시아령, 대신에 우루프섬 이남을 포함한 전 쿠릴 열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을 일러 간에 주고받았다.¹²⁾(〈그림 1〉참조) 왜, 이러한 영토의 교환이 있었을까?

12) 「なぜ樺太放棄した?面積だけでは測れない「樺太千島交換条約」の真意」The PAGE (2016.11.30), <https://thepage.jp/detail/20161129-00000009-wordleaf>(검색일 2016년 12월 2일)

〈그림 1〉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의 변천



출처: 「知っていますか? 日本の北方領土」(北方領土の日啓発実行委員会) 팸플릿에서 인용.

일노통호조약 체결 후, 가라후토는 마쓰마에번(松前藩)령으로부터 에도 막부의 직할지로 바뀌었다. 그 후, 메이지정부의 성립에 따라, 1869년에는 태정관 직속의 개척사 소관이 되었다. 한편, 양국민 공동거주의 땅으로 결정한 러시아는 크림리아 전쟁 종결 후 가라후토 개발에 나서자 종종 양국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양국 간에 가라후토의 국경선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신정부에는, 가라후

토 섬 전체 혹은 반으로 경계선을 그어 남반을 일본의 것으로 한다고 하는 의견과 원격지인 가라후토를 방기하고, 홋카이도 개척에 주력 한다고 하는 2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가라후토 방기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교섭은 1874년부터, 러시아의 썬페테르부르크에서 행해졌는데, 약 1년 가까운 교섭 끝에 「가라후토·치시마(千島) 교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메이지 신정부가 재정력에서도 방위력에서도 광대한 가라후토를 통괄할 힘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면적 면에서 보면, 7만 6400평방킬로미터인 가라후토를 방기하고, 총면적 1만 수천 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쿠릴 열도와외의 교환은 격이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경계하고 있던 영국 정부의 어드바이스도 있었고, 지정학상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나누는 쿠릴열도는 해양 전략상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인식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쿠릴열도는 남북으로 약 1200킬로로 길게 늘어져 있어 수산업에 큰 의미를 가졌다.¹³⁾ 이러한 국경선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변경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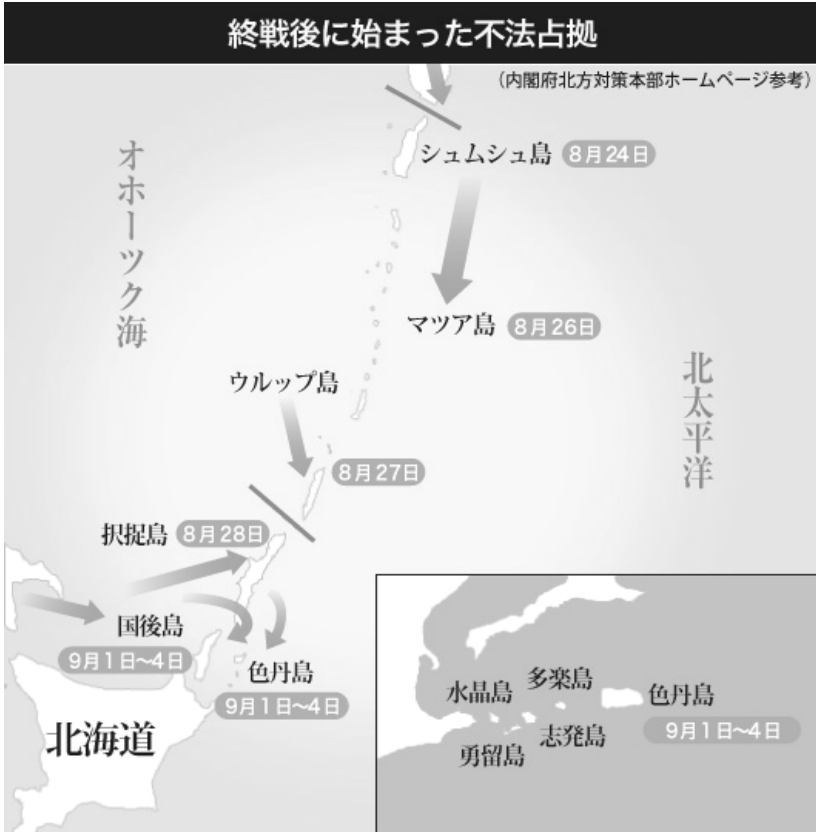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소중립조약(1941년)을 파기하고, 일본에 선전포고, 만주·한반도에 침공했다. 동월 9일에는, 40년 전인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령이 된 남 가라후토에 침입, 18일에는 쿠릴열도 최북단인 캄차카섬에 가장 가까운 슈무슈섬에 상륙, 마츠아섬, 우루프섬을 차례차례 제압하고, 9월초까지, 에토로후섬을 시작으로 한 북방 4개 섬 모두를 점령한다. 일본은 51년 9월, 전쟁상태를 종결시키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하고, '치시마열도'를 방기했다. 소련은 동조약에 조인하지 않아 일소평화조약체결문제가 남게 되었다. 그 후, 초점이 되었던 북방영토문제의 귀속을 둘러싸고 양국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다.¹⁴⁾

13)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의 문면을 보면, 일본에 양도되는 우루프섬 이북의 18개 섬의 명칭은 있지만, 에토로후·구나시라·시코탄·하보마이의 북방4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本田良一 「北方領土の現状と交渉の経過」 『CHUOKORON』 January 2017. pp.42-43.

일본은 몰랐던 「알타회담」의 밀약¹⁵⁾

〈그림 2〉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시작한 소련의 침공



소련의 북방영토 침공(내각부 북방대책본부 홈페이지 참고)

기습으로 보인 소련의 참전과 북방영토 침공의 배경에는 1945년 2월, 크리미아반도 알타에서 미국의 프랭클린·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수상에 의해 개최된 비밀 정상회담인 「알타회담」이

15) 「突然の北方領土占拠 “千島”がほしいッ連に口実を与えた「ヤルタの密約」」ThePAGE (2016.12.6), <https://thepage.jp/detail/20161205-00000006-wordleaf>, (검색일: 2016년 12월 8일)

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이, 남 가라후토와 쿠릴열도의 소련 영유권으로 이양 등을 조건으로 한, 독일 패전 후 2~3개월 이내의 소련군의 대일 참전이었다.

일소중립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은 어떻게 얄타협정에 임하게 되었을까? 1875년,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으로 러시아는 광대한 가라후토의 영유권을 손에 넣은 대신에, 전 쿠릴열도를 일본에 건네주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오후츠크해로부터 태평양으로의 입구가 되는 쿠릴열도가 지형학적으로 요충인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얄타협정은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현재의 러시아도 북방영토 주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얄타협정」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얄타회담은 당시의 연합국 수뇌 사이에 전후 처리 방침을 서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본은 본 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¹⁶⁾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러 국경획정¹⁷⁾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6년 후의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회의가 열려 일본과 연합국 각국 사이에 평화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연합국에 의한 점령이 종료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영토나 배상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북방영토에 관해, 「일본은 쿠릴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조약의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가라후토의 일부 및 이것과 근접하는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문중의 「가라후토의 일부」는 포츠머스조약으로 취득한 「북위 50도 이남의 남 가라후토」이다. 그렇다면 「쿠릴열도」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16) 상동.

17) 「ソ連は調印を拒否 日本が主権回復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裏側」ThePAGE (2016.12.8), <https://thepage.jp/detail/20161208-00000002-wordleaf> (검색일 2016년 12월 10일).

일러 간의 교섭을 되돌아보면, 처음으로 법적으로 국경을 결정한 1855년의 「일노통호조약」에서, 에토로후섬 이남은 일본령으로, 우루프섬 이북의 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되었다가, 1875년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으로 전 쿠릴열도가 일본령이 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전 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였지만, 일본 정부는 한 번도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역사적인 근거 등에서, 이 에토로후 이남의 북방 4개 섬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말하는 「쿠릴열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본령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후 북방영토 교섭 과정(1951~2015)

1956년 일소공동선언 직전, 영토 반환에 압력을 가한 “달레스의 공갈”¹⁸⁾

일본이 주권을 되찾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린 5년 후, 일소간의 국교가 회복되었다. 그것이 60년 전의 「일소공동선언」이다. 55년 6월에 시작한 일소 교섭에서, 일본은 당초, 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 반환을 방침으로 하였다. 그런데, 소련이 두 섬 반환을 제시하자 일본은 갑자기 4도 반환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교섭은 중단되었다.

하토야마 수상이 56년 10월에 방소하고, 영토문제를 뒤로 미루는 형태로 일소공동선언에 조인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켰다. 선언은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을 명기했지만, 구나시리, 에토로후 양 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소공동선언(1956년)으로 국교는 회복했지만 평화조약체결에 이르지 못했고, 후에 탄생한 러시아와도 아직 주고받지 못했다.¹⁹⁾

18) 「「2島か、沖繩か」日ソ共同宣言直前、領土返還で圧力かけた“ダレスの恫喝”」ThePAGE (2016.12.12), <https://thepage.jp/detail/20161209-00000007-wordleaf>, (검색일 2016년 12월 14일)

19)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기술된 「쿠릴열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해석을 애매하게 하여, 일러 간의 북방영토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해지지만, 일본 정부는 소련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어째서 일본은 일소공동선언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었는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일본은 독립을 완수하고 즉시 유엔에의 가맹을 신청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에서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가맹이 부결되었다. 또 당시, 시베리아에는 일본군 등 약 2000명이 억류되고 있었다. 동서냉전의 선동으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조인을 거절한 소련과의 국교 회복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조인한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대미 협조를 중시하고 있던 것에 대해, 1954년에 취임한 하토야마 내각은 「독립 중시」의 「대미 자주 외교」를 전개하였고, 소련 측도 그 전년인 1953년 3월에 미소 대결 자세를 강하게 한 독재자 스탈린의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 받은 공산당 제일 서기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 노선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등, 일소 양국에서 정권 내에 풍향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하보마이·시코탄 2개 섬으로 결착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국의 텔레스 국무장관으로부터도 간섭이 들어왔다. 2개 섬 반환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할 경우엔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이른바 「텔레스의 공갈」이다.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일소간이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던 것이다.²⁰⁾

결국, 시베리아 억류자의 귀국을 최우선 과제로 한 하토야마 수상은 「영토는 몇 년 경과하더라도 없어질 것은 없지만,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 우선은 국교정상화 하는 것을 결단하고, 영토 문제에 관한 교섭은 후일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 “애매모호”

부터, 이 「조약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 이러한 주장에 대해 Gilbert Rozman은, “러시아인과 일부의 일본인은 1956년에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일·러의 접근을 방해하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의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미국의 방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1956년의 진정한 문제는 소련이 미일안보조약을 저지하고 일본의 중립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에 있다”고 반론한다. Gilbert Rozman, 「日口首脳会談に向けたロシアと米国の視点」『CHUOKORON』January 2017. p.52.

한 결착으로, 일본은 1956년 12월 18일의 국제연합총회에서 80번째의 가맹국으로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60년- 국교 회복을 우선하면서 보류되었던 「북방영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냉전 후 협상 과정

일본은 여러 번 영토문제 해결의 찬스를 놓쳐버렸다. 25년 전의 소련 붕괴 전후, 그 당시가 일본에게 최대의 찬스였다. GDP는 세계 2위로 미국을 급속히 따라잡고 있어 일본의 국력은 절정기였다. 게다가 중국의 대두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북방영토 교섭에 일본이 주력 할 수 있는 국제체제였다. 당시의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후에 시장 경제가 혼란하고 있어, 일본 측은 일본의 경제력을 살릴 수 있을 찬스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기운을 잘 살리지 못했다. 러시아의 식자들은, 「일본은 90년대에 러시아가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절호기를 놓친 것이, 1992년 러시아로부터 제시된 북방영토에 관한 비밀 제안이다. 일본 측의 관계자인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전 외무성 유라시아 국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²¹⁾

1992년 3월, 도쿄에서 행해진 일러 외상 회담에서, 당시의 코즈이레스·러시아 외상이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상에게 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하는 내용의 비밀 제안(코즈이레스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옐친 대통령의 이해는 얻지 않았지만, 만약 일본 측이 타진해 오면 정식 제안하겠다고 하는 함축이 있었다.

제안은 당시 와타나베 외상과 코즈이레스 외상과의 회담 석상에서 구두로 행해졌다. 러시아 측은, (1) 하보마이, 시코탄을 인도하는 수속에 대해 협의한다, (2) 하보마이, 시코탄을 인도한다, (3) 하보마이, 시코탄 문제

21) 高橋洋一 「日ロ首脳会談が4島返還にこだわりすぎてはいけない理由」 『DIAMOND online』 2016.12.15

의 해결에 따르는 형태로 구나시리, 에토로후 양 섬의 취급을 협의한다, (4) 합의에 이르면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보마이, 시코탄의 반환을 먼저 진행한다고 하는 점에서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과는 다른 내용이다. 나아가 협의의 행방에 따라서는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반환의 가능성도 남겼으므로 확실히 지금까지의 러시아 제안으로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 러시아의 최대한의 양보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좀 더 러시아가 타협해 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적 예상을 하고 수락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또 하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수상이 2001년 3월, 러시아의 극동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수뇌회담에서 푸친 대통령에게 제안한 ‘병행협약’이 있다. 모리 수상은 2001년 3월, 푸친대통령에게 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의 반환 조건 등과, 남은 두 섬의 귀속문제를 협의하는 ‘병행협약’을 제안했다. ① 1965년의 일소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 후, 인도가 결정되었던 하보마이, 시코탄 두 섬에 대해, 반환 조건이나 스케줄 등을 협의한다. ② 동시에 다른 테이블에서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귀속 문제, 누구의 영토인가를 협의한다. 그리고 ①②의 협이가 종료된 후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제안이었다.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귀속 처는 협의의 결과 결정한다. 목표는 네 개 섬 반환이지만, 네 개 섬 반환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²²⁾

병행협약을 제안한 이르쿠츠크 수뇌회담 다음달, 모리 수상은 퇴진하고, 고이즈미 준이치(小泉純一郎)로 정권이 발족했다. 계속해서 고이즈미 정권 하의 동년 10월, 푸친 씨는 동의했지만 일본은 그 후, 네 개 섬 반환을 전제로 한 종래 방침으로 되돌아가, ‘병행협약’을 사실상 철회하여 교섭은 정체하게 된다.²³⁾ 고이즈미 내각의 외상 다나카 마끼코(田中真紀子)

22) 森喜朗 「交渉秘話—これが、森喜朗元首相の「遺言」だ」 『CHUOKORON』 January 2017. p.31.

는 “(아버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건재했던) 당시는 4도 일괄반환이었는데, 도중에 2도 선행 반환으로 방침이 전환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다나카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러시아도 강경해졌다. 고이즈미 수상은 2001년 10월에 상해에서 있었던 푸친과의 수뇌회담에서 병행협의를 다시금 제안하였고 푸친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측이 제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병행협의를 사라졌다.²⁴⁾

병행협약이 폐기된 이후 한동안 일러교섭은 정체했다. 98년 4월, 하시모토 료타로 수상이 “러시아가 4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해 준다면, 당분 간 러시아의 시정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가와나 제안(川奈提案)을 제시하였다. 4도 반환을 전제조건으로 했던 종래방침 틀 속에서 최대한의 양보였지만 러시아 측은 거부했다. ‘일본은 네 개 섬, 러시아는 두 개 섬’이라고 하는 대립 속에, 일본은 네 개 섬 반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유연한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당시 수상인 푸친이 대통령에 복귀하는 대통령선거 3일 전인 2012년 3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무승부’ 발언이 계기가 되었다. 모리는 2013년 2월 수상에 복귀한 아베 신조의 친서를 갖고 푸친과 회담했다. 2014년 2월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아베와 푸친이 회담을

23) 고이즈미 정권 발족 보름 후, 모리 씨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병행협의를 제안했다는 것을 밝혔다. 모리 전 수장과 대담한 혼다 료이치(本田良一)는 수뇌회담의 의사록 표지에 ‘극비 무기한’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었으며, 모리 씨가 방송에서 극비인 내용을 밝힌 것은 병행협약이 사라질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森喜朗 「交渉秘話—これが, 森喜朗元首相の「遺言」だ」 『CHUOKORON』 January 2017. p.31.

24) 모리는 그 책임이 외무성에 있다고 했다. “4도 일괄 반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행협의를) 폐기해버렸다. 일본 외무성에는 ‘절대로 4도’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어느 지점에서 타협해야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상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다. 푸친이 전향적인 이야기를 하면 라부노프 외상이 반드시 반대의견을 말한다. 러시아의 외무성 중에도 반일파와 친일파가 있다.” 森喜朗 「交渉秘話—これが, 森喜朗元首相の「遺言」だ」 『CHUOKORON』 January 2017. p.32.

했고, 푸친의 가을 방일에 합의했다. 그 직후 우크라이나 문제가 발생했다. 유럽과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미국이 반대하여 일러교섭이 정체되었다.

2) 북방영토문제와 경제협력

(1) 「4개 섬 일괄반환」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

「4개 섬 일괄반환」의 실현이 왜 어려운 것일까? 러시아 측이 북방영토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그 답이 될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는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련은 일소 중립조약을 깨고 대일 참전했다. 포츠담선언 수락 후인 194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북방 4도를 점령했다. 그래서 일본 측은 「불법 점거다」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의식은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

키타노 요시노리(北野幸伯)는 “러시아인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은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술회한다.²⁵⁾ 이어지는 러시아 측의 의식에 대한 그의 술회가 다소 길지만 인용한다.

러시아인은 「영토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마다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역사와 깊게 관련되고 있다. 러시아의 기원은 882년경에 성립한 키예프 대공국이다. 수도는 키예프였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되어 있다. 러시아의 기원인 도시가 외국에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예프대공국은 1240년, 몽골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 후, 모스크바대공국(1263년~1547년)→러시아·짜르국(1547년~1721년)→러시아제국(1721년~1917년)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 마침내 극동에까지 도달했다. 즉,

25) 北野幸伯 「北方領土「2島先行返還」は日本にとって損か得か?」『DIAMONDOnline』2016年10月3日. <http://diamond.jp/articles/-/103394> (검색일자 2016.10.12).

러시아령의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영토분쟁에 의해서 획득한 ‘정복한 토지’이어서, 이른바 ‘고유의 영토’는 비율적으로 매우 작다. 이런 역사를 가지는 러시아에게, 「고유의 영토니까 돌려줘!」라고 해도, 「고유의 영토란 무엇인가?」라고 반대로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소련)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결과, 북방 4개 섬은 러시아(소련)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다.

전문가들의 논리는 더 치밀하다. 「1875년, 가라후토·치시마교환조약으로 가라후토는 러시아령, 치시마는 일본령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일·러 전쟁 뒤, 이긴 일본은 남 가라후토를 빼앗았다. 러시아가 남 가라후토를 돌려달라고 계속 말한다면, 일본은 반환해 주었을 것인가?」라고 질문 받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한다. 게다가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만을 빼앗았지만, 청이 돌려주라고 계속 주장하면 돌려주었을 것인가?」라고 계속한다. 필자는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또 대답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인텔리는 「일본은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영토를 대화로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졌을 때는 「고유의 영토니까 돌려주라!」고 한다.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한다.

일소중립조약을 깬 건이나, 포츠담선언 수락 후에 북방 4개 섬을 점령한 건에 대해서는 「1945년 2월의 알타 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미영도 승인하고 있다」라고 반론한다. 즉, 러시아는 「미영이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다. 그 담보로서 남 가라후토, 치시마는 소련령이 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덧붙여서 일본은, 북방 4개 섬은 치시마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⁶⁾

이런 역사적 국민의식이 있는 가운데, 아무리 푸친의 지지율은 높다하더라도 「4개 섬 일괄반환」을 발표하면, 푸친의 인기가 급락하고 정권의 안정이 무너지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도 4개 섬 반환은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26) 北野幸伯 「北方領土「2島先行返還」は日本にとって損か得か?」 『DIAMONDOnline』 2016年 10月 3日. <http://diamond.jp/articles/-/103394> (검색일자 2016.10.12).

(2) 「2개 섬 반환」의 명암

그렇다면 「2개 섬 선행반환론」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사실을 말하면 「2개 섬 반환」은 「법적 기반」이 있으므로 양 수뇌가 결단하면 실현은 가능하다. 「법적 기반」이란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일소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소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즉, 푸친이 이것을 근거로 2개 섬을 반환하더라도 큰 반대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2개 섬 반환」에는 문제도 있다.²⁷⁾ 2개 섬 반환 후다. 일본은 반환 대상 외의 나머지 2개 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선행 반환」(=먼저 2개 섬을 돌려받고 나중에 나머지 2개 섬을 돌려받는다)의 의미다. 그런데, 러시아는 「2개 섬 반환」으로 「확정」하고 싶어 한다. 즉, 하보마이, 시코탄은 일본령, 에토로후, 구나시리는 러시아령으로 최종 결말짓고, 후에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을 생각이다.

러시아 측은, 최근 수십 년간 「북방영토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일본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4개 섬 돌려준다고 해도 2개 섬 돌려준다고 해도, 현상으로는 러시아에 「대손해」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2개 섬 선행반환론」을 인정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에토로후, 구나시리를 언제 돌려줄 겁니까? 라고 계속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측은 2섬에서 끝낼 수 없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체결은 「역사적」이지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는 알 수 없다. 「2개 섬 선행반환」이라면, 2개 섬을 되찾은 것으로 아베 총리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했다고 칭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개 섬 반환으로 「끝」이 되면, 나머지 2개 섬을 잘라 버린 것이 되어 반대로 「국적」이라고 비판 받을 리스크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러시아는 국민에게 「최종 결말을 지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2개 섬은 되찾았습니다.

27) 北野幸伯 「北方領土「2島先行返還」は日本にとって損か得か?」 『DIAMONDOnline』 2016年 10月 3日. <http://diamond.jp/articles/-/103394> (검색일자 2016.10.12).

나머지 2개 섬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라고 보고할 것인가?

이와 같이 2개 섬 반환은, 「일소공동선언」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실현은 가능하다. 그러나 큰 문제를 남긴 채로 처리하는 수법이다.

(3) 신뢰양성을 위한 경제협력

일본에게 ‘러시아’라고 하면, 우선 제1이 ‘북방영토 문제’이며, 제2가 ‘석유, 가스’이다. 일러 경제 관계는 2013년, 아베 총리의 강한 의욕으로 강력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4년 3월의 「크리미아 병합」으로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렸다. 일본은 구미의 ‘대러시아 제재’에 참가했으므로, 러시아와 「경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 후, 원유가격이 1 배럴 110 달러에서 30 달러대까지 급락하면, 러시아가 가지는 ‘석유, 가스’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희미해져 갔다. 그 결과, 일본 정부 고관이 러시아 정부 고관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북방영토문제」가 되어 러시아 측은 분개하고 있었다.²⁸⁾

러시아 정부 고관들은 당시, 일본 정부의 인간과 만나면, 매번 「섬을 돌려주라」고만 말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도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고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6년 5월, 소치에서 푸친과 만났을 때, 「8항목의 협력 계획」을 제안하자 상황이 일변했다. 드디어 일본 측도 「4도 이야기만 하면 미움만 받을 뿐 아무 진전도 없다」는 것을 눈치 채고 러시아가 바라보는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양국 관계는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 푸친의 일본 방문으로 「북방영토 문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협력은 크게 움직이고 있다.²⁹⁾

28) 北野幸伯 「北方領土「進展なし」でもプーチン来日が成功だった理由」『DIAMONDOnline』 2016年 12月 19日.

29) 경단련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정부 간에 12건, 민간 레벨에서 60건을 넘는 협력 안전에 합의하여, 일본 측의 투용자는 총액은 3000억 엔 규모가 된다.

다만, 북방4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주권이다. 어느 쪽 국가의 주권 하에서 활동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영토문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베는 12월 15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특별한 제도 하에서 실시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주권 하도 일본의 주권하도 아닌, 특별제도 아래에서 한다. 말하자면, 경제 특구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이었다.³⁰⁾

그런데, 그 후의 마스크 발표에서는 「특별한 제도아래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다. 정말로 푸친 대통령과 합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개 섬이 만일 일본의 주권 하에 놓였을 경우, 일미안보조약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푸친 대통령은 재차 표명했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일본과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공동경제활동에 러시아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영토반환의 첫 단계로 삼으려던 일본 측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쿠릴열도 공동경제활동 관련 첫 러일 공식 회담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외무차관이 “러시아의 법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양국의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전진하겠다.”며 양국의 기존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³¹⁾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한 제도”에 근거해 양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공동경제활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특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30) 田原総一郎「安倍・トランプ・プーチン連携で狙う新世界秩序の行方」nikkeiBPnet (2016.12.22) <http://www.nikkeibp.co.jp/atcl/column/15/100463/122100097/>(검색일자 2016.12.23).

31) 변재현 「러 “쿠릴열도에 우리 법 적용해야”」 『서울경제』 2017.3.19.

가 자국법을 적용하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첫 협의에서도 양국 간 공동경제활동의 근간이 될 ‘특별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향후 쿠릴 4개 섬 반환을 위해서라도 러시아 지배를 공식화하는 러시아 법 단독 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일본과 쿠릴열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못 박기 위해 자국법을 적용하겠다는 러시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의 생각은 ‘공동경제활동이 (영토 반환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의 한 걸음’이라는 일본 인식과 다르다”며 “일본의 투자를 받아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양국 정부는 다음 협상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 일·중 간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1) 분쟁의 경과³²⁾

2010년 9월 7일 오전, 센카쿠제도 주변의 일본영해 내에서 불법조업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어업법에 근거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무선 등으로 여러 차례 정선을 요구하였고 어선은 계속 도주하다 다른 순시선인 ‘미주기’호에 선체로 충돌하였다. 해상보안청은 이를 의도적인 해상보안관의 출입검사 방해로 보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어선 선장을 체포하여 일본 국내법에 근거하여 기소하였다.

중국은 9월 16일까지 9일간 다섯 차례나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여덟 차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대해 전례가 없는 압박을 가하였다. 9월 19일 선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일본

³²⁾ 이 부분은 이명찬, 2011년 여름, “2010년 9월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독도”, 『국제문제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42호)에서 부분 인용.

경제에 대한 ‘압력’ 행사로, 외환시장에서의 엔고(円高) 유도, 중국으로부터의 일본관광 억제, 중국 국내에서의 일본기업에 대한 사업인가의 지연, 중국국내의 인프라개발 사업에서 일본기업 배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이팟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압력행사에 못 견디고 일본은 24일 나하시검의 차석검사가 돌연 처분 보류로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였고, 석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 일·중 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외교부는 25일 선장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토와 주권, 중국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렬한 항의를 표명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일본 측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하시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본 여론으로부터 ‘이후의 일중관계에 대한 고려’라는 외교적 표현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³³⁾ 일본 여론은 일개 지방의 검사가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당시 관방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처분보류라는 현재의 판단으로 신병을 석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말하고, 지검의 판단으로 석방을 결정하고 정부는 그것을 추인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2010년 9월의 사건 이후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에서 끊이지 않던 중일간의 마찰은 2012년 9월 11일에 일본 정부가 사유지였던 센카쿠제도 3개의

3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셉 나이(Joseph S. Nye)교수는 “일본은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본을 지지하는 성명(센카쿠제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 범위라는 취지)을 낸 것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이 건에 대해 일본이 사죄나 배상 등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본의 대응을 지지하였다. Richard Armitage-Joseph S. Nye Jr. 『日米同盟 vs. 中国·北朝鮮』(文春親書, 2011). 44쪽.

섬(우오쓰리 섬, 기타코 섬, 미나미코 섬)을 구입하여 국유화하면서 새로운 장으로 진입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동경도지사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를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중국과 대만을 화나게 한 이 발언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발언이었다.³⁴⁾ 이시하라의 의도는 첫째, 영토문제로 중·일간을 긴장시켜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평화바보(平和ボケ)가 된 일본인에게 방위 의식’을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내정 상의 목적으로 오오이(大飯)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이나 소비중세 등 긴급의 테마들을 억누르고 영토문제가 국회의 관심만이 아닌 여론에서 비등해지면, 하시모토 도루(橋本徹)시장 때문에 존재감이 희미해진 자신에게도 드디어 포스트라이트가 비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10월 25일 그가 신당결성을 위해 도지사를 사직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센카쿠와 신당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동차의 양바퀴이었던 것이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정당정치가 막다른 상황에서,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질서가 붕괴하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장래 불안이 엄습하는 등 폐쇄감이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시하라가 들고 나온 것이 ‘적대형 내쇼날리즘’이었다.³⁵⁾

이시하라 동경도지사는 우오쓰리 섬(魚釣島)을 구입한 후 피난항 건설과 등대 정비 등 인프라 건설에 나설 의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당 제도를 구입하더라도 현 상황을 변화시킬 의향이 없음을 명백히 표명하고, 정부의 의향에 대해, 정치·외교 쌍방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 국유화를 향해 노다 총리의 등을 떠민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었다. 첫째, 동경 도에 기부금이 10억 엔에 임박하자 ‘절박감’이 나왔다. 둘째, “이시하라가 사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북경으로부터 전달되었다. 결국 국유화 하는 편이 중국 측의

34) 2012년 8월 15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리차드 부시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35) 岡田充 『尖閣諸島問題』(2012, 蒼蒼社) p.19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³⁶⁾ 동경도에 의한 센카쿠제도 취득보다는 일본정부에 의한 국유화 쪽이 중국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외무성은 생각했다. 이 전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³⁷⁾

일본은 도서의 매입이 합당하다고 보았으며 국내의 부분적 거래라고 여겼다. 또한 민주당은 국내적 비판을 원하지 않았기에 시진핑 취임 전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 지도층의 큰 변화와 함께 전례 없는 수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형성되었던 시점인 제 18차 공산당회 중에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양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이한 논리와 국내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초래되었다.³⁸⁾

국유화는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시간에 대한 오산이 있었다. 먼저, 도지사에게 맡겨 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의 소유물로 하는 경우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 2013년 3월말에 구입이 된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전에 몇 개의 중대한 이벤트가 있다. 당대회, 전인대, 그리고 다양한 국제회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중국의 반일 여론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을 불허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처리해버리고 싶어서 국가가 신속하게 구입해버렸다.³⁹⁾

8월 말 국유화를 설명하러 북경을 방문했던 야마구치 츠요시 외무부대신은 9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국유화에 대해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신뢰관계의 결여에 더하여 설명 부족으로 상대측을 화나게 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2012년 9월 9일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다 수상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약 15분간 선채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후진타오는 노다 총리에게 센카쿠제도의 국유화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36) 岡田充 『尖閣諸島問題』(2012, 蒼蒼社) p.22

37) 佐藤優 「新・帝国主義の時代」 『中央公論』 2012年 11月号. 107쪽.

38) 우드로윌슨센터 ‘중일대화: 영토분쟁을 넘어’

39) 五味洋治 “‘偶発’と‘英雄行動’が招く戦闘突入の危険性” 『日本の領土問題の「今」と「未来」がわかる本』 p.56.

9월 20일의 NHK뉴스에 의하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섬의 구입은 어떠한 형태이든 위법·무효이며 우리는 강하게 반대한다. 노다 총리에게 대국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노다 총리는 “센카쿠제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는 이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대응했다고 한다. 후진타오가 섬의 구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언급한 다음날 10일, 일본 정부는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센카쿠제도의 국유화를 결정했다. 그리고 11일에는 우오쓰리 섬 등 세 섬의 구입과 정부에 의한 관리가 각의 결정되었다.

일본외무성은 국유화에 의해, 센카쿠제도의 현재 상황이 변화 없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므로 중국 측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었다. 중국 측에서 보면 국가원수인 후진타오 주석의 요청을 노다 수상이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되었다.⁴⁰⁾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둘러싼 中·日 간 갈등 및 중국인들의 反日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월 19일 노다 일본 총리는 “이번 센카쿠제도 매입에 따른 중국 측의 반응이나 상호 갈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며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노다 총리는 또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사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¹⁾

민주당 정부에서 자민당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 후 출범한 아베정부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센카쿠제도의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실린 인터뷰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중국의 애국심 교육과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원색적으로 비난 했다. 그는 중국의 교육정책에서 반일 감정을 배양하는 애국심 교육이 개혁개방 정책 보다 우선하고 있

40) 佐藤優「新・帝国主義の時代」『中央公論』2012年11月号. 109페이지.

41) ‘노다(野田) 日 총리, 중국 측 반응에 대해 언급’『環球時報』2012년 9월 20일.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2-09/3130976.html>.

다고 지적했다.⁴²⁾

그는 중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강압과 협박을 일삼고 있고 이런 행위가 중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애국심을 중시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나 영해를 강압과 협박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들(중국)에게 강압과 협박으로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판단 보류’에 대한 엇갈린 인식⁴³⁾

2010년 6월 8일 간 나오토 총리는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역대 총리대신 중 처음으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에 서명했다. 2010년 9월 어선 충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 나오토 정권은 센카쿠제도에 영유권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판단보류’(棚上げ) 합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에하라 외무장관(당시)도 2010년 10월 21일 ‘중의원안전보장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 ‘판단유보’론을 전면 부인하였다. 마에하라는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도 ‘판단유보’에 대해 “과거 경위를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해봤지만 암묵의 이해도 없었다.”라고 전면 부정했다.⁴⁴⁾

그러나 중국은 1972년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당해 도서에 대한 대화를 보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중·일간에는 72년 국교

42) 『연합뉴스』(2013. 2. 21).

43) 이 부분은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일본의 대응”,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의 제3장 pp.102~5에서 부분 인용.

44) 岡田充 『尖閣諸島問題』(2012, 蒼蒼社) p.97

정상화, 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시, 센카쿠영유권문제를 ‘판단보류’하는 것에 암묵의 합의가 있었다. 먼저 1972년의 일·중국교회복시에는 주은래가 “센카쿠제도문제에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해 가던 1978년 가을 등소평 부수상(당시)이 일본에 방문하였을 때, “센카쿠열도의 문제는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일본 매스컴도 대환영하였고 일본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현상유지에 대한 일·중 양국간에 암묵의 이해가 성립됐던 것이다.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신정책 하에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경제발전에 전념하였다. 양국에게 있어 센카쿠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등소평이 권력을 강화시켜가던 1992년 2월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7기24회)에서, ‘중국인민공화국영해 및인접법’(영해법)을 제정하고,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동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영토와 내해에 인접하는 일대의 해역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과 그 연해의 도서, 대만 및 그에 포함되는 센카쿠제도와 그에 부속하는 각 섬, 팽호열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및 그 밖의 일체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도서를 포함한다.”라고 주장하고, 영해침범자를 실력행사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군에 부여한 것도 일본 측을 자극했다. 중국의 영해법 제정에 대해 외무성 고관은 “판다유보, 판단유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어긴 것은 영해법으로 제정한 중국 측이다.”라고 비판하였다.⁴⁵⁾

중일 쌍방은 일찍부터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센카쿠제도 주변을 포함한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배가 위반조업을 하면 일본 측은 조업중지를 요구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중국 배를 퇴거시키며, 위반 처리는 중

45) 岡田充『尖閣諸島問題』(2012, 蒼蒼社) p.110

국 측에 통지하여, 중국 측에 처리를 요구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중일어업협정은 명백히 센카쿠제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로 자국 어선만 단속하게 되어 있었다.⁴⁶⁾ 어업협정의 기본철학은 자국 선박에 대해 적절하게 지도하거나 감독하고,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당해 체약국은 상대방 체약국에 위반 사건 처리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1975년 협정 제3조), 상대국 어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국의 공권력과 접촉하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2010년 9월, 일본이 중국 어선에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검한 것은 명백히 중일어업협정의 합의 내용에 반하는 행동이었다.⁴⁷⁾

2010년 9월, 당시 일본정부는 ‘판단보류’, ‘중일어업협정’ 등 기존의 원칙을 하나둘씩 깨트려 버렸다. 중국 어선에 대해 일본정부는 중일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국내법으로 처리함으로써, 1992년에 센카쿠제도를 중국령으로 포고하였던 중국도 ‘국내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되었다.

3) 중·일간 센카쿠분쟁의 요인⁴⁸⁾

중·일간 센카쿠 문제는 1968년 진행된 ‘아시아근해지역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직위원회(CCOP)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1968년에 UN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도서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쟁의 시작과 격화에서 석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6) 중일어업협정에는 1975년 협정 외에 1997년에 조인되고 2000년 6월에 발효된 2000년 협정이 있다. 2000년 협정에는 북위 27도 이남 협정수역에서는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다. 마고사키 우케루, 『일본의 영토분쟁』(메디치, 2012년), 93페이지.

47) 마고사키 우케루, 『일본의 영토분쟁』(메디치, 2012년), 95쪽.

48) 이 부분은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일본의 대응”,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의 제4장에서 부분 인용.

센카쿠제도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해저의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둘러싼 ‘해양자원 확보’ 경쟁인 것이다. 일본에 따르면 이것이 중국이 센카쿠제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주된 이유이다⁴⁹⁾.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싸고 영토영해 분쟁이 최근 들어 격화하고 있는 것은 1994년에 발효한 국제연합해양법조약이 그 배경에 있음을 염두에 뒤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조약에 의해 ‘바다에 대한 국가의 권리’ 즉, ‘해양권익’이 인정되게 되었다. 나아가 대륙붕에 대한 해저자원의 개발도 인정되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해양에 있어서의 권익의 획득을 목표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섬을 기점으로 하여 바다까지의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조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수익과 영토주권에 대한 국가적 자존심이 분쟁으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⁵⁰⁾ 센카쿠제도문제는 더 이상 사실의 문제나 상호 이익의 문제가 아닌 중일 양국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렸다.⁵¹⁾

2010년 9월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중일간 외교문제가 증폭하게 된 경위에는 당시 국토교통성 장관이었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의 친미 반중적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국토교통성 장관으로서 나름의 영향력이 있었다. 당시 중국인 선장은 꽤 취한 상태였으며, 중국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친 행동(선체 충돌)을 한 것은 분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런 상황에 온건하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마에하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중국 선장의 이런 행위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당당히 대처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49) 우드로윌슨센터, ‘중일대화: 영토분쟁을 넘어’

50) 우드로윌슨센터, ‘중일대화: 영토분쟁을 넘어’. 센카쿠제도 해저의 석유 매장량은 이라크 석유 매장량에 버금간다는 주장도 있다.

51) 2012년 8월 15일 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동북아정책센터 리처드 부시 국장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2010년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양국의 감정을 염두에 두고 관계개선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자민당 정권 시절에는 중국과 수많은 비공식 채널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특히 센카쿠 사건 직후에는 물밑협상이나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²⁾

4) 센카쿠제도와 미일동맹

(1) '대등한 미일관계론의 허구

국경분쟁은 내정과 연동하기 쉬운데 국내 권력투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대외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는 그룹이 나타난다. 일본은 장기적 경기 침체에 더하여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열등감과 불안감 등을 바탕으로 내부지향적 국수주의화가 심화되었다.⁵³⁾

2009년 8월 30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의석 확보로 집권함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핵심목표는 「동북아시아 비핵화」와 「아시아 공동통화」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등과 신뢰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역사인식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정권은 전후 장기간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이 일본외교의 요체로 여겨왔던 '요시다노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⁵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

52) 문정인·서승원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87쪽.

53)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일본의 대응”,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p.110.

54)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일본의 대응”,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pp.113~14. 민주

起夫) 총리는 미국과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를 지향하는 「신시대의 일미동맹」을 주장하였다. 「신시대의 일미동맹」이 표방하는 주요 내용은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하고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일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재편과 주일미군기지의 실태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재평가를 실시한다.”라는 것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지향한 대표적인 실행 계획으로 후텐마 미군기지의 오키나와현 외로의 이전을 공표했다.

후텐마의 미국 해병대 기지를 오키나와현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요청한 건 일본 정부였다. 하지만 그 뒤로 일본 정부는 이를 실현하고자 어떤 일도 한 것이 없고, 그리하여 이젠 이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이로 인해 후텐마 기지가 ‘고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문제는 기지반대운동의 상징으로서 앞으로도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미일동맹의 역지력을 약화할 위험성이 있다.

이 문제가 없었다면 미일 간에 훨씬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후텐마 문제는 미일관계에 매우 부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2년 동안, 부적절한 전술적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미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워싱턴은 국가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민주당 정부를 그리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두, 북한의 새 지도체제와 향후 노선, 미국과 유럽의 국가 부채, 세계적 디플레이션 등 새로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일본은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마저 실패했다.⁵⁵⁾

미일동맹의 미국 측 핵심적 지지자인 아미티지와 조셉 나이 교수는 하토야마 총리의 ‘대등한 미일관계’론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 아미티지

당은 07년도 매니페스토에서 ‘미국에 추종’, ‘미국이 하라는 대로’라는 표현을 동원하는 등 자민당정권의 대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일관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시사하였다.

55) 문정인·서승원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p.170.

는 ‘대등한 미일관계’ 주장에 대한 첫 인상은 “하토야마 총리가 미일동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방비의 규모와 군사력,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일 관계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⁶⁾

‘대등한 미일관계’론의 허구성에 대한 나이 교수의 다음의 지적은 핵심을 찌른다. “정말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은 현재처럼 GDP 1%가 아닌 4%를 방위비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인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일본이 독자의 핵을 개발하고 방위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자주자립을 추구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 파트너십에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국이고, 일본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⁵⁷⁾

하토야마 총리는 ‘대등한 미일관계’론을 주창하며 후텐마 미군기지의 오키나와현 외로의 이전 문제로 미국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결국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하토야마에 이어서 총리에 오른 간 나오토 정권에서는 미일동맹의 복원이 주요과제가 되었다.

(2) 센카쿠제도와 미일안보조약

센카쿠문제로 중일간 외교전이 뜨거워지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센카쿠제도는 미일안보조약의 대상”⁵⁸⁾이라고 언명하였고, 크로리 미국무차관보는 2012년 8월 16일 기자회견에서 (1)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56) Richard Armitage-Joseph S. Nye Jr. 『日米同盟 vs. 中国·北朝鮮』(文春親書, 2011년), 34쪽.

57) Richard Armitage-Joseph S. Nye Jr. 『日米同盟 vs. 中国·北朝鮮』(文春親書, 2011년), 35쪽.

58) 이와는 달리, 빌 클린턴 대통령시대의 먼데일 주일미대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었다. 『산케이신문』 2010. 9. 28.

시정아래 있고, (2) 미일안보조약 5조⁵⁹⁾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따라서 조약이 센카쿠제도에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⁶⁰⁾

미국은 1971년 6월 17일의 오키나와 반환협정과 이와 관련한 ‘합의된 의사록’에 의해 센카쿠제도가 일본에게 시정권을 반환하는 지역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센카쿠의 최종적인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 대만, 중국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이 문제가 당사국들 사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만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지만, 그 영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쟁이 있다는 것이 미국이 취한 정책상의 입장이었다.⁶¹⁾

센카쿠문제에 관한 미국이 취한 입장이 부당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1960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의 방위지원을 의무화한 사실에 의해 더욱 더 문제를 산출했다. 즉, 센카쿠제도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 미일안전보장조약 조문대로 해석하면, 혹 미국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는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

59) 미일안보조약 제5조(공동방위)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각 조약국은 일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고,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에는 교전권은 의회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개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약속밖에 안보조약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는 “무력 공격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병력의 사용을 포함한)을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일안보조약과는 다르다. 『日本の領土問題の「今」と「未来」がわかる本』p.62

60)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일본의 대응”,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pp.81~83.

61) ロバート・D・エルドリッチ 『尖閣問題の起源』(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p.4

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니코라스 크리스토프기자는⁶²⁾,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 2010년 이 사건 직후에, ‘현장에서'("On the Ground")라는 제목의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하의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들은 센카쿠 제도가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바보 같은 입장에 처해있다.”⁶³⁾

니코라스 기자는 2010년 9월 10일자 칼럼에서는 “1972년에 미국이 오키나와 시정권을 일본에게 반환함으로써, 센카쿠제도 문제에 일본을 도와야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미국은 핵전쟁의 위협을 무릅쓸 리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안보조약을 발동할 가능성은 제로”이며, “확실한 답은 알 수 없지만, 내 감각으로는 중국에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확실히 일본에 대한 안보조약상의 언급이 유사시에 이행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센카쿠에 관한 미국의 자세는 “미국 정부가 일본영토의 방위를 과연 지원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성실성의 테스트’로서 인식되고 있다. 1996년의 위기 시에도 그 이전에도 이 ‘테스트’에 대한 미국의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당사국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반복해서 중립의 입장을 말해 왔다. 그리고 이 입장은 과거 25년 이상에 걸쳐 미국의 정책이 되어 왔다.⁶⁴⁾

2009년 1월에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한 후에 센카쿠문제가 재연하자 일본에서는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민주당의 힐러리는 중국 중시파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62) 크리스토프기자는 뉴욕타임즈 동경지국장의 경험이 있으며, 미국 저널리즘계에서 최고의 명예로 인정받는 푸리쳐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63) 로버트·D·엘드리치『尖閣問題の起源』(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p.5

64) 로버트·D·엘드리치『尖閣問題の起源』(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pp.7~8.

로 중국 중시로 알려졌던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50년 이상 자민당 지배를 종식시키고 발족하여 1년이 지난 2010년 9월 초순,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충돌하여 어선선장을 체포하였다. 그 직후부터 일본의 정부당국자와 기자들은 일중간의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입장이 무엇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⁶⁵⁾

충돌 발생으로부터 수 주간이 지난 9월 23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과의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이해한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센카쿠에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 클린턴의 이러한 단언에 의해 전의 민주당 정권시대에 발생했던 혼란을 불식되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센카쿠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5조가 센카쿠에 적용된다’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그 근거에는 센카쿠가 미국의 재산과 자원(특히 오키나와 본도에 주류하는 젊은 해병대원의 목숨)을 들여 전쟁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다.⁶⁶⁾

사토 마사루(佐藤優)는, 센카쿠문제에서 명확해진 것처럼 일본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공격적인 중국의 영향은 대단히 큰데, 중국에 대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러시아 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은 미국 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횡포로부터 일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러시아 밖에 없다는 것이다.⁶⁷⁾ 그리고 그는 “지정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일·러가 접

65) 로버트·D·엘드리치『尖閣問題の起源』(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p.11.

66) 로버트·D·엘드리치『尖閣問題の起源』(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p.11.

67) 佐藤優 “北方領土問題が握る対中外交の突破策” 『日本の領土問題の「今」と「未来」がわかる本』 p.46 사토는 러시아를 카드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제시한다. 리일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예를 들면 쿠니시로섬의 수산가공 공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100% 일본 출자로 건설에서 운영까지 실행한다. 출입국은 비자 없이 교류의 확대라는 형태로 인정하고, 현지인을 적극 고용한다. 현재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일본

근하여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견하고 대중 러시아카드를 제안한다. 2016년 12월의 일러정상회담은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게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 받고 있다.

4.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

1)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전이(power shift)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과 2008년 이후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이 명확해지고 일련의 세력전이적 상황이 관찰되면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⁶⁸⁾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제도화된 측면이 있다. 이 체제의 주요 특징은 미국의 태평양동맹에 일본을 편입시켜 최근까지 ‘바퀴 축과 살(hub and spokes)’ 체제로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과 양자 간 비대칭동맹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 내에 미군기지를 설치하여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의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핵심적 구도였던 것이다.⁶⁹⁾

인과 손을 잡는 것이 득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래는 일본 땅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네 개 섬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포인트이다. 어떻게든 일본인이 북방 4도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8) 이런 상황을 세력전이론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연구로는 David Sobek and Jeremy Wells(2013), “Dangerous Liaisons : Dyadic Power Transitions and the Risk of Militarized Disputes and War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1 참조.

69) 고봉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

빅터 차(Victor D. Cha)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유럽의 다자주의적 동맹과는 다른 양자동맹 구조를 구축하려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이 당시에 동아시아에 구축하려 했던 비대칭 양자동맹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외에 동맹국들의 공격적인 행동의 결과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⁷⁰⁾

미국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중국이 산호도(Mischief Reef)를 점령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해양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된 원칙적 입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 분쟁에서의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존중이다. 이어 2010년 7월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1995년에 제시된 원칙에 대해 항행의 자유가 미국의 국가이익이고, 관련 당사자 일방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며, 미국은 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원칙을 재확인 한 바 있다.⁷¹⁾

이런 원칙적 입장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센카쿠열도와 관련해서도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었는데,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에는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일견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중일 양국은 커다란 파워시프트(power shift) 속에 있었는데, 최근의 센카쿠제도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파워시프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다. 경신(庚欣) 일본JCC신일본연구소 부소장은,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에 中·日 양국이 전에 없던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

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p.40.

70) Victor D. Cha(2009), "Power Play :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pp. 158~159

71) 고봉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pp.46~7.

는 中·日관계가 100여 년 만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일중간의 최근의 사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동시에 ‘대국화(大國化)’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中·日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 형성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일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은 中·日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中·日 양국이 각각 ‘대국으로의 변모’를 꿈꾸며 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전후 질서 및 성과를 부정하고 군사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적수가 되었다. 이에 일본은 고의적으로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미국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⁷²⁾

(環球時報)는 사실에서, 최근 일본이 한국·러시아와 각각 해양 영유권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로 인해 난 화를 센카쿠제도 문제에 풀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⁷³⁾ 사실은, 영토문제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 측 입장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韓·日간 독도 분쟁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독도 분쟁으로 인해 韓·日 양국의 단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센카쿠제도 문제에 있어 양안과의 협력, 한국·러시아의 지지, 미국의 중립적 태도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시에 큰 틀에서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72) 경신(庚欣) 일본JCC신일본연구소 부소장, “(中·日관계) 中 전문가, 중국은 일본과의 ‘진통’에 마주할 용기 가져야” 『新華網』 2012년 10월 11일.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2-10/3178128.html>

73) [사설] ‘일본이 한국·러시아에 당한 화를 센카쿠제도에 푸는 것 막아야’ [環球時報, 8.11] <http://opinion.huanqiu.com/1152/2012-08/3015156.html>.

2) 대중전략으로서의 러시아 정책

한편, 2013년 12월, 아베정권은 일본 최초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의 결정했다. 이 중에 러시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 일층 엄중함을 더해가고 있는 중, 안전보장 및 에너지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일러관계를 전체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밑줄 친 부분이 주로 중국의 동지나해나 남지나해에서의 확장주의적인 활동을 의미할 것이다. 즉, 현재 아베정권의 대러시아 외교의 배경에는 그의 대중전략이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대중국에서 미일동맹진영에 합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이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⁷⁴⁾ 이와 관련하여, 기타노의 대중전략으로서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다음의 기술은 흥미롭다.

중국은, 「일본에는 센카쿠뿐만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영유권도 없다」라고 공언하고 센카쿠 강탈을 향한 포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센카쿠 유사」 때, 「일본·미국 vs 중국」이면 의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vs 중국」, 즉, 미국을 뺀 일대일 대결이 되면 일본은 질 것이다. 통상 병기의 싸움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에 핵으로 위협받으면 어쩔 수 없다.⁷⁵⁾

그러니까 일본은, 필승 패턴 「일본·미국 vs 중국」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트럼프 신대통령과 양호한 관계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센카쿠 유사」에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러시아다. 만약, 「일본·미국 vs 중국·러시아」의 싸움이 되면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른다. 게다가,

74) 畦蒜泰助 「なぜ今、領土交渉なのか—対中国政策にはロシアの戦略的中立化が鍵」 『CHUOKORON』 January 2017. p.46.

75) 北野幸伯 「北方領土「進展なし」でもプーチン来日が成功だった理由」 『DIAMOND online』 2016年 12月 19日.

「일본의 섬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러시아와 싸울 수 있을까」라고 미국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악의 패턴은, 「일본 vs 중국·러시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승산은 1%도 없고 센카쿠는 확실히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고하게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분열시켜, 러시아를 중립에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키타노의 주장은, 일미 관계가 호전되면 될수록 중국은 센카쿠 침략이 어려워지고 일본은 보다 안전하게 되고, 일러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그만큼 중국은 센카쿠 침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⁷⁶⁾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발하여 미·러 관계가 극적으로 악화되고, 일본도 G7국가들과의 결속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미국, 유럽 국가들에 의한 러시아 경제재제의 스크림에 합류하자, 러시아는 일련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는 일선을 그은 중국과의 관계를 급진전 시켰다. 특히 일본이 염려했던 것은 중·러의 안전보장 면에서의 급접근이었다. 2016년 9월, 러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처음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문제, 중국은 남중국해문제로 미국과의 대립하던 중, 중·러는 서로 접근을 연출하는 것으로 미국에게 전략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이러한 중·러의 전략적 접근의 흐름에 강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⁷⁷⁾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러가 안전보장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 올릴 필요가 있다. 센카쿠제도의 주권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이 있으면, 일본에 있어서는 매우 귀찮은 것이 된다. 그러한

76) 北野幸伯 「北方領土「進展なし」でもプーチン来日が成功だった理由」『DIAMOND online』2016年 12月 19日.

77) 畦蒜泰助 「なぜ今、領土交渉なのか -対中国政策にはロシアの戦略的中立化が鍵」『CHUOKORON』January 2017. p.47.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러시아와의 관계를 쌓아 올려 둘 필요가 있다. 미 오바마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이 타이밍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세스의 재개를 단행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2016년 5월에 아베수상이 제안한 8개 항목의 경제 협력플랜은 푸친의 희망에 화답한 것이다.⁷⁸⁾

모리 전 수상은 “지금 중국은 가장 까다로운 국가가 되고 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 러시아와 일본이 사이가 좋아지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된다. 아베 수상도 50% 이상의 지지율이 있으며, 푸친의 지지율은 80%나 된다. 전략적 판단을 내리어도 좋겠다. 서로가 힘이 있을 때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찬스이다.”⁷⁹⁾

3) 대중 봉쇄정책의 무위

대두하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자는 주장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자와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은 미국과,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과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러시아는 세 번째이다. 러시아는 일본 이상으로 중국공산당과의 친교가 깊고 길다.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포위망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⁸⁰⁾

길버트 로즈만(Gilbert Rozman)도 오자와의 생각에 가깝다. 그는 “미국은 푸친이 중국과 장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문제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협조한다든지, 중국의 패권을 봉쇄하기 위해 일러가 공동이해

78) 森永輔, 畔蒜 泰助 インタビュー「北方領土と日ロ平和条約, 次の勝負は2018~21年」『日経ビジネスONLINE』2016年 12月 19日.

79) 森喜朗 「交渉秘話—これが, 森喜朗元首相の「遺言」だ」『CHUOKORON』January 2017. p.37.

80) 小沢一朗 「ロシアは一筋縄ではいかない」『CHUOKORON』January 2017. p.41.

를 모색한다는 등의 발상은 단지 희망적인 관찰일 뿐이다. 아베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의 결과로서 지정학적인 보상을 기대한다면, 러시아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응할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 보면, 푸친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구나시리와 에토로후의 군사기지를 인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준비를 지금 이상 추진하지 말고 중·러 간의 무기거래나 합동군사훈련을 용인해주는 것 등 푸친의 지정학적 어젠다에 찬성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⁸¹⁾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탈할지도 모른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신중한 전문가들은 일본은 미국편에 서있으며, 결국은 중·러 관계가 강화되어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으로 파악한다.⁸²⁾ 미국은 러시아 국내에 일본과의 관계개선 지지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중·러 관계가 진전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보다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러시아 제재가 약화되는 것이다. 일러 간에 강력한 경제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G7에 의한 제재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에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대항하고 있는 노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⁸³⁾

5. 결론

이상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 81) Gilbert Rozman, 「日口首脳会談に向けたロシアと米国の視点」 『CHUOKORON』 January 2017. p.53
 82) Gilbert Rozman, 「日口首脳会談に向けたロシアと米国の視点」 『CHUOKORON』 January 2017. p.54
 83) Gilbert Rozman, 「日口首脳会談に向けたロシアと米国の視点」 『CHUOKORON』 January 2017. p.55

첫째, 북방4도의 반환이 아베 정권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러시아의 관계자 다수는 평화조약체결이나 영토 문제의 타개 이전에 먼저 경제적인 대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면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일·러의 양 정권은 이 「시간」을 어떠한 시간 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베 수상은 「우리의 세대, 우리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일·러의 정권이 가지는 시간 축은 공통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공통되고 있는 것은 2018~2021년이 다음 승부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자민당 총재 임기를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⁸⁴⁾ 2017년 3월에 열리는 자민당 대회에서 이것이 실현되어 아베가 2018년 9월에 재선되면,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푸친 대통령은 2018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재선되면 2024년까지의 임기가 된다. 즉, 양자가 재선되면 2021년까지 교섭 기간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축으로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이다. 북방영토 문제의 미해결은 많은 부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정부의 '4도 일괄 반환' 주장과 '2도 선행 반환' 주장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잦은 '골대 이동'이 북방영토 해결을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물론 일본정부의 그러한 결정에 미국정부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의 산물이거나, 미일동맹정책의 대가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영토 문제는 대국간 동북아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작용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임이 명백하다. 일본이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

84) 아베 수상 주변에 의하면, 「내년 9월의 총재선거에 출마하여 2021년 9월까지의 임기를 확실히 하여, 할아버지(기시 노부스케)의 비원인 헌법 개정과 대속부(사토 에이사쿠)가 수상한 노벨 평화상을 진심으로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 「安倍首相はノーベル賞狙い? 北方領土返還, 日ロ平和条約締結で強気」『AERAdot』2017년 6월 8일.

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신뢰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70년 가까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신뢰를 얻기까지 앞으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그 결과가 반드시 일본이 기대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 하겠다.

넷째, 러시아인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북방4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명확하게 느껴졌다.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은 독도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그 주장의 공허함이 같은 이유에서 오버랩 되었다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참고문헌】

[단행본]

- 고봉준·이명찬·하도형 외 『동아시아영토문제와 독도』(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마고사키 우케루 『일본의 영토분쟁』(메디치, 2012년).
 문정인·서승원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Richard Armitage·Joseph S. Nye Jr. 『日米同盟vs.中国·北朝鮮』(文春親書, 2011).
 岩下明裕 『日本の国境いかにこの「呪縛」を解くか』(北海道大学出版会, 2010).
 _____ 『国境誰がこの線を引いたのか』(北海道大学出版会, 2006).
 浦野起央 『尖閣諸島・琉球・中国』(三和書籍, 2010).
 工藤隆哉 『尖閣諸島と亡国の憲法第九条』(創栄出版, 2010).
 小沢隆一丸山重威 『民主党政権下の日米安保』(花芸社, 2011).
 岡田充 『尖閣諸島問題』(蒼蒼社, 2012).
 島本順光外 『尖閣諸島が危ない』(防衛システム研究所, 2010).
 高橋和夫·河島淳司 『日本と世界の領土問題』(日本文芸社, 2011).
 東郷和彦·保阪正康 『日本の領土問題 -北方四島, 竹島, 尖閣諸島』(角川書店, 2012).
 中村秀樹 『尖閣諸島沖縄海戦 自衛隊は中国軍とこのように戦う』(光人社, 2011).
 西尾幹二·青木直人 『尖閣戦争—米中はさみ撃ちにあった日本』(祥伝社, 2010).

- 春原剛 『暗闘尖閣国有化』(新潮社, 2013).
 防衛システム研究所編, 『尖閣諸島が危ない』(内外出版株式会社, 2010).
 孫崎亨 『検証尖閣問題』(岩波書店, 2012).
 水間政憲 『「領土問題」の真実』(PHP, 2010).
 森本敏編 『漂流する日米同盟』(海竜社, 2010).
 山田吉彦 『日本の国境』(新潮新書, 2005).
 山本皓一 『国境の島が危ない!』(飛鳥親社, 2010).
 矢吹晋 『尖閣問題の核心-日中関係はどうなる』(花伝社, 2013).
 ロバート・D・エルドリッチ 『尖閣問題の起源』(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논문]

- 고봉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민족연구』 통권 제53호(2013년 봄).
 손기섭, “북방4도와 센카쿠열도 해양분쟁의 특성” 『일본문화연구』 제27호(2008).
 윤영미, “탈냉전기 러-일 영토 분쟁 : 남쿠릴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안보적 접근과 인식” 『현상과 인식』 (2006년 봄·여름).
 이동률, “중국의 영토분쟁 유형해결방식과 센카쿠제도 분쟁” 『2012년 해외정보부 통합 정세 세미나』 발표문. (2012년 12월17일).
 이명찬, “2010년 9월 일·중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독도” 『국제문제연구』 통권 42호 (2011년 여름).
 이영형, “쿠릴열도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 『한국시베리아연구』 제9집 6-1호(2006).
 畦蒜泰助 「なぜ今、領土交渉なのか—対中国政策にはロシアの戦略的中立化が鍵」 『CHUOKORON』 January 2017.
 一色正春 「尖閣事件『基礎相当』議決で示された国民の見識マスコミの不見識」 『正論』 2011年 7月号.
 _____ 「尖閣ビデオをプロとして徹底分析する」 『Will』 2011年 3月号.
 江崎道郎 「日本の尖閣防衛世論が変えたアジア情勢」 『正論』 2011年 9月号.
 岡田 充 「‘ボタンの掛け違い’はなぜ起こったか」 『世界』(2010年 12月号).
 小沢一朗 「ロシアは一筋縄ではいかない」 『CHUOKORON』 January 2017.
 北野幸伯 「北方領土『進展なし』でもプーチン来日が成功だった理由」 『DIAMONDOnline』 2016年 12月 19日.
 _____ 「北方領土『2島先行返還』は日本にとって損か得か?」 『DIAMONDOnline』 2016年 10月 3日. <http://diamond.jp/articles/-/103394>(검색일자 2016.10.12).

藤岡信勝 「検証ドキュメント ‘2010年9月の尖閣事件’」 藤岡信勝・加瀬英明編 『中国はなぜ尖閣を取るに来るのか』(自由社, 2010年).

蔡 増家 「尖閣騒動で中国の『和平屈起』は終わる」 『世界』(2010年 12月号).

櫻井よしこ・田久保忠衛・潮匡人・山田吉彦 「中国の侵略に屈した民主党政権」 『Will』 2010年 12月号.

佐藤 優 「新・帝国主義の時代」 『中央公論』 2012年 11月号.

_____ 「北方領土問題が握る対中外交の突破策」 『日本の領土問題の‘今’と‘未来’がわかる本』.

高橋洋一 「日ロ首脳会談が4島返還にこだわりすぎてはいけない理由」 『DIAMONDOnline』 2016.12.15.

田原総一郎 「安倍・トランプ・プーチン連携で狙う新世界秩序の行方」 『nikkeiBpnet』 (2016.12.22) <http://www.nikkeibp.co.jp/atcl/column/15/100463/122100097/>(검색일자 2016.12.23)

中西輝政 「日本を蝕む中国認識『四つの呪縛』」 『Will』 2011年 3月号.

_____ 「列島周辺はすでに戦時 日本人よ覚醒せよ」 『正論』 2011年 2月号.

_____ 「対中冷戦最前線、‘その時’に備えはあるか」 『正論』 2010年 12月号.

西村眞悟 「我が平和論—中国を‘刺激’せよ」 『正論』(2010年 12月号).

袴田茂樹 「6月1日、プーチン大統領は北方領土めぐり‘重大発言’不可解すぎる官邸の対露政策」 『産経新聞』 2017年 6月 13日.

平松茂雄 「中国が西太平洋に機雷を敷設する日」 『正論』 2010年 12月号.

本田良一 「北方領土の現状と交渉の経過」 『CHUOKORON』 January 2017.

森永輔, 畔蒜 泰助 インタビュー 「北方領土と日ロ平和条約, 次の勝負は 2018-21年」 『日経ビジネスONLINE』 2016年 12月 19日.

森喜朗 「交渉秘話—これが、森喜朗元首相の‘遺言’だ」 『CHUOKORON』 January 2017.

山田吉彦 「聞け, 海上保安官たちの声なき声を」 『正論』 2011年 2月号.

「安倍首相はノーベル賞狙い? 北方領土返還, 日ロ平和条約締結で強気」 『AERAdot』 2017年 6月 8日.

「ソ連は調印を拒否日本が主権回復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裏側」 『ThePAGE』 (2016.12.8) <https://thepage.jp/detail/20161208-00000002-wordleaf>, (검색일 2016년 12월 10일).

「2島か, 沖繩か」日ソ共同宣言直前, 領土返還で圧力かけた“ダレスの恫喝」 『ThePAGE』 (2016.12.12). <https://thepage.jp/detail/20161209-00000007-wordleaf>, (검색일 2016년 12월 14일).

「突然の北方領土占拠 “千島”がほしいソ連に口実を与えた「ヤルタの密約」 『ThePAGE』
(2016.12.6) <https://thepage.jp/detail/20161205-00000006-wordleaf>, (검색일 2016
년 12월 8일)

「なぜ樺太放棄した? 面積だけでは測れない「樺太千島交換条約」の真意」 『ThePAGE』
(2016.11.30.). <https://thepage.jp/detail/20161129-00000009-wordleaf> 검색일 2016
년12월2일)

Gilbert Rozman, 「日ロ首脳会談に向けたロシアと米国の視点」 『CHUOKORON』 January
2017.

David Sobek and Jeremy Wells(2013), “Dangerous Liaisons : Dyadic Power Transitions
and the Risk of Militarized Disputes and War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1.

M. Taylor Fravel,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30-2(Fall 2005).

MyongChan Le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ensions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Island”, *Self-determ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s*
(Springer)

Victor D. Cha(2009), “Power Play :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Abstract>

**East Asian Territorial Disputes and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2016 Japan-Russia negotiations on Kuril
islands-**

Myungchan Lee

The 2016 Japan-Russia summit meeting was aimed at solving the territorial problems of both countries; however, Prime Minister Abe was in talks to attract Russia and strengthen its foothold in China. Also, it was an important meeting that showed the intention of PM Abe, in view of the movement of large-scale edition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the return of the northern 4 islands seems almost impossible.

The reason is that the unresolved issue of the northern territory seems to be larg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frequent "goal shifting" of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of 'four islands return' and 'two islands return first' was the main factor that disrupted the resolution of the Northern Territories. Of course, it would be a product of the US government's negative influence on such a decision of Japanese government, or the price of the US-Japan alliance policy will not be denied. Through this paper, it is clear that the problem of East Asian territory is a difficult problem that complicated political dynamics work in the background of the transition of powers between the Great Powers.

When you look at the Russians' perception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Japanese government claims, it becomes clear how empty the claim of the Japanese government's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the northern four islands is. Ja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appears in the claim to Dokdo, we can not hide that the emptiness of the claim is overlapping for the same reason.

Key words: Territorial Problems, Kuril islands, Japan, Russia, Inherent Territory Theory, Dokdo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 · 결정됨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국제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정 갑 용**

〈목 차〉

1. 서언
2. 분쟁의 개관
3. 재판경과 및 주요내용
4. 중재판정의 주요쟁점
5. 결어

〈국문초록〉

남중국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बैं크(Reed Bank)에서의 충돌 사건 때문이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VII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이 해양에 관한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며 중국이 '배제선언'을 통하여 해양분쟁을 강제적 관할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중재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동 분쟁이 남중국해의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자국의 권리가 미친다는 해역은 다른 국가들의 주장이 중복되고 해양경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해역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동

* 본 논문은 영산대학교의 “2015년~2016년 교원역량강화 연구년제”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

** 영산대학교 교수, 법학박사(국제법)

분쟁은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어서 필리핀의 청구내용에서 일부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은 동 분쟁이 국가주권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며,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은 중국의 역사적 수역이며 '다룰 수 없는 중국의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쟁해역의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저조고지'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이나 국제법 원칙에 의하면 해양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인근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정은 특히 재판관할권,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인공섬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보여주는 법적,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남중국해 분쟁, 국제중재재판, 해양법협약, 재판관할권, 9단선, 분쟁해결제도

1. 머리말

본래, 남중국해의 바다는 인접한 연안국들이 서로 간에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남중국해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오로지 수산자원에 한정되어 있었고 동력선이 없던 이 시대에 어민들은 주로 자국의 가까운 연안에서 조업활동을 하였을 뿐이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들 간의 분쟁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당시만 해도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은 섬, 바위섬, 저조고지, 사주, 산호초, 해저산 등 여러 형태의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그 동안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남중국해 해저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¹⁾ 남중국해의

연안국들 간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²⁾

남중국해의 분쟁에서 필리핀과 중국은 석유탐사와 어로활동을 둘러싸고 서로 격한 대립을 겪어 오다가 필리핀이 2013년 1월 22일 일방적으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3년여가 흐른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이 논문은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2016년 7월 12일자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그러한 분쟁의 배경, 중재판정의 내용을 정리하고 중재판정에 관한 국제법적인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일조하고자 한다.

2. 분쟁의 개관

1) 각국의 점거 현황

남중국해의 북부해역은 남중국해 海盆(the South China Sea Basin)과 팔라완 海溝(Palawan Trough)로 이루어져 있고 수심은 1,000미터 이상으로 보다 깊은 수심이지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비교적 얕은 수심의 대륙붕으로 둘러싸여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사군도는 약 150개의 수중암초, 수중모래톱 및 간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이 1974년에 무력을 동원하여 베트남의 세력을 몰아내고 서사군도의 12개 해양지형들을 점거하고 있고, 남사군도에서

1) Zhu, Ningzhu, "China urges against Vietnamese interference in territorial water exploration". *Xinhuanet*(7 May 2014).

2) 남중국해의 분쟁원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해양자원에 관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패권주의가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정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보』 제24집 제4호(2016.11), 164쪽.

는 7개의 해양지형들(Subi Reef, Gaven Reefs, Hughes Reef, Johnson Reef, Mischief Reef, Fiery Cross Reef, Cuarteron Reef)을 점거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다른 연안국들도 남사군도를 점거하고 인공섬을 건설하였는데, 베트남은 남사군도의 28개 해양지형들을 점거하고 있고, 필리핀은 9개의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점거를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5개의 해양지형들을 점거하고 있고, 대만은 태평도(Itu Aba Island) 1개를 각각 실질적으로 점거하고 있다.³⁾

2) 분쟁해역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해역은 ‘스카보러 沙洲(Scarborough Shoal)’, ‘세컨드 토마스 沙洲(Second Thomas Shoal)’, ‘리드 뱅크(Reed Bank)’ 및 남사군도를 이루는 ‘다양한 해양지형들(a variety of features in the Spratly island chain)’의 동남부 해역이 그것이다.⁴⁾

스카보러 沙洲(Scarborough Shoal)는 영어 명칭인데 필리핀은 ‘파나탁 沙洲(Panatag Shoal)’, 중국은 ‘황암도(黃岩島, Huangyan Dao)’라고 부르는데,⁵⁾ 그 둘레가 약 46km로 다양한 산호와 암석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50km²에 달하고 가장 높은 바위인 ‘사우스 록(South Rock)’은 만조에 해발 1.8m의 높이를 이룬다고 한다. 스카보러 沙洲는 필리핀 연안 서부에서 약 120해리 및 중국으로부터 350해리 이상 떨어져 있고 만조시 해수면 위에 있는 암석의 6개의 작은 돌출부를 포함하고 있다.⁶⁾

3) 이상의 설명에 대한 것은,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in <https://amti.csis.org/island-tracker/>(방문일자: 2017. 4. 1).

4) Mark E. Rosen, “Philippin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 Legal Analysis”, *A CNA Occasional Paper* (International Affairs Group Centet for Strategic Studies) (August 2014), p.1.

5) Aning, Jerome, “PH plane flies over Panatag Shoal”, *Philippine Daily Inquirer*(May 5, 2012).

스카보러 沙洲는 필리핀 연안에서 200해리 이내에 위치하지만,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는 많이 떨어져 위치해 있는 해역이나 중국은 소위 “9단선” 이내의 해역임을 근거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이다.

세컨드 토마스 沙洲(Second Thomas Shoal)는 영어 명칭이며 필리핀은 ‘아윤진 沙洲(Ayungin Shoal)’, 중국은 ‘인애초(仁爱礁)’라고 부르는데 남사군도의 북동쪽 해역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이가 약 20km인 가느다란 산호초로, 현재는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으나 다른 연안국들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리드 뱅크(Reed Bank)는 남중국해에 있는 가장 큰 어장이며 그 면적은 8,866 km², 깊이는 9~45m이며 해저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필리핀은 1970년에 탐사를 시작하여 1976년에 천연가스를 발견한 바 있다.⁷⁾

이외에도 남사군도를 이루는 다양한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필리핀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다양한 해양지형들을 점유하고 인공도를 건설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각축을 꾀하고 있다.

3) 분쟁의 경과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필리핀은 일찍부터 스카보러 沙洲 인근 해역에서 석유탐사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해저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국가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국가적 야심, 인근 해역의 수산자원의 확보, 항행의 자유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들 간의 마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⁶⁾ Zou, Keyuan, “Scarborough Reef: a new flashpoint in Sino-Philippine relations?”, *IBRU Boundary & Security Bulletin*(University of Durham), Vol. No.2(1999), p.11.

⁷⁾ Laude, Jaime, “China raring to seize oil-rich Reed Bank – Golez”, *The Philippine Star*(March 20 2014).

1970년대에 들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남사군도의 해양 지형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1978년 6월 11일에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596호를 통하여 카라얀 군도(the Kalayaan Island Group)를 필리핀의 영토라고 선포하였다.⁸⁾ 필리핀은 1970년에 팔라완(Palawan) 서부 해역에서 해양자원의 탐사를 개시하였고 1976년에는 리드 뱅크(Reed Bank)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였으며, 1984년 3월에는 팔라완 인근 해역에서 석유를 찾아내었다.

1988년에서 1989년에는 남사군도의 여러 해양지형들을 점거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⁹⁾ 1995년 2월에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미쉬프 礁(Mischief Reef)를 둘러싸고 군사충돌에 벌어진 바 있다.¹⁰⁾ 1997년 4월에는 필리핀 해군이 스카보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퇴거시켰으며 필리핀 어부들이 중국이 세운 표지석을 제거하고 필리핀 국가를 계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¹¹⁾

1998년 1월에 필리핀 해군이 22명의 중국 어부들을 스카보러 인근 해역에서 체포하였으며, 1999년 5월과 7월에는 중국 어선이 동 해역에서 필리핀 군함과 충돌하여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는데, 2000년 2월에는 필리핀 군함이 스카보러 해역에서 중국 선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사격을 가하였고 이 사건으로 필리핀은 중국의 외교적 항의를 받는 바 있으며, 2000년 5월에 필리핀 군인들이 중국 어부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체포되는 사

8) “Presidential Decree No.1596 –Declaring Certain Area Part of the Philippine Territory and Providing for their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Chan Robles Law Library* (11 June 1978).

9) Keith Jacobs,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the South China Sea.”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4, No.6(June 1992), pp.278–281.

10) John M. Van Dyke & Dale L. Bennett. “Islands and the Delimitation of Ocean Space in the South China Sea.” *Ocean Yearbook*, Vol.10(1993), p.59

11)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alysis Briefs*, “South China Sea”(March 2008).

건이 발생하였다.

2011년 2월에 중국 군함이 Jackson Atoll 인근 해역에서 동 해역이 중국의 영해이므로 경고사격을 하고 3척의 필리핀 어선을 퇴거시킨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1년 3월에 리드 बैं크(Reed Bank)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순시선이 필리핀의 과학조사선을 퇴거하려 한 것에 대하여 필리핀이 2대의 항공기를 급파하여 충돌 직전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1년 5월에는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남사군도의 해역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과 인공섬을 구축하는 물자를 실은 화물선이 목격되었고, 2012년 4월에 스카보러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에 관하여 필리핀과 중국의 군함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년 12월에서 2015년 5월 사이에 중국 해양경비선이 세컨드 토마스 沙洲(Second Thomas Shoal)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필리핀 및 베트남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였으며 스카보러 인근해역에서는 중국 해양경비선이 필리핀의 어선에 대하여 물대포를 쏘며 조업을 방해하였다. 2015년 4월 19일에는 중국의 프리깃함이 수비 礁(Subi Reef) 인근 해역을 정찰하는 필리핀의 공군기에 대하여 중국의 군사보안구역을 침범하였으므로 즉시 퇴거하라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¹²⁾

이와 같이 그 동안 필리핀과 중국 간에 크고 작은 충돌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지만, 양국 간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석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진 리드 बैं크(Reed Bank)에서의 충돌사건 때문이었다. 동 사건은 2011년 3월 1일 중국의 순시선 ‘Zhongguo 71’ 및 ‘Zhongguo 75’가 남사군도의 ‘리드 बैं크(Reed Bank)’ 인근 ‘GSEC101’ 해역에서 필리핀의 석유탐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선적의 ‘M/V Veritas Voyager’에게 동 해역은 중국의 영해이므로 그 활동을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 탐사선을 추적하는 등 탐사활동을 방해한 사건이다.¹³⁾

¹²⁾ Boston Global Forum, “Recent Trend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Report of the Boston Global Forum*(June 2015), pp.22~24.

2011년 3월 2일에 필리핀은 외교서한을 통하여 중국의 순시선들이 ‘리드뱅크(Reed Bank)’ 인근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이 허가한 탐사선의 활동을 중지하고 즉각 퇴거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은 필리핀의 주권 및 해양관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항의하였다.¹⁴⁾

이와 같은 ‘리드뱅크(Reed Bank)’ 사건은 에너지와 수산자원과 해양자원에 관하여 남중국해 연안국들과의 분쟁에서 제한적인 무력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후에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으며 필리핀의 군사력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¹⁵⁾

1999년 필리핀은 중국과의 영유권 다툼 문제를 해결해줄 국제재판소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국제중재판을 청구하여 동 사건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이 시작되었다.

3. 재판경과 및 주요내용

1) 소의 제기

필리핀은 2013년 1월 22일에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제도의 하나인 국제중재재판소(이하에서는 “재판소”라 줄임)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해양분쟁을 해결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필리핀이 소송을 제기한 재판소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

13) PCA, *Award(July 12, 2016)*, para.656.

14) *Note Verbale from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to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Manila*, No. 110526(2 March 2011).

15) Ian Storey, “China and the Philippines: Implications of the Reed Bank Incident”, *China Brief*(The Jamestown Foundation), Vol.11, No.8(16 May 2011), p.1.

한 헤이그 협약¹⁶⁾에 의해 설치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인데, 1899년과 1907년의 협약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재판관 명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재판관 명부에서 재판관을 선임하여 중재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홀수로 구성되는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적 법정이다.¹⁶⁾

2013년 7월 11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중재재판과 재판규칙을 정하기 위한 중재재판관들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건에 대한 재판장으로 Thomas A. Mensah(가나), 재판관으로는 Jean-Pierre Cot(프랑스), Stanislaw Pawlak(폴란드), Alfred Soons(네덜란드) 및 Rüdiger Wolfrum(독일)를 지명하였다. 중국은 2013년 8월 1일자 외교서한에서 동 중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¹⁷⁾

이와 같은 필리핀의 재판청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깜짝 놀랐을 정도로 전격적인 것이었으며 분쟁의 타당당사국인 중국은 제소에서 판정이 내려지기 까지 재판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는데, 3년 6개월에 걸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7월 12일에 최종적으로 재판소의 판정이 내려졌다.

2) 소송의 경과

2013년 7월 11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중재재판과 재판규칙을 정하기 위한 중재재판관들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¹⁸⁾, 2013년 8월 27일자로 제1차 재판절차에 관한 명령에 의거하여, 본안뿐만 아니라 동 재

16) 이석용, “국제중재재판과 도서 및 해양분쟁해결” 「사회과학연구」 제13집(2004), 117~118쪽.

17) PC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bitral Tribunal Establishes Rules of Procedure and Initial Timetable”, *Press Release*, August 27, 2013. in <http://www.pca-cpa.org>.(이하의 각주에서는 “PCA, *Press Release*(월, 일, 년도)”로 표시함).

18) PCA, *Press Release*(August 27, 2013).

판소의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한 필리핀의 “提訴書(Memorial)”를 2014년 3월 30일 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하였다. 동 재판소는 재판절차규칙을 채택하기 이전에 필리핀과 중국에 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2014년 5월 14일~15일에는 중재재판과 재판규칙을 정하기 위한 중재재판관들의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¹⁹⁾, 2013년 8월 27일자 제1차 재판절차에 관한 명령에 의거하여 2014년 3월 30일에 필리핀이 “提訴書(Memorial)”를 제출하였고, 제1차 재판절차에 관한 명령에 의하며 중국의 “答辯書(Counter-Memorial)”를 2014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2014년 5월 21일자 외교서한에서 필리핀이 제소한 동 중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동 서한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2월 17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중재재판과 재판규칙을 정하기 위한 중재재판관들의 세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중국이 “答辯書(Counter-Memorial)”인 2014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2014년 12월 7일에 중국의 입장에 관한 서한을 발표하였다. 재판소는 제3차 재판절차에 관한 명령에서 양국에게 보완된 서면서를 요구하였으며, 필리핀은 2015년 6월 16일에 보완된 서면서류를 재판소에 보냈다. 한편, 재판소는 2014년 12월 5일에 베트남이 동 재판절차에 관한 자국의 입장에 관한 성명서를 받았다.

2015년 4월 22일에 중재재판소는 2015년 7월에 동 사건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한 구두변론절차를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재판절차에 관한 명령 제4호에 의거하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발표한 성명 등을 동 재판에 대한 중국의 항변인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2015년 7월 7일~13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비공개의 구두변론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일본은 옵서버로

¹⁹⁾ PCA, *Press Release*(June 3, 2014).

참가하였다.²⁰⁾

2015년 7월 13일에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비공개 구두변론절차를 개시하였다.²¹⁾ 필리핀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대법원, 법률자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 6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 대표단이 옵서버로 참관하였다. 중국은 동 구두변론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²²⁾, 동 재판소는 이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하였다.

2015년 11월 24일에 본안심리에서의 비공개 구두변론절차가 개최되었다.²³⁾ 본 구두변론절차에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이 옵서버로 참관하였으며, 구두변론절차는 2015년 11월 30일에 끝내기로 하였다.

재판소는 2015년 11월 30일에 본안심리의 비공개 구두변론절차를 완료하였다.²⁴⁾ 구두변론절차는 2015년 11월 24일에 시작되었는데, 50명으로 된 필리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동 구두변론절차에는 전문가 증인으로 Professor Clive Schofield and Professor Kent Carpenter가 참석하였으며, 2015년 7월 7일~13일에 개최된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에 관한 구두변론절차를 마치고 2015년 10월 29일에 판정을 내렸다.

2016년 6월 29일에 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에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기일을 정하였다.²⁵⁾

동 재판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이 옵서버로 참관하였다. 영국이 옵서버로 참관을 신청하였으며 철회하였으며 미국이 옵서버를 신청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

²⁰⁾ PCA, *Press Release*(July 7, 2015).

²¹⁾ PCA, *Press Release*(July 13, 2015).

²²⁾ http://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217147.shtml.(방문일자: 2016. 4. 2).

²³⁾ PCA, *Press Release*(November 24, 2015).

²⁴⁾ PCA, *Press Release*(November 30, 2015).

²⁵⁾ PCA, *Press Release*(June 29, 2016).

나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3) 판정의 구성 및 내용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2016년 7월 12일에 동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동 판정은 47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모두 10개의 장, 120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I(서언), II(재판경과), III(RELIEF REQUESTED AND SUBMISSIONS), IV(선결문제), V(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및 “9단선”), VI(남중국해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VII(남중국해의 중국 활동), VIII(분쟁의 악화), IX(당사국들의 향후 행동). X(최종 판정)으로 되어 있다.²⁶⁾

동 판정에서 다루어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재판관할권에 관한 것으로 선결문제로 “재판관할권 및 수리가 능성”에 관한 판정²⁷⁾과 최종 판정에서 다루어졌는데, 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와 해양권원의 근거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⁸⁾

둘째는 궤석재판에 관한 것이다. 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이 모두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므로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중국이 동 재판에 궤석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²⁹⁾

셋째는 남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재판소는 해당 해양지형이 만조 시에도 바다 위로 나온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 만조 시에도 바다 위로 나온 해양지형은 12해리 영해를 가지지

26) PCA, *Award(July 12, 2016)*, paras.17~25.

27) PCA, *Award(October 29, 2015)*. paras.398~412. 일부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로 보류.

28) PCA, *Award(July 12, 2016)*. paras.398~412.

29) *Ibid.*, paras.143~144.

만, 만조 시에도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지형은 그러한 해양관할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³⁰⁾

넷째, 재판소는 중국이 행한 활동들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어업 및 석유탐사를 방해하고, 인공섬의 건설 및 중국어부들의 불법한 조업활동 등을 통하여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여 왔다고 보았다.³¹⁾

다섯째, 중국이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7개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대규모의 매립을 하고 인공섬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環礁에 중대한 환경적 위해를 초래하였으며 깨지기 쉬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한 의무를 위반하여 토착종 및 멸종위기의 종에 대한 고갈,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³²⁾

여섯째, 재판소는 중국이 필리핀이 중재재판을 청구한 이후에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³³⁾

마지막으로, 필리핀과 중국이 모두 계속적으로 해양법협약을 준수하고 “신의성실(good faith)로써 의무를 이행하며 그들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적하였다.

4. 중재판정의 주요 쟁점

동 사건에서 국제법적으로 보아 유의미한 주요 쟁점은, 재판관할권, 궤석재판, 역사적 권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및 인공섬의 건설에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보아지며, 아래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필리핀과 중국의 주장, 판정내용 및 평가의 순서로 기술한다.

³⁰⁾ *Ibid.*, paras.333~384.

³¹⁾ *Ibid.*, para.716.

³²⁾ *Ibid.*, para.757.

³³⁾ *Ibid.*, para.1181.

1) 재판관할권

국제법에서 ‘관할권(Jurisdiction)’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관리, 지배하며 각종의 재산을 처분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사법상, 재판상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으로,³⁴⁾ 본 글에서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을 의미한다.

(1) 양국의 주장

필리핀은 동 사건이 남중국해의 수역, 해저 및 해양 지형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해양법협약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 “9단선” 및 역사적 권리에 근거한 중국의 주장이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남중국해의 특정 해양지형이 해양법협약에 의해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중국이 남중국해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에 속하므로 동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특히, 중국은 해양법이 인정하는 권원 너머의 해양,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지 않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9단선’ 내에서 역사적 권리를 가진다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국제중재재판을 비롯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은 해당 국가들이 동의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며, 국제판례³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국가의 동의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입장이며,³⁶⁾ 그것은 해양법협약의 강제적 관할권의 밖에 있다는

34) 이한기,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고찰-」, 『법학법학』(서울대 법학연구소) 제6권 제2호(1964), 1964, 5쪽.

35) *Nuclear Tests*(Australia v. France), 1974 ICJ Report, pp.472-473, para.47.

36) Stefan Talmon and Bing Bing Jia,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 Chinese Perspective-*,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4), p.25.

것이다.³⁷⁾

중국이 동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법적 근거로 중국이 행한 2006년의 “배제선언”을 들고 있는데, 중국의 2006년 “배제선언”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며, 동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에 확고한 기초를 두는 것이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7월 16일의 외교부 성명, 2013년 4월 26일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3년 7월 12일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기자회견 및 2013년 8월 29일자 중국 외교부 조약법제국장(Huang HuiKang)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³⁸⁾

(2) 판정 내용

재판소가 관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제로 한 것은, 관할권 판단의 선결문제, 분쟁의 존재 여부 및 성격, 제3국의 재판참가 가능성, 관할권의 법적 전제조건 및 관할권의 제한 및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다.³⁹⁾

첫째, 재판소는 관할권 판단의 선결문제로 필리핀과 중국의 해양법당사국으로서의 법적 지위, 중국의 궤석문제, 재판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필리핀과 중국 간에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분쟁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셋째, 제3국의 재판참가 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넷째, 관할권의 법적 전제조건이다

37) *Ibid.*, pp.26~27.

3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12 July, 2013)

39) PC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29 October 2015), paras.106-412

다섯째, 관할권의 제한 및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재판소는 필리핀이 청구한 15개 사항에 대하여 8개 사항(No.1, No.2, No.5, No.8, No.9, No.12, No.14, No.15)⁴⁰⁾는 선결적 문제의 판단에서 보류를 하고 그 결정을 본안 판결로 미루었으며, 7개 사항(No.3, No.4, No.6, No.7, No.10, No.11, No.13)⁴¹⁾에 대하여는 선결적 문제의 판단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본안 판결에서는 필리핀이 청구한 No.14의 (a)-(c)와 No.15에 대하여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개의 청구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⁴²⁾

(3) 평가

재판소가 동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는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재재판소가 동 사건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갖는가는 중재재판소의 설립근거가 되는 해양법협약에 필리핀과 중국이 가입을 하고 있는가? 즉 인적 관할권이 성립되는가의 문제로 어느 일방이 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양국이 모두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1984년 5월 8일에 해양법협약에 가입하였고 중국은 1996년 6월 7일에 가입하였으므로⁴³⁾ 양국은 모두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고 일응 동 분쟁사건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인적 관할권이 성립

40) *Ibid.*, para.413 H, J.

41) *Ibid.*, para.413 G.

42) 김원희,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법적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자대회자료집」(2016. 10. 21), 64쪽.

43) in 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2017년 4월 20일 방문).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해양법협약의 당사국들 간의 분쟁은 “해양법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 물적 관할권이 성립되는데,⁴⁴⁾ 동 분쟁이 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해양법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에 해당되는 경우에 물적 관할권이 성립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일방당사국이 동 사건이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분쟁이라고 단순히 주장함으로써 분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타방당사국이 동 사건이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중재재판소로서는 소를 제기한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제도를 고려하여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법규칙과 기준에 기초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므로,⁴⁵⁾ 동 분쟁이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인지의 여부는 동 중재재판소의 결정⁴⁶⁾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선택선언제도”에 의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관할권의 선택적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또는 권원과 관련된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및 “법집행활동”과 관련된 분쟁, 유엔헌장에 따라 안보리가 수행 중인 임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이를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⁷⁾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서면 선언의 방법으로 동 부속서 VII의 중재재판을 포함하여 열거되어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선택할

44) 동 협약 제288조 제1항.

45) Stefan Talmon and Bing Bing Jia, *op.cit.*, p.30.

46) 동 협약 제288조 제4항.

47) 동 협약 제298조 1항 c호의 단서.

수 있으며 선택선언을 하지 않은 분쟁당사국은 부속서 Ⅶ의 중재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⁴⁸⁾

넷째, 중국이 행한 “배제선언”이 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절차의 예외에 해당되는가?

중국의 입장은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연안국들이 자국의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들 대륙붕의 해양지형들에 인공도를 건설하거나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은 그 연안국의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되고, 더욱이 인공도의 건설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중국의 인민해방군(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이라는 중국 군대의 활동이므로 해양법협약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중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은 동 사건을 제소하면서 “해양경제획정”이나 “해역에 대한 권원” 등 “주권문제”를 명백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해양법협약에 대한 중국의 배제선언을 무력화하여 동 사건이 중재재판의 물적 관할에 속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궤석재판

궤석재판(關席裁判)은 국제재판에서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말하며 주로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동 분쟁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고의로 재판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분쟁사건에서 중국은 필리핀과의 중재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판정도 거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48) 동 협약 제287조.

(1) 중국의 입장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을 중재재판소 제소하였는데, 필리핀의 제소에 대하여 중국은 2013년 1월 31일자, 2013년 2월 19일 외교서한에서 재판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이 후부터 중국은 중재재판을 수락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중재재판에 있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동 재판에 불참할 것임을 표명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2014년 12월 7일자의 입장서(Position Paper)⁴⁹⁾에서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가 양국의 합의에 위배되며 해양법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국제중재재판의 일반적인 관행에 반하는 것이므로 동 중재판정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10월 30일자 중국 외교부 성명⁵⁰⁾ 등에서 중재재판소가 동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재재판을 수락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동 중재재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는 2016년 7월 12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⁵¹⁾ 영유권 및 해양경제계획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양법협약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는 분쟁해결절차와 수단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양법협

49) The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7 December, 2014). in http://www.fmprc.gov.cn/mfa_eng/

50)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30 October, 2015)" in http://www.fmprc.gov.cn/mfa_eng/

51) Statement of the MF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2 July 2016(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ward of 12 July 2016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2 July 2016). in http://www.fmprc.gov.cn/mfa_eng/.

약의 당사국인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중국과 필리핀이 협상을 통하여 동 분쟁을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는 약속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들의 행동선언(2002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에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판정의 내용

재판소는, 불참국이 충분히 자국의 입장이나 주장을 변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참국에게 재판절차나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 불참으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국제재판에서 궤석재판이 이루어진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2016년 필리핀과 중국의 중재판정, 2014년 러시아와 네덜란드의 Arctic Sunrise 사건(중재재판)⁵²⁾, 2013년 러시아와 네덜란드의 Arctic Sunrise 잠정조치 신청사건⁵³⁾, 1978년 그리스와 터키의 잠정조치 신청사건⁵⁴⁾, 1974년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잠정조치 신청사건, 1973년 프랑스와 호주의 핵실험사건⁵⁵⁾ 등이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부속서 VII의 제9조에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절차, 즉 궤석국의 결정에 의해 재판절차가 방해받지 않도록 재판참가국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판참여국이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궤석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검토

52) 이용희, “「Arctic Sunrise 호」사건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3), 22~25쪽.

53) Arctic Sunrise(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2 November 2013, *ITLOS Reports*, 2013.

54) Aegean Sea Continental Shelf(Greece v. Turkey), Judgment, *ICJ Report 1978*.

55) *Nuclear Tests*(Australia v. France), Judgment, *ICJ Report 1974*.

하였는데,⁵⁶⁾ 필석국인 중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판소에 대한 모든 의견교환 및 자료를 검토하고, 중국이 답변할 수 있는 적정하고 대등한 시간을 부여하고, 제반 재판절차에서 중국이 참여하여 발언토록 하는 등 재판절차에서 중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였다.⁵⁷⁾ 또한 재판소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재판소의 의사결정에 양 분쟁당사국이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고려하였다.⁵⁸⁾

재판소는 재판참가국인 필리핀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보하도록 조치를 검토하였는데, 재판절차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재판절차의 불필요한 지연, 과도한 재판경비의 주출을 회피토록 하고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고려하였다.⁵⁹⁾

(3) 평가

필석재판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해양법협약은 다루기 힘든 영토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라는 것이 분명하며, 필리핀이 해양법협약의 규정들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와 같이 해양법협약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며, 필리핀이 의도적으로 동 사건을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포장하였으므로 부당하며 해양법협약을 악용하여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이고 대결적인 군사행동들이 계산착오 및 사고발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⁶⁰⁾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국제사회

⁵⁶⁾ PCA, *Award*(12 July, 2016), para.119.

⁵⁷⁾ *Ibid.*, para.121.

⁵⁸⁾ *Ibid.*, para.124.

⁵⁹⁾ *Ibid.*, para.123.

⁶⁰⁾ Xiaoqin Shi, “UNCLOS and China’s Claim in the South China Sea”, *Indo-Pacific Strategic Papers*(Center for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Australian Defence College)(October 2015), p.4.

는 국가들의 주권평등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로서 국제관계의 거의 대부분에서 국가의 동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재판도 관계국가의 동의에 입각하는데, 이는 주권적 국가가 같은 지위에서 병존하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¹⁾

그러나, 국제재판에서 분쟁당사국의 '동의'는 이를 세분화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특정 분쟁의 국제재판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소송 자체에 분쟁당사국들이 '동의(합의)'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재판조항이나 재판조약에 그 국가가 '동의'한 경우이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 타당이 그 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그 국가가 일방이 제기한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 분쟁사건에서 재판소는 중국의 재판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중재재판소에 대한 모든 의견교환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필리핀이 제출한 서한에 중국이 답변할 수 있는 적정하고 대등한 시간을 부여하고, 제반 절차에 중국이 참여하여 발언토록 하는 등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한편, 재판소는 필리핀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궤석으로 인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 및 과도한 재판경비를 회피토록 하고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분쟁사건에서 재판소는 중재재판의 일반적인 관행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법협약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면서도 영유권문제를 회피하면서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1) 이한기, 앞의 논문, 7쪽.

3) 역사적 권원

(1) 양국의 주장

필리핀은 청구번호 1번에서 남중국해에 대하여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중국해 권원도 해양법협약이 명백하게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9단선' 내의 남중국해 해역에 대하여 "역사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협약이 명백하게 허용하는 범위를 지리적이나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주장으로 그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⁶²⁾

중국의 주장은 그 동안 중국이 발표한 성명서, 외교서한 등에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9단선"이 오랜 역사를 가진 권리라고 주장하는데,⁶³⁾ 중국은 1948년에 소위 '11단선'이 나타난 지도를 간행하였으며, 1958년에는 12해리의 영해와 남사군도를 포함한 일정한 도서들에 기점을 부여하는 중국의 '영해법'이 발표되었다.⁶⁴⁾

1947년에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들에 대한 이름을 다시 정리하여 '남중국해 지리지(*The Location Map of the South China Sea Islands*)'를 발간하였는데, 이 지도에서는 '11단선'으로 동사군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및 Macclesfield Bank가 포함되어 있었다.⁶⁵⁾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2009년 5월 7일자 중국의 외교서한(*Note Verbale*)에 소위 '9단선' 지도를 첨부하여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단선" 내에 대한 주권, 권리 및 관할권은 풍부한

62) PCA, *Award*(July 12, 2016), para.169, para.188, para.191.

63) *Ibid.*, para.186.

64) Melda Malek, "A legal assessment of China's historic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ustralian Journal of Maritime and Ocean Affairs*, Vol.5, No.1(2013), p.29.

65) *Ibid.*, p.30.

역사적 및 법적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고 주장하였다.⁶⁶⁾

(2) 판정의 내용

재판소는 동 판정에서는 필리핀이 청구한 청구번호 1번(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해양법협약에 의거한 것인지)과 2번(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원의 효력이 있는지)을 제4장에서 합쳐서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중국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분쟁사국인 중국으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았고, 중국은 그 동안 '9단선'의 기원이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⁶⁷⁾

동 사건에서 재판소는 중국의 국내법령, 선언, 그 동안의 행동들로부터 중국의 주장 및 입장을 도출하였는바, 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살피기 위하여 우선 중국의 해양에 대한 권원에 관련한 선언 및 법령을 검토하였다.

재판소가 검토한 것은, 1930년대 중국의 3해리 영해 법제, 1958년 9월 4일에 중국(그 당시 중공)의 “영해 선언”, 1992년 2월 25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1996년 6월 7일의 해양법협약에 대한 비준, 1998년 6월 26일의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범위를 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의 발효 등이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에서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에 의거하여 대륙붕의 범위를 정하되 對向하거나 인접한 국가 간에 권리주장이 중복되는 수역은 그 국가와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하였다. 다만, 동 법에서 중국이 과거로부터 향유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⁶⁸⁾

66) PCA, *Award(July 12, 2016)*, para.185.

67) Melda Malek, *op. cit.*, p.28.

68) 동 법 제14조.

재판소는 우선 중국이 필리핀의 청구 1, 2에 대하여 중국의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중국이 결코 역사적 권리의 본질 및 그 범위를 명백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⁶⁹⁾

해양법협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남중국해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항해하며 조업할 수 있었던 “공해(high sea)”이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재판소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행해 온 항해 및 조업활동은 “역사적 권리”가 아니라 “공해의 자유”에 해당되는 활동들이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왔거나 다른 국가들의 해양자원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비록 중국의 항해자나 어부들이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같이 남중국해의 섬들을 역사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 해역이나 해양자원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동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내에서 해양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3) 평가

육지영토나 도서의 영유권귀속에 관한 문제는 결국 국가의 경계에 관한 문제로, 국가경계는 국가주권이 특정한 영토에 귀속되는 것으로 각기 구분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에 따라 국민, 영토, 국가기관의 귀속이 결정되는 기초가 된다.⁷⁰⁾ 국제법의 영토취득이론에 의하면 영토의 취득방법은 발견(Discovery),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승계(Cession), 선점(Precapitation), 시효(Prescription), 할양(Cession), 매매(Purchase), 첨부(Accession, Accretion), 정복(Conquest, Subjugation) 등이 있는데,⁷¹⁾ 이러한 영토취득이

⁶⁹⁾ PCA, *Award(July 12, 2016)*, para.180.

⁷⁰⁾ Alison Kesby, *The shifting and multiple border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Spring, 2007), pp.110~111.

론은 영유권분쟁에 있어서 그 권원을 찾아서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게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²⁾

남중국해의 도서나 여러 해양지형들 대한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게 있는가에 관한 다툼은 국제법에 의하여 어느 국가가 정당한 ‘權原’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는가에 의하여 해당 영토에 대한 영유권귀속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자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는 것은 그 국가가 해당영역에 대해 평화적이고 충분하게, 또한 계속적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⁷³⁾ 분쟁당사국들이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에까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행해왔는가에 관한 시기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기는 영토분쟁에서 그러한 분쟁이 ‘결정화’된 시점, 즉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에서 행해진 국가행위만을 검토하게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체 지역에서 산호초 등의 지형에 대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1948년에 중화민국의 내무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최초로 “11단선”이 등장하였는데, 1953년에 발간된 지도에는 통킹만의 2개 선이 삭제되어 “9단선”으로 되었다.

중국은 소위 “남해구단선” 내에 위치한 남중국해의 70%인 194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역 및 이 해역의 해저지형에 대한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9단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9년 5월 7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처음으로 “9단

71) Andrew Clapham, *Brierly's Law of Nations*(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69.

72) Benjamin K. Sibbett, “Tokdo or Takeshima?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1(April 1998), pp.1621~1624.

73) Island of Palmas case(The Netherlands vs. United State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RIAA) Vol. II(1928), p.867.

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 외교서한에서 중국은 지도에서 첨부한 남중국해 “9단선” 내의 도서에 대하여 다룰 수 없는 영유권을 가지며 그러한 도서들의 해저 및 하상도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⁷⁴⁾ 즉, “9단선”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해역, 모든 해저 및 모든 산호초 등에 대하여 중국의 주권(주권적 권리)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9단선’을 남중국해에 그어진 전통적인 해양경계선이라고 하지만, 왜 이런 선을 그어야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선을 그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중국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도 아직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⁷⁵⁾

중국이 1947년 및 1948년에 ‘11단선’이 나타나있는 지도를 간행한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적절하게 고지를 하였는지도 의문이며, 어떻게 지도가 그려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지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측지기준도 없고,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연결선이 없는 해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한 그 동안 중국은 “9단선”의 법적 의미와 본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도 없으며⁷⁶⁾ 미국 국무성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국 자신이 주장하는 1947년의 “11단선”과 2009년의 “9단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중국이 제시하는 옛날기록들이 불완전한 것이어서 정기적 점유나 국가주권을 시현하여 왔다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4) CML/17/2009, New York, 7 May 2009.

75) Zou Keyuan, “South China Sea Studies in China: Achievements, Constraints and prospects”,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Contributors*, Vol.11(2007), pp.88-89.

76) Melda Malek, *op. cit.*, p.30.

4)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

(1) 양국의 주장

남사군도의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각국이 점거를 시작한 것은 1946년에 대만이 '태평도(Itu Aba)에 기지를 건설하고 10년 후에 동 섬을 점거한 것이 최초이고, 1970년대에 베트남,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다수의 해양지형들을 점거하였으며, 1988년에 중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남사군도의 해양지형들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⁷⁷⁾

필리핀은 중국이 점거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여러 해양지형들은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는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바위섬'이거나 '低潮高地'이거나 썰물 시에도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지형에 해당한다.⁷⁸⁾ 따라서, 어느 것도 영해 12해리를 넘어선 권원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지형들은 영해를 포함한 어떤 권원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이들 해양지형들에 행하는 대규모의 매립활동들이 이들 해양지형들의 원래의 본질 및 특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필리핀에 의하면 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지형들의 지위와 이들이 해양권원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위하여 그 해양지형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주권을 가지는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를 심리하는 때에 주권에 관한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해양지형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는 관계없이 그 법적 지위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77) Mira Rapp-Hooper, "China Responds to Reclamation Reports"(26 February 2015), p.1. in <https://amti.csis.org>.

78) PCA, *Award*(July 12, 2016), para.292.

79) *Ibid.*, paras.293~295.

(2) 판정의 내용

재판소는 먼저 중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당 礁해를 모두 검토하여 만조 시에도 바위 위로 나온 것인지를 평가하였다.⁸⁰⁾

만조 시에도 바다 위로 나온 해양지형은 12해리 영해를 가지지만, 만조 시에도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지형은 그러한 해양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동 재판소는 이들 암초들이 매립과 축조를 통하여 그 형상이 크게 변한 것에 주목하며, 해양법협약이 해양지형의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자료에 의거하여 해양지형들을 분류하는 것을 상기하였다.

해양법협약은 그제12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섬”에 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지며, 그 제3항에 해당되는 “인간이 계속 거주할 수 없고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의 이들 규정이 해양지형의 객관적인 크기, 자연적 조건, 안정적인 인간공동체나 경제활동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해양자원이나 자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현재 많은 해양지형들이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며 그 해양지형의 수용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역사적 증거로 남사군도는 역사적으로 여러 작은 그룹의 어부들이 이용하여 왔으며 일본의 수산업회사 및 구아노 채취회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과도기적인 해양의 이용은 인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살았다거나 역사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남사군도의 어떠한 섬이나 남사군도 전체도 확장된 해양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⁸⁰⁾ *Ibid.*, paras.284-290, paras.334-384.

(3) 평가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섬에 대한 정의와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기 위한 ‘섬’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육지 지역일 것’, ‘만조시에 바다위로 노출된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⁸¹⁾

남중국해의 연안국들이 점거하고 있는 해양지형들은 인공적인 매립 이전의 해양지형들의 자연적 조건, 지리적 및 수리학적 특징들은 그들이 “바위섬”이나 간조 시에만 바다 위로 드러나는 “여(礁)” 또는 간조 시에도 바다 아래에 있는 “海底高地”에 해당되므로, 해양법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이들 연안국들은 자국이 점거하고 있는 해양지형들에 영해를 선포하고 “통항의 자유”나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해에 해당되는 남중국해를 여러 국가들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동 사건에서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논리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의 여러 해양지형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여러 사료나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볼 때에 그 어느 것도 오랜 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여 왔다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여 온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장 큰 섬인 ‘太平島(Itu Aba Island)’를 포함한 모든 해양지형들이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판소가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섬이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태평도도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섬(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이나 바위섬(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해양지형(저조고조)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해양법협약이 섬의 크

81) 이석용,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Vol.12(2016), 114~117쪽.

기나 인구의 거주 등에 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5) 인공섬의 건설

중국은 2013년 10월부터 남사군도의 7개 해양지형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함으로써 주변국을 비롯한 미국과 참여한 갈등이 시작되었다.⁸²⁾

(1) 양국의 주장

필리핀은 동 재판에서 수리학 전문가, 여러 위성사진 및 영상사진을 동원하여 중국이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인공섬의 현황 및 형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국은 스카보러 沙洲(Scarborough Shoal) 북서부 지역에 있는 존슨 礁(Johnson Reef, Chigua Jiao, Mabini Reef), 쿠아르테론 礁(Cuarteron Reef, Huayang Jiao, Calderon Reef), 피에리 크로스 礁(Fiery Cross Reef, Yongshu Jiao, Kagitingan Reef) 등 만조에 수면위에 일부가 드러나는 礁에 대하여 중국은 인공적으로 보강하여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군용비행장, 군사용 안테나, 접안시설, 군사요새 등을 건설하였고⁸³⁾, 이러한 행위들은 해양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훼손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環礁(coral reefs)에 대한 매립, 파괴적이고 해로운 조업행위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포획 등으로 그 지역의 해양환경을 돌이킬 수 없도록 피해를 입혀 온 것은 해양법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⁸²⁾ 구자선,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5-22 (2015. 8. 20), 1쪽.

⁸³⁾ Robert Beckma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10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January 2013), pp.143~144.

(2) 판정의 내용

재판소는 이들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수리학 전문가, “아시아 해양투명성 구상 센터(The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가 연구한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이 행해 온 인공섬 건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중국이 수비礁(영어는 Subi Reef, 중국은 Zhubi Dao(渚碧礁), 베트남은 Đà Xu Bi, 필리핀은 Zamora라고 부름)를 1988년부터 점거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대규모의 매립을 하여 남사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활주로를 건설하였다.⁸⁴⁾

미시프礁(영어로 Mischief Reef, 중국은 Meiji Jiao(美济礁), 베트남은 Đá Vành Khăn, 필리핀은 Panganiban reef라고 부름)는 필리핀의 팔라완으로부터 129해리 떨어져 있는데, 매립을 통하여 미시프礁의 입구를 넓히고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⁸⁵⁾

존슨礁(영어로 Johnson Reef, 중국은 Chigua Jiao(赤瓜礁), 베트남은 Đá Gạc Ma, 필리핀은 Mabini Reef라고 부름)는 남사군도의 유니온 뱅크(the Union Banks)에 2014년 초부터 매립을 하기 시작하여 작은 규모의 비행장과 여러 시설을 짓고 있다.⁸⁶⁾

허거스礁(영어는 Hughes Reef, 중국은 Dongmen(东门礁), 베트남은 Đá Tủ Nghĩa라고 부름)는 존슨礁와 같이 남사군도의 유니온 뱅크(the Union Banks) 안에 위치하다. 중국은 2014년에 콘크리트 방벽을 쌓고 방공타워 등 여러 시설을 짓고 있다.⁸⁷⁾

가븐礁(영어는 Gaven Reefs, 중국은 Nanxun Jiao(南薰礁), 베트남은 Đá

84) Jingya, Mei, “China installed radar on Zhubi Reef: Philippine media”. *Sina English News*(2012. 7. 19).

85) “China’s New Spratly Island Defens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016. 12. 13).

86) “China fishing fleet arrives in Spratlys”, *Philippine Inquirer*(2012. 7. 17).

87) “China’s New Spratly Island Defenses”. *op. cit.*.

Ga Ven, 필리핀은 Burgos Reefs라고 부름)는 남사군도의 티자아드 뱅크 (the Tizard Banks)에 속하는 것으로 중국이 2014년부터 매립을 하여 방공 타워 등 여러 시설을 짓고 있다.⁸⁸⁾

피어리 크로스 礁(영어는 Fiery Cross Reef, 중국은 Yongshu Reef(永暑礁), 베트남은 Đá Chũ Thập, 필리핀은 Kagitingan Reef라고 부름)는 중국이 점거하고 있는 남사군도의 해양지형인데, 2014년 8월에 매립하기 시작하여 3,000미터가 넘는 활주로와 부두시설 등 대규모의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⁸⁹⁾

쿠아르테론 礁(영어는 Cuarteron Reef, 중국은 Huayang Jiao(华阳礁), 베트남은 Bãi Châu Viên, 필리핀은 Calderon Reef라고 부름)는 남사군도의 런던 環礁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복합구조물과 헬리콥터 이착륙장, 군사시설 및 인공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을 짓고 있다.⁹⁰⁾

특히, 남중국해에서 대규모의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서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이 대규모의 매립이 행해지고 있는 해역인, 피어리 크로스 礁(Fiery Cross Reef), 휴거스 礁(Hughes Reef), 피시프 礁(Mischief Reef), 수비 礁(Subi Reef), 쿠아르테론 礁(Cuarteron Reef), 가븐 礁(Gaven Reef), 남존슨 礁(Johnson South Reef) 등인데,⁹¹⁾ 재판소도 거의 같은 의견으로 이들 해양지형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의 7개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대규모의 매립을 하고 인공섬을 건설하였는데, 특히 깨지기 쉬운 해양생태계를 지닌 環礁 주변해역에 중대한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보존하고 보호한 의무를 위반하여 토착종 및 멸종위기의 종에 대한 고갈,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판

88) “Gaven Reefs Tracker”, in <https://amti.csis.org/gaven-reefs/>.

89) “Fiery Cross Reef Tracker”, in <https://amti.csis.org/fiery-cross-reef/>.

90) “Cuarteron Cross Reef Tracker”, in <https://amti.csis.org/cuarteron-reef/>.

91) Youna Lyons and Wong Hiu Fung, “South China Sea: Turning Reefs into Artificial Islands?”, *RSIS Commentary*, No.104(30 April 2015), p.1.

시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중국당국이 자국 어부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산호초 및 자이언트 대합을 실질적인 대규모로 어획하는 것은 알고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점을 인정하였다.⁹²⁾

(3) 평가

남중국해의 해양지형물은 그 형상이 서로 다르고 국제해양법적인 지위나 효력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한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건설장비를 통원하여 인위적으로 매립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즉, 우선적으로 해양지형의 둘레에 콘크리트 방벽을 쌓은 후에 준설토를 부어서 수분을 뺀 다음, 쇠파일을 박거나 바위 등으로 바닥 층을 다시 안정화하는 방법이다. 또 연안국들이 건설한 인공섬에는 활주로, 레이더 안테나, 대공요새 기타 군사시설 및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복합시설 및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중국해에서의 환경피해는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전의 군사시설을 건설, 파괴적인 조업방법 등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피해는 미미한 것에 그쳤고 전체적인 환경피해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의 매립으로 인하여 해당 해양지형 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으로부터 수십 km에 이르기까지, 해당 해역의 하층토에 까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즉, 인공섬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부유물로 인하여 얇은 해역의 해초(海草)가 죽어가고 있으며 海底山(Seamount)이 토사물로 덮혀져 그 고유한 생태학적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⁹³⁾

이와 같이 볼 때에, 중국이 점거하고 있는 남사군도의 해양지형들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이들 해양지형들에 대하여 중국이 주장하

⁹²⁾ PCA, *Award(July 12, 2016)*, para.649.

⁹³⁾ Youna Lyons and Wong Hiu Fung, *op. cit.*, p.2.

고 있는 영유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⁹⁴⁾

둘째, ‘해저산’에 해당되는 것에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섬’으로 그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은 ‘밀물 때에도 사방이 바닷물로 둘러싸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해양법협약에 규정하는 ‘바위섬’에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양법협약에서 인근 해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하는 ‘섬’으로 그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이 대규모의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과 과를 초래하므로 해양법협약이나 기타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해역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인근 국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과 중복되는 해역이므로 아직 해양경계획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이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은 인근 연안국들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여 남중국해의 해양안보질서를 흔들어 지역·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중국이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이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은 항해하는 선박들의 자유항해를 방해하여 국제 해양항로를 위태롭게 하므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인공섬의 건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⁹⁴⁾ Robert Beckman,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and International Law", *RSIS Commentary*, No.213(29 October 2014), pp.1~2.

도 군사시설이나 요새를 구축하고 인공섬 건설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5. 결어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해양법협약이 규정 및 동 부속서 VII에 근거하여 동 사건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일반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연구자들에게 주목받는 사건이었으며, 동 사건이 주로 중국의 “역사적 권리” 및 “9단선”에 관한 것이어서 “영토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처음에는 과연 재판소가 동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던 것이다.

판정의 결과는 일부 주권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동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이 있다는 것과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와 “9단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 권리주장을 부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동 판정이 가지는 쟁점별 의미와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 사건이 지닌 주권문제와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동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재판관할권의 근거로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리주장과 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와 해역을 세부적으로 국가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규정들인 해양관할권 제도와 양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해양법협약이 어떠한 권리주장 보다도 우월하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동 판정의 결과는 우리의 “독도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바, 독도주변의 해양과학조사, 독도 인근해역의 해저지명, 동해 중

간수역에서의 어업자원관리, 독도주변의 해양환경보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선결문제로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므로,⁹⁵⁾ 우리나라도 동 중재판정의 원인, 전개과정, 판정결과, 앞으로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가지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소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같이 남중국해를 역사적으로 이용해온 중국의 항해자들이나 어부들에 관한 증거가 있으나, 그것들이 남중국해의 도서들에 대한 주권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정의 결과도 역시 우리의 “독도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독도에 관한 자료 및 사료를 수집, 연구, 분석하고 우리의 주장논리, 일본의 반응 및 그에 대한 대응논리 등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동 사건에서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전문가의 의견, 여러 사료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오랜 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여 왔다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여 온 적이 있는지에 관한 사료나 자료를 검토하고, 이들 해양지형들의 자연적 조건들을 토대로 남중국해의 모든 해양지형들이 그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해양법협약 제 121조 제1항의 “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소의 판단은, 우리나라의 “독도문제” 및 “이어도”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일본과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과의 동해 해양경계를 ‘중간선원칙’에 의하여 획정하되 그 기준점을 울릉도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바위섬’으로 인정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한일어업협정이나 동 협정에서 나타난 양국의 기본입장이 양국의 ‘중국적인 해양경계획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당장은

95) 정갑용,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경인문화사(2011), 78-79쪽.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일본과 동해의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경우에 과연 독도를 ‘바위 섬’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대하여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여 인근 해역이 우리나라에 속하지만 그 자체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다만 “해양과학기술”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을 기준으로 이 주변 해역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⁹⁶⁾

중국이 주장하는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은 이어도 인근 해역의 대륙붕에 관한 중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앞으로 인근 해역에서 중요한 해양자원이 발견된다면 중국이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을 근거로 전적으로 중국의 권리가 있다거나, 적어도 ‘공동개발’을 주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동 사건에서 인공도와 그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에 관한 것으로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는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암초인 “오끼노 도리시마”에 콘크리트 방벽을 쌓고 그 주변 해역에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는데,⁹⁷⁾ 동 판정을 근거로 일본이 아주 조그만 암초인 “오끼노 도리시마”에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하여 깨뜨려지기 쉬운 태평양의環礁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해양생태계의 파괴행위를 방지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96) “이어도” in wikipedia.org(검색; 2017. 4. 15).

97) “이끼노 도리시마” in wikipedia.org(검색; 2017. 4. 15).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구자선,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5- 22(2015. 8. 20).
- 김원희,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법적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자대회자료집」(2016. 10. 21).
- 이석용, 「국제중재재판과 도서 및 해양분쟁해결」, 『사회과학연구』 제13집(2004).
- _____,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Vol. 12(2016).
- 이용희, 「「Arctic Sunrise 호」사건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3).
- 이정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보」 제24집 제4호(2016. 11).
- 이한기,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고찰-」, 『법학법학』(서울대 법학연구소) 제6권 제2호(1964).
- 정갑용,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경인문화사, 2011.

2. 외국문헌

- Alison Kesby, The shifting and multiple border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Spring, 2007).
- Andrew Clapham, *Brierly's Law of Nations*(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Aning, Jerome, “PH plane flies over Panatag Shoal”, *Philippine Daily Inquirer*(May 5, 2012).
- Benjamin K. Sibbett, “Tokdo or Takeshima?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1(April 1998).
- Boston Global Forum, “Recent Trends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Report of the Boston Global Forum*(June 2015).
- John M. Van Dyke & Dale L. Bennett. “Islands and the Delimitation of Ocean Space in the South China Sea.” *Ocean Yearbook*, Vol.10(1993).
- John Pike. “South China Sea Oil and Natural Gas”. www.globalsecurity.org(4 October

2014).

Keith Jacobs,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the South China Sea,”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4, No.6(June 1992).

Laude, Jaime, “China raring to seize oil-rich Reed Bank – Golez”, *The Philippine Star*(March 20 2014).

Mark E. Rosen, “Philippin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 Legal Analysis”, *A CNA Occasional Paper*(International Affairs Group Centet for Strategic Studies)(August 2014).

Melda Malek, “A legal assessment of China’s historic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ustralian Journal of Maritime and Ocean Affairs*, Vol.5, No.1(2013).

Robert Beckman,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and International Law”, *RSIS Commentary*, No.213(29 October 2014).

_____,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10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January 2013).

Stefan Talmon and Bing Bing Jia,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 Chinese Perspective*(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4).

Xiaoqin Shi, “UNCLOS and China’s Claim in the South China Sea”, *Indo-Pacific Strategic Papers*, Center for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Australian Defence College)(October 2015).

Youna Lyons and Wong Hiu Fung, “South China Sea: Turning Reefs into Artificial Islands?”, *RSIS Commentary*, No.104(30 April 2015).

Zhiguo Gao, Bing Bing Jia,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History, Status, and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7(January 2013).

Zhu, Ningzhu, “China urges against Vietnamese interference in territorial water exploration”. *Xinhuanet*(7 May 2014).

Zou Keyuan, “South China Sea Studies in China: Achievements, Constraints and prospects”, *Singapore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Contributors*, Vol.11 (2007).

Zou, Keyuan, “Scarborough Reef: a new flashpoint in Sino-Philippine relations?”, *IBRU Boundary & Security Bulletin*(University of Durham), Vol. No.2(1999).

3. 자료

“이어도” in *wikipedia.org*.

“이끼노 도리시마” in *wikipedia.org*.

Aegean Sea Continental Shelf(Greece v. Turkey), Judgment, *ICJ Reports*(1978).

Arctic Sunrise(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2 November 2013, *ITLOS Reports*(2013).

“China fishing fleet arrives in Spratlys”, *Philippine Inquirer*(2012. 7. 17).

“China's New Spratly Island Defens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6. 12. 13).

CML/17/2009, New York(7 May 2009).

“Cuarteron Cross Reef Tracker”, in <https://amti.csis.org/cuarteron-reef/>.

“Fiery Cross Reef Tracker”, in <https://amti.csis.org/fiery-cross-reef/>.

“Gaven Reefs Tracker”, in <https://amti.csis.org/gaven-reefs/>.

Island of Palmas case(The Netherlands vs. United States),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RIAA) Vol. II(1928).

Jingya, Mei, “China installed radar on Zhubi Reef: Philippine media”. *Sina English News*(2012. 7. 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12 July, 2013).

Mira Rapp-Hooper, “China Responds to Reclamation Reports”(26 February 2015), in <https://amti.csis.org>.

Note Verbale from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to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Manila, No.110526(2 March 2011).

Nuclear Tests(Australia v. France), *ICJ Report 1974*.

PC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bitral Tribunal Establishes Rules of Procedure and Initial Timetable”, *Press Release*, August 27, 2013. in <http://www.pca-cpa.org>.

PC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29 October 2015).

PCA, *Award*(July 12, 2016).

PCA, *Press Release*(August 27, 2013).

PCA, *Press Release*(July 13, 2015).

PCA, *Press Release*(July 7, 2015).

PCA, *Press Release*(June 29, 2016).

PCA, *Press Release*(June 3, 2014).

PCA, *Press Release*(November 24, 2015).

Statement of the MF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2 July 2016. in [http:// www.fmprc.gov.cn/mfa_eng/](http://www.fmprc.gov.cn/mfa_eng/).

The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7 December, 2014) in [http://www.fmprc.gov.cn/ mfa_eng/](http://www.fmprc.gov.cn/mfa_eng/)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alysis Briefs, “*South China Sea*”(March 2008).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residential Decree No.1596 –Declaring Certain Area Part of the Philippine Territory and Providing for their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Chan Robles Law Library*(11 June 1978).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30 October, 2015)” in [http://www.fmprc.gov.cn/ mfa_eng/](http://www.fmprc.gov.cn/mfa_eng/)

<Abstract>

A Study on Legal Issues of the Award of PCA between Philippines and China

Gap-Yong Jung

The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began for the huge amounts of oil and natural gas were found buried in the South China Sea, especially Reed Bank and its adjacent waters.

The Philippines filed a lawsuit against China in 2013 with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s Annex VII, and a final award was reached on July 12 2016.

The meaning of the issues in ques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found that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superior to any claim of rights.

As a matter of court jurisdiction, China insisted that it should be decided to exclude it from the jurisdiction and denied the jurisdiction of the dispute and did not attend the arbitration trial. In China's view, this dispute with the Philippines is on the issue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is not a "dispute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set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dispute is not a matter of the claim of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China Sea on the basis of the claims of the

Philippines, and that the claim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duplicated and overlapped. In this reason, the Court decided that this dispute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that the jurisdiction on this dispute is recognized in the claims of the Philippines.

Second, China insists on the historic titles on the South China Sea as a basis for the claim that the dispute is related to national sovereignty and claims that the area within the so called "9 line" is China's historic waters and have 'indisputable right'.

The Court found that China had no strong evidence to determine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its claim to the historical rights on the South China Sea.

Third, As regards the legal status of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said that the maritime features of the disputed waters, as provided for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alls under the sea(low tide elevation), could not have its own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Fourth, With regards the construction and reclama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 Court concludes that, acco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International Law,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s acceptable but should not cause harm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should not pose a serious threat to marine ecosystems.

This award of PCA,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historic titles or rights, the legal status of the marine features, the construction of the artificial island, there are a great deal of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problem of Dokdo Issues in Korea.

Key words: South China Sea Disput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982 UNCLOS, Jurisdiction, Nine dashed Line, Dispute Settlement System

이 논문은	2017년 5월 25일에 투고하여
	2017년 6월 3~25일에 심사하여
	2016년 6월 26일에 게재 · 결정됨

자료소개



자료소개

해방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소개1

「독도연해어선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

해제: 이 태 우**

자료 전사·윤문: 김 은 령·김 도 은***

<해제>

독도연해 어선 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1952년, 내무부)

1. 문서의 성격과 내용

이 문서는 1952년 내무부 보존 기록물로, 1948년 미군 비행기의 독도 폭격사건 당시 어민들의 피해상황 및 대책관련 보고서이다. 그러나 내무부 기록물로 보존되어 있지만 울릉도·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작성한 1948년 1차 독도폭격사건의 전말을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 보존자료(관리번호: BA0182403-2-1)이다. 자료 제공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준 국가기록원에 감사드린다. 이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958&cid=57618&categoryId=58159> [네이버 지식백과(2017.6.9. 검색)] 독도 연해어선 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1952년, 내무부)에서도 검색 가능하지만, 화질이 낮고 한자어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의 학술적 이용과 일반인의 해독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① 자료원문 ② 1차 전사문 ③ 현대 한국어 윤문의 과정을 거쳐 독자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원

있다. 표지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이 문서를 기안하여 보고한 날짜가 1952년 9월 20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날짜는 1952년 9월 15일 미군에 의한 제2차 독도폭격사건이 일어난 지 5일 후이다. 즉 1차 폭격사건에 이어서 2차 폭격사건이 발생하자 중앙행정부처인 외무부와 내무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1차 독도폭격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경상북도가 「독도연해 어선 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독도영유권 문제, 독도 폭격사건 발생경위와 전개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 제목이 「독도연해 어선 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으로 되어 있어 「1948년 독도폭격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내용을 보면 독도폭격사건에 관한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경위보고에 기술한 내용에는 1. 독도의 위치와 형태 2. 독도 영유문제 3. 독도(폭격)사건 발생 개황 4. 구호 개황 5. 배상 및 유족 원호 개황 6. 위령제 거행 7. 위령비 건립 취의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그동안 언론기사 자료를 통해서만 접했던 당시의 피해상황을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 피해규모나 구호상황, 위령비 건립 등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피해상황

독도폭격사건은 1948년 6월8일과 1952년 9월15일에 있었던 독도에 대한 미군의 폭격사건으로, 특히 1948년 폭격사건은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한 사건으로 전 국민의 슬픔과 공분을 자아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

1) 1차 독도폭격사건의 경과와 발생배경은 이태우,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경과와 발생배경」, 『독도연구』 20호,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6.6. pp. 121~141 참조.

당시 신문들은 1차 독도폭격사건의 피해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폭격사건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는 “6월 8일 오전 11시 반경 국적 불명의 비행기가 독도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해 울릉도·강원도 어선 20여척이 파괴되고, 어부 16명이 즉사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²⁾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독도에서 어선이 폭격을 받아 20여 명이 사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역을 채취 중이던 어선 15척이 작업 하던 중 상공에 나타난 비행기로부터 폭탄과 기관총 공격을 받아 11척이 침몰하고 사망 9명, 실종 5명, 중상 2명, 경상 8명이라는 큰 희생을 냈다”³⁾고 보도하고 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정체 모를 비행기 울릉도 어선 폭격”이란 제목으로 “15척의 어선에 45명의 어부가 독도 근해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중 정체 모를 비행기 아홉대가 날아들어 폭탄과 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며, 9일 구호선을 출동시켜 구호작업을 하는 중”⁴⁾이라고 전하고 있다. 신문보도 외에도 그날의 참상은 잡지를 통해 보다 상세히 알려졌다.⁵⁾

최근 《대구일보》 취재 기사에 따르면, 당시 생존한 3명의 어부는 김태홍(22), 최만일(33), 최춘삼(44)씨로, 이들은 “7일 독도에 도착해 미역을 따고 있었고, 이튿날 8일 오전 11시30분께 정체 모를 비행기 6대가 날아와 어선으로 10여 개 이상의 폭탄을 던졌다”고 전했다. 또 “폭탄이 터지면서 일어난 파도로 어선은 침몰 됐고, 당시 부근 해상에는 약 20~30척의 어선이 있었다.” “결국 발동선 2척과 전마선 2척이 겨우 귀환했다.”며 “같이 간 일행 중에는 행방불명된 자가 2명이며, 김동술(39)씨는 기관총의 탄환을 맞고 사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격으로

2) 《조선일보》, 1948.06.11자 기사.

3) 《동아일보》, 1948.06.12자 기사.

4) 《경향신문》, 1948.06.12자 기사.

5) 조춘정, 「독도폭격사건의 진상」, 『민성』 8월호; 한규호, 「참극의 독도(현지레포트)」, 『신천지』 7월호(통권27호).

사망한 사람이 십 수 명이라 보도됐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30여 척의 배에 200여 명의 어부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⁶⁾

국내의 언론매체들은 앞 다투어 당시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으며, 또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진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위의 신문보도기사에서 보듯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애초에 공습을 가한 국가와 비행기의 정체는 그 후 미국의 폭격기로 밝혀졌지만, 서둘러 피해조사와 보상을 마친 관계로 사건의 실체와 원인 규명, 피해규모, 사후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월이 갈수록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어 왔다.

〈표 1〉 1차 독도폭격사건 피해상황 언론사 및 정부발표 집계

구분		인명피해		재산피해			일자
		사망/실종자	부상자	침몰선박	파손선박	피해액	
언론 보도	조선일보	16명	중상 10명	20여척			1948.06.11
	동아일보	14명(9/5)	중상2/경상8	11척	4척		1948.06.12
	경향신문	14명(9/5)	중상2/경상8	11척	4척	500만원	1948.06.12
	민주일보	14명(3/11)	중상 3명	19척	4척		1948.06.13
	자유신문	9명	중경상 36명	11척		500만원	1948.06.12
	한겨레신문	150명		80척	2척		1999.10.11
	대구일보	200명		30척			2015.02.06
정부 보고	경상북도	14명	중경상자 6명	4척		94만원	1952.9.20

이 밖에도 월간 ‘신천지’ 1948년 7월호에는 사망 16명(중상 3명), 침몰선박 23척으로, 1952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은 사망자를 30명으로 집계했다. 특히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과 한국외국어대 독도문제연구회

6) 《대구일보》, 2015.02.06자 기사 「1948년 미공군 폭격연습 표적 “어민 150여 명 무고한 희생”」.

는 1995년 생존자 3명의 증언을 종합하여 150~3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사건 당시 언론보도와 정부문서를 보면 피해규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피해규모가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규모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편적인 언론 보도와 몇몇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당시 사건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리·교통적 여건으로 사건현장에 대한 보존이나 상황파악이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따라서 제대로 된 피해상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넷째, 미군정체제 하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과도정부의 신속한 조사나 대응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특히 아쉬운 점은 피해 가족들의 실종 신고 등이 부족하여 정확한 피해 규모의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언론기관의 보도기사와 연구논문, 시민사회단체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당시 미공군기의 폭격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약 200명 내외, 침몰선박이 약 50척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확한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민·관·학 3자로 구성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3.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한국(과도)정부의 대응

1948년 6월 8일에 일어난 1차 독도폭격사건 당시는 민정장관 안재홍이 이끄는 '남조선과도정부'가 통치하던 시기로 공식적인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다. 때문에 한국정부가 공식적인 항의나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는 미군에 의한 독도폭격사건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이어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독도폭격사건을 조회하여 항의하였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공군의 연습 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국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사령부는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가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 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⁷⁾ 1948년 1차 독도폭격사건에 이어서 1952년 2차 독도폭격사건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신용하, 『독도영유의 진실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p. 277.

<자료소개>

「독도연해어선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

1. 현대 한국어 윤문

경북 제 273 호		결재 1952년 9월 23일		시행 1923년 9월 24일
년 월 일 접수	정서	교합	발송	발송상의 주의
1952년 9월 20일 기안	주 ■ ■		㉮	
지사(知事) ㉮ 산업국장(産業局長) ㉮ 수산과장(水産課長) ㉮ 과원(課員) ㉮ 기안자(起案者) ㉮				
건명(件名)	독도연해어선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外情 제1318호 1952.9.5.일자)			
외무부 장관	지사		명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에 관한 총괄적 자료(사본)를 별지(別紙)와 같이 제출합니다.				
【경상북도】				

경위보고

1. 독도의 위치와 형태

독도는 울릉도(鬱陵島) 남동(SE) 약 61리(浬) 지점에 있는 크고 작은 두 섬과 약간의 암초로 형성된 절벽이 깎아 세운 듯이 우뚝 솟은 무인도입니다. 이 섬은 나무숲이 없고 다만 잡초가 무성 할 따름이며, 음용수가 전혀 없는 까닭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당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와 암초에는 어족(魚族)의 회유(廻遊)⁸⁾와 물개의 서식과 미역의 번식이 풍부함

으로 이러한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할 목적으로 여름철에는 어선의 왕래가 빈번하고, 평소에는 난파선의 피난처로 이용됩니다.

2. 독도 영유문제

독도는 지리적으로 토질 및 식물이 울릉도와 서로 같으며, 역사적으로 한일병탄(韓日併呑) 전까지 한국의 영토로서 어획(漁獲)을 독점(獨點)하였음을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명확한 증거가 있고, 울릉도에 거주하는 90세의 노인인 홍재현(洪在現)씨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70년간 울릉도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빈번한 미역 채취의 사실과 광무10년(1906)에 일본의 오키도사(隱岐島司) 일행 10여 명이 울릉도 항구에 들어와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함으로 당시 고을의 장(長)인 전재항(田在恒) 외 다수의 노인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즉시 정부에 보고한 사실 등 옛날부터 양국의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으나 한일병탄 후에는 독도의 소속 문제는 논의의 필요가 없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독도에서 일본어민들의 불법 어업행위 때문에 울릉도민은 독도의 수산물을 채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울릉군수는 독도의 영유 확인을 정부에 신청하여 1946년 6월 22일자로 연합국 최고사령관 1033호 각서(覺書), 일본제국 정부(日本帝國政府) 경유, 과도정부(過渡政府) 도쿄(東京) 중앙연락청(中央連絡廳)에 송달된 『일본인의 고기잡이 및 포경어업조업(捕鯨漁業操業)에 관한 승인된 구역』나 항에 기재된 “일본인의 선박 및 인원은 이후 독도까지 12해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며 또는 독도에는 어떠한 접촉도 못한다.”⁸⁾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8) 물고기 등이 한 서식지에서 다른 장소로 떼를 지어서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는 일을 말한다.

9) 원문에는 【1946년 6월 21일자로 연합국 최고지휘관 800.217각서(覺書), 일본제국 정부(日本帝國政府) 경유, 과도정부(過渡政府) 도쿄(東京) 중앙연락청(中央連絡廳)에 송달된 『일본인의 고기잡이 및 포경어업조업(捕鯨漁業操業)에 관한 승인된 구역』나 항에 기재된 “일본인의 선박 및 인원은 이후 독도까지 12미터(米) 이상 접

글로써 공표(公表)되어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밝혀 놓았으나, 근래까지 일본의 오키도(隱岐島)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말이 있음으로 이 기회에 다시 밝혀서 우리나라의 어부가 안심하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독도(폭격)사건 발생 개황

1948년 6월 8일(단기 4281년6월8일)

울릉도 사람 윤영도(尹永道) 이하 22명

강원도 묵호 사람 옥만룡(玉萬龍) 이하 12명

강원도 죽변 사람 이도순(李道順) 이하 18명

강원도 평해 후포리 사람 김동술(金東述) 이하 7명

합계 59명은 태영호 이하 기선(機船) 7척과 범선(帆船) 11척에 나누어 타고 근거리 울릉도를 출범하여 풍어기(豐漁期)의 미역을 채취하고자 독도에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날은 서남풍이 강하게 불었으므로, 대개가 북쪽편의 섬 그늘에서 해안에 선박을 대고 300m 이내에 정박하고 어부 일부는 섬에 상륙하여 채취한 미역의 건조작업에 종사하고 혹은 채취에 종사하고 있던 중, 오전 11시 40분경 남동(南東) 방면으로부터 비행기의 폭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섬의 그늘이 드리워 있고 파도소리가 심한 탓으로 폭음을 모르고 있던 사람도 많았으며 또 폭음을 들은 사람은 우리를 도우는 미군의 비행기라고 여겨 경계하기보다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자의 말에 의하면 비행

근하지 못하며 또는 독도에는 어떠한 접촉도 못한다.”¹⁾로 기술되어 있지만,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1033호의 오키로 보이기에 바로 잡는다.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즉 스캐핀(SCAPIN) 1033호는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총사령부 최고사령관이 선포한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에 관한 지령을 가리킨다. 동 지령은 일본의 어업, 포경업 및 유사 활동들을 일정 경계선 내부의 구역으로 제한하면서, 그 제3항(나)에서는 특히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선박 및 승무원의 차후 북위 37° 15', 동경 131° 53'에 위치한 독도에 대하여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과 여하한 접촉도 못한다.”고 명시하였다.

기 14기가 주로 선박이 많은 북쪽 편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고 약 2~30분간에 걸쳐 기관총을 발사한 후 애초에 나타났던 방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극도의 위협과 공포에 휩쓸려서 어민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피할 장소를 찾다가, 독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 외에는 거의 다 사격 대상이 되어 침몰하고 크게 파손되었고, 두 섬 일대는 피비린내 나는 생지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폭격이 끝난 후 생존자들은 사건 후의 수습에 온 힘을 다하였다고 하나 행방불명 14명, 크게 파손된 선박 4척을 확인하고 크게 중경상자 6명만을 구조하여 간신히 울릉도까지 회항(回航)하였던 것입니다. 생존자는 울릉도 사람 윤영도(尹永道) 이하 45명이고, 행방불명자는 목호 사람 김중선(金仲善), 울릉도 사람 최덕식(崔德植), 김태현(金泰鉉), 고원호(高元鎬), 김해도(金海道), 김해술(金海述), 채일수(蔡一洙), 후포리 사람 김동술(金東述), 죽변 사람 권천이(權千伊), 김경화(金慶化), 이천식(李千植) 외에 성명미상 3명 등 합계 14명이며, 이후 3차례의 구호선(救護船)을 파견하여 그때에 발견된 시체는 김중선(金仲善), 최덕식(崔德植), 성명미상 1명 등 합계 3명뿐이며, 중상자(重傷者)는 울릉도 사람 장학상(張鶴祥), 이상주(李相周), 죽변 사람 권진문(權進文) 등 3명이고, 그 외 3명의 경상자가 있었으며, 침몰한 선박은 기선(機船) 태영호(泰榮丸), 도하호(稻荷丸), 경양호(慶洋丸), 제오행정호(第五幸正丸) 등 4척으로서 손해금액이 약 94만원(萬圓)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4. 구호 개황

1) 제1차 구호

6월 9일, 기선 2척에 경찰관 2명, 선원 19명이 나누어 타고 출범(出帆)하여 탐색하였으나 시신 2구를 발견하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2) 제2차 구호

6월 10일, 다시 기선 2척을 동원하여 짙은 안개를 무릅쓰고, 종일 탐색

하였으나 아무 소득없이 빈 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3) 제3차 구호

6월 14일, 이 사건이 도(경상북도)¹⁰⁾에 보고되자 그 진상을 조사하고자 본도 수산과(水産課)의 기사(技士) 문영국(文英國)과 미국인 CIC, 해안경비원 6명이 본도 소유 경비선 계림호로 울릉도에 출장하여 다음날인 16일 울릉도 수중구조 대원 11명과 묵호에 사는 어부 7명, 후포리 어부 2명, 합계 28명이 많은 수의 기선을 동원하여 독도 일대를 대수색하는 한편 그 현장 조사를 하였으나 시신 1구를 발견하였을 뿐이었고, 반쯤 부서진 선박은 그 후 재차의 폭격연습이 있었는지 생환자의 눈에는 사건 당시보다도 더욱 심한 파괴를 당했더라고 합니다.

이상, 3차의 구호 작업에도 남은 11명의 행방을 찾을 길 없이 50여만원의 비용만 허비하는 결과를 내어 울릉도민 전체의 눈물겨운 노력도 헛수고가 되었고¹¹⁾ 짙은 슬픔이 동해바다에 먼지처럼 떠다녔던 것입니다.

5. 배상 및 유족 원호개황

1) 미군의 사과

6월16일, 미군 장교 여러명이 울릉도에 출장하여 행정관 및 유지(有志), 조난자 유가족, 중상자 가족 등을 찾아 마음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배상금으로 2,125,520원(円)을 지급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2) 구호금 모집

서울 수산경제신문사(水産經濟新聞社), 부산 산업신문사(産業新聞社), 대구 남선경제신문사(南鮮經濟新聞社)에서는 서로 호응하여 국내 동포에

10) 경상북도

11) 원문에는 “도로(徒勞)에 귀(敗)하고” 로 되어 있음. 귀(敗)는 歸(귀)와 같은 글자임.

계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달래는 기금을 모집하는 한편 도내 수산단체, 공무원 등이 께기하여 총액 649,269원 80전을 모집하여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6. 위령제 거행

[1950년]¹²⁾ 7월 27일 경북 어업조합 연합회 주최로 조난 어민 위령제를 독도에서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날씨가 나빠서 출범하지 못하고, 울릉도 어업조합에서 관원과 주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7. 위령비 건립 취의

독도조난 어민의 억울한 처지를 돌이켜 생각 할 때에 뜻밖에 당한 재난에 홀륭한 산업일꾼을 잃고 그 영령(英靈)을 현지에서 위로하여 수중 깊이 잠겨 있는 원혼을 건져주는¹³⁾ 한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정당하게 다시 밝혀서 어업상 및 군사상 기초를 탄탄하게 하여 두고, 또 이를 공보처 및 미국 공보원의 영사기로 촬영하여 영유(領有) 문제를 국제적, 국내적으로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2주년을 기(期)하여 중앙과 지방의 중요인사 및 귀빈과 유가족, 기타 관계가 있는 관원과 주민을 모시고 경상북도 조재천(曹在千) 지사가 정성껏 친필로 쓴 독도조난어민 위령비를 건립하고 제막식과 위령제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12) 원문에는 연도가 없으나 ‘사건 발생 2주년’이라는 내용을 볼 때 1950년으로 추정함.

13) 원문에는 “수부(水府)의 원굴(冤屈)을 파여주는”으로 되어 있음.

II. 원문 전사본(傳寫本)

경북지 제 273 호 (慶北地 第 二七三 號)		결재 4285년 9월 23일 (決裁 四二八五年九月二三日)		시행 85년 9월 24일 (施行 八五年 九月 二十四日)	
년 월 일 접수 (年 月 日 接受)	정서 (淨書)	교합 (校合)	발송 (發送)	발송상(發送上)의 주의(注意)	
4285년9월20일 기안 (4285年9月20日 起案)	主 ■ ■		㉮		
지사(知事) ㉮ 산업국장(産業局長) ㉮ 수산과장(水産課長) ㉮ 과원(課員) ㉮ 기안자(起案者) ㉮					
건명(件名)	독도연해어선조난사건 전말보고의 건(외정 제1318호 4285.9.5.일자) (獨島沿海漁船遭難事件顛末報告의 件)(外情 第1318号 四二八五年九月五日字)				
외무부 장관(外務部 長官)	지사(知事)				
수제(首題)의 사건(事件) 전말(顛末)에 간(干)한 총괄적(總括的) 자료(資料) 사본(寫本)을 별지(別紙)와 여(如)히 제출(提出)하나이다.					
【慶 尙 北 道】					

경위보고

一. 독도(獨島)의 위치(位置)와 형태(形態)

독도(獨島)는 울릉도(壘陵島) 남동(南東,(SE)) 약(約) 61리(浬) 지점(地點)에 있는 대소(大小) 두섬과 약간(若干)의 암초(岩礁)로 형성(形成)된 단애절벽(斷崖絶壁)이 홀립(屹立)한 무인도(無人島)입니다. 이섬은 수림(樹林)이 없고 다만 잡초(雜草)가 번무(繁茂)할다름이며 음료수(飲料水)가 전무(全無)한 까닭으로 인류(人類)의 주거(住居)에는 부적당(不適當)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周圍)와 암초(岩礁)에는 어족(魚族)의 회유(廻遊)와 해구(海狗)의 서식(棲息)과 화포(和布) 번식(繁殖)이 풍부(豐富)함으로 이것을 어로(漁撈) 채취(採取)할 목적(目的)으로 하계(夏季)에는 어선(漁船)의 내왕(來往)이 빈번(頻繁)하고, 평소(平素)에는 난파선(難破船)의 표기처(漂寄處)로 됩니다.

二. 독도 영유문제(獨島 領有問題)

독도(獨島)는 지리적(地理的)으로 토질(土質) 및(及) 식물(植物)이 울릉도(壘陵島)와 합치(合致)하며 역사적(歷史的)으로 한일합병(韓日合併) 전(前)까지 한국(韓國) 영토(領土)로서 어획(漁獲)을 독점(獨占)하였음은 한국수산지(韓國水產誌)에 명확(明確)한 증명(證明)이 있고, 울릉도(鬱陵島)에 거주(居住)하는 90세(歲) 노옹(老翁) 홍재현(洪在現) 씨(氏)의 진술(陳述)한바에 의(依)하면 70년간(年間) 울릉도(壘陵島) 생활(生活)를 통(通)하여 빈번(頻繁)한 화포(和布) 채취(採取)의 사실(事實)과 광무10년(年)에 일본(日本) 은기도사(隱岐島司) 일행(一行) 10여 명(余名)이鬱陵島(壘陵島)에 내항(來航)하여 독도(獨島)가 자국(自國) 영토(領土)임을 주장(主張)함으로 당시(當時) 향장(鄉長) 전재항(田在恒) 외(外) 다수(多數) 부로(父老)가 그 비(非)를 지적(指摘)하고 즉시(即時) 정부(政府)에 보고(報告)한 사실(事實) 등(等) 고래(古來)로부터 양국(兩國)의 사이에 사소(些少)한 시비(是非)가 있었으나 한일합병(韓日合併) 후(後)에는 독도(獨島) 소속(所屬) 문제(問題)는 논의(論議)의 필요(必要)가 없이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解放) 후(後)鬱陵島民(壘陵島民)은 본도(本島)의 소속(所屬)이 불분명(不分明)함으로서 어획상(漁獲上) 주저(躊躇)함이었음으로 당시(當時) 도사(島司)는 본도(本島) 영유(領有) 확인(確認)을 정부(政府)에 신청(申請)하여 1946년(年) 6월(月) 21일자(日字)로 연합국 최고지휘관(聯合國 最高指揮官) 800,217 각서(覺書), 일본 제국정부(日本帝國政府) 경유(經由), 과도정부(過渡政府) 동경(東京)중앙연락청(中央連絡廳)에 송달(送達)

된 『일본인(日本人)의 포어(捕魚) 및(及) 포경어업조업(捕鯨漁業操業)에 관(關)한 승인(承認)된 구역(區域) 나 항(項)에 기재(記載)된 일본인(日本人)의 선박(船舶) 및(及) 인원(人員)은 금후(今後) 죽도(독도)(竹島(獨島))까지 12미(米) 이상(以上) 접근(接近)하지 못하며 우(又)는 동도(同島)에는 여하(如何)한 접촉(接觸)도 못한다.』라는 적확(的確)한 명문(明文)이 공표(公表)되어 아국영토(我國領土)임이 천명(闡明)되었으나 근년(近年)까지 일본(日本) 은기도(隱岐島) 모(某) 개인(個人)이 자기(自己) 소유(所有)라고 주장(主張)한다는 말이 있음으로 차제(此際) 재천명(再闡明)하여 아국(我國) 어부(漁夫)가 안심(安心)하고 출어(出漁)하도록 할 필요(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三. 독도사건 발생개황(獨島事件 發生概況)

단기 4281년6월8일(檀紀四二八一年六月八日)

울릉도인 윤영도 이하 22명(盍陵島人 尹永道 以下 二二名)

강원도 묵호인 옥만룡 이하 12명(江原道 墨湖人 玉萬龍 以下 一二名)

강원도 죽변인 이도순 이하 18명(江原道 竹邊人 李道順 以下 一八名)

강원도 평해 후포리인 김동술 이하 7명(江原道 平海 厚浦里人 金東述 以下 七名)

합계 59명(合計 五九名)은

태영환(泰榮丸) 이하(以下) 기선(機船) 7척(隻)과 범선(帆船) 11척(隻)에 분승(分乘)하고 근거지(根據地) 울릉도를 출발(出帆)하여 풍어기(豐漁期)의 화포(和布)를 채취(採取)코저 독도(獨島)에 출어(出漁)하였습니다. 동일(同日)은 서남풍(西南風)이 강(強)하게 불었으므로, 대개(大概)가 북측(北側)의 섬 그늘에서 선박(船舶)을 거안(距岸) 300미내(米內)에 정박(碇泊)하고 어부(漁夫) 일부(一部)는 상륙(上陸)하여 채취(採取)한 화포(和布)의 건조(乾燥) 작업(作業)에 종사(從事)하고 혹(或)은 채취(採取)에 종사(從事)하고 있던 중(中) 오전(午前) 11시(時) 40분경(分頃) 남동(南東) 방면

(方面)으로부터 비행기(飛行機)의 폭음(爆音)이 들니여왔으나 섬의 그늘이 되어 있고 파도(波濤) 노래가 심(甚)한 탓으로 폭음(爆音)을 몰고 있던 자(者)도 많았으며 또 폭음(爆音)을 들은 자(者)는 우리를 도우는 미군(美軍)의 비행기(飛行機)거니하야 경계(警戒) 보담 도로혀 기쁜마음으로 작업(作業)을 계속(繼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자(生存者)의 말에 의(依)하면 비행기(飛行機) 14기(機)가 주(主)로 선박(船舶)이 많은 북측(北側)에 투탄(投彈)을 시작(始作)하고 약(約) 2~30분간(分間)에 궁(巨)하여 기관총(機關銃) 소사(掃射)를 가(加)한 후(後) 당초(當初) 출현(出現) 방면(方面)으로 퇴거(退去)하였다고 합니다. 극도(極度)의 위험(危險)과 공포(恐怖)에 휩쓸려서 어민(漁民)들은 우왕좌왕(右往左往) 대피(待避)할 장소(場所)를 찾다가, 독도(獨島)에서 원거리(遠距離)에 있는 선박외(船舶外)에는 거이다 사격(射擊) 대상(對象)이 되어 침몰대파(沈沒大破)하고 두섬 일대(一帶)는 피비린내나는 생지옥(生地獄)을 일우웠다고 합니다. 폭격(爆擊)이 끝난 후(後) 생존자(生存者)들은 사후(事後) 수습(收拾)에 전력(全力)을 다하였다고 하나 행방불명(行方不明) 14명(名) 선박대파(船舶大破) 4척(隻)을 확인(確認)하고 중경상자(重輕傷者) 6명(名)만을 구조(救助)하여 간신(艱辛)히 울릉도(壘陵島)까지 회항(回航)하였든것입니다. 생환자(生還者)는 울릉도민(壘陵島民) 윤영도(尹永道) 이하(以下) 45명(名)이고, 행방불명자(行方不明者)는 묵호(墨湖) 김중선(金仲善), 울릉도(壘陵島) 최덕식(崔德植), 김태현(金泰鉉), 고원호(高元鎬), 김해도(金海道), 김해술(金海述), 채일수(蔡一洙), 후포리(厚浦里) 김동술(金東述), 죽변(竹邊) 권천이(權千伊), 김경화(金慶化), 이천식(李千植) 외(外)에 성명미상(姓名未詳) 3명(名) 합계(合計) 14명(名)이며 기후(其後) 3차(次)의 구호선(救護船) 파송(派送) 시(時)에 발견(發見)된 시체(屍體)는 김중선(金仲善), 최덕식(崔德植), 성명미상(姓名未詳) 1명(名) 합계(合計) 3명(名)뿐이며 중상자(重傷者)는 울릉도(壘陵島) 장학상(張鶴祥), 이상주(李相周), 죽변(竹邊) 권진문(權進文) 등(等) 3명(名)이고, 기외(其外) 3명(名)의 경상자(輕傷者)

가 있었으며 침몰(沈沒) 선박(船舶)은 기선(機船) 태영환(泰榮丸), 도하환(稻荷丸), 경양환(慶洋丸), 제오행정환(第五幸正丸) 등(等) 4척(隻)으로서 손해액(損害額) 약(約) 94만환(萬圓)에 달(達)했다고합니다.

四. 구호개황(救護概況)

1. 제1차 구호(第一次 救護), 6월 9일(六月 九日) 기선(機船) 2척(隻)에 경찰관(警察官) 2명(名) 선원(船員) 19명(名)이 분승(分乘)하고, 출범(出帆) 탐색(探索)하였으나 시신(屍身) 2체(體)를 발견(發見)할 뿐이고

2. 제2차 구호(第二次 救護), 6월 10일(六月 十日) 다시 기선(機船) 2척(隻)을 동원(動員)하여 농무(濃霧)를 무릅쓰고, 종일탐색(終日探索)하였으나 아무 소득(所得)없이 공환(空還)하였다고 합니다.

3. 제3차 구호(第三次 救護), 6월 14일(六月 十四日) 본(本) 사건(事件)이 도(道)에 보고(報告)되자 그 진상(眞狀)을 조사(調查)코자 본도(本島) 수산과(水産課) 기사(技士) 문영국(文英國) 미인(美人) C-C 해안(海岸) 경비원(警備員) 6명(名)이 본도(本道) 소유(所有) 경비선(警備船) 계림환(鷄林丸)으로 울릉도(壘陵島)에 출장(出張)하여 익(翌) 16일(日) 울릉도(壘陵島) 구조수부(構造水夫) 11명(名)과 묵호(墨湖) 어부(漁夫) 7명(名), 후포리(厚浦里) 어부(漁夫) 2명(名), 합계(合計) 28명(名)이 수척(數隻)의 기선(機船)을 동원(動員)하여 독도(獨島) 일대(一帶)를 대탐색(大探索)하는 일방(一方) 실지(實地) 조사(調查)를 하였으나 시신(屍身) 1체(體)를 발견(發見)하였을뿐이었고, 반침(半沈) 선박(船舶)은 기후(其後) 재차(再次)의 폭격(爆擊)연습(演習)이 있었는지 생환자(生還者)의 안목(眼目)에는 사건(事件) 당시(當時) 보담 더욱 심(甚)한 파괴(破壞)를 당(當)했드라고 합니다.

이상(以上) 3차(次)의 구호(救護) 공작(工作)도 남은 11명(名)의 행방(行方)을 찾을 길 없이 50여만환(余萬圓)의 비용(費用)만 허비(虛費)하는 결과(結果)를 내어 울릉도민(壘陵島民) 전체(全體)의 눈물겨운 노력(努力)도 도로(徒勞)에 귀(敗)하고 무거운 애수(哀愁)가 동해(東海)에 표불(漂拂)했

든 것입니다.

五. 배상 및 유족원호개황(賠償 及 遺族援護概況)

1. 미군(美軍)의 진사(陳謝) 6월16일(六月十六日) 미군 장교(美軍將校) 수명(數名)이 울릉도(壘陵島)에 출장(出張)하여 행정관(行政官) 및(及)유지(有志) 조난자(遭難者) 유가족(遺家族), 중상자(重傷者) 가족(家族) 등(等)을 차어 심심(深心)한 사과(謝過)의 뜻을 표(表)하고 배상금(賠償金)으로 2,125,520엔(円)을 지급(支給)하고 도라갓다합니다.

2. 구호금(救護金) 모집(募集) 서울 수산경제신문사(水産經濟新聞社), 부산(釜山) 산업신문사(産業新聞社), 대구 남선경제신문사(南鮮水産經濟新聞社)에서는 상호(相互) 호응(呼應)하여 국내(國內) 동포(同胞)에게 진상(眞狀)을 알리고 유가족(遺家族) 원호(援護) 기금(基金)을 모집(募集)하는 일방(一方) 도내(道內) 수산단체(水産團體), 공무원(公務員) 등(等)이 꺾기(蹶起)하여 총액(總額) 64만¹⁴⁾9천 269환(圓) 80전(錢)을 모집(募集) 반급(頒給)하였든 것입니다.

六. 위령제 거행(慰靈祭 舉行)

금년(今年) 7월(月) 27일(日) 경북(慶北) 어업조합(漁業組合) 연합회(聯合會) 주최(主催)로 조난(遭難) 어민(漁民) 위령제(慰靈祭)를 독도(獨島)에서 거행(舉行)코저 하였으나 마춤 일기(日氣)가 불순(不順)하여 출범(出帆)치 못하고, 울릉도(壘陵島) 어업조합(漁業組合)에서 관민(官民) 다수(多數) 참석하(參席下)에 성대(盛大)히 거행(舉行)하였다고 합니다.

14) 원문에는 64로 되어 있어 ‘만’자가 빠진 것으로 보임.

七. 위령비 건립(慰靈碑 建立)

독도(獨島) 조난(遭難) 어민(漁民)의 억울(抑鬱)한 처지(處地)를 회상(回想)할때에 횡액(橫厄)에 홀용한 산업(產業) 투사(鬪士)를 일코 그 영령(英靈)을 현지(現地)에서 위로(慰勞)하여 수부(水府)의 원굴(冤屈)을 파여주는 일방(一方) 독도(獨島)가 아국(我國) 영토(領土)임을 정당(正當)히 재(在) 천명(闡明)하여 어업상(漁業上) 및 군사상(軍事上) 기초(基礎)를 공고(鞏固)히 하여두고, 또 차(此)를 공보처(公報處) 및 미국(美國) 공보원(公報院)의 영사기(映寫機)로 촬영(撮影)하여 영유(領有) 문제(問題)를 국제적(國際的), 국내적(國內的)으로 광범(廣汎)히 소개(紹介)하기 위(爲)하여 사건(事件) 발생(發生) 2주년(周年)을 기(期)하여 중앙지방(中央地方) 요로귀빈(要路貴賓)과 유가족(遺家族) 기타(其他) 관계관민(關係官民)을 메시고 본도(本道) 조재천(曹在千) 지사(知事)님에 정사(精謝)껏 친필(親筆)로 쓴 독도(獨島) 조난(遭難) 어민(漁民) 위령비(慰靈碑) 건립(建立)하고 위령제(慰靈祭) (4283년 6월8일(四二八三年六月八日) 독도(獨島)에서)를 거행(舉行)하였습니다.

經 緯 報 告

獨島의 위치 및 形 態

獨島는 釜 陵 島 南 東 5 E 約 六 十 一 哩 地 點 이 있 는 大 小 두
 섬 과 若 干 의 小 岩 礁 로 形 成 된 斷 崖 絶 壁 이 屹 立 하 無 人 島
 임 나 一 이 섬 은 樹 林 이 없 고 다 만 雜 草 가 繁 茂 할 나 르 爲 며
 飲 料 水 가 全 無 한 까 故 으 로 人 類 의 住 居 에 는 不 適 當 할 나
 으 러 나 그 周 圍 의 小 岩 礁 에 는 魚 族 의 廻 遊 와 海 狗 의 棲 息 과
 和 布 等 不 殖 의 豐 富 한 故 으 로 이 故 으 爲 漁 撈 採 取 魚 目 의 故 으 로
 夏 季 에 는 漁 船 의 來 往 이 頻 繁 하 으 나 平 素 에 는 難 破 船
 의 漂 寄 處 로 變 化 나

獨島領有問題

獨島는 地 理 的 으 로 土 質 及 植 物 이 釜 陵 島 와 合 致 하 며

歷史的으로韓日合併前까지韓國領土로서漁獲을獨
 占하였을는韓國水産誌에明確한證明이었고, 蔚陵
 島山居住者는九十歲老翁洪在現氏의陳述한바에依하면
 七十年間 蔚陵島生活를通하여 漁業을和布採取
 의事 倭身과光武十年에日本總岐島司一行十餘名이
 蔚陵島에來航하여 獨島가自國領土임을主張함으로
 當時總長田左垣外多數文老가 그非를指摘하고
 當時政府의報告는事實을古來로부터兩國의 사이에
 此는是非가있었으나 韓日合併後에는獨島所屬
 問題之論議의必要가없어졌던것임이다
 그리고解放後 蔚陵島民은本島의所屬이不分明
 하므로서 漁獲上 獨島가있음으로 當時島司는本島

江原道墨湖人王萬龍以下十二名 江原道竹辺人李
 一道順以下十八名 江原道平海厚浦里人金東休以下
 七名合計五十九名은吳榮丸以下機航七隻又斗帆船十
 一隻又에介棄하고 根據地 查渡島를 出帆하여 豊島期
 의 和布를 採取코자 獨島에 出漁하였을나니 同日은
 西南風이 强하게 불었음으로 大擡가 北側의 섬 그늘에서
 船舶을 距山岸 三〇米內에 碇泊하고 漁天一部는 上陸
 하여 採取한 和布의 乾燥作業에 從事하고 或은 採取하여
 從事하고 있을中 十時十分頃 南東方面으로부터
 飛行機의 爆音이 들리어 왔으나 섬의 그늘이 되어 있고 波
 濤가 甚한 故로 爆音을 들은 者도 많았으며 又 爆
 音을 들은 者은 우리 船은 美庫의 飛行機거나 海軍警戒

모았노라 허기뿐 마음으로 作業을 繼續하고 있었다고 함이나
 生存者의 많기에 依하면 飛行機 十四機가 주로 船舶의 많음
 北側에 投彈을 시작하고 約三十分間에 互히 機関銃
 掃射을 加한 後 當初出現方面으로 退去하였다고 함이나
 極度の 危險과 恐怖에 휩쓸려서 漁民들은 右往左往
 待濟한 場所를 찾아가 獨島에서 遠距離에 있는 船
 船外에는 거의 射擊對象이 되어 沈没大破하고 두 섬 一帶
 는 舟의 비린나나는 生地獄을 열 우렸다고 함이나 漆桶수이
 플낸 後 生存者들은 事後收拾에 全力을 다 하였으나
 고려나 行方不明 十四名 船舶大破 四隻으로 確認하고
 重輕傷者 六名 만으로 救助하여 難후히 查察島가 2回
 航行하였던 것임이나 生存者는 查察島 民尹 水道以下

四十五名이고 行方不明者는 墨湖 金仲善 張陵島 崔德植 金泰鎰 高元鎬 金海道 金海道 蔡一洙 一處浦里 金東述 卍 辺權十伊 金慶化 李十植 外 姓 名未詳 三名 合計 十四名 이며 其後 三次 卍 救護 船 派 送 時 卍 發見 된 屍 體 는 金仲善 崔德植 姓 名 未 詳 名 合 計 三名 豐 이며 重傷者 는 查 蔭 島 張鶴 洋 李相周 卍 辺權述 文等 三名 이고 其外 三名 卍 輕傷者 가 有 矣 이며 沈 沒 船 舶 是 機 船 美 樂 丸 福 荷 丸 慶 洋 丸 除 五 幸 正 丸 等 四 隻 又 卍 卍 擄 奪 額 約 九 十 四 名 矣 卍 達 號 卍 卍 卍 卍

卍 救護 概況

一 卍 第一次 救護 六月九日 機船 二 隻 又 卍 警 察 官 二 名 船 員 十九 名 卍 介 乘 卍 卍 出 帆 搜 索 號 卍 卍 屍 身 二

休_レ見_ル其_レ體_ノ也
 又_レ第_ニ次_ニ救_フ護_ス 六月十日_ハ機_ノ船_ニ復_ス之_レ動_員之_レ一_ヲ
 濃_ク霧_ニ浮_ル事_ニ也_ト 終_ニ日_ニ探_ル索_ス其_レ體_ノ也_ト 其_レ得_ル所_ニ在_リ之_レ也_ト
 空_ニ還_ル其_レ體_ノ也_ト
 三_、第_三次_ノ救_フ護_ス 六月十四日_ハ本_ノ事_ヲ作_リ 道_ニ報_ス之_レ也_ト 且_チ
 其_レ狀_ヲ調_ヒ査_ス 且_チ 本_ノ道_ニ水_ヲ産_ス課_ノ技_士 又_チ 英_國 美_人
 C-I-C 海_岸警_備員_六名_ノ 本_ノ道_ニ所_ニ有_ル警_備船_一
 鷄_林丸_ニ由_リ本_ノ道_ニ出_テ渡_ル 翌_日十六日_ハ本_ノ道_ニ所_ニ有_ル警_備船_一
 水_夫十一名_ト 斗_墨湖_ニ漁_夫七名_ト 厚_浦里_ニ漁_夫二名_ト 合_計三十八
 名_ノ 救_急機_船之_レ動_員之_レ一_ヲ 獨_島一_ヲ 帶_シ之_レ 大_ニ探_ル索_ス
 其_レ體_ノ也_ト 方_々地_ニ調_ヒ査_ス 其_レ體_ノ也_ト 屍_身一_ヲ 見_ル之_レ 其_レ體_ノ也_ト
 其_レ體_ノ也_ト 半_沈船_船之_レ 其_レ後_ニ再_ビ次_ニ 爆_撃船_一

어찌 있었는지(受) 受者의 眼目(眼目)은 事件(事件)을 時(時)에 時(時)에
甚(甚)히 破(破)壞(壞)를 受(受)한 事(事)라고 함이니

以上(以上) 三(三)次(次)의 救(救)護(護)工(工)作(作)도 南(南)은 十(十)名(名)의 行(行)方(方)을 查(查)을 經(經)한 以(以)

五(五)十(十)餘(餘) 美(美)軍(軍)의 甚(甚)人(人)用(用)此(此) 產(產)物(物)을 結(結)果(果)를 爲(爲)하여 查(查) 濟(濟)島(島) 民(民)

全(全)體(體)의 生(生)存(存)을 爲(爲)한 勞(勞)力(力)도 徒(徒) 勞(勞)의 餘(餘)가 無(無)고 早(早) 苦(苦)은 忘(忘) 愁(愁)가

東(東)海(海)에 漂(漂) 井(井) 했(했) 든(든) 것(것) 이(이) 니(니) 어(어)

五(五) 贈(贈) 債(債) 及(及) 遺(遺) 族(族) 救(救) 護(護) 概(概) 況(況)

美(美) 軍(軍) 의 陳(陳) 謝(謝) 六(六) 月(月) 十(十) 六(六) 日(日) 美(美) 軍(軍) 將(將) 校(校) 教(教) 官(官) 이 查(查) 濟(濟) 島(島)

에 出(出) 張(張) 하여 行(行) 政(政) 官(官) 及(及) 有(有) 志(志) 者(者) 難(難) 者(者) 債(債) 家(家) 族(族) 中(中) 傷(傷) 者(者)

家(家) 族(族) 等(等) 을 爲(爲) 하여 深(深) 心(心) 地(地) 謝(謝) 禮(禮) 의 意(意) 를 表(表) 示(示) 하 且(且) 贈(贈) 債(債) 金(金) 으

로 二(二) 萬(萬) 五(五) 千(千) 圓(圓) 을 支(支) 給(給) 하 且(且) 도 次(次) 外(外) 하 니

又(又) 救(救) 護(護) 金(金) 募(募) 集(集) 會(會) 事(事) 을 以(以) 孝(孝) 經(經) 濟(濟) 新(新) 聞(聞) 社(社) 春(春) 山(山) 春(春)

서평



서 평

“불편한 동해와 일본해”

‘국제수로기구(IHO)’는 1929년 각국의 해도에서 해양의 명칭과 그 경계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를 발간하였다. 통상 S-23으로 불리는 이 지침서는 세계의 해양과 바다를 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면서 동해 수역에 대하여는 일본해로 명명하였다. 이후 일본해 명칭은 고착화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국제무대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문제를 공식 제기하였다. 당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다. 대내적으로는 유엔가입과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 우리의 자존과 자신감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잊혀진 이름 동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 노력의 출발점은 바로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기로 결정한 ‘국제수로기구(IHO)’였다. 1992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문제 제기 이래 우리는 일본의 집요한 반대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무관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역사, 지리, 국제법 등 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기여가 없었더라면 결코 이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정보 교수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심 교수는 동해 표기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즈음인 2000년대에 들어서 동해표기문제의 실질적 연구 단체인 “동해연구회”와 정부 출연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해/일본해 병기 실현을 위해 막후에서 큰 기여를 해 오신 몇 안 되는 지

리분야 전문가이시다. 특히 일본에서 수학하신 심 교수의 일본 지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우리 정부의 대응논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더욱이 심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근무 시 동해와 독도 관련 국내외 고지도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역사재단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이후 대학교로 옮기신 이후에는 그간의 실무 세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에 매진하심으로써 동해/일본해 병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학문적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다.

이제 심정보 교수가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해와 일본해 지명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불편한 동해와 일본해”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심정보 교수가 그간 동해 지명 표기문제와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연구 결과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심정보 교수는 이 책에서 첫째,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동해 지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인이 고대사회로부터 전근대에 이르기까지 동해 지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 둘째, 19세기 전후 서구에서 도입되어 사용된 외래지명인 조선해와 일본해의 혼용을 통해 20세기 이전까지는 전세계적으로는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일본해 지명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 셋째,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일본해 지명이 확산되고 러일전쟁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정착되어 갔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흥미 있는 부분은 심정보 교수의 솔직함에 있다. 심정보 교수는 우리 국내에서 일부 정치인, 학자, 고지도 수집가들이 동해 해역의 국제적 명칭으로 한국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심정보 교수는 일본과 세계를 상대로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내부 분열이 있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지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마침 이 책이 우리 정부대표단과 동해연구회 전문가들이 모나코에서 개최중인 ‘국제수로기구(IHO) 총회(2017.4.24-28)에서 동해/일본해 병기

실현을 위해 분투중인 가운데 발간되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려 깊은 심정보 교수로서는 충분히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발간시점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 책이 우리나라 독도 연구의 중심에 있는 오랜 전통의 연구기관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출간되었다는 사실도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동해/일본해 병기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들 이슈들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관련된 역사인식의 문제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해결이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해표기문제는 다른 이슈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동해표기문제도 불행했던 과거사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문제 해결의지만 확인된다면 이 문제는 국제지명표기원칙에 따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동해/일본해 병기문제는 주요 지도 제작사들에 의해 꾸준히 실현되어 오고 있다. 2000년에만 해도 세계지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병기가 2016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병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심정보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금번 심정보 교수의 저서 발간을 계기로 동해/일본해 병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단합을 기대하며 가까운 장래에 병기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심정보 교수의 저서 발간을 축하하며 심 교수에게서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통한 많은 성취를 기대해 본다.

2017년 4월 30일

김영원

전 네덜란드대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겸 한국해양정책포럼 대표

『독도연구』 제22호 편집위원회

□ 제1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2일 10시 ~ 12시, 영남대 중앙도서관 13층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연구교수 3, 총 5인 (불참 편집위원에게는 위임장 수령함)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20편
 - 2) 『독도연구』 제22호 투고 논문 20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3) 논문 심사 기간: 2017년 6월 3일 ~ 6월 25일
 - 4)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신임 및 변경 의결
 - 편집위원 김현수(인하대) 본인의사에 따라 사직
 - 편집위원 제성호(중앙대) 신임
 - 편집위원 송휘영(영남대) 신임
 - 편집위원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신임
 - 편집간사 이우진(영남대) 계약으로 인한 신임

□ 제2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26일 10시 ~ 12시, 영남대 중앙도서관 13층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연구교수 3, 총 5인 (불참 편집위원에게는 위임장 수령함)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20편
- 2) 『독도연구』 제22호에 투고한 논문 20편을 심사결과에 따라 가운데 11편 게재하기로 결정
- 3) 각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 발송 의결
- 4) ‘게재’판정 논문의 경우 해당자에게 ‘수정요구사항’ 발송 의결
- 5) 이번 호 게재율: 55%
- 6) 논문투고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향 논의

논문투고규정

I. 투고 방법

1. 『독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 홈페이지(<http://dokdo.yu.ac.kr/>) 오른쪽 중단의 논문 투고 사이트’ 또는 ‘<http://dokdo.dothome.co.kr/>’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수령여부를 투고자가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 1) 필자의 소속과 연락처
 - 2) 필자 이름의 한자 및 영문 표기
 - 3)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 4) 한글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
(요약문에 관한 사항은 원고 작성 지침의 6항 참조)
5.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를 비롯한 그 밖의 경우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원고지 한 매당(소수점에서 받을림) 3,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II.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1)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만 한자와 병기한다.

2) 한자의 경우 괄호 없이 한글음에 이어서 쓴다(併記). 단,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풀어썼거나, 의미는 같되 음이 같지 않을 때는 해당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로 묶는다.

→ 독도獨島,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진蔚珍

→ ‘죽도(竹島) 이나바와 호키(因伯) 상하이(上海), 가와카미 (川上), “천이 명한 성을 따른다(率性).”

☞ 단, 다음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①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한문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② 본문의 괄호 속.

→ 이황李滉(號, 退溪)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서…

③ 각주 속.

④ 참고문헌란.

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① “ ” : 인용

②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③ 『 』 : 문헌이나 저서 이름

④ 《 》 : 신문 이름

⑤ 「 」 : 논문이나 작품 이름

⑥ · : 동일사항의 나열

→ 백두산·한라산·지리산

4)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부기한다. 단 중국·일본 인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은 본문보다 두 칸 들여 쓰되(왼쪽 2, 오른쪽 0), 첫 문장 들여 쓰기는 하지 않는다(들여쓰기 0).

4. 각주

- 1) 단행본인 경우 동양서는 저자명(편찬주체), 역자명, 서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沈興澤, 『鬱島報告書』, 1쪽.

李能和, 김상억 옮김, 『朝鮮女俗考』, 250쪽.

Judy Van Zile,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pp.125~133.

- 2)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홍길동, 「조선시대 서얼제도의 연구」, xxx쪽.

Edward J. Shultz, “The Early History of Andong: Central or Peripheral”, p.6.

- 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일괄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

- 4) 신문·잡지인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형식으로 표기한다.

→ 「미주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安自山, 「三國時代의 文學」, 《朝鮮日報》 1931년 4월 11일자.

- 5) 각주에서 같은 인용문헌이 연속되어 나올 경우, 동양서는 ‘저(편)자, 같은 책(같은 논문),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같은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ibid’로 표기한다. 단, 인용문헌이 연속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될 때마다 제목을 표기한다.

→ 홍길동, 같은 책, xxx쪽.

→ 홍길동, 같은 논문, xxx쪽.

→ Kant, Ibid, p.xxx.

5. 참고문헌

1) 논문 뒤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란을 붙인다.

2) 참고문헌란에는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 표기한다.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편)자, 역자, 서명, 총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역자, 논문명, 게재지 (간행처, 간행년도)

6. 요약문

1) 언어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 참조), 주제어 5개를 명기한다.

2) 분량 :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2~3매로 하고, 영문은 이 한글 요약문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7. 기타

1) 괄호가 따옴표나 낫쇠와 같은 문장부호와 쓰일 때는 괄호를 이들 부호 밖에 둔다.

→ ‘자연과 인간(天人), 『말의 문화와 배의 문화』(馬の文化と船の文化)

2) 동양철학 개념으로 사용되는 ‘理’의 한글표기는 ‘리’로 한다.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독도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의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독도 연구자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2와 '게재 불가'1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수정 후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2와 '게재 불가'1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게재료)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모든 논문은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하되, 연구비 지원 논문은 25만원을 청구한다.
3. 특별기고 형식으로 투고한 논문인 경우 게재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 (부칙)

1.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2008년 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獨島研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표절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

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①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제소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 ③ 제소자와 혐의 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종결하고,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연구윤리 협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한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최재목(영남대)

편집위원 : 김명기(명지대)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손승철(강원대)

송휘영(영남대)

심정보(서원대)

오상학(제주대)

이성환(계명대)

정갑용(영산대)

제성호(중앙대)

정성일(광주여자대)

최장근(대구대)

편집간사 : 이우진(영남대)

獨島研究

제 22 호

2017년 6월 28일 인쇄

2017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서 길 수

편집인 최 재 목

발행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3686

FAX (053) 810-4704

인쇄처 도서출판 선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4(마포동 324-1번지 1층)

TEL : (02) 718-6252

FAX : (02) 718-6253
